발 간 등 록 번 호

정보통신관련 법령집

2026.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4. 전파법
5. 전파법 시행령
6. 전파법 시행규칙
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8. 무선설비규칙
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1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1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15.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16.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17. 재난ㆍ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8.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2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4.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2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3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32. 전기통신기본법
33. 전기통신사업법
3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5. 재난안전통신망법
36.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37.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38.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39.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40.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41.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4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47. 전자서명법
48. 전자서명법 시행령
4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5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 - 202 - 6425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공사의 설계 · 감리 <개정 2009. 3. 25.>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2019. 12. 10.>

1. 설계·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12. 24.]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2. 24.>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 3. 25., 2023. 7. 18.>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9. 3. 25.>

제13조 삭제 <1999. 2. 5.>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2. 24.>

② 삭제<2014. 12. 30.>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5. 28.]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2018. 2. 21.,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2012. 1. 17.>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 삭제 <1999. 2. 5.>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 삭제 <1999. 2. 5.>

제21조 삭제 <2018. 12. 24.>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2. 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22., 2018. 12. 31., 2020. 12. 22.>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③ 삭제<2015. 12. 22.>

④ 삭제<2015. 12. 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 3. 25.>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제28조 삭제 <1999. 2. 5.>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12. 24.]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

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 3. 25., 2023. 7. 18.>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4조 삭제 <1999. 2. 5.>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 3. 25.>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22.,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 3. 25.>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 12. 24.]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5. 20.>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0조(조합의 책임)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9. 3. 25.]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장 삭제 <1999. 2. 5.>

제52조 삭제 <1999. 2. 5.>

제53조 삭제 <1999. 2. 5.>

제54조 삭제 <1999. 2. 5.>

제55조 삭제 <1999. 2. 5.>

제56조 삭제 <1999. 2. 5.>

제57조 삭제 <1999. 2. 5.>

제58조 삭제 <1999. 2. 5.>

제59조 삭제 <1999. 2. 5.>

제60조 삭제 <1999. 2. 5.>

제61조 삭제 <1999. 2. 5.>

제62조 삭제 <1999. 2. 5.>

제7장 감독 <개정 2009. 3. 25.>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65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7호의2·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5. 28., 2014. 12. 30., 2015. 12. 22., 2018. 2. 21., 2018. 12. 31., 2020. 12. 22., 2025. 1. 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2014. 12. 30.>
3. 삭제<2014. 12. 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2018. 2. 21.>
10. 삭제<2018. 2. 21.>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의2. 제65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삭제<2018. 2. 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2. 21.]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본조신설 2012. 1. 17.]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12. 22., 2017. 7. 26., 2018. 2. 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9. 3. 25.]

제8장 보칙 <개정 2009. 3. 25.>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2014. 12. 30.>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20. 6. 9.]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0. 22.>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0. 22.>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4. 10. 22.>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24. 10. 22.]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9장 벌칙 <개정 2009. 3. 25.>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18. 12. 24., 2025. 1. 3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 11., 2023. 7. 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7. 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제5386호,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 " 를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 전기통신공사업법 " 을 " 정보통신공사업법 " 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 " 을 "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 전기통신공사업법 " 을 " 정보통신공사업법 " 으로 한다.

제34조중 " 전기통신공사업법 " 을 " 정보통신공사업법 " 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1호,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7호,2002. 1. 26.>(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40호,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265호,2004. 12. 30.>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 정보화촉진기금 " 을 " 정보통신진흥기금 " 으로 한다.

부칙 <제7817호,200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7호,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방송통신위원회 " 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480호,2009.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553호,200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8호,2009. 5. 2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40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0호,2010. 4. 1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202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8호,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591호,2014. 5. 20.>(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680호,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6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89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5호,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9호,2018. 12. 24.>(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6020호,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01호,2018. 12. 31.>(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757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2020. 3. 2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9호,2020. 6. 9.>(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3호,2020. 12. 22.>(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737호,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83호,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20730호,2025. 1.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 - 202 - 64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8., 2021. 1. 5.>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 전산장비 ”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3. 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 · 감리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3. 29., 2018. 4. 1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1. 1. 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본조신설 2019. 8. 6.]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2. 7. 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7.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제11조 삭제 <2019. 8. 6.>

제12조 삭제 <2019. 8. 6.>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 10. 29.>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1. 3. 29., 2014. 8. 27., 2014. 10. 14., 2016. 6. 21.,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2022. 7. 1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개정 2022. 7. 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15.>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5. 3. 30.>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개정 2019. 8. 6.>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

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27.]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1.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6. 21.>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조신설 2019. 8. 6.]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2. 7. 11.>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4. 10. 29.>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1.>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6. 21.>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 7. 11.>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24. 10. 29.>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2. 7. 11.>]

제24조의3(연구·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6. 21.]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2. 7. 11.>]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3. 29., 2019. 8. 6., 2019. 12. 24.>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개정 2019. 8. 6.>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 8. 6.>

1.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개

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2018. 4. 17., 2019. 8. 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 12. 31., 2016. 6. 21., 2018. 4. 17., 2018. 10. 30., 2019. 8. 6., 2022. 7. 11.>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8. 4. 17., 2022. 7. 11.>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21.>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27.]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 10. 29.>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2. 7. 17., 2018. 4. 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2018. 4. 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4. 8. 27., 2018. 7. 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4. 8. 2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4. 8. 2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개정 2011. 3. 29., 2014. 8. 27.>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4. 8. 27.>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2021. 1. 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0. 29.]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본조신설 2024. 10. 29.]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 인력양성기관 ”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2. 7. 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7.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 3. 29., 2024. 5. 7.>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45조(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2021. 1. 5.>

제46조(수수료·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관리
8. 법 제46조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본조신설 2019. 8. 6.]

제6장 감독

제48조(실태조사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정지 등)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7. 17., 2018. 7. 24.>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7. 17., 2018. 7. 24.>

③ 삭제<2015. 3. 30.>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2018. 7. 24., 2023. 9. 12.>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 8. 27.]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비치한다. <개정 2012. 7. 17.>

제7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1. 6. 15.>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8. 12. 31.,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2015. 3. 30.>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삭제<2008. 12. 31.>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목개정 2022. 7. 11.]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제56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7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14. 12. 9., 2017. 7. 26., 2019. 8. 6., 2026. 3. 24.>

1. 삭제<2023. 3. 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 3. 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 3. 24.>
4의2. 삭제<2026. 3. 24.>
5. 삭제<2020. 3. 3.>
6. 삭제<2020. 3. 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3. 3. 7.>
9. 삭제<2026. 3. 24.>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2023. 3. 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2015. 3. 30.>
[전문개정 2013. 12. 30.]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3. 29.]

부칙 <제20667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학력·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6호,2008. 7. 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1098호,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235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19호,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6호,2009. 7. 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97호,2010. 7. 2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2호,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59호,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55호,2012. 10. 29.>(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45호,2013. 3. 23.>(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60호,2014. 8. 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52호,2014. 10. 14.>(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67호,2015. 3. 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4호,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5호,2016. 4. 29.>(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⑮ 및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29호,2016.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01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57호,201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034호,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1호,2020. 12. 8.>(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379호,2021. 1. 5.>(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5호,2021. 2. 1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768호,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85호,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21호,2023. 3. 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9호,2023. 9. 12.>(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56호,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65호,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부칙 <제35801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중 “ 환경부장관 ” 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2(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공사의 종류	공 사 의 예 시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총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봇대·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

		비 등의 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

		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 설비 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 통신·신호 설비 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전류·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증가한 전류·전압으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 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정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2.31.>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술능력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비고

1.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나.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3

1)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계 전체평균 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5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2)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 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

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3)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교육훈련 실적평가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되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후 공사업 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보유기술인력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0.5	0.25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2일 이상 정보통신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1

2)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2

3)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3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사업 경영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합계

가.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3퍼센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센트)

3)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4)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2퍼센트)

나.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3) 최근 1년간 별표 8 제11호마목 또는 제1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4) 최근 1년간 3)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별표 8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5) 최근 1년간 법 제 78조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6)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7)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상속 후 공사업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의 경우(-3퍼센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30.>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1. 감리원 인정교육

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중급·초급감리원 과정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중급·초급감리원 과정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동급변경자 과정	20시간	제9조제2항에 따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으로의 동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다. 별표 2에 따른 경력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중급·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초급

과정	60시간 이하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	20시간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나.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고급기술자 과정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과정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	20시간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다. 별표 6에 따른 경력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경력자교육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	20시간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가 감리원 인정교육 중 중급·초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 교육 중 고급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학력·경력자 교육 중 중급·초급·기능계기술자 과정
   나. 경력자교육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경력자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중 경력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 교육 중 중급·초급·기능계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30.>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8. 6.>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감리원이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64조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1년
2.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68조제1호	
가. 3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1년
3.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68조제2호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1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2. 17.>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삭제 <2015.3.30.>		
3. 삭제 <2015.3.30.>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나.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다.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 제66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등록취소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	법 제66조제1항	영업정지 3개월

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8호	
9. 삭제 <2018. 7. 24.>		
10. 삭제 <2018. 7. 24.>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의2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45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45일
12. 삭제 <2018. 7. 24.>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	등록취소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처분 준용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5호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3.3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6. 15.>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공사업의 등록	3만원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5천원
3. 공사업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5천원
4. 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5.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7만원
6.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5천원
7.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연 2만원
8.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9.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부당 3천원
10. 삭제 <2011.3.29>	
11.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만원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2호	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	200만원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3	3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법 제78조제1항제6호	150만원

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300만원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3	300만원
10.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150만원
11.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1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300만원
13.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100만원
14.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300만원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7호	150만원
1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8호	300만원
17.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2호	50만원
1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9호	15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 7.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 - 202 - 6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8. 19.]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부칙 <제77호,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호,201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9. 8. 19.>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2.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5.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해당함)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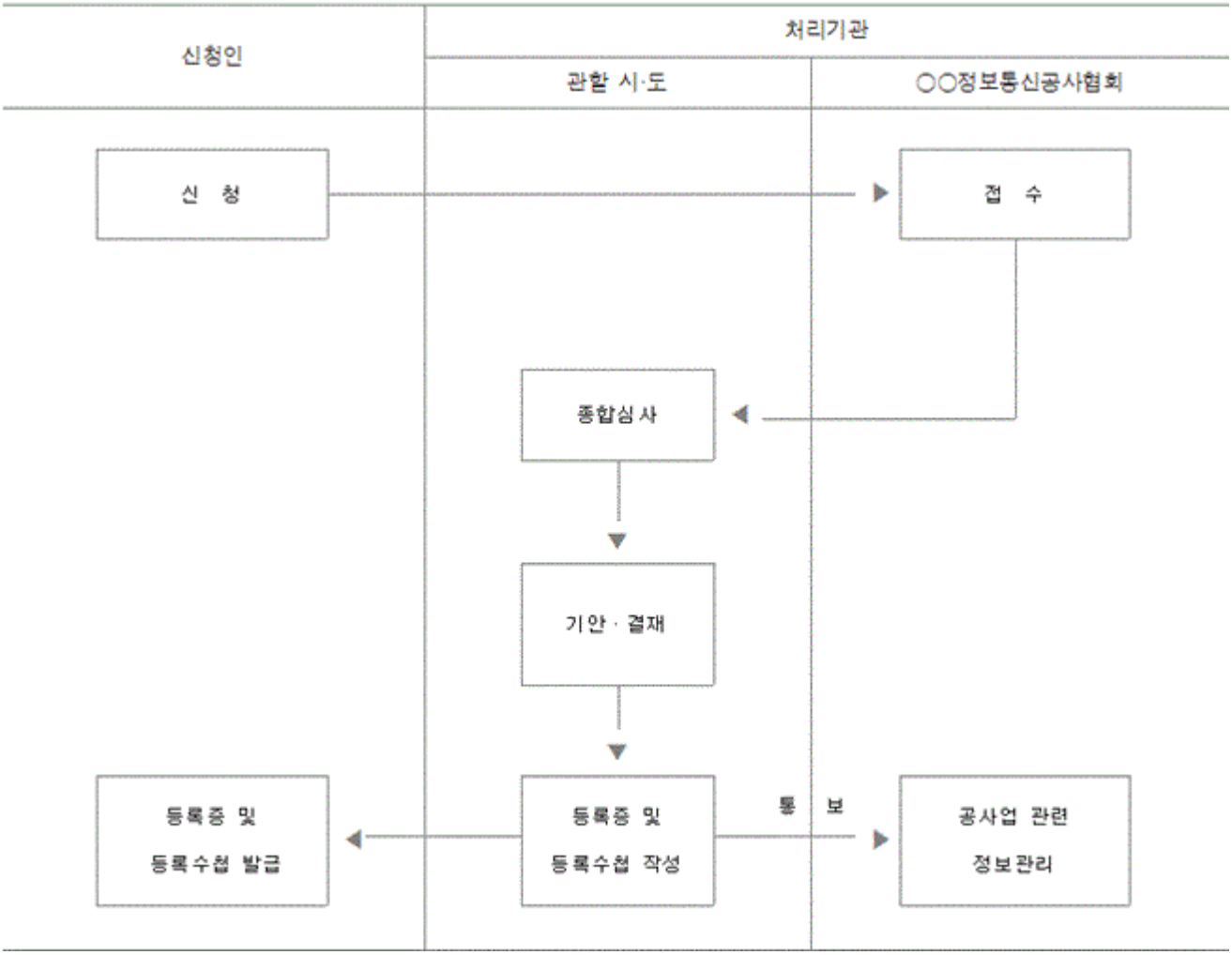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 297㎜[백상지(150g/㎡)]

(뒤 쪽)

기재사항 변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9.>

(표 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 시·도

145㎜ × 90㎜[백상지(150g/㎡)]

(제1쪽)

참 고 사 항

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145㎜ × 90㎜[백상지(150g/㎡)]

(제2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자본금	(천원)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45㎜×90㎜[백상지(80g/㎡)]

▲시공능력 평가사항

(제3쪽)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145㎜×90㎜[백상지(80g/㎡)]

▲정보통신기술자 사항 (제4쪽~제11쪽)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 번호)	자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교육이수 연월일	입사		퇴사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145㎜×90㎜[백상지(80g/㎡)]

▲변경사항 (제12쪽~제13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145㎜×90㎜[백상지(80g/㎡)]

▲행정처분사항 (제14쪽)

연월일	내용	사유	확인

145㎜× 90㎜[백상지(15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양도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10.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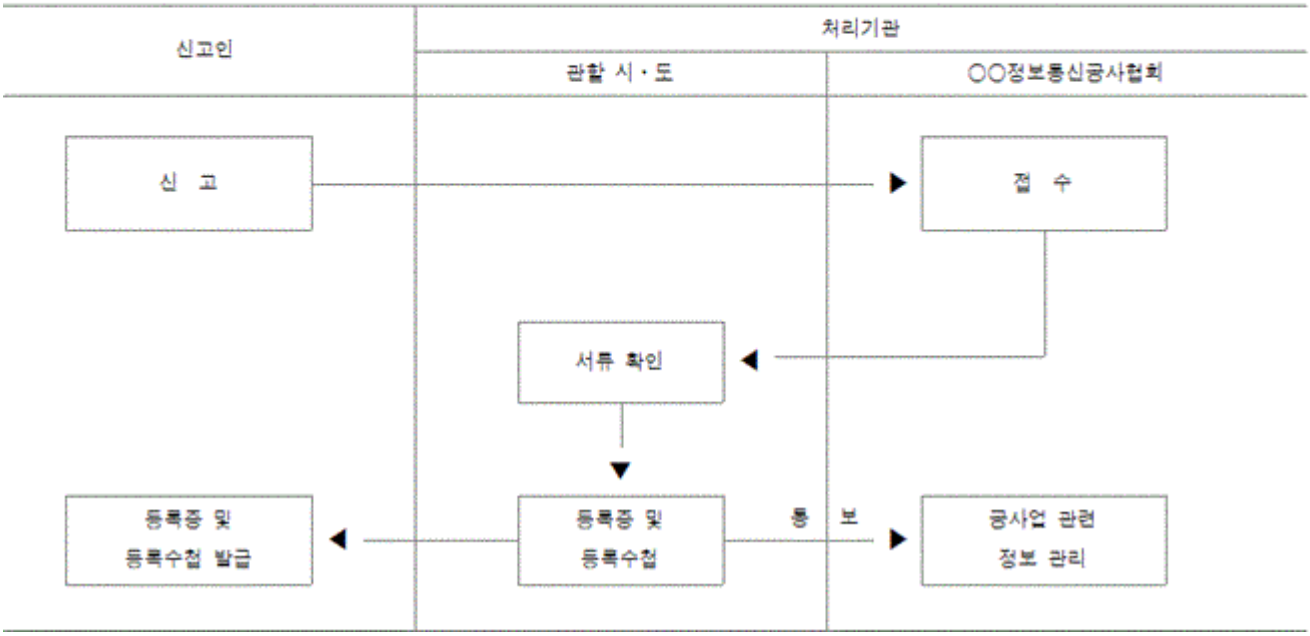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피상속인	상 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상속인	상 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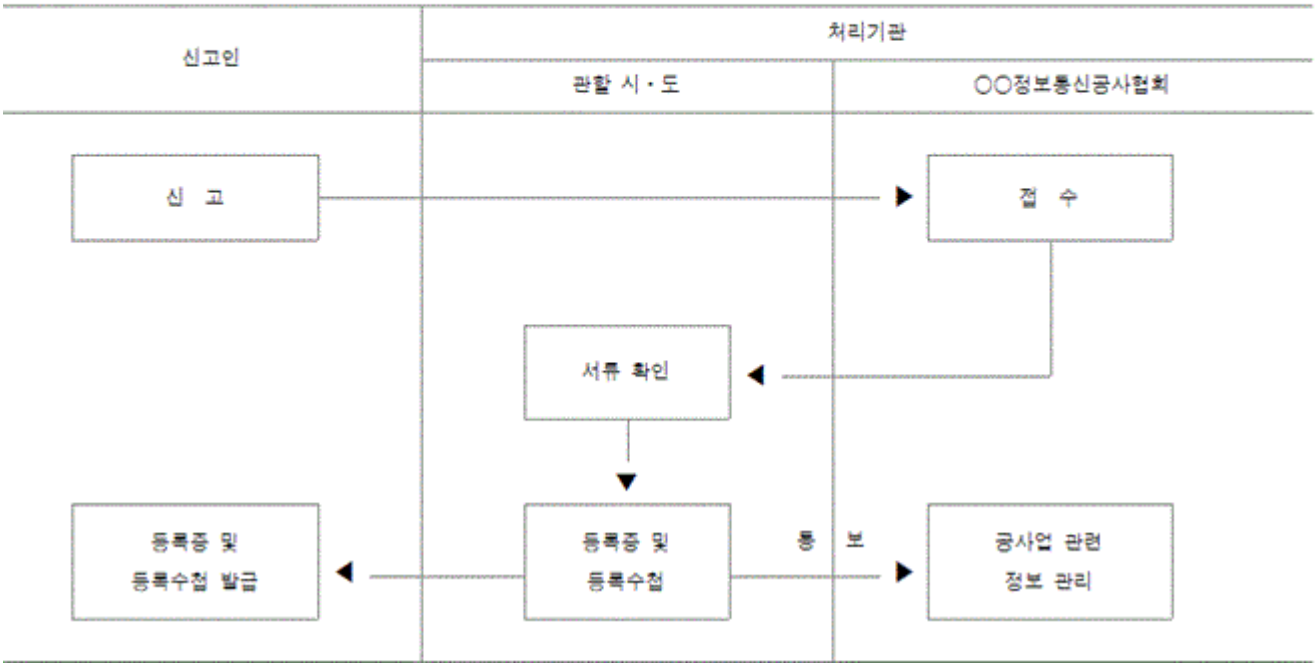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8.>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표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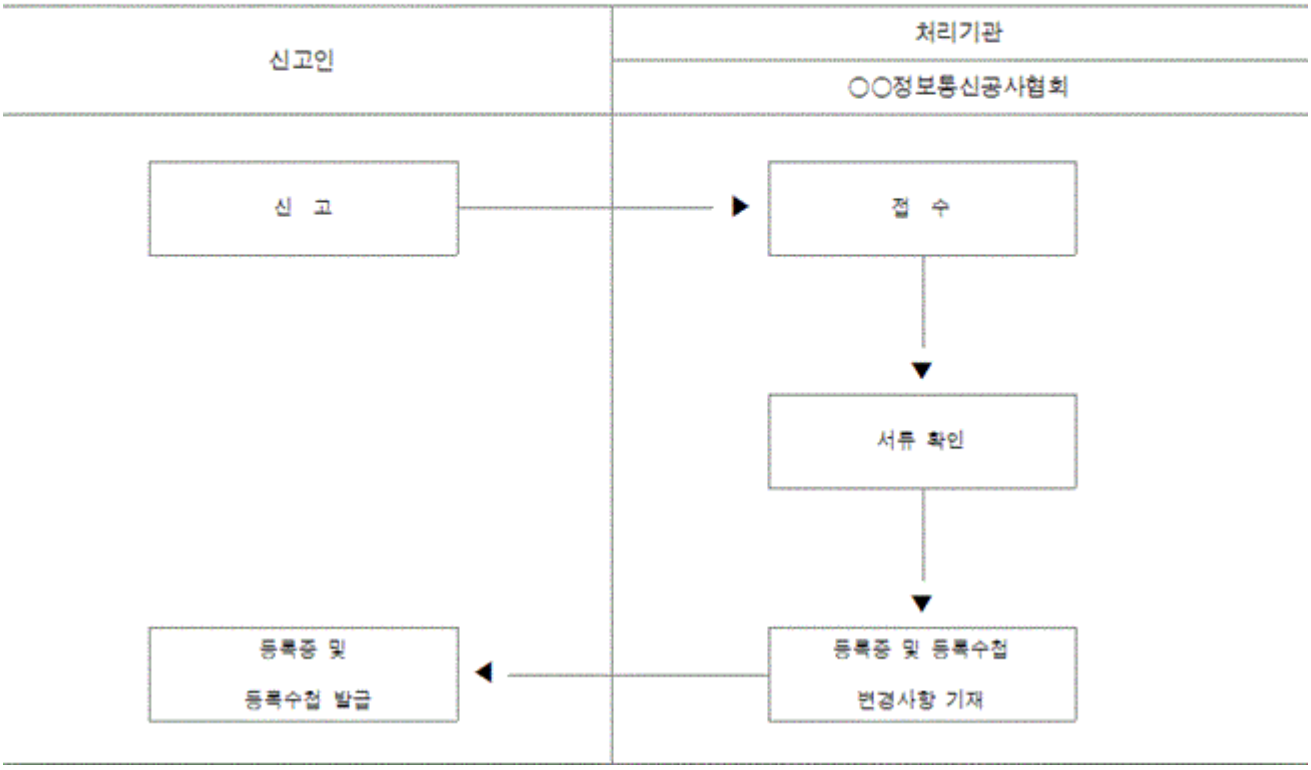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8.>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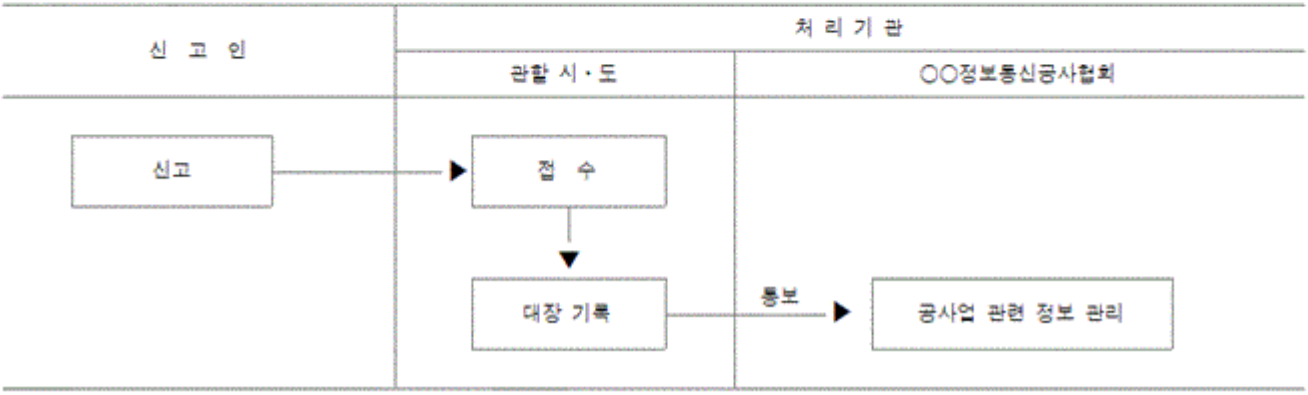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0. 18.>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번호	발주자(건축주)		설계자		건축현장						처리								비고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표자	상호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현장명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규모(층수)	접수일	검토자	검토의견	통보서 발급번호	통보일	접수일	검사필증 발급일	검사필증 번호	

※ "검토의견"란: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감리대상으로 구분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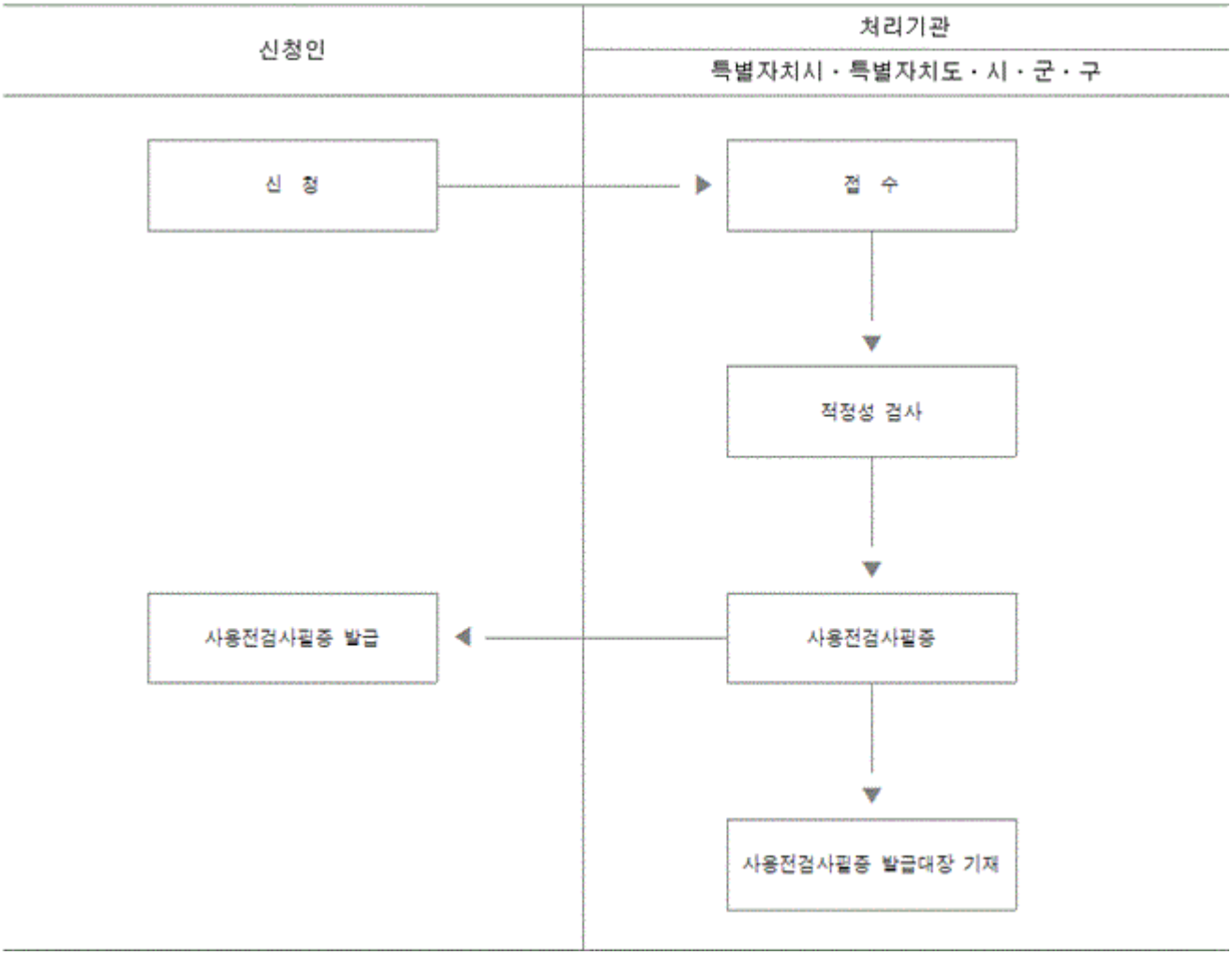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주소			
선임 구분	[ ] 직접 선임			
	[ ] 위탁 수행		[ ] 중복 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선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급	해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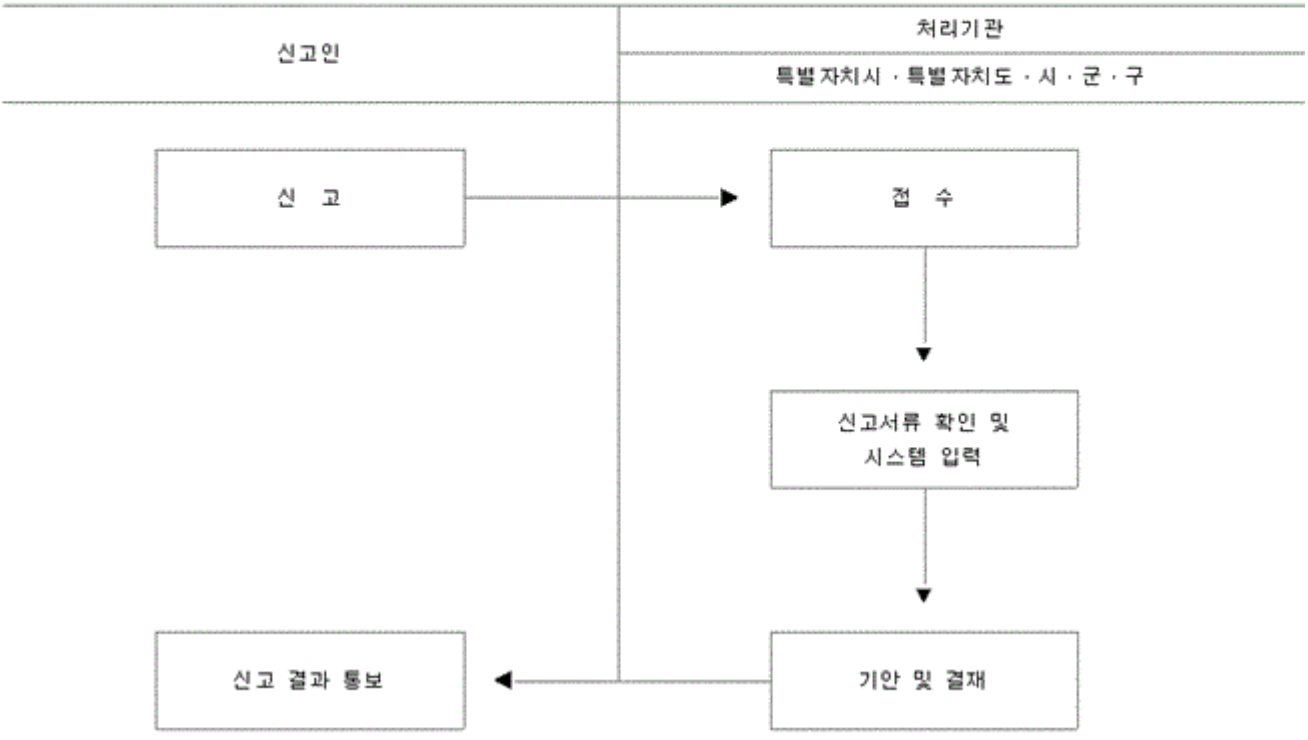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주소			
선임 구분	[ ] 직접 선임			
	[ ] 위탁 수행	[ ] 중복 선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뒤쪽)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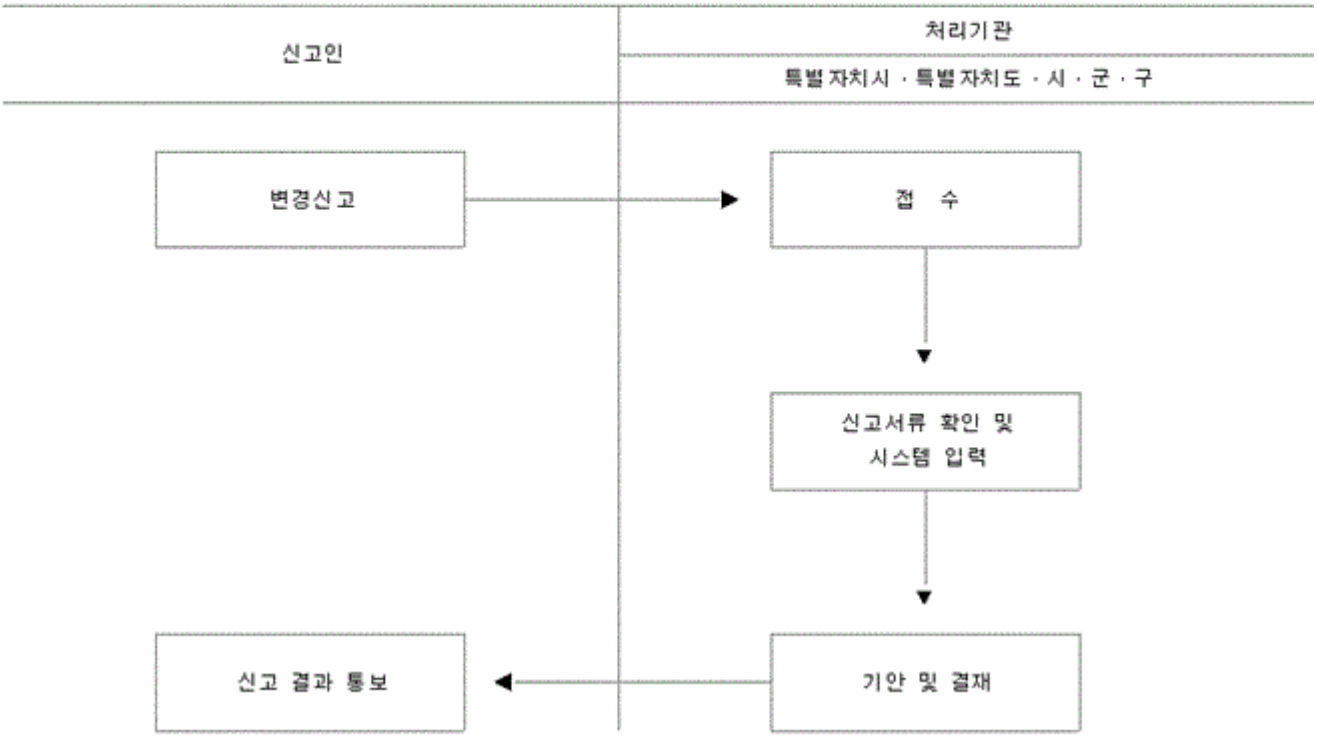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주소		
신청사유		신청부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번호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선임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일련번호	신고일	관리주체				대상 건축물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고유번호	주소	연면적(㎡)	용도	직접/위탁	선임/해임	선임일/해임일	등급	성명	경력수첩 발급번호

전파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 - 202 - 49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 - 2110 - 1439

제1장 총칙 <개정 2008. 6. 1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1. “ 전파 ” 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 주파수분배 ” 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주파수할당 ” 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 주파수지정 ” 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 주파수 사용승인 ” 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 주파수회수 ” 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4. “ 주파수재배치 ” 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의5. “ 주파수 공동사용 ” 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무선설비 ” 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 무선통신 ” 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 무선국(無線局) ” 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 무선종사자 ” 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 “ 시설자 ” 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 방송국 ” 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 우주국(宇宙局) ” 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 지구국(地球局) ” 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 위성망 ” 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13. “ 위성궤도 ” 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4. “ 전자파장해 ” 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 전자파적합 ” 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 방송통신기자재 ” 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 “ 전파환경 ” 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 7. 23.>

[제목개정 2008. 6. 13.]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 6. 13.>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5. 1. 2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 20.>]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3. 23.]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 6. 13.>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 6. 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삭제<2010. 7. 23.>
2. 삭제<2010. 7. 23.>
3. 삭제<2010. 7.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0. 7. 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8. 12. 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

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20. 6. 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신설 2015. 12. 22.>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2018. 12.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삭제<2009. 3. 13.>

[본조신설 2008. 6. 13.]

제16조(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17조(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2007. 12. 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07. 12. 21.]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1.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7. 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 6. 13.>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 6. 13.>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삭제<2010. 7. 23.>

2. 삭제<2010. 7. 23.>

3. 삭제<2010. 7.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2021. 6. 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목개정 2007. 12. 21.]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23.>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7.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7. 23.]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2. 21.>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3., 2018. 2. 21.>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8. 2. 21.>

[제목개정 2010. 7. 23.]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

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7. 2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4. 6. 3., 2017. 7. 26.>

⑨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1. 삭제<2010. 7. 23.>
2. 삭제<2010. 7. 23.>
3. 삭제<2010. 7. 23.>
4. 삭제<2010. 7. 23.>
5. 삭제<2010. 7. 23.>

② 무선국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7. 12. 21., 2010. 7. 23.,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4. 6. 3., 2017. 7. 26.>

[제목개정 2007. 12. 21.]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26조 삭제 <2010. 7. 23.>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28조(조난통신 등)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29조의2(면책)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20. 6. 9.]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2조 삭제 <2010. 7. 23.>

제33조 삭제 <2010. 7. 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 6. 13.>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3. 3. 23., 2025. 10. 1.>

[제목개정 2008. 6. 13.]

제34조의2 삭제 <2025. 10. 1.>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 6. 13.>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5. 12. 22.]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5. 12. 22.]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2024. 1.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본조신설 2010. 7. 23.]

[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4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7. 3. 14.]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개정 2008. 6. 13.>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6조 삭제 <2010. 7. 23.>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삭제<2010. 7. 23.>

③ 삭제<2010. 7. 23.>

[제목개정 2008. 6. 13.]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9조(전파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국제전파 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2. 22.]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목개정 2007. 12. 21.]

제53조 삭제 <2010. 7. 23.>

제54조(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6조(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57조 삭제 <2010. 7. 23.>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23., 2014. 6. 3., 2021. 10. 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 7. 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2010. 7. 23.>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1. 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23.>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개정 2024. 1. 2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1. 11. 30., 2024. 1. 23.>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2015. 12. 22.>
   다. 삭제<2016. 1. 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24. 1. 23.>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 7. 23.>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수입·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 23.>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 6. 13.>

제59조 삭제 <2008. 6. 13.>

제59조의2 삭제 <2009. 3. 13.>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1조(전파 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전문개정 2008. 6. 13.]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기술수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활용
2. 기술의 협력·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7. 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통신·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3. 방송·통신·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0. 7. 23.]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12. 22.>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삭제<2015. 12. 1.>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본조신설 2008. 6. 13.]

제67조(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5. 4. 1., 2025. 1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2015. 12. 1.>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2010. 7. 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 6. 13.>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10. 7. 23.]

제8장 보칙 <개정 2008. 6. 13.>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 2025. 10. 1.>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2025. 10.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 삭제 <2010. 7. 23.>

제75조 삭제 <2010. 7. 23.>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2025. 10. 1.>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 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전문개정 2008. 6. 13.]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2025. 10. 1.>

④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6. 8.,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삭제 <2010. 7. 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0. 3. 22., 2015. 12. 1.>

[전문개정 2008. 6. 13.]

제9장 벌칙 <개정 2008. 6. 13.>

제80조(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 6. 3.,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6. 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85조 삭제 <2015. 12. 22.>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2021. 10. 19., 2024. 1. 23., 2024. 10. 22.>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2010. 7. 23.>

2. 삭제<2010. 7. 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목개정 2007. 12. 21.]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0. 22.>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본조신설 2010. 7. 23.]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2. 5. 23., 2014. 6. 3., 2015. 12. 1., 2021. 10. 19., 2024. 1. 23.>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2010. 7. 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08. 6. 13.]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7. 23., 2024. 1. 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제6197호,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15호,2000. 12. 29.>(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 품질경영촉진법 "을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6893호,2003. 5. 29.>(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 소방법 "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 한다.

1(내지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09호,2003. 5. 29.>(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제7264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65호,2004. 12. 30.>(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7441호,2005. 3. 31.>(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제7559호,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내지 <68>생략

부칙 <제7815호,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 무선국관리사업단 "을 " 한국전파진흥원 "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91호,2006.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9호,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1호,2007. 1. 3.>(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 「선박안전법」 제4조 "를 " 「선박안전법」 제29조 "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8486호,2007. 5. 25.>(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 "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70호,2007. 12. 21.>(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 6. 13.>

제5조 생략

부칙 <제8776호,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3 | 「전파법」 제52조제1항 |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부칙 <제8867호,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 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 정보통신부령 " 을 " 대통령령 " 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방송통신위원회 " 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128호,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9455호,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82호,2009.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5호,2009. 3. 25.>(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 <제9773호,2009. 6. 9.>(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을 “ 「항만법」에 따른 항만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80호,2009. 6. 9.>(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선박,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한다.

⑭ 부터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66호,2010. 3. 22.>(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393호,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7항, 제11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67조제1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 중인 무선설비의 기기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 중인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한다.

② 제1항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나 제1항 및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파법」에 따른다.

제5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파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64호,2011. 4. 7.> (의료기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품목허가를 받은"을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37호,2011. 8. 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1451호,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2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부칙 <제12726호,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호,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1년 6월 1일 이후로 특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시험성적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무선국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2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3호,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9호,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제13588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법인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에 대한 양수ㆍ임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또는 다른 자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59호,2016. 1. 2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116호,2016. 3. 29.>(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ᄉ 까지 생략

1&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를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1358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78호,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

、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3호,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지위승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19호,2018. 12. 24.>(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756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5호,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9호,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0호,2021. 10.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2021. 11. 3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957호,2022. 6. 10.>(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0067호,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4호,2024. 1. 26.>(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481호,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67호,2025. 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각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 - 202 - 4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 - 202 - 49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 - 2110 - 14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21. 1. 5.>

1. 삭제<2008. 6. 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부터 3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부터 30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20. “레이다”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 12. 9., 2017. 12. 12.>

1. 주파수분배·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와 이용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2.>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7. 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13. 3. 23.]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1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1. 삭제<2012. 11. 23.>

2. 삭제<2012. 11. 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⑤ 삭제<2017. 12. 12.>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신설 2016. 6.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21. 12. 28., 2024. 3. 26.>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2020. 6. 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제목개정 2010. 12. 31.]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본조신설 2010. 12. 31.]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2. 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2. 31.]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31.>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1. 용도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3. 안테나공급전력
4.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5. 사용지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6. 통신망 구축·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2.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3. 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4. 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분석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2. 12. 27., 2025. 4. 1.>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전문개정 2010. 12. 31.]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2020. 6. 30.>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같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 중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

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

[전문개정 2010. 12. 31.]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2016. 6. 21., 2024. 3. 26.>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2025. 4. 1.>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이동통신
나. 휴대인터넷
다. 위치기반서비스
라. 무선데이터통신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문개정 2010. 12. 31.]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 12. 31.]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17. 12. 12.>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 12. 31.]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3.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雪害]、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 삭제<2016. 6. 21.>
24. 삭제<2016. 6. 21.>
25. 삭제<2016. 6. 21.>
26. 삭제<2016. 6. 21.>
27. 삭제<2016. 6. 21.>
28. 삭제<2016. 6. 21.>
29. 삭제<2016. 6. 21.>
30. 삭제<2016. 6. 21.>
31. 삭제<2016. 6.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5. 4. 1.>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6. 구명부기국: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선박국·선상통신국·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해안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5의2. 육상이동형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6의2. 해상이동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7의2. 항공이동형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단파방송·초단파방송·텔레비전방송·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3. 6. 7.>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7. 7. 26.>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4.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
7.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32조 삭제 <2010. 12. 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12. 3., 2016. 6. 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안테나공급전력
11.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9., 2010. 7. 26., 2010. 12. 31.,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3. 29., 2018. 12. 18., 2022. 12. 27., 2023. 6. 7.>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항공국、고정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비상국、기상원조국、항공기지구국、무선조정국、무선조정이동국、무선조정중계국、전파천문국、선박지구국、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 7. 26., 2013. 3. 23., 2017. 7. 26., 2018. 12. 18.,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제목개정 2018. 12. 18.]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안테나공급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7.>

1. 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신장치의 증설
5. 무선기기의 대치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4. 12. 3.]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7.>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 12. 3.>

[본조신설 2010. 12. 31.]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2024. 3. 26., 2025. 10. 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삭제<2024. 3.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7. 7. 26., 2024. 3. 26., 2025. 10.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3. 26., 2025. 10.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8. 27., 2022. 12. 27.>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 9. 9.,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 3. 29., 2017. 7. 26.>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4. 8. 27., 2016. 6. 30., 2024. 3. 26.>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2. 1. 11.>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일 것
   나.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국(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관할구역이 동일한 무선국만 해당한다)일 것
2.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7. 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주파수·불요발사(不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2020. 12. 1.>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6. 6. 30.>

⑦ 법 제2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2020. 12. 1.>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6. 6. 30.>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제목개정 2014. 8. 27.]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6. 23.>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6. 21.]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48조 삭제 <2010. 12. 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1.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

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수입·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② 제조·수입·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수입·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및 제조·수입·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0. 12.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3. 23.]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8. 12. 18.>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8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임차 계약서(임대·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6. 6. 21.]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임차 계약서(임대·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6. 6. 21.]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4. 위성사업계획

[본조신설 2016. 6. 21.]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제목개정 2016. 6. 2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2022. 1. 1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 12.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20. 12. 1.>

[제목개정 2016. 6. 21.]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6. 6. 30., 2017. 7. 26.>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목개정 2016. 6. 21.]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2010. 12. 31.>

⑤ 삭제<2010. 12. 31.>

⑥ 삭제<2010. 12. 31.>

⑦ 삭제<2010. 12. 31.>

⑧ 삭제<2010. 12. 31.>

⑨ 삭제<2010. 12. 31.>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도로·나대지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운용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0. 6. 23.>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 지하·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 삭제<2024. 3. 29.>

2의2. 삭제<2024. 3. 29.>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09. 11. 2.,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21. 1. 5.>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08. 6. 20.]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제49조·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73조 삭제 <2010. 12. 31.>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2., 2017. 7. 26., 2021. 1. 5.>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0. 12. 31., 2014. 12. 3., 2017. 7. 26.>

1. 운용목적
2. 설치장소
3. 기기형식·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5. 고주파 출력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2022. 12. 27.>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7., 2024. 12. 17.>

1.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제목개정 2022. 12. 27.]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 12. 31.>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1.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7. 23.>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1.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고유번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7. 23., 2025. 4. 1.>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24. 7. 23.]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7.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24. 7. 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신설 2024. 7. 23.>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4. 7. 23.>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77조의5는 제77조의6으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6. 21.,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6은 제77조의7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7은 제77조의8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8은 제77조의9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9는 제77조의10으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0은 제77조의11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6. 6. 21., 2024. 7. 23.>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신설 2016. 6. 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1은 제77조의12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비치할 것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2는 제77조의13으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3은 제77조의14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24. 7. 23.>]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 7. 26.>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종료일
3. 센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77조의14에서 이동 <2024. 7. 23.>]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 7. 26.>

제79조 삭제 <2010. 7. 26.>

제80조 삭제 <2010. 7. 26.>

제81조 삭제 <2010. 7. 26.>

제82조 삭제 <2010. 7. 26.>

제83조 삭제 <2010. 7. 26.>

제84조 삭제 <2010. 7. 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12. 12.>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6. 6. 21., 2017. 12. 12.>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 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의3. 삭제<2016. 6. 21.>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6. 6. 21., 2022. 2. 28.>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 3. 26.>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 1.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메가헤르츠(㎒) 이상 728메가헤르츠 이하 및 773메가헤르츠 이상 78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무선국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31.>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7., 2025. 10. 1.>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7.>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 3. 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본조신설 2014. 12. 3.]

제94조 삭제 <2016. 6. 21.>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본조신설 2014. 12. 3.]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21.>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20.,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97조의2는 제97조의3으로 이동 <2016. 6. 21.>]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전문개정 2024. 7. 23.]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7. 26., 2011. 3. 29.,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개정 2022. 12. 27.>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③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개정 2017. 12. 12., 2020. 6. 23.>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4. 방송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0. 6. 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기간통신사업자
6. 방송사업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신설 2024. 3. 26.>

제102조(납부방법)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2. 3., 2024. 3. 26.>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개정 2010. 7. 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0. 7. 26.>

④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7. 7. 26.>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제110조 삭제 <2016. 6. 21.>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제목개정 2010. 12. 31.]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 9. 22.>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본조신설 2016. 6. 21.]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해안국: 별표 18
2. 지구국: 별표 19
3. 선박국
   가.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나. 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4. 방송국: 별표 22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7. 삭제<2016. 6.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6. 6. 21.]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종전 제117조의2는 제117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2.>]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117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2.>]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제2항, 제58조의7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2016. 6. 21.>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3.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4.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5.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1. 9. 24.>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23.]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 2015. 9. 22.,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2024. 3. 29., 2024. 7. 23.>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수입·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마. 전파응용설비

바.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전자파 저감·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삭제 <2024. 3. 29.>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6. 6. 21., 2017. 7. 26., 2018. 9. 28., 2020. 12. 1., 2024. 3. 29., 2024. 7. 23.>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개설신고·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허가취소·변경허가, 검사,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정정 및 재발급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28.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재발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17. 7. 26.>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1. 12. 9., 2025. 10. 1.>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31.]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2. 1. 11.>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2018. 9. 28.>

③ 삭제<2016. 6. 2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2. 12., 2018. 9. 28., 2024. 3. 26., 2025. 10. 1.>

1.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제2항,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3.]

부칙 <제20669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자격종별	종사범위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의 종사범위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육상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육상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레이더)	제한무선통신사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3호,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6호,2008. 7. 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 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허가취소·변경허가, 검사,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정정·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부칙 <제21161호,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부칙 <제21692호,2009. 8. 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19호,2009. 9. 9.>(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1807호,2009. 11. 2.>(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10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24호,2010. 10.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05호,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칙 <제22771호,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82호,2011. 8. 19.>(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98호,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 단서,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파통신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같은 표 오른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부칙 <제24476호,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1호,2014.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본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표본모집기간에 준공신고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5795호,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33호,2015.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 전투경찰대 ”를 “ 의무경찰대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44호,2015. 12. 3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2호,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합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잠정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및 자격별 검정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으로서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본다.

제8조(선박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선박국이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 공중선 ”을 “ 안테나 ”로 한다.

부칙 <제27299호,2016. 6. 30.>(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설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78호,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0호,2017.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9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71호,2017. 3. 29.>(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img alt="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src="/LSW/flDownload.do?flSeq=30588820" />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65호,2017.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4호,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호 단서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88호,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86호,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2호,2018. 9. 28.>(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9390호,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6호,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3호,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를 이 영 시행 이후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환급해야 한다.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 포함한다] ”를 “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195호,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6조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98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14호,2021. 9. 2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2200호,2021. 12. 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329호,2022.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2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509호,202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3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21호,2023. 3. 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8호,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제36조에 따른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무선국 중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4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4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의 평가 항목·방법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98조의2 및 별표 14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34369호,2024. 3. 29.>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725호,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7호,2024.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8호,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01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제36조제4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2$ 부터2(까지 생략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손실보상금의 산정식

가. 주파수회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 철거비용 + 부대비용

나. 주파수재배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 철거비용 + 이전비용 + 부대비용

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가. "기존시설"이란 무선설비 등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국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공고한 날 이전에 허가·신고 또는 주파수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것을 말한다.

나.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로 철거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 "철거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라 기존시설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등이 철거시설의 구성부분을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 금융비용을 말한다.

(1) 대체시설의 경우

$\text{금융비용} = (\text{신규시설의 취득가액} - \text{기존시설의 잔존가액}) \times \left(1 - \frac{1}{(1+\text{이자율})^{(\text{잔여 내용연수})}}\right)$

(2) 추가시설의 경우

$\text{금융비용} = (\text{신규시설의 취득가액}) \times \left(1 - \frac{1}{(1+\text{이자율})^{(\text{잔여 내용연수})}}\right)$

비 고

1. 신규시설의 취득가액 : 기존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거나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자율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잔여 내용연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여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용연수 중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마. "이전비용"이란 주파수재배치로 기존시설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무선설비의 부품교체 등 설비 변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전비

용은 기존시설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신규시설 취득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바. "부대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손실보상금 산정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자등에게 관련된 증빙·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손실보상금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조사나 보상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보상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보상금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라. 보상액의 산정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금 ÷ 주파수이용기간) × 잔여 이용기간

비 고 : "잔여 이용기간"은 주파수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7. 7. 26.>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경제학 분야 또는 전파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사회학 분야 또는 통계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인력
시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 y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으로서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의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다. 동일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단위 대역폭당 단가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대역폭

비 고

1. 제2호 산식에서 "시장"이란 역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한다.
2. 제2호 산식의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제2호 산식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 및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투자촉진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4. 제2호 산식 및 제3호 산식에서 "x" 및 "y"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이 경우 x와 y를 합한 값은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2호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을 말한다.

(개별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 대역폭 조정계수) ÷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 대역폭 조정계수)

가. "대역폭 조정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은 제외한다.

6. 제3호 산식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7. 제4호 산식에서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 기대수익 및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7. 7. 26.>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지정기준
인력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자·통신·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자·통신·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경제·법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주파수 소요량 또는 이용현황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 기준	1.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시스템을 갖출 것 2.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갖출 것

■ 전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6. 21.>

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필요주파수대폭 및 특성	문자 및 기호
1. 필요주파수대폭 : 필요주파수대폭은 3개 숫자와 1개 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는 소수점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단위를 표시한다(0의숫자, K, M 또는 G의 문자는 필요주파수대 표시 첫머리에 둘 수 없다).	0.001Hz에서 999Hz 사이의 Hz 1.00kHz에서 999kHz 사이의 kHz 1.00MHz에서 999MHz 사이의 MHz 1.00GHz에서 999GHz 사이의 GHz	H K M G
2. 등급 : 발사전파는 기본 특성에 따른 등급과 기호로 표시하되, 보다 완벽한 기술을 표시하기 위하여 취사형 추가 특성을 첨가 사용할 수 있다.	1. 기본 특성 가. 첫째 기호: 주반송파의 변조형식 (1) 무변조반송파의 발사 (2) 주반송파가 진폭변조(부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발사 (가) 양측파대 (나) 단측파대의 전반송파 (다) 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가변레벨반송파 (라) 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마) 독립측파대 (바) 잔류측파대 (3) 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가) 주파수변조 (나) 위상변조 (4) 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진폭과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5) 펄스발사[주반송파가 퀀타이즈(펄스부호	 N A H R J B C F G D

	변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으로 부호화된 신호에 따라 직접 변조된 발사는 (2) 및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무변조 연속펄스	P
	(나) 연속펄스	
	1) 진폭변조된 것	K
	2) 폭(기간)이 변조된 것	L
	3) 위치(위상)가 변조된 것	M
	4) 반송파가 펄스기간 중 각이 변조된 것	Q
	5) 위 변조된 펄스의 조합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발생된 것	V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경우로서 주반송파가 진폭·각 및 펄스 중 둘 이상이 조합되어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변조된 것	W
	(7) (1)부터 (6)까지 규정된 것 외에 변조된 것	X
	나. 둘째 기호: 주반송파를 변조시키는 신호의 특성	
	(1) 무변조신호	0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1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2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7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8
	(7)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에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과의 조합방식	9
	(8) (1)부터 (7)까지 규정된 것 외의 방식 및	X

채널	
다. 셋째 기호: 송신할 정보(표준주파수발사·지속파 및 펄스데이터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특성의 정보를 제외한다) 형태	
(1) 정보송출이 없는 것	N
(2) 전신: 가청수신용	A
(3) 전신: 자동수신용	B
(4) 팩시밀리	C
(5) 데이터전송·텔레메트리·텔레코멘트	D
(6) 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다)	E
(7) 텔레비전(영상)	F
(8) (1)부터 (7)까지의 조합	W
(9) (1)부터 (8)까지 규정된 것 외의 정보형태	X
라. 첫째 기호, 둘째 기호 및 셋째 기호에 있어서 지정된 필요주파수대폭이 그로 인하여 증대되지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호출용 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변조는 무시할 수 있다.	
2. 취사형 추가적 특성	
가. 넷째 기호: 신호의 항목	
(1) 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A
(2) 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B
(3) 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C
(4)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1이상의 비트. 이하 같다)를 표시한 것	D
(5)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E
(6)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한 문자로 표시된 것	F
(7) 음성방송(모노포닉)	G
(8) 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콰트라포닉)	H
(9) 상용음성[(10) 및 (11)의 분류를 제외한	J

	다] (10) 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대 분할방식을 사용한 상용음성	K
	(11) 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변조신호를 가진 상용음성	L
	(12) 흑 백	M
	(13) 천연색	N
	(14) (1)부터 (13)까지의 조합	W
	(15) (1)부터 (14)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것	X
	나. 다섯째 기호: 다중화 특성	
	(1) 다중화가 아닌 것	N
	(2) 부호-분할다중(대역폭 확장기술을 포함한다)	C
	(3) 주파수-분할다중	F
	(4) 시-분할다중	T
	(5) 주파수-분할다중과 시분할다중의 조합	W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다중방식	X
	다. 넷째 기호 및 다섯째 기호에 있어서는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호자리는 대시(-)로 표시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6. 21.>

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1. 전파의 주파수는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아홉 개의 주파수대로 구분한다.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주파수대번호	주파수대약칭	미터법에 따른 구분
3㎑ 초과 30㎑ 이하	4	VLF	밀리아미터파
30㎑ 초과 300㎑ 이하	5	LF	킬로미터파
300㎑ 초과 3,000㎑ 이하	6	MF	핵터미터파
3㎒ 초과 30㎒ 이하	7	HF	데카미터파
30㎒ 초과 300㎒ 이하	8	VHF	미터파
300㎒ 초과 3,000㎒ 이하	9	UHF	데시미터파
3㎓ 초과 30㎓ 이하	10	SHF	센티미터파
30㎓ 초과 300㎓ 이하	11	EHF	밀리미터파
300㎓ 초과 3,000㎓ 이하 (또는 3㎔ 이하)	12		데시밀리미터파

3.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H2A전파·H2B전파·H2D전파·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에 할당주파수는 반송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구 분		할 당 주 파 수
H2A·H2B	1.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반송주파수보다 1,100Hz가 높은 주파수
	2. 제1호 외의 것	반송주파수보다 500Hz가 높은 주파수
R3E·H3E·J3E		반송주파수보다 1,400Hz가 높은 주파수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4. 7. 23.>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

1.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3.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나.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다.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라목과 같다.
   라.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목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 11.>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휴대인터넷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육상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4. 방송국·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상향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25. 4.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 제2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대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나.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전파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12. 29.>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주파수대(㎒)	전파의 폭(㎑)	안테나공급전력(w)
선박국	2 27 156	2.8 2.8 16	50w 이하 20w 이하 25w 이하
항공기국	100	6	10w 이하
간이무선국	146	8.5 이하	5w 이하
이동국	897	10	3w 이하

비고: 이동국은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897.90 ~ 897.93㎒)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입자 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단가
이동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다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으로 한다.
휴대인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로밍 감면계수	0.05	0.10	0.15	0.20	0.25		0.3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 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로밍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의2. 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5.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기준

주파수 이용효율(%)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이용효율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비 고

1. 주파수 이용효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이동통신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명으로 하고, 5㎒ 이상인 경우에는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3.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대역	전파특성계수
1㎓ 미만	1.16
1㎓ ~ 3㎓ 미만	0.81

비고 : 무선호출 · 주파수공용통신 · 위치기반서비스 · 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통신 및 법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1. 24.>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대역 \ 전파사용량(㎒)	0.1 미만	0.1 이상 0.3 미만	0.3 이상 1.5 미만	1.5 이상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10 미만	11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 미만	1	2	3	5	7	9	12	15	19	23	28	33	38	44	50
1㎓ 이상 3㎓ 미만	0.7	1.4	2.1	3.5	4.9	6.3	8.4	10.5	13.3	16.1	19.6	23.1	26.6	30.8	35
3㎓ 이상 10㎓ 미만	0.23	0.47	0.70	1.17	1.64	2.11	2.81	3.51	4.45	5.38	6.55	7.72	8.89	10.3	11.7
10㎓ 이상 30㎓ 미만	0.03	0.07	0.10	0.17	0.24	0.31	0.41	0.51	0.65	0.78	0.95	1.12	1.29	1.50	1.7
30㎓ 이상	0.004	0.008	0.012	0.02	0.028	0.036	0.048	0.06	0.076	0.092	0.112	0.132	0.152	0.176	0.2

비 고: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량계수를 위 계수에 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서비스계수

무 선 국		계 수
가. 고정국	1)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	0.5
	2)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0.25
	3) 도서통신용 무선국	0.05
	4) 그 밖의 고정국	1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0.03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0.012
라. 그 밖의 무선국		1

5.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10 미만	10 이상 20	20 이상 30	30 이상 40	40 이상 45	45 이상 50	50 이상 55	55 이상 60	60 이상 70	70 이상 10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2천원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4. 전파의 폭: ㎑ 단위로 산정하되,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960㎒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5. 선호계수

주 파 수 대			계 수
U H F	300㎒ 이상 960㎒ 미만		1.5
V H F	28㎒ 이상 300㎒ 미만		1.3
중단파 이하	28㎒ 미만		1
준마이크로파	960㎒ 이상 3㎓ 미만		0.1
마이크로파	3㎓ 이상 10㎓ 미만		0.0234
	10㎓ 이상 30㎓ 미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0.0017
		그 밖의 경우	0.0034
밀리미터파	30㎓ 이상		0.0004

6. 이용형태계수

이 용 형 태	계 수

8.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1]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종 별	전파사용료(원)
1.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은 제외한다)	3,000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14.8.27.>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

분기	기간	징수기간
1/4 분기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연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4 분기분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연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4 분기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연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4 분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연도 2월 18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6. 6. 2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재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2천원 2만3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천원 1만1천원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원 2만8천원	– –	– –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제외한다)	100W 미만 100W 이상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45만원	7만5천원 8만7천원 8만7천원 8만7천원	7만5천원 8만7천원 8만7천원 8만7천원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100W 이상 1kW 미만 1kW 이상 10kW 미만 10kW 이상	12만원 23만7천원 44만3천원 59만원	12만원 18만1천원 18만1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1만7천원 11만7천원 11만7천원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천원 1만1천원 1만6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W 이상	5천원 1만원	– –	4천원 7천원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1만5천원 2만2천원 4만원 4만4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12. 2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0만원	8만3천원	8만3천원	8만3천원
	100W 이상	11만6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2. 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미만	1만8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2천원
	12W 이상 50W 미만	2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50W 이상	4만3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3.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10kW 미만	54만원	50만원	30만원	25만2천원
	10kW 이상 50kW 미만	70만원	60만원	36만원	35만원
	50kW 이상	100만원	78만원	45만원	45만원
4.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52만1천원	43만1천100원	25만1천500원	25만2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77만300원	63만7천300원	36만6천500원	36만6천500원
	1kW 이상 10kW 미만	101만9천200원	84만5천100원	49만2천200원	49만3천100원
	10kW 이상	122만5천900원	101만4천400원	59만1천500원	59만2천원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9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3만원	1만9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 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6.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8천원
	0.5W 이상 5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5W 이상 50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5kW 이상	22만2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0W 미만	1만1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1만6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2만4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0kW 이상	3만2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6. 6. 21.>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

송신기의 첨두전력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10㎾ 이상 100㎾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100㎾ 이상 1,000㎾ 미만	14만1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00KW 이상	18만6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2] <개정 2021. 1. 5.>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88,000원
2. 시험장평가용 안테나	가. 기본	113,000원
	나. 1파장 추가시마다	36,000원
3. 루프안테나		147,000원
4. 광대역안테나		160,000원
5. 전원안정화회로망		96,000원
6. 흡수클램프		155,000원
7. 전자기 클램프		155,000원
8. 결합·감결합 회로망		96,000원
9. 전계 프로브		211,000원
10. 정전기 발생기		96,000원
11.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16,000원
12. 서지(surge) 발생기		116,000원
13. 전원전압변동장치		96,000원

비고

1. "흡수클램프"란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출되는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전자기 클램프"란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전자기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서지(surge)"란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3] <개정 2024. 7. 2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

1.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

유형	구분	수수료
1)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2)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5,000원
	적합등록	2,000원

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가.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나.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라.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마.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비고

1.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출장여비"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4] <신설 2024. 3. 26.>

고출력 ·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

평가항목		수수료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측정 주파수당)		23,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험)	단펄스	135,000원
	중펄스	113,000원
	충전선 펄스	102,000원
	삽입손실	168,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도전성 선로 1개당, 현장에서 시험)	단펄스	160,000원
	중펄스	135,000원
	충전선 펄스	122,000원
	삽입손실	189,000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5] <신설 2024. 3. 26.>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감경률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00분의 20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분의 30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100분의 40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0분의 50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100분의 60
4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100분의 70
48개월 초과 54개월 미만	100분의 80

비고: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란 제44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검사 대상 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6. 6. 21.>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자격종목	검정과목	출제내용
항공 무선통신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 항공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영어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2. 항공교통관제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해상 무선통신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무선국 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운용 절차에 관한 규정 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중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상통신 설비의 운용	1.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2. 네비텍스수신기의 운용 3.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4. 해상 무선설비 및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해사통신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의 기초지식 2. 무선전화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육상 무선통신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 전파공학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레이다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3.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한 무선통신사	전파법규	전파 관련 법규 중 해당국의 운용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다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어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무선통신술	1. 전파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4급 아마추어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기초지식 2.「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중 아마추어업무에 관

무선기사		한 기초지식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항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설비취급방법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학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통신보안
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통신보안
4.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통신보안·무선통신술
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무선통신술
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또는 전화급)	통신보안
7.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8.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	통신보안

	신사	
9.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10.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통신보안·무선설비 취급방법
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 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통신보안
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 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통신보안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6. 6. 21.>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자격종목	종사범위
1. 전파전자통신기사	가.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라.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마.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가. 다음에서 정한 통신운용 1)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2)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기술운용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는 제외한다)·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4) 레이다 5)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은 제외한다)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것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 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사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은 제외한다)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규정된 것 가)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25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나)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다)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나.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다.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4. 항공무선통신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1)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1)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2)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레이다 4)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5. 해상무선통신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 2)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2)의 무선설비 다.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6. 육상무선통신사	가.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2)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4)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7. 제한무선통신사	가.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의 무선설비
8.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공사
9. 무선설비산업기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에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무선설비의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10. 무선설비기능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그 밖에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의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기술운용으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1) 및 2)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공사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11.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1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13.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전화급)	가.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나.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

	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4.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메가헤르츠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5. 방송통신기사	방송국의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6. 방송통신산업기사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7. 방송통신기능사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16. 6. 2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무선국		무선종사자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2명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제한무선통신사 2명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주로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3명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해상무선통신사 2명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 5.>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해안지구국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1명

2. 지구국[안테나의 지름이 3m 이상으로서 휘더링크(Feeder Link)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무선설비기사	1명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무선설비기능사	1명

3. 그 밖의 지구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지구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기능사	1명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16. 6. 2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선박의 종류		자격별 정원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선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1. 국제여객선(유선 및 도선 포함)	가. 여객 정원250명 이상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사 1명
	나. 여객 정원250명 미만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2. 어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3. 1. 10.>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선박국의 종류	구분	자격별 정원
1. 국내 여객선(유선 및 도선 포함)	가. 연해구역에 취항하고 여객 정원이 250명 이상인 국내 여객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평수구역에 취항하거나 여객 정원이 250명 미만인 국내여객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2. 어선	가. 원양어업을 하는 어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연·근해어업 등을 하는 어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가. 300톤 미만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나. 국내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비고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2. 제2호가목의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위 표 제2호나목의 연·근해어업 등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19. 12. 17.>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자 격 별 정 원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	계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	1명	1명	1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		1명	2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2명	2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			1명	1명
연 주 소			2명	2명

비 고

1.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송국 및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신소·중계소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연주소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연주소와 송신소 간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주소를 위한 무선종사자가 송신소를 위한 무선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2] <개정 2016. 6. 21.>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가. 별표 23의 경우: 최근 3년간

   나. 별표 22의3, 별표 22의4, 별표 22의5, 별표 22의6, 별표 24, 별표 25 및 별표 26의 경우: 최근 1년간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처분권자가 반드시 취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법률 규정에 따른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행정처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전파관리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의 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3] <신설 2016. 6. 21.>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8항 제1호	승인 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8항 제3호	시정명령	승인 취소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8항 제2호	시정명령	승인 취소
4. 법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8항 제4호	승인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4] <개정 2016. 6. 21.>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3.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4.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22의5] <신설 2016. 6. 2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의3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7항 제1호	승인 취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7항 제3호	시정 명령	승인 취소	
3. 법 제2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41조제7항 제4호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승인 취소
4.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7항 제2호	시정 명령	승인 취소	
5. 법 제4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7항 제5호	승인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6] <신설 2016. 6. 21.>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의4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2 제4항제1호	승인 취소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42조의2 제4항제3호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승인 취소
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2 제4항제2호	시정 명령	승인 취소	
4. 법 제4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의2 제4항제4호	승인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4. 7. 2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3.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4.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5.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2개월)	
6.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5호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나. 가목 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7. 법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6호	취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9.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취소		

비고: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7. 23.>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1호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다.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라.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시험항목을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마. 적합성평가기준 중 일부 기준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부적합한 시험설비로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3호		
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분야의 시험 인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나.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4호	1개월	3개월
5.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1호	지정취소	
7.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2호	지정취소	
8. 법 제5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3호	지정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14.12.3.>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3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7.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3	허가 취소 또는 폐지		
8.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5호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지
9.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6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1.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8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14.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1호	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2호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3호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7.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4호	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18.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5호	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19.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6호	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운용정지

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항제19호	6개월	또는 폐지	
23.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24.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개정 2017. 7. 26.>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이상	2차 이상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기술자격 취소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의2	기술자격 취소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4.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4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5.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5호	업무종사 정지 1년	업무종사 정지 2년	기술자격 취소
6.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6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7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8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8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10.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9호	업무종사 정지 1년	업무종사 정지 2년	기술자격 취소
1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0호	업무종사 정지 1년	업무종사 정지 2년	기술자격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23.>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1.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 1개월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1개월은 각각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에 제4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은 별표 25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 22의2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4.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과 '무선국의 운용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무선국 운용정지 1일	무선국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제한 1일
전기통신사업용무선국 또는 방송국	167,000원	84,000원
그 밖의 무선국	67,000원	34,000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7의2] <신설 2024. 7. 23.>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분야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정분야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frac{\text{연간 매출액}}{365}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영업이익률})$$

가.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24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나.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조정한다.

다.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중 기술검사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말한다.

라.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가장 최근 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5. 4.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1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방송·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그 밖의 무선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90조	50	100	150	30	50	70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제1호의2							
2)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2호	40	60	80	20	30	50	
3)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법 제90조 제2호	100	150	200				
4)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법 제89조의3 제1호	150	200	300				
5)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2호의2	100	150	200	50	100	150	
6)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3호	100	150	200	50	100	150	
7)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호	40	60	80	20	30	50	
8)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호	80	130	150	50	80	100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2호	50	100	150	40	80	100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3호	50	100	150	30	50	70	
11)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4호	50	100	150	30	50	70	

12)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1조 제5호	50	100	150			
13) 법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의3 제2호	150	200	300	100	150	200
14)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	100	150	200	50	100	150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91조 제6호	50	100	150	30	50	70
16)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10	100	150	200	50	100	150
17)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6호	100	150	200	50	100	150

나. 그 밖의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1호	30	50	80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제23조제4호에 따른 무선	법 제90조 제1호	100	200	300

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9조의2	500	750	1,000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3호	10	30	50	
5) 법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4호	100	200	300	
6)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89조의3 제2호의2				
가. 제조·수입·판매자		200	300	500	
나. 가목 외의 자		경고	30	50	
7)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89조의3 제3호				
가. 판매·제조·수입업자		200	300	500	
나. 가목 외의 자		경고	30	50	
8)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2				
가. 판매·제조·수입업자		100	200	300	
나. 가목 외의 자		경고	20	30	
9)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3	100	200	300	
10)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4호	50	70	100	
11)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5호	50	70	100	
12)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	법 제92조	50	70	100	

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경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제6호			
13)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경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4	100	200	300
14)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7호	50	70	100
15)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5	100	200	300
16)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6	100	200	300
17)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7	100	200	300
18)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8	100	200	300
19)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9	100	200	300
20)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경우	법 제91조 제7호	50	100	150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 - 202 - 4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7. 12.>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신설 2014. 12. 4.>

[제목개정 2014. 12. 4.]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변경·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2. 4.]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4. 12. 4.>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4. 12. 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12. 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

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7. 12.>

② 법 제24조제3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개정 2014. 12. 4., 2016. 7. 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4. 12. 4., 2016. 7. 12.>

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24.]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및 임대·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및 임대·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 7. 12.]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임대·임차 및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임대·임차 및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 7. 12.]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2. 4.]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9호,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7호)에 따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4.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마추어국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기술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제3항과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부받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48호,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호,2016. 1. 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6.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 ”를 각각 “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 ”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17.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8.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0.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2. 1. 4.>(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23. 1. 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손실보상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손실의 내용	

「전파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조사·평가 → 결정 →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 ]할 당 / [ ]재할당]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 주파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전파법」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파수 ([ ]할당 [ ]재할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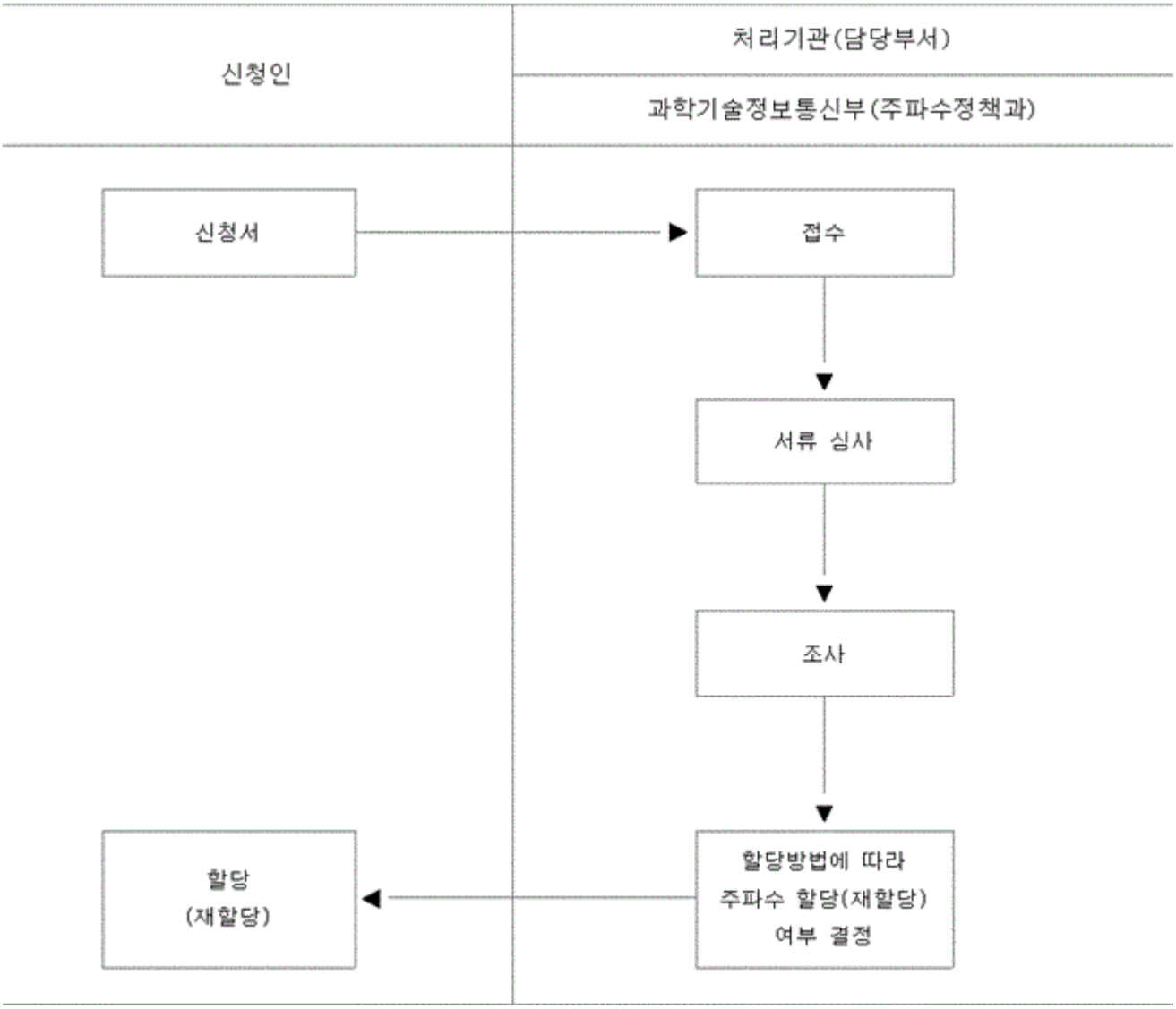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4. 「전파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재활용지(80g/㎡ 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조사
할당방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재할당)
여부 결정
할당
(재할당)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수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도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수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전파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을 양수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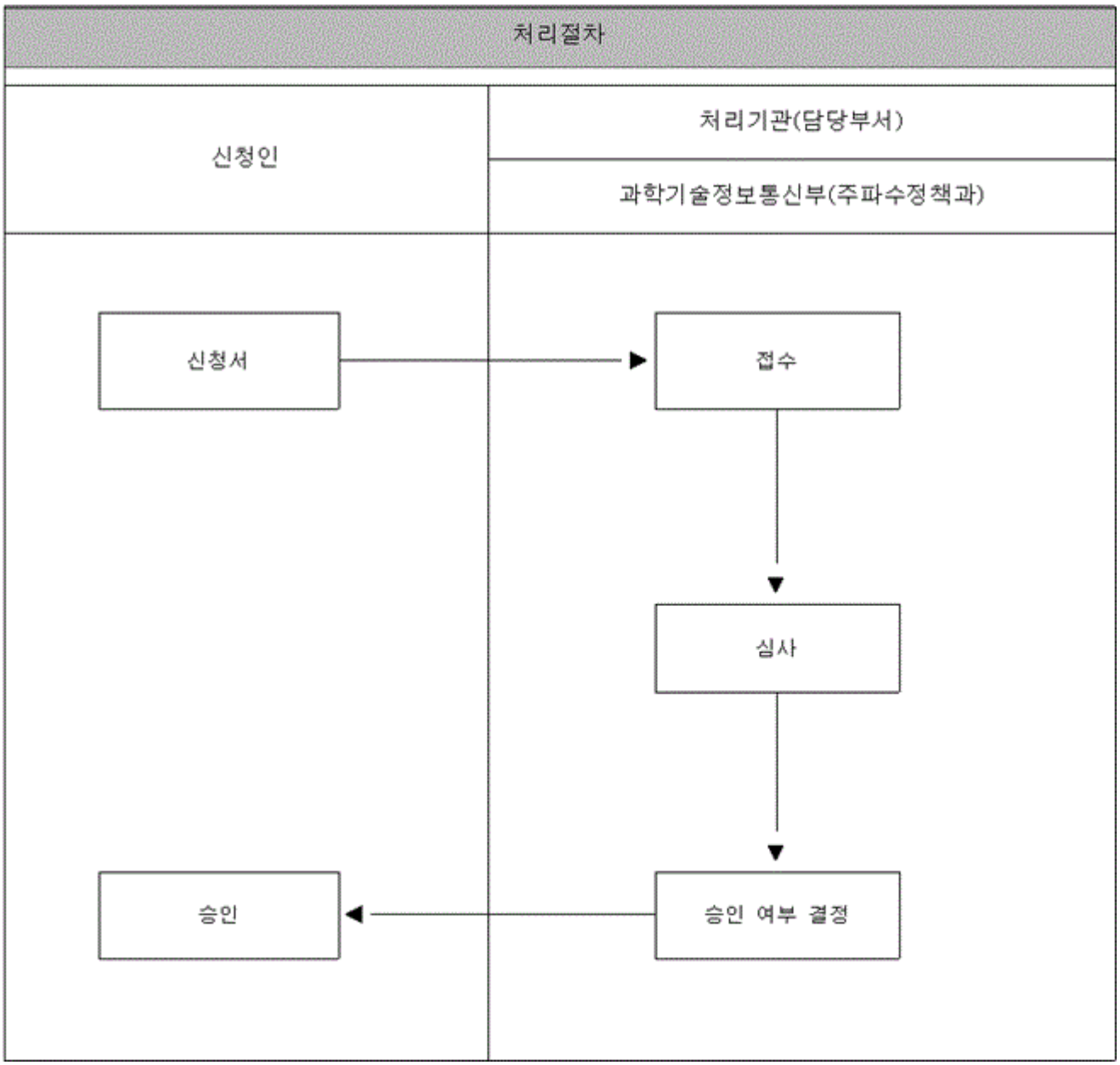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6. 이용자 보호대책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임차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대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전파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을 임차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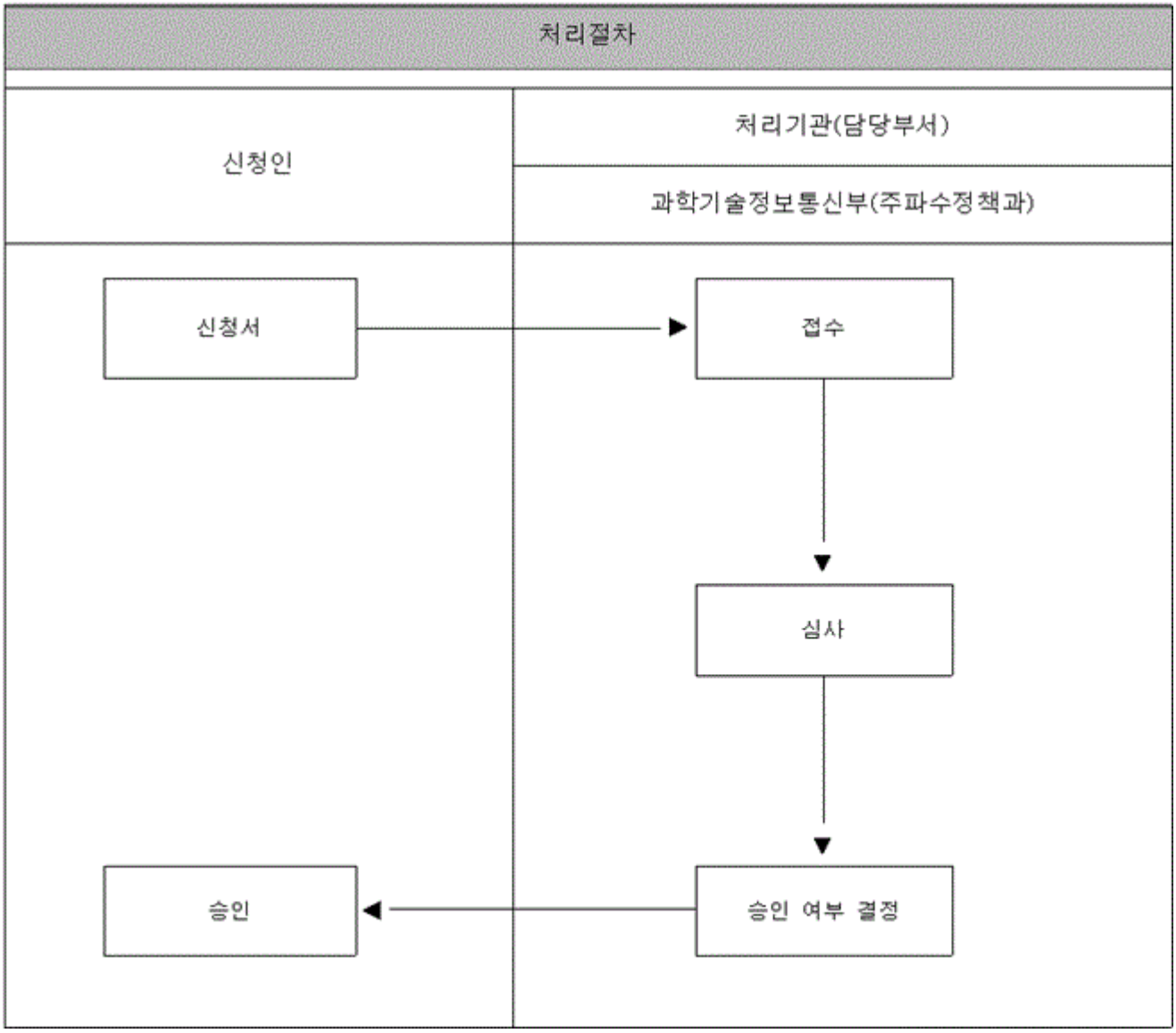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6. 이용자 보호대책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주파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전파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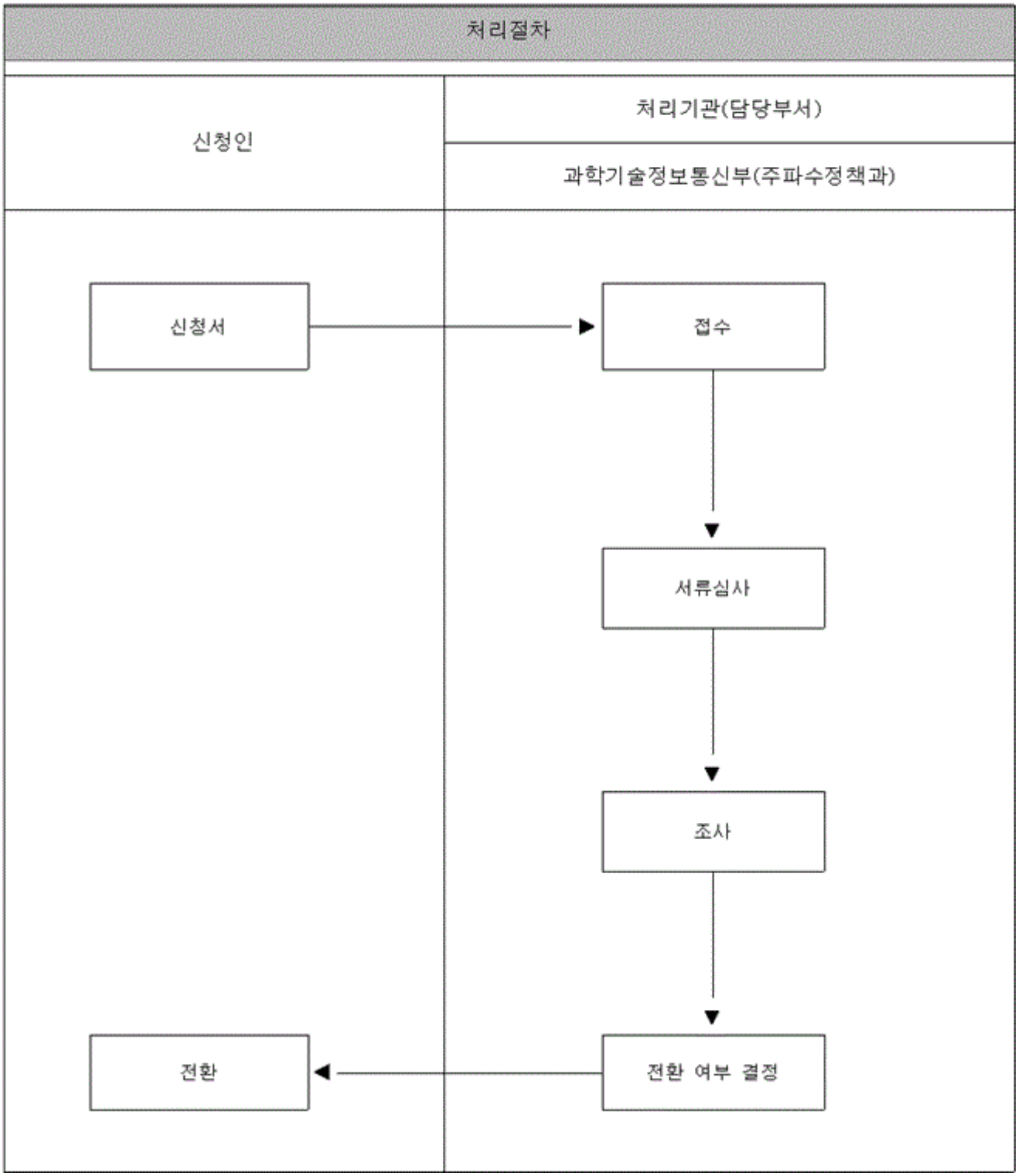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4.12.4.>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전파법」 제18조제1항 관련)

주파수 할당 받은자	성 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주파수 할당 내역	주파수할당 받은 날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 할당대금	
	주파수의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제공시기 및 사업지역			
	주파수할당시의 부과조건			
	재 할 당 사 항			
	권리설정 내 용			
양수·임차내역	양수·임차인 법 인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양수·임차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사항			

210㎜×297㎜[백 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2.>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 [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열람 또는 발급 신청내용

사용목적

「전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 ]열람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인)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 사용승인([ ]신규, [ ]변경, [ ]재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 청 주 파 수(대역 및 파수) ※ 요청 주파수가 다수일 경우 주파수, 대역폭 등 주파수특성을 따로 명시한 세부 주파수 명세표 제출
※ 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용도

[ ] 국가안전보장 [ ] 국방 [ ] 의전·경호 [ ] 외국공관 [ ] 국제행사

신청 사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사용지역(경도, 위도)

「전파법」 제18조의2제2항·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9조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 [ ]신규승인 / [ ]변경승인 / [ ]재승인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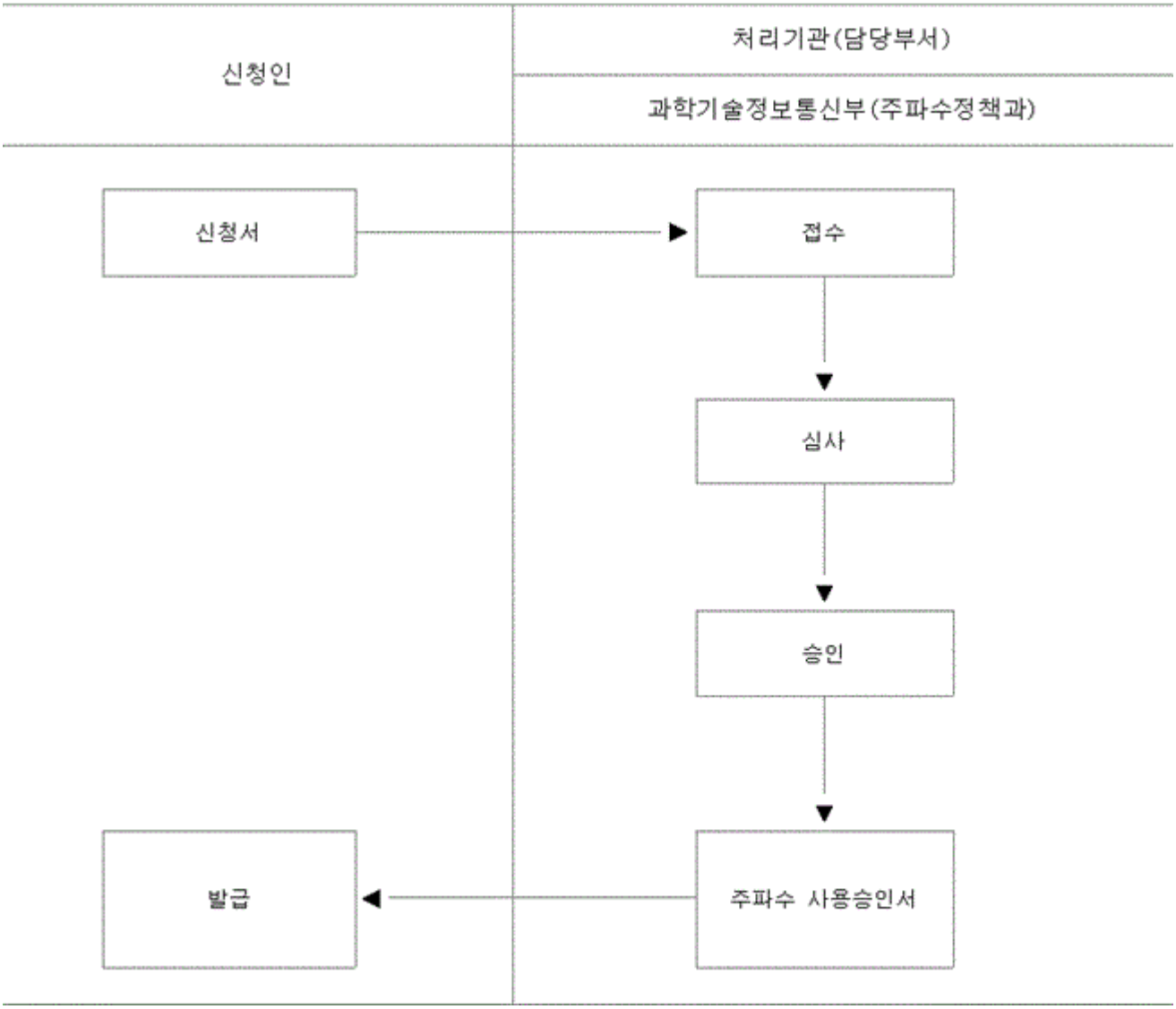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전파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무선국 중 통신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전파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무선국 중 레이다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위성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승인번호 0000-XXX-YYY호

주파수 사용승인서

승인 일자		유효 기간	
사용 기관			
용도			
승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이득	
사용지역			
승인 조건			

「전파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파수를 사용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 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2. 1. 4.>

시설개요서(통신망)					
1. 체계명		2. 무기체계구분		3. 장비용도	
4. 도입예정수량	단말기 수량(이동국한함)	5. 대전자전기능		6. 소요시기 (전력화시기)	
7. 요청주파수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		(동조범위 및 간격 포함)			
b. 분배 용도와 적합성(주파수 분배표 참조)					
c. 소요파수					
d. 소요파수 산출근거		(첨부물로 제출)			
e.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f. 대역폭 산출근거	(첨부물로 제출)	
g. 보호대역/ 채널간격	(동일장비간 혹은 타 장비와의 필요 간격)				
8. 송신국					
8-1. 송신부					
a. 주소(부대명)					
b. 운용지역/장소	(경도, 위도)		c. 운용시간		
d. 도달거리(km)			e. 이동유무		
f. 장비명			g. 제작사명		
h. 출력(W)			i. 주파수 허용편차(Hz)		
j. 변조방식			k. 전송속도	[kbps]	
l. roll-off-facter			m. 코드율		
n. 스퓨리어스억압(dB	(측정 파형을 첨부물로 제출)				
o. 스펙트럼마스크	-3dB 또는 -20dB		-60dB		
	-40dB		특성표	첨부물로 제출	
8-2. 수신부					
a. 장비명			b. 주파수		
9. 수신국					
a. 수신소명			b. 장비명		
c. 제작사명			d. 해발고		
e. 설치장소	(경도, 위도)				
10. 안테나					
		송신국		수신국	
a. 형식명					
b. 지상고(m)					
c. 전후방비(dB)					
d. 빔폭(도)					
e. 이득(dBi)	수평				
	수직				
f. 편파					
g. 최대부엽	방위각(도)				
	상향각(도)				
h. 패턴도(수평, 수직)		(첨부물로 제출)			
11. 운용개념	(필요 시 별지에 작성)				

210㎜ × 297㎜[백상지 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2. 1. 4.>

시설개요서(레이다망)					
1. 체계명		2. 장비명		3. 제작사명	
4. 장비용도(탐색, 추적, 사격통제 등)					
5. 무기체계구분		6.소요시기(전력화시기)			
7. 주파수 호핑 여부		8.호핑주파수		(필요시 호핑테이블 제출)	
9. 운용제원					
a. 주소(부대명)					
b. 운용지역/장소	(경도, 위도) (이동국인경우 지역표기-반경)				
c. 운용시간		d. 대전자전기능			
e. 탐지범위	거리(km)		이동유무		
	방위각 범위(도)		상향각 범위(도)		
10. 요청주파수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조정범위)					
b. 분배 용도와 적합성					
c. 소요파수(중심주파수/파수)					
d. 주파수의 필요성					
e.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11. 송신기					
a. 출력	첨두전력(kW)		평균전력(kW)		
b. 펄스폭(㎲)		c. 펄스반복간격(㎲)			
d. 변조방식					
e. 스펙트럼마스크	- 3 dB		- 60 dB		
	- 40dB		특성표	(첨부물로 제출)	
f. RCS(레이다반사단면적)(㎡)					
12. 안테나					
a. 안테나높이(m)	(해발고 + 지상고)				
b. 안테나 형태					
c. 송신이득(dBi)	수평		d. 수신이득(dBi)	수평	
	수직			수직	
e. 회전속도(rpm)					
f. 빔 형태					
g. 주엽빔폭(도)	수평				
	수직				
h. 최대부엽(도)	수직				
	수평				
i. 패턴도(수평, 수직)	(첨부물로 제출)				
j. 편 파					
13. 운용개념	(필요 시 별지에 작성)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2. 1. 4.>

시설개요서(위성망)

위성망				
1. 등록 위성망 명 (MIFR[1])				
2. 그룹 ID		3. 운용궤도		
우주국				
4.송신기	a. 주파수(㎒)		b. 대역폭(㎒)	
	c. 출력(dBW)		d. 전파형식	
	e. 안테나이득(dBi)		f. 안테나패턴	
5.수신기	a. 주파수(㎒)		b. 대역폭(㎒)	
	c. 안테나이득(dBi)		d. 안테나패턴	(첨부물로 제출)
지구국				
6. 설치장소(주소)		(경도, 위도)		
7.송신기	a. 주파수(㎒)		b. 대역폭(㎒)	
	c. 전력밀도(dBW/Hz)		d. 전파형식	
	e. 안테나이득(dBi)		f. 안테나패턴	(첨부물로 제출)
	g. 빔폭(도)		h. 편파	
	i. 방위각(도)		j. 상향각(도)	
8.수신기	a. 주파수(㎒)		b. 대역폭(㎒)	
	c. 안테나이득(dBi)		d. 안테나패턴	(첨부물로 제출)
9. 비고				

1) MIFR(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 ITU 국제 주파수 등록원부

210㎜×297㎜[백 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16. 7. 12.>

사용승인 변경내역서

승인 일자		승인 번호	
사용 기관		유효 기간	
사용승인 내용			
용도			
승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이득	
사용지역			
변경 내용			
변경 사항	용도 □ 전파형식 □ 점유주파수대역폭 □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 안테나의 형식·구성·이득 □ 사용지역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10㎜×297㎜[백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17. 7. 26.>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통지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인 일자		승인 번호	
사용 기관		유효 기간	
반납 주파수			
사용 종료일			
반납 사유			

「전파법」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를 위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통지서 작성	→	접수
통지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210㎜ × 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2016. 7. 1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기관	기관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운용 중인 주파수 이용현황			

주파수 이용계획 내역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6. 통신망 구축·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016. 7. 1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제출 기관	기관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변경 요청사항			
변경 사유			

주파수 이용계획 내역

구 분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 근거		
3. 통신망 구축·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6. 통신망 구축·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선박 사항	소유자		설치장소(선박명)	선박 등록번호
	총톤수	선체길이	항해구역	주 정박항

기기 명세	구분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기기 일련번호
	송신				
	수신				
그 밖의 설비					
안테나계	형식	이득	편파	길이(m)	조수 또는 기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준공예정일	성명(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준공 또는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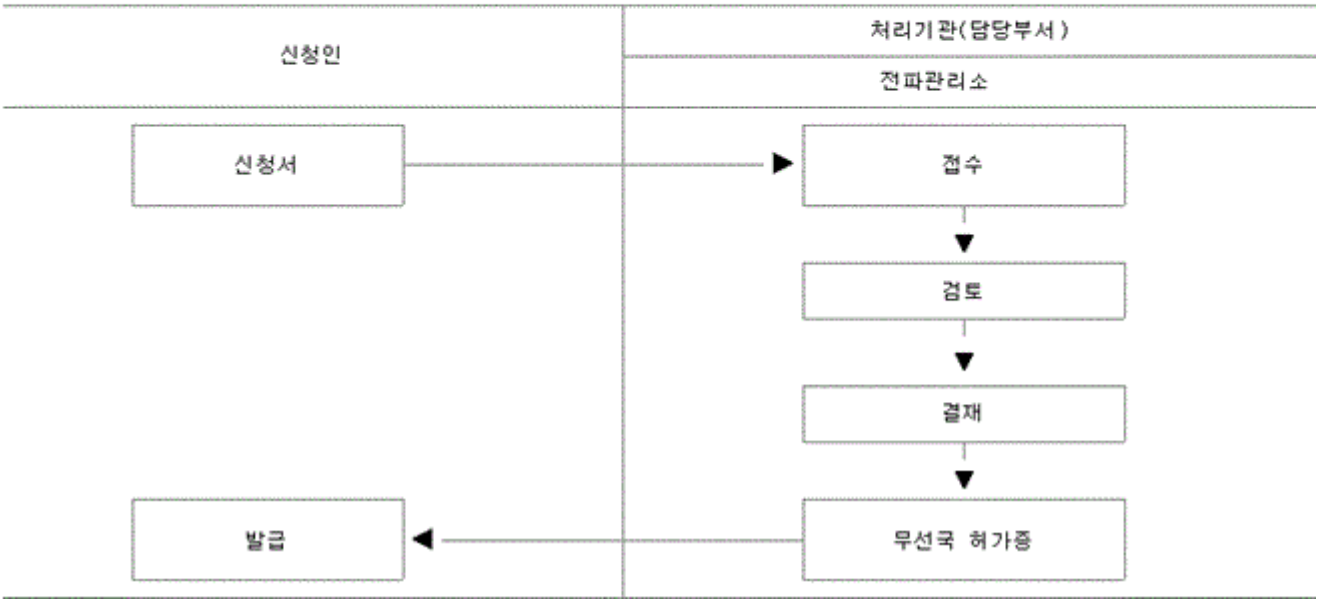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 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무선국의 목적		무선국 종별	
통신사항		무선국 수	
통신상대방		이동범위	

기기 명세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 번호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기기일련번호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습니다)
안테나계 (휴대가 가능한 무선기기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형식	구성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습니다)		이득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습니다)
		편파	길이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자격 종별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기 타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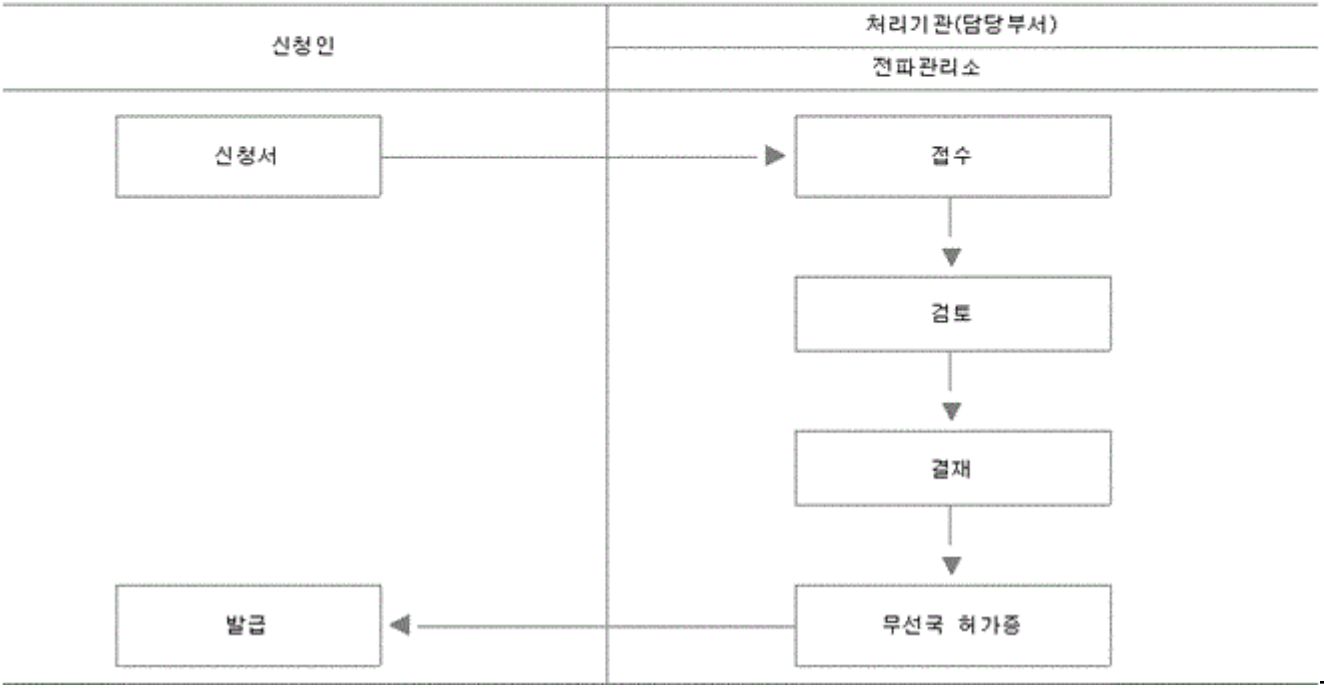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최다액 출자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주전송장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방송 개요	방송유형		방송목적	
	방송사항		운용시간	
	방송구역			
	운용채널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와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시설설치계획서 1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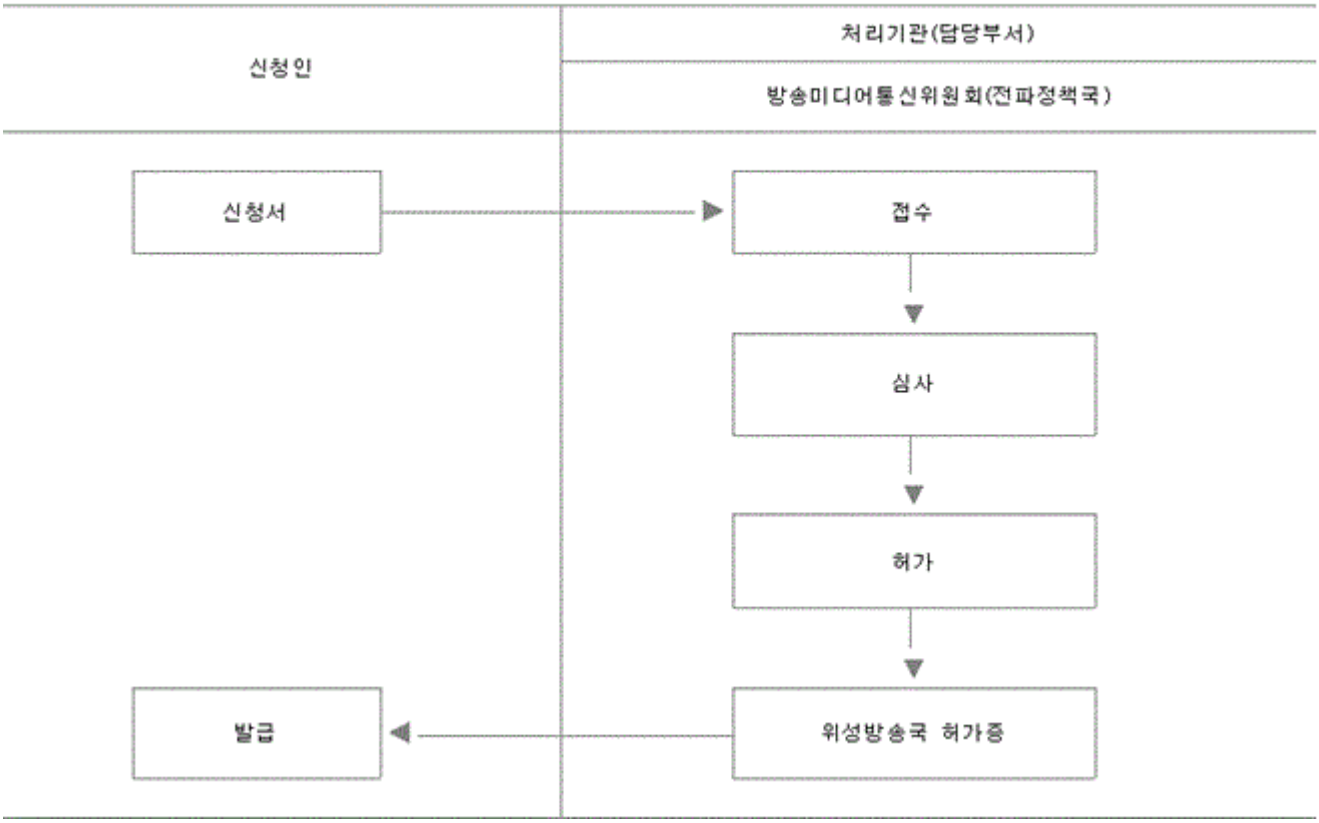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아마추어국은 제외합니다) 1부 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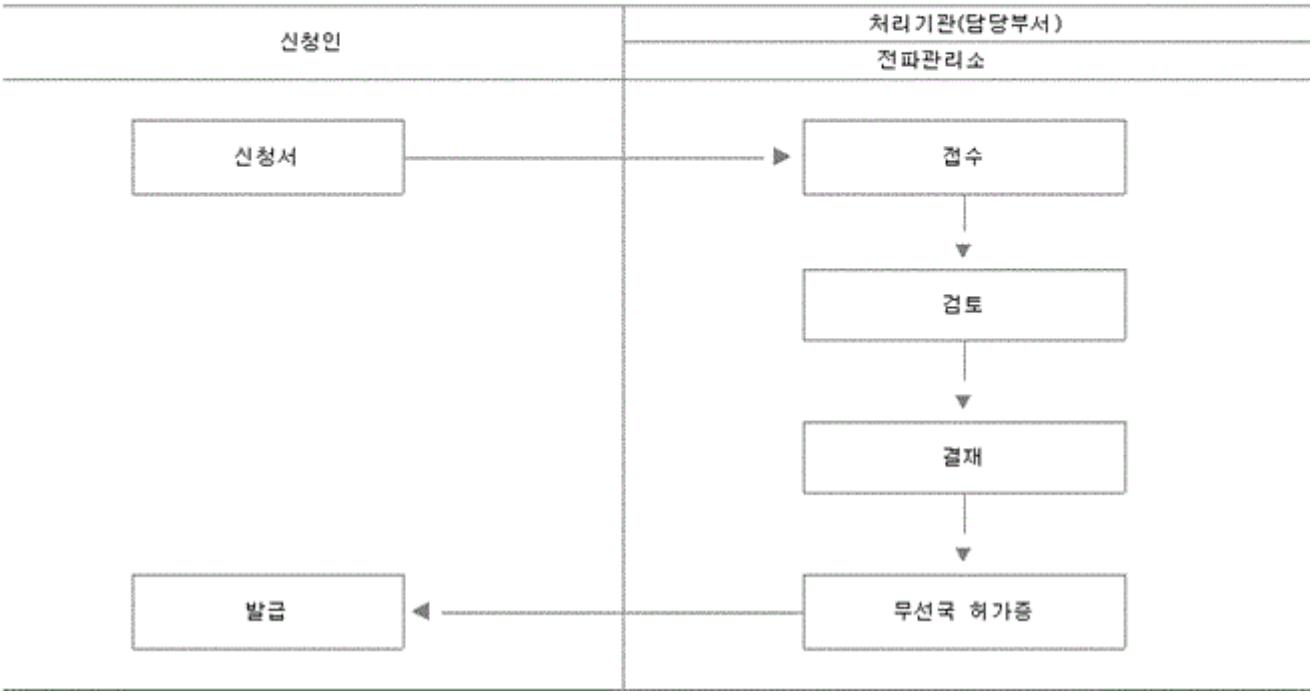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12.>

(앞쪽)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① 목적			② 무선국 종별				
③ 개설 용도					④ 이동범위		
⑤ 통신사항							
⑥ 통신상대방	(1) 허가번호 (2) 장치번호		⑦ 운용시간		⑧ 운용개시 예정일		
⑨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1) 송신소						
	(2) 수신소						
	(3) 통신소						
	(4) 송신안테나의 위치		(5) 수신안테나의 위치		(6) 이동체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⑩ 희망하는 전파형식·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	(1) 장치별	(2) 전파형식		(3) 주파수(㎑, ㎒)		(4) 안테나공급전력(W, ㎾)	
⑪ 선박 또는 항공기 관련 사항	(1) 소유자		(2) 선박명 (항공기형식)		(3) 등록번호		
	(4) 용도		(5) 총톤수		(6) 항행구역		
	(7) 여객 정원		(8) 주정박항 (주기장)		(9) 전체길이		
⑫ 정보통신 공사업자 및 준공 예정일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2) 생년월일			
	(3) 소재지		(전화번호):	(4) 정보통신 공사업등록번호			
	(5) 준공 예정일			(6) 검사 희망지			
⑬ 그 밖의 사 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 무선국 개설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의 분류(고정업무, 해상이동업무 등)를 적습니다.
2. ③란: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전기통신역무용, 철도사업용, 어업통신용 등)를 적습니다.
3. ④란: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만 적습니다.
4. ⑤란: 무선국의 용도별로 행하는 세부 통신내용을 적습니다.
5. ⑥란: 통신상대방이 고정된 위치의 무선국인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적고, 통신상대방이 장치별로 다른 경우에는 장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또한, 통신상대방이 복수인 경우는 ','로 구분하고, 통신상대방이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동일 통신망의 무선국종을 같이 적습니다.
6. ⑦란: 계속 운용하는 경우는 "24시간", 특정시간에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습니다.
7. ⑨란
   가. (1)란 및 (2)란: 송신소와 수신소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송신소란에 적습니다.
   나. (4)란 및 (5)란: 고정위치에 설치하는 송신안테나 및 수신안테나의 위치는 세계측지계(또는 WGS84좌표계) 좌표로 적습니다. 다만,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6)란: 차량 등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 등을 적고, 휴대 가능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표를 합니다.
8. ⑪란: 총톤수는 선박에만 해당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명을 국문 및 영문으로 적습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7. 12.>

(2쪽 중 제1쪽)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① 목 적				
② 개설이 필요한 이유				
③ 방송사항				
④ 방송구역				
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1) 송신소 소재지			
	(2) 송신안테나의 위치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3) 연주소 소재지			
⑥ 희망하는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 전력	(1) 전파의 형식			
	(2) 주파수(㎑, ㎒)			
	(3) 안테나공급전력(W, ㎾)			
⑦ 운용시간	시부터 시까지(시간)			
⑧ 정보통신공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준공 예정일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2) 생년월일	
	(3) 소재지			
	(4) 정보통신공사 업등록번호		(5) 준공 예정일	

⑨ 무선설비 등의 공사비 (계: 원)	송신소	(1) 토지 및 건물	원	(2) 송신장치	원
		(3) 안테나와 접지장치	원	(4) 전원장치	원
		(5) 기타	원		
	연주소	(6) 토지 및 건물	원	(7) 연주소 설비	원
		(8) 기 타	원		
⑩ 공사비 지출 방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2) 사채	원
		(3) 차입금	원	(4) 기타	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⑪ 운영계획	(1) 경영형태								
	(2) 자본금액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3) 성명	(4) 대표자	(5) 생년월일	(6) 소유 주식수	(7) 출자 금액	(8) 지분율	(9) 종별	(10) 비고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 (임원)	(11) 성명	(12) 생년월일	(13) 직위	(14) 담당	(15) 겸직	(16) 이해관계	(17) 비고	
	다수 의결권자(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18) 성명	(19) 생년월일	(20) 주소	(21) 의결권수	(22)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비율	(23) 비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24) 방송사항			(25) 주간당 시간 비율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주간기본편성표 붙임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26) 공급국명	(27) 1주간의 시간		(28) 협정내용		(29) 비고		
	사업수지 예견 (명세는 별첨)	(30) 수입 원			(31) 지출 원				
		(32) 이익금 원							
	방송의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⑫ 위성에 관한 사항	(1) 발사예정시간								
	(2) 사용가능시간								
	(3)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의 범위								
	(4) 예비위성의 수와 그 발사예정 시기								
	(5) 궤도에 관한 사항								
	(6) 참고사항								
	(7) 신청인 제출서류: 위성방송 개념도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7. 12.>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위성방송국 재허가)

방송국명				최초 허가일		
허가번호				전파형식		
시설자명				송신 주파수(㎒, ㎑)		
설치 장소	송신소			안테나공급전력(㎾, W)	주:	예비:
	연주소			프로그램 중계		
방송구역						

경영사항	경영형태			구분	성명	대표자	출자금액
	자본금액		억원	주된 출자자			
	임원	직위	성명				
				다수 의결권 자			
	최근 3년간의 사업수지 명세 (세부명세 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사항 (부가서비스사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주간편성표 별첨)	방송사항	주간당 시간비율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안테나	수신안테나	안테나설치대
	형식(구성)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년간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4.>

(3쪽 중 제1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① 통신방식												
② 송신부	(1) 송신장치 구분					(2) 정격출력						
	(3) 전파형식과 점유주파수대폭					(4) 발사가능 전파의 주파수 범위						
	(5) 발진방식			(6) 발진주파수				(7) 체배(遞倍) 방식				
	(8) 변조방식			(9) 최대 변조도			(10) 최대 주파수편이			(11) 최대 전력		
	(12) 최고 변조주파수 또는 최고 통신속도											
	전력증폭기			(13) 명칭	(14) 개수		(15) 양극			(16) 비고		
							입력	전압				
	(17) 제조자명			(18) 기기의 명칭(모델명)			(19) 기기일련번호			(20) 비고		
③ 수신부	(1) 수신장치 구분											
	(2) 수신방식											
	(3) 수신 가능한 주파수 범위											
	(4) 국부발진 주파수											
	(5) 중간주파수											
	(6) 중간주파수 증폭부 통과 대역폭			○ 6dB점의 대역폭 ○ 6dB(또는 -70dB)점의 대역폭								
	(7) 제조자명			(8)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9) 기기일련번호			(10) 잡음 온도		

④ 안테나계	안테나	(1) 형식	(2) 편파면	(3) 지향각	(4) 전력반치 비임폭	(5) 주파수 범위	(6) 이득	(7) 높이		(8) 조수 또는 기수	(9) 운용각	(10) 길이 또는 지름(m)
								해발고	지상고			
	송신											
	수신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급전선	(11) 종별	(12) 선종	(13) 길이(m)	(14) 임피던스	(15) 손실
	송신					
	수신					
	안테나설치대 또는 급전선주	(16) 종류	(17) 높이(m)	(18) 기부 지상고(m)	(19) 주수	
	송신					
	수신					
	(20) 접지방식					
	시험안테나	(21) 종류	(22) 용량	(23) 개수		
⑤ 전원설비	전원설비	(1) 교류 및 직류의 구별	(2) 개수	(3) 용량	(4) 전압	(5) 상수 및 주파수
	정류장치	(6) 정류관		(7) 그 밖의 기기		
		명칭	개수			

⑥ 그 밖의 송신 부가장치	(1) 종류	(2) 방식	(3) 대수	(4) 비고
⑦ 그 밖의 수신장치	(1) 제조자명	(2) 형식 및 명칭	(3) 적합인증번호	(4) 기기일련번호

⑧ 특수설비	(1) 제조자명	(2) 형식 및 명칭	(3) 적합인증번호	(4) 기기일련번호		
	(5)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범위	(6) 발진 및 변조방식	(7) 펄스폭과 반복주파수	(8) 전력 증폭기	(9) 안테나	(10) 급전선

⑨ 신청인 제출 도면

(1) 송수신계통도

(2) 안테나구성도

(3) 부지평면도와 지표선상향각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4) 기기배치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5) 전원계통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②란

가. (1)란: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제1장치, 제2장치 등)로 적습니다. 다만, 각 장치의 공사설계 내용이 같은 것은 그 대수와 제조번호 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나. (2)란: 출력단자에서 측정한 정격출력을 전파의 형식별로 적습니다.

다. (10)란: 주파수편이 전신인 경우에는 ±로 표시하지 않고 편이별(㎐)로 적습니다.

라. (11)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②란과 같이 적습니다.

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경우에는 (1)란, (7)란, (8)란, (9)란, (10)란만 적으며, (1)란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다. (10)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④란

가. (2)란: 해상 또는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적지 않습니다.

나. (3)란: 주지향방향 각도의 북을 0°로 하여 시계방향 각도로 표시합니다.

다. (4)·(9)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6)란: 절대이득의 경우에는 Gis, 상대이득의 경우에는 Gd, 단소 수직안테나에 대한 이득의 경우는 Gr의 기호를 적습니다. (예): 10dB(Gis)

마. (7)란: 안테나 최고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해발고(m): 해면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지상고(m):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바. (8)란: 수신안테나를 송신안테나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으로 적습니다.

사. (10)란: 길이는 수평 및 수직(경사)부와 인입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아. (13)란: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적고,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자. (15)란: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급전선의 길이가 1㎞ 이상인 안테나계 또는 25㎒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계만 적습니다.

4. ⑥란

가. '그 밖의 송신 부가장치'란 조정장치, 송신단국장치 등을 말합니다.

나. (4)란: 빔 급전용 반사판이 주 안테나와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빔 급전용 반사판의 장소를 적습니다.

5. ⑦란: 무선방위측정기 등 그 밖의 수신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⑧란: 레이다, 주파수 측정장치, 자동경보장치,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장치,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및 그 밖의 특수설비 등을 적습니다.

7. 공사설계서에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4.>

(3쪽 중 제1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위성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 송신방식			
(2) 장치구분			
(3) 정격출력		(4) 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 특성	(5) 전파형식	(6) 주파수	(7) 주파수범위
	(8) 발진방식	(9) 변조방식	(10) 최고변조 주파수
(11) 주파수변환 방식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			
(13)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종단부 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 명칭	(15) 개수	(16) 비고
스퓨리어스 발사 제거장치	(17) 방식	(18) 제거대상 주파수	(19) 삽입손실
송신장치 제원	(20) 제조자명	(21) 형식 또는 명칭	(22)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② 수신부 (주장치·예비장치)

(1) 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 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 중간주파증폭부 통과대역폭 (-6dB점)
(4) 제조자명	(5) 형식 또는 명칭	(6)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③ 송신안테나계등

안테나	(1) 형식 및 구성	(2) 편파면	(3) 이득(dB)	(4) 지상고(m)	(5) 해발고(m)	(6) 주복사각도 또는 판넬 방향
(7) 전기적 틸트					(8) 방향별 틸트	
급전선	(9) 종별	(10) 길이(m)	(11) 손실(dB)		(12) 기타	(13) 비고
(14) 전체 손실(dB)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④ 수신안테나계	안테나	(1) 형식과 구성	(2) 편파면	(3) 이득(dB)	(4) 지상고(m)	(5) 해발고(m)	(6) 지향각
	급전선	(7) 종별	(8) 길이(m)	(9) 손실(dB)	(10) 기타		

⑤ 연주장치	(1) 종류	(2) 상용(대수)	(3) 예비(대수)	(4) 형식 또는 명칭	(5) 비고
⑥ 조정장치	(1) 종류	(2) 상용(대수)	(3) 예비(대수)	(4) 형식 또는 명칭	(5) 비고

⑦ 전원설비	구분	(1) 종류	(2) 용량	(3) 전압	(4) 상수	(5) 비고
	연주소					
	송신소					

⑧ 접지방식	(1) 송신기		(2) 접지저항	
	(3) 안테나		(4) 접지저항	
	(5) 기타			

⑨ 안테나설치대 및 급전선주	구분	(1) 종류	(2) 높이	(3) 기부 지상고	(4) 공용하는 방송국	(5) 주수
	안테나설치대					
	급전선주					

⑩ 부속설비	시험안테나	(1) 종류	(2) 용량	(3) 개수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 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5) 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 포함)	(6) 제어장소		
		(7) 제어항목		

⑪ 그 밖에 사항

⑫ 신청인 제출 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작성방법

1. ①의 (1)란: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을 적습니다.
2. ①의 (2)란: 송신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제조번호는 제외합니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의 (3)란: 평균전력을 적습니다.
4. ①의 (4)란: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적습니다.
5. ①의 (11)란: 반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만 적습니다.
6. ①의 (12)란: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송신기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함께 적습니다.
7. ①의 (14)란·(15)란·(16)란·(20)란·(21)란·(22)란 및 ②의 (4)란·(5)란·(6)란: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적고, (주장치·예비장치)의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9. ③의 (1)란부터 (7)란까지: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③의 (3)란: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적습니다(지향성 안테나일 때에는 최대 지향방향의 이득)
11. ③의 (4)란·(5)란: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③의 (6)란: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적습니다.
13. ④란: 송신안테나계와 같이 적습니다.
14. ⑤란: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드, 비디오 레코드, 스튜디오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름 투사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5. ⑥란: 제한증폭기, 조정증폭기, 전치증폭기, 카메라 제어장치, 동기신호 발생장치, 혼합증폭기, 안정증폭기,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6. ⑦의 (5)란: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 및 '공용'을 적습니다.
17. ⑧란: 라디얼스인 경우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인 경우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접지저항을 각각 적습니다.
18. ⑨란: 안테나설치대와 급전선주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⑨의 (2)란: 구축물(건물)을 제외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20. ⑨의 (3)란: 구축물(건물)을 포함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건물+안테나, 건물+급전선
21. ⑩의 (4)란·(5)란·(6)란·(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2. 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⑫의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⑫의 (2): 통신국건물·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적고, 안테나 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 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⑫의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적습니다.
26. ⑫의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적습니다.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⑫의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공용장치 및 급전선 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 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적습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⑫의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 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 4.>

(앞쪽)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table>
<tr><td colspan="2">통신방식</td><td colspan="10"></td></tr>
<tr><td rowspan="4">① 송수신기 및 그 밖의 설비</td><td>(1) 구분</td><td colspan="3">(2) 기기의 명칭(모델명)</td><td colspan="3">(3) 적합성 평가번호</td><td colspan="4">(4) 기기의 일련번호</td></tr>
<tr><td>송수신기</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수신기</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그 밖의 설비</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전원설비</td><td rowspan="2">(1) 구별</td><td rowspan="2">(2) 교류 및 직류의 구별</td><td rowspan="2">(3) 개수</td><td rowspan="2">(4) 용량</td><td rowspan="2">(5) 전압</td><td rowspan="2">(6) 상수 및 주파수</td><td colspan="4">(7) 정류기</td></tr>
<tr><td colspan="2">명칭</td><td colspan="2">개수</td></tr>
<tr><td>주전원</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③ 안테나계</td><td>예비전원</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1) 구분</td><td rowspan="2">(2) 형식</td><td colspan="2">(3) 구성</td><td rowspan="2">(4) 길이 (m)</td><td rowspan="2">(5)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td><td rowspan="2">(6) 이득 (dBi)</td><td colspan="3">(7) 높이(m)</td></tr>
<tr><td>편파면</td><td>지향각</td><td>해발고</td><td>지상고</td><td>노출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8) 조수 또는 기수</td><td rowspan="2">(9) 제조자명</td><td rowspan="2">(10) 제품명칭 (모델명)</td><td colspan="3">(11) 급전선</td><td colspan="2">(12) 안테나설치대</td></tr>
<tr><td>명칭 및 규격</td><td>길이(m)</td><td>감쇄율 (dB/100m)</td><td>종류</td><td>위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④ 시험 안테나</td><td colspan="2">(1) 종류</td><td colspan="3">(2) 용량</td><td colspan="3">(3) 개수</td><td colspan="3">(4) 비고</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⑤ 기타</td><td colspan="2"></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신청인 제출 서류</td><td colspan="11">1. 안테나계를 표시하는 도면(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2. 기기배치도(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

가. (1)란: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 주전원과 예비전원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나. (3)란~(5)란: 다수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총 개수를 적고 용량 및 전압은 개별 전원으로 적습니다.

다. (6)란: 다수의 정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류기의 명칭과 개수를 적고 별도의 정류기 없이 기기의 내부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회로 명칭 또는 PSU(Power Supply Unit)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6)란: 이득은 절대이득(dBi)을 말하며, 상대이득(dBd)인 경우에는 환산하여 적습니다.

(예) 절대이득(dBi) = 상대이득(dBd) + 2.15dB

나. (7)란: 해발고와 지상고는 해면 또는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최고부 높이를 적고, 노출고는 안테나설치대 밑면에서 안테나 하단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다. (11)란

- 급전선의 명칭(모델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 길이는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길이를 적습니다. 다만,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 감쇄율(dB/100m)은 100m당 감쇄값(dB)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전선 명칭 및 규격에 따른 급전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감쇄율을 적습니다.

라. (9)란~(12)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무선국만 적습니다. 다만, 간이무선국과 건물 내부,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건물 내부와 지하 공간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무선국은 (12)란만 적습니다.

마. (12)란

- 안테나설치대는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원폴, 분산폴, 기타로 구분합니다.

(예) 철탑: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
강관주: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
통신주: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봇대 형태
원폴: 주로 건물 위에서 하나의 폴(pole)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된 형태
분산폴: 주로 건물 위에서 다수의 안테나가 분산 설치된 형태
기타: 그 외의 형태

- 안테나설치대 위치는 안테나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며 옥내, 옥외, 지하로 구분합니다. 다만, 안테나설치대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장치에 해당되는 안테나설치대의 위치를 적습니다.

(예) 옥내: 안테나설치대가 건물내부에 설치
옥외: 안테나설치대가 옥상, 옥탑 등 건물외부 또는 평지, 산 등 지면에 설치
지하: 안테나설치대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

3. ② 및 ③의 (9)란부터 (12)란까지는 무선국 개설신고 시 확인이 어려우면 무선국 준공신고서 제출 시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사설계서상의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7. 12.>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아마추어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tr><td rowspan="8">시설개요서</td><td>설치장소</td><td colspan="2"></td><td colspan="2">신청 구분</td><td>[ ]개인
[ ]가족
[ ]단체</td></tr>
<tr><td rowspan="4">운용자</td><td>성명</td><td>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td><td>자격종별</td><td>기술자격증 번호</td><td>시설자와의 관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희망하는 전파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td><td colspan="2">장치별</td><td colspan="2">전파형식 및 주파수
(kHz, MHz)</td><td>안테나공급전력(W)</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5">무선기기</td><td>장치별</td><td>기기의 명칭(모델명)</td><td>적합성 평가 번호</td><td colspan="2">부가 설비</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공사설계서</td><td rowspan="2">발사가능 전파형식 주파수범위</td><td>1장치</td><td>2장치</td><td>3장치</td><td colspan="2">4장치</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발진방식과 주파수</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변조방식</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안테나의 형식 및 높이</td><td colspan="2"></td><td>준공 예정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그 밖에 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관계사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아마추어국만 해당합니다)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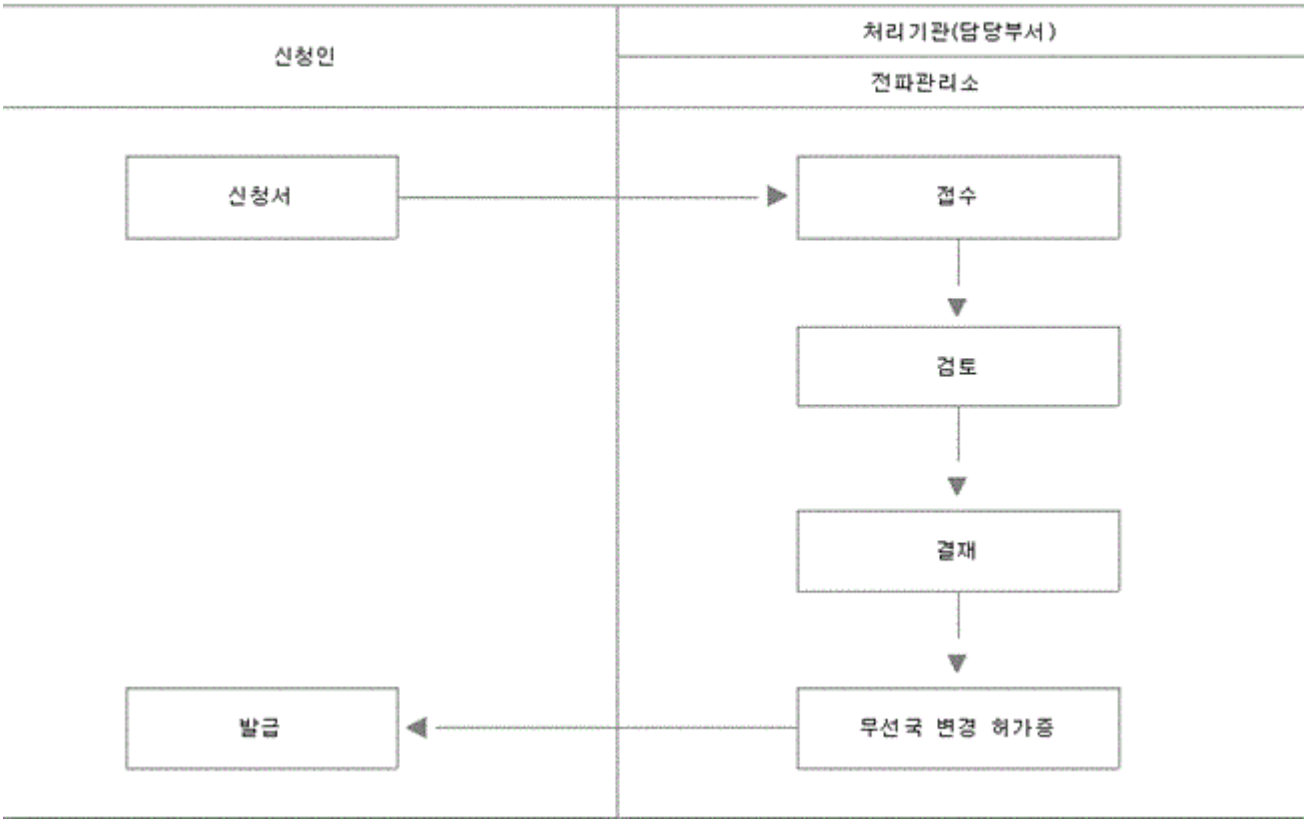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허가 내용	위성방송국의 명칭		방송사항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방송구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와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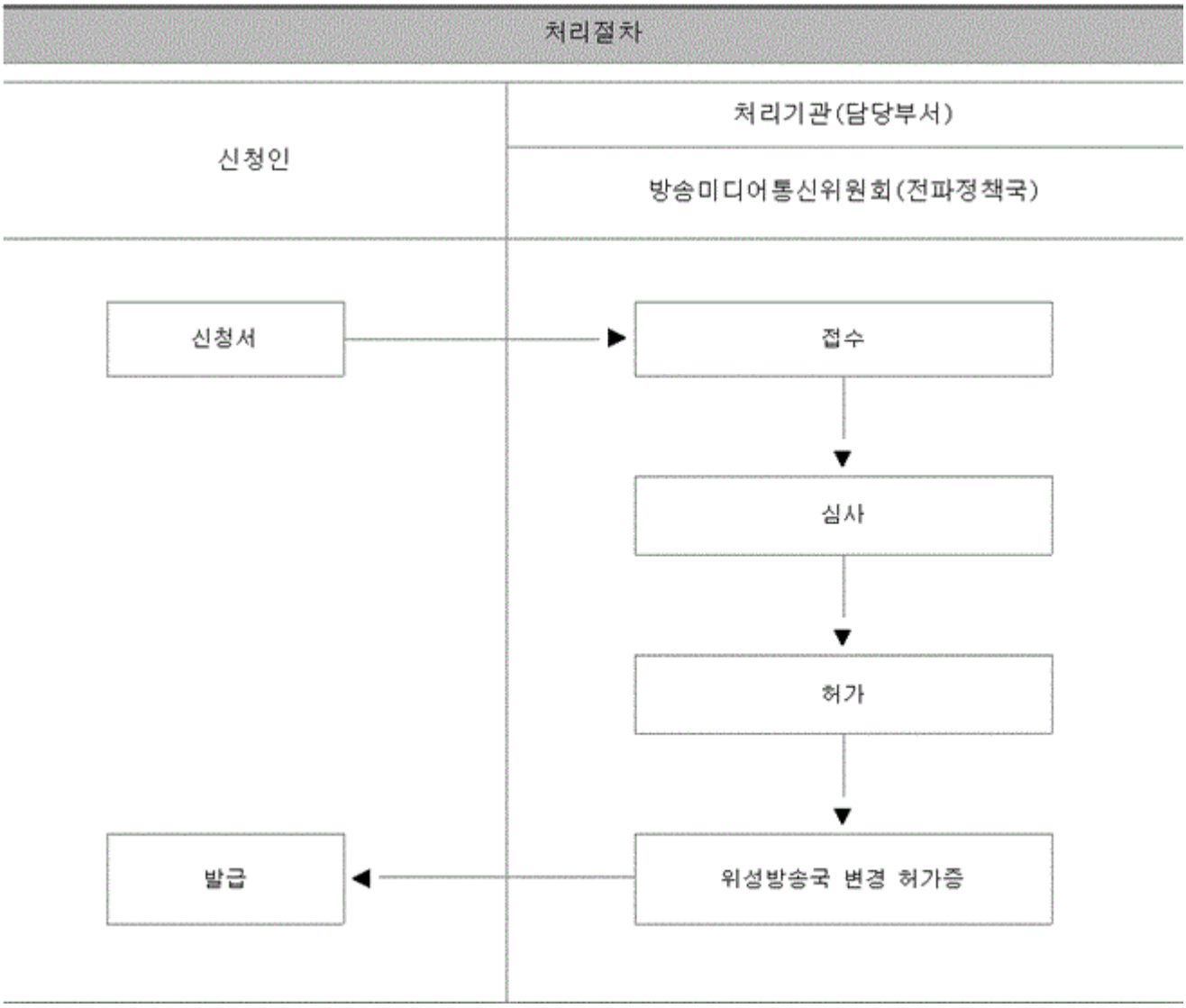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7. 12.>

무선국 변경내역서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

변경이유						
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구분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장치별	
무선국의 목적						
통신사항 또는 방송사항						
통신상대방 또는 방송구역						
설치장소(좌표)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운용허용시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의 증설						
무선기기의 대치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정보통신 공사업자 및 준공 예정일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준공 예정일		검사 희망지		운용개시 예정일	
그 밖에 사항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허가 / [ ]신고 변경명세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제출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무선국 관계사항	무선국종별		[ ]허가번호 [ ]신고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허가 연월일 [ ]신고 연월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허가변경명세서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신고변경명세서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무선국을 설치한 자동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무선국을 설치한 건설기계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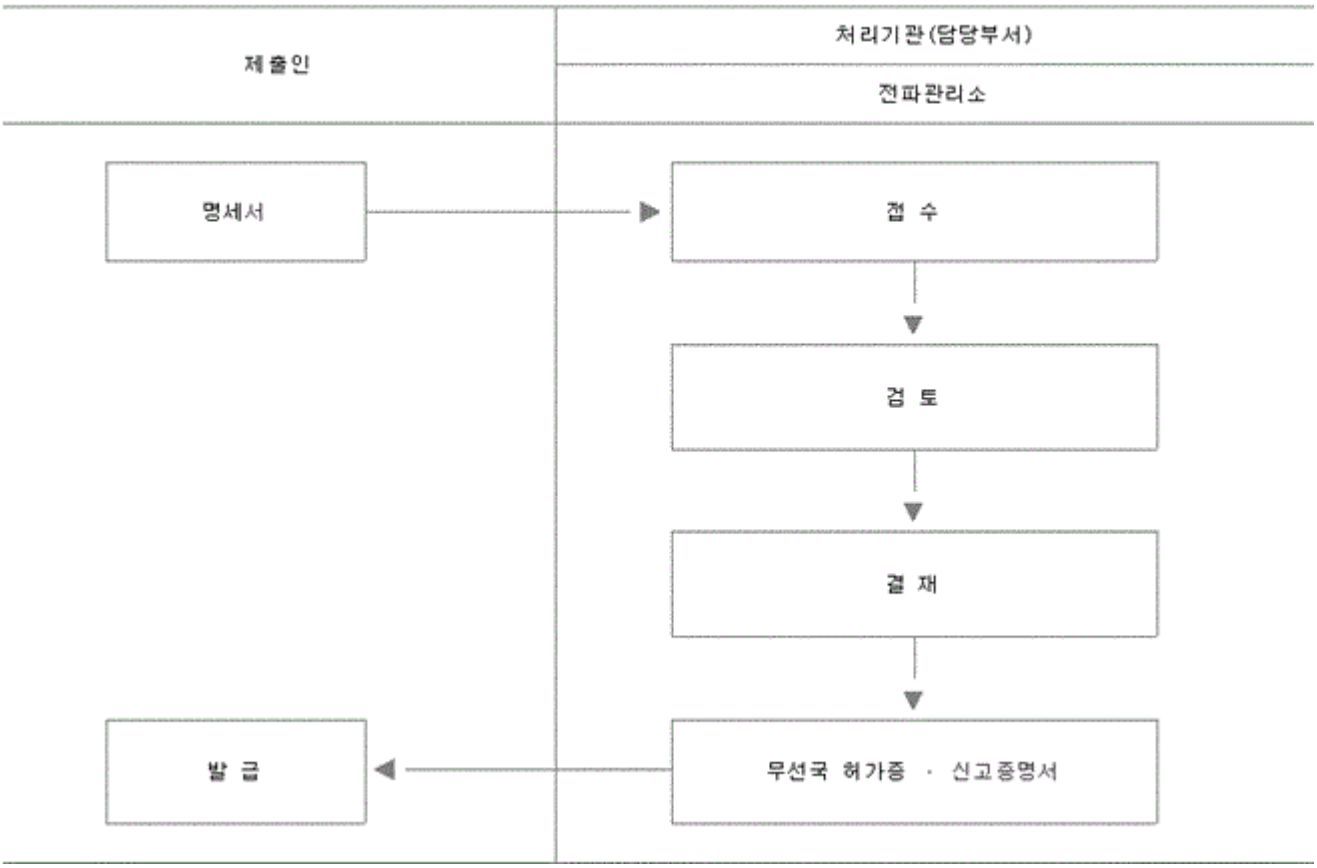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7. 26.>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 선박국(SHIP STATION)

[ ] 선박지구국(SHIP EARTH STATION)

1. 허가번호(Number):
2. 허가일(Date of License):
3. 허가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 ] 무기한(Unlimited)
   [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 년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for inspection certificate)
4. 준공기한(Period of Construction):
5. 시험전파 발사기간 및 발사내용(Permission for Test Emission):

「전파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authorization is herewith issued as specified below.

선박명 (Name of Ship)	호출부호(명칭) 또는 기타 식별부호(Call Sign or Other Identification)	시설자명 (Owner of Ship)

공중통신범위 (Public Correspondence category)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Minimum Certificate and Number of Operators)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Name of radio equipment and serial number thereof)	형식 (Type of Model)	안테나(Antenna)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Class of Emission)	주파수대역 또는 주파수(Frequency Band or Frequencies)
		출력 (Power)	형식·구성·이득 (Type·Configuration·Gain)		

년(year) 월(month) 일(day)

○○전파관리소장 직인

Director-General of ○○ Radio Management Office

210㎜×297㎜[백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26.>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 항공기국(AIRCRAFT STATION)

[ ] 항공기지구국(AIRCRAFT EARTH STATION)

1. 허가번호(Number):
2. 허가일(Date of License):
3. 허가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 ] 무기한(Unlimited)
   [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 년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for inspection certificate)
4. 준공기한(Period of Construction):
5. 시험전파 발사기간 및 발사내용(Permission for Test Emission):

「전파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authorization is herewith issued as specified below.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표시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of the Aircraft)	호출부호(명칭) 또는 기타 식별부호 (Call Sign or Other Identification)	항공기형 (Type of Aircraft)

시설자명 (Owner of Aircraft)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Minimum Certificate and Number of Operators)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Name of radio equipment and serial number thereof)	형식 (Type of Model)	안테나(Antenna)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Class of Emission)	주파수대역 또는 주파수 (Frequency Band or Frequencies)
		출력 (Power)	형식·구성·이득 (Type·Configuration·Gain)		

년(year) 월(month) 일(day)

○○전파관리소장 직인

Director-General of ○○ Radio Management Office

210㎜×297㎜[백 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허가번호 호

위성방송국 허가증

허가일			허가유효기간	
준공기한				
시험전파 발사기간 및 발사내용				
방송국의 명칭				
방송국의 목적				
방송사항			방송유형	
시설자(사업자)	시설자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설치 장소 연주소	(좌표)		
	설치 장소 송신소	(좌표)		
	최다액 출자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주소)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호출부호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주파수 (㎑, ㎒)	안테나공급전력 (실효복사전력)	안테나의 형식·구성·이득

방송구역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구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고
	송신소				
	연주소				
부관(附款) 사항					

[ ] 「전파법」 제21조제4항
[ ]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와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방송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인

210㎜×297㎜[백 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아마추어국(AMATEUR RADIO STATION)

1. 허가번호(Number):
2. 허가일자(Date of License):
3. 허가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 년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for inspection certificate)
4. 준공기한(Period of Construction):
5. 시험전파발사기간 및 내용(Permission for Test Emission):

「전파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is authorization is herewith issued as specified below.

<table>
<tr><td colspan="2">설치장소
(Place for Emission)</td><td>호출부호(명칭) 또는 기타 식별부호
(Call Sign or Other Identification)</td><td>시설자명
(Owner of Facilities)</td><td>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Date of Birth)</td><td>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Minimum Certificate and Number of Operators)</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무선기기 명칭
(Name of radio equipment)</td><td rowspan="2">형식
(Type of Model)</td><td colspan="2">안테나(Antenna)</td><td rowspan="2">전파형식 및 점유 주파수대폭
(Class of Emission)</td><td rowspan="2">주파수대역 또는 주파수(Frequency Band or Frequencies)</td></tr>
<tr><td>출 력
(Power)</td><td>형식
(Type)</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부 관 사 항
(Advisory Notes)</td><td colspan="4"></td></tr>
</table>

년(year) 월(month) 일(day)

○○전파관리소장 직인

Director-General of ○○ Radio Management Office

210㎜ × 297㎜[백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7. 12.>

허가번호 호

무선국 허가증

허가일		허가유효기간	
시설자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준공기한		시험전파발사 기간 및 내용	
무선국 종별 및 명칭			
목 적			
설치 장소	송신소		
	수신소		

통신사항			통신상대방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 대폭	주파수 (㎑, ㎒)	안테나공급 전력 (W, ㎾)	안테나의 형식·구성·이득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부관(附款) 사항	

([ ]「전파법」 제21조제4항 [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 ] 허가증 / [ ] 신고증명서 [ ] 정정 /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사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신고번호)
정정 또는 재발급사유			

「전파법 시행령」 [ ]제33조제2항·제3항 / [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2항 / [ ]제11조제5항 에 따라

무선국 ([ ]허가증 [ ]신고증명서)을(를) ([ ]정정 [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사항	무선국 종별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본문에 따라 무선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무선국 허가증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재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허가 사항	방송국의 명칭 (무선국 종별)	방송사항(사업 종류)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방송구역	
	그 밖의 허가 주요 내용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 견적	역무제공 내용	수신자 불만 처리

「전파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단서와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	→	방송국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파정책국)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9.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서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개설 목적		무선국 종별		무선국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W, kW)	
무선기기 명세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기기일련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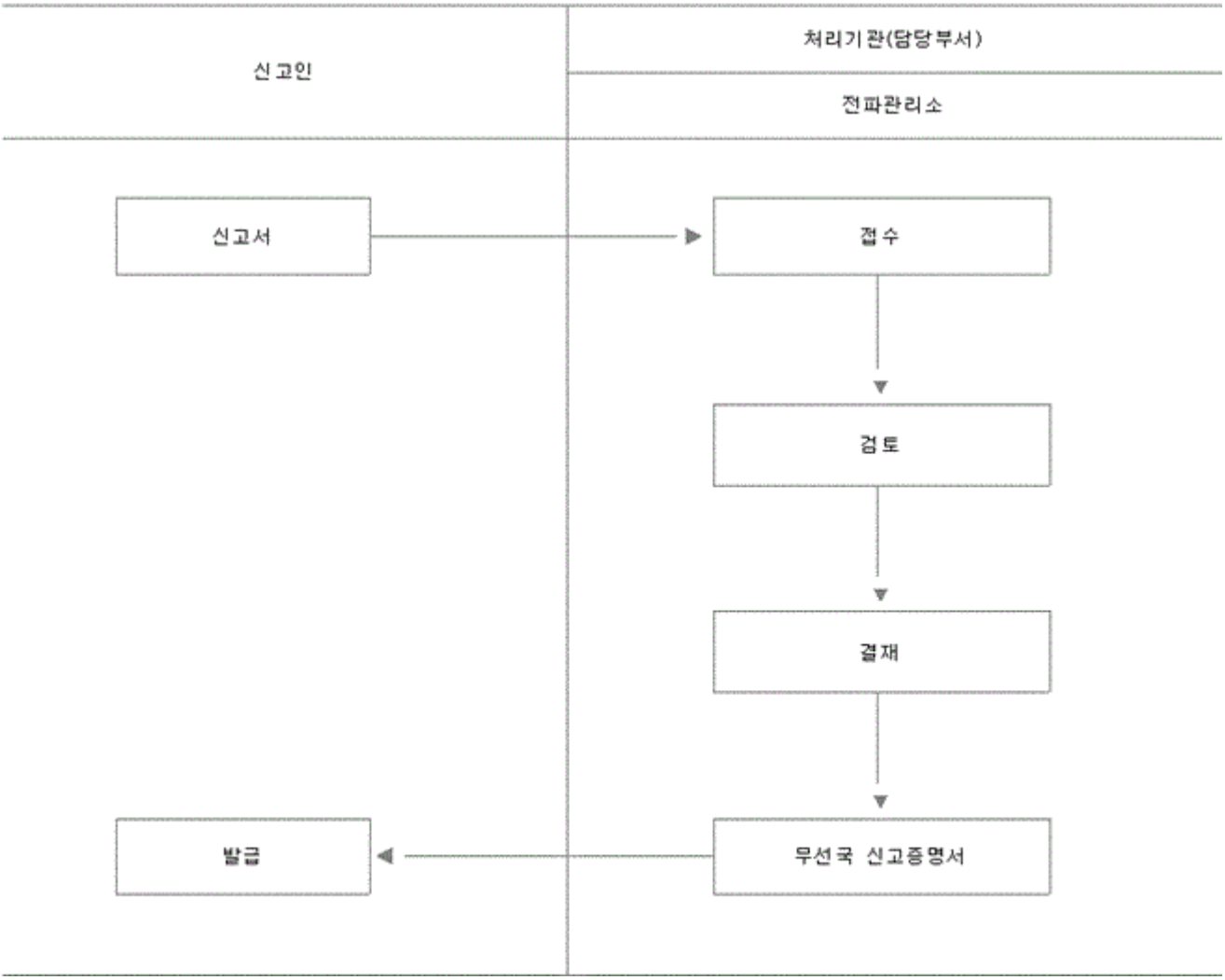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서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무선국 신고증명서	→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상파 [ ]위성] 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최다액 출자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소재지 주전송장치			

방송 개요	방송유형		방송목적	
	방송사항		운용시간	
	방송구역			
	운용채널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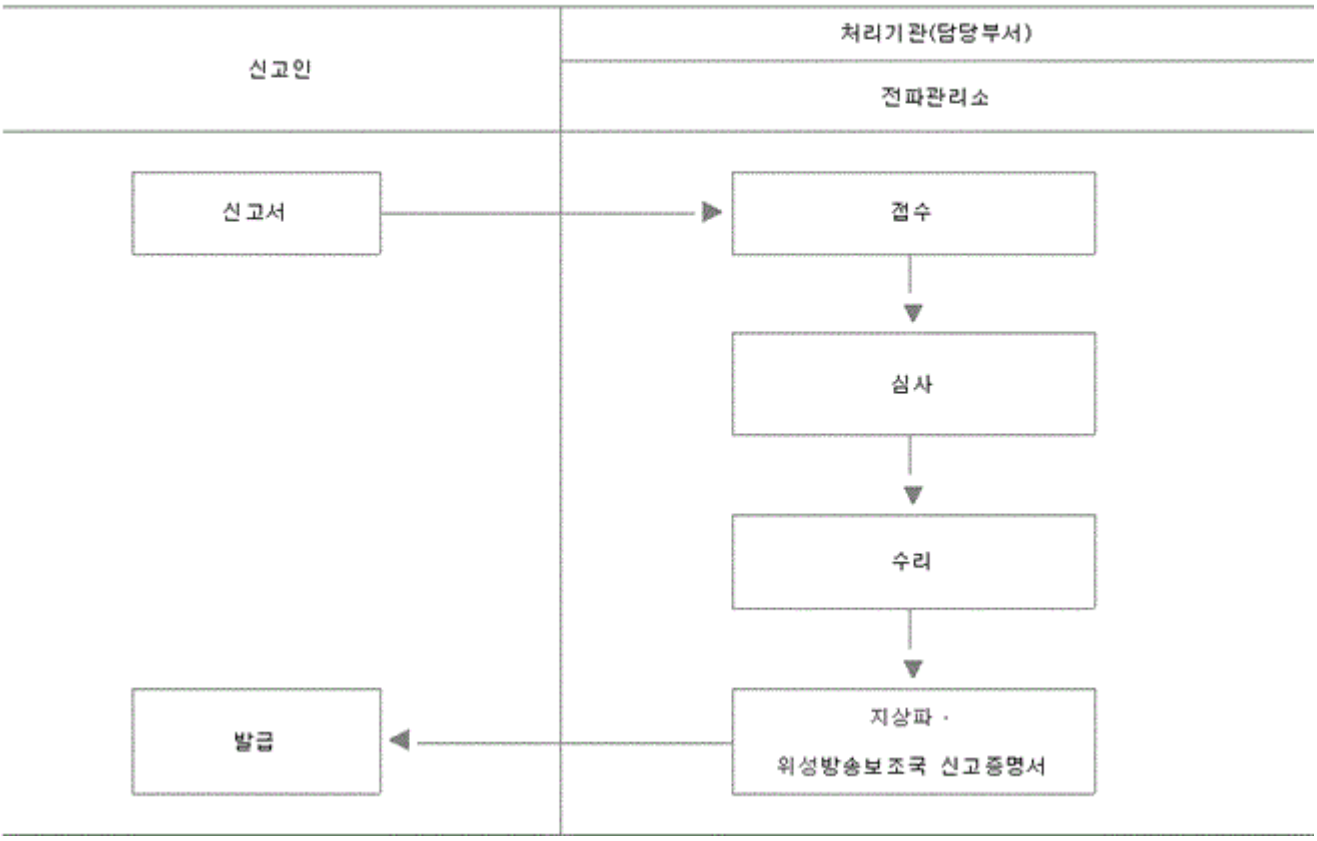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없음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7. 12.>

무선국 신고증명서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1.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7.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8. 주파수	
9.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10. 안테나공급전력	

[ ]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7. 12.>

무선국 신고증명서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신고번호	제 호					
수리일		무선국의 준공기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시험전파 발사 기간 및 내용						
무선국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설치 장소	송신소					
	수신소					
통신사항		통신상대방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폭(㎑, ㎒)	주파수 (㎑, ㎒)	안테나공급전력 (W, ㎾)	안테나형식·구성 및 이득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부관(附款) 사항						

[ ]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전파법 시행령」 별제허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 ]정 [ ]재발급)합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 7. 12.>

[ ]지상파 [ ]위성 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신고번호 및 수리일				
준공기한				
시험전파 발사기간 및 발사내용				
방송보조국의 명칭				
방송보조국의 목적				
방송사항			방송유형	
시설자 (사업자)	시설자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설치장소 (송신소)	(좌표)		
	주된 사무소	(주소)		

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전파형식 및 점유 주파수대폭	주파수 (㎑, ㎒)	안테나공급전력 (실효복사전력)	안테나형식·구성 및 이득

방송구역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구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고
	송신소				
	연주소				
부관(附款) 사항					

[ ]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를 ([ ]정정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직인

210㎜ × 297㎜[백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서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사항	무선국 종별		신고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신고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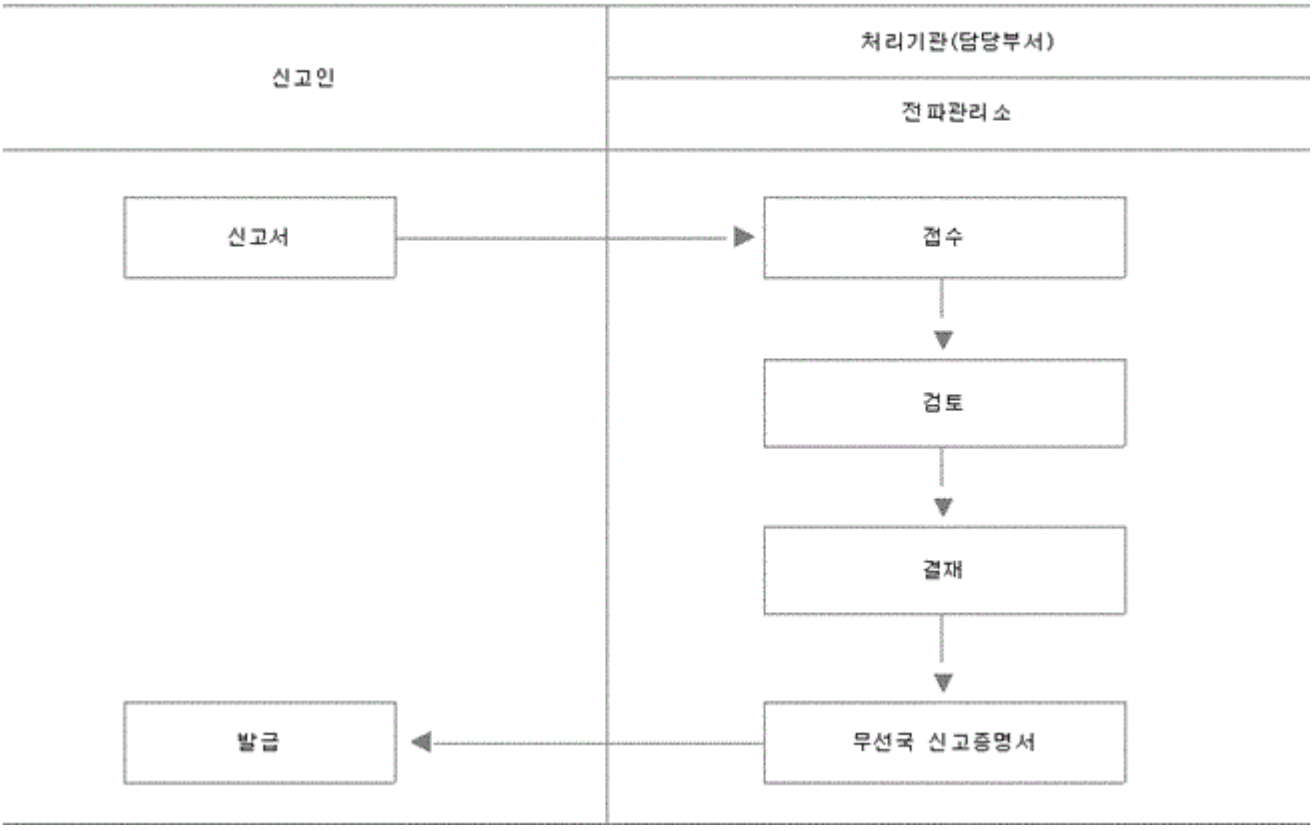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서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관계사항	무선국 종별		신고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수리일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22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무선국 신고증명서	→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상파 [ ]위성] 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고 내용	방송국의 명칭		방송사항 (사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방송구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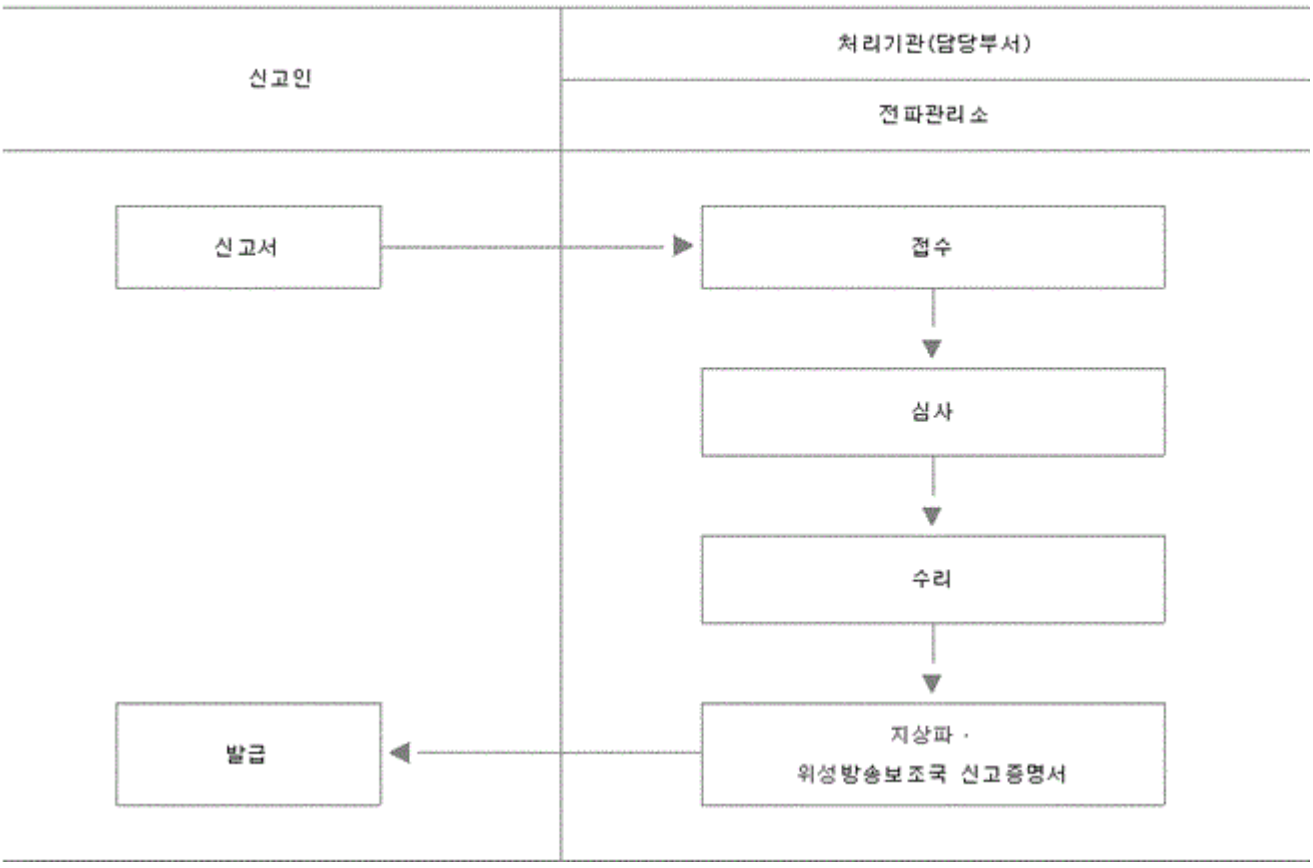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 ]인가신청서 [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신청인 (신고인) (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피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승계하는 무선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성방송국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위성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않은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무선국의 운용비 지출방법	
	사업계획서	
	사업수지 예견	

「전파법」 제2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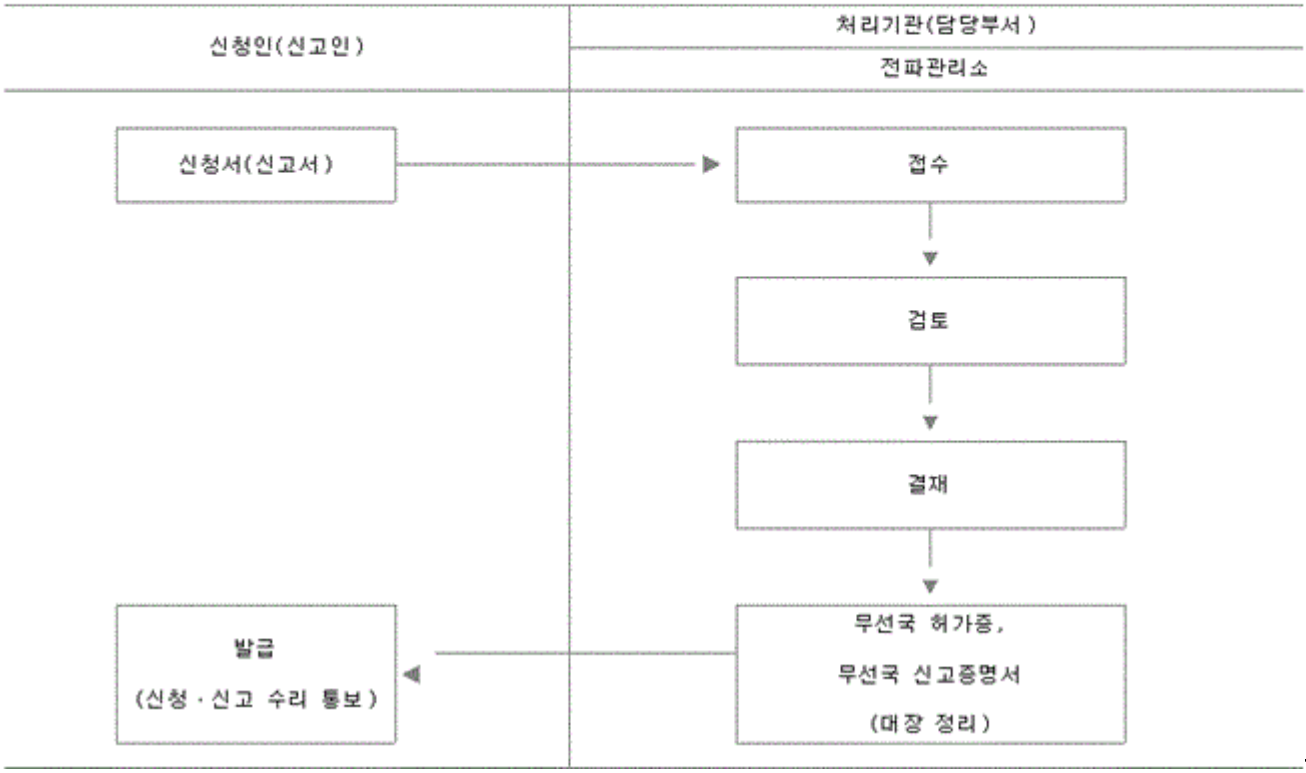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위성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선국 / [ ]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단,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신고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정보통신공사업자	법인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개설허가·신고 (변경 포함)문서번호			준공기한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준공(변경)검사 희망지			용도지역(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준공(변경)검사 희망일				

「전파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을(를)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전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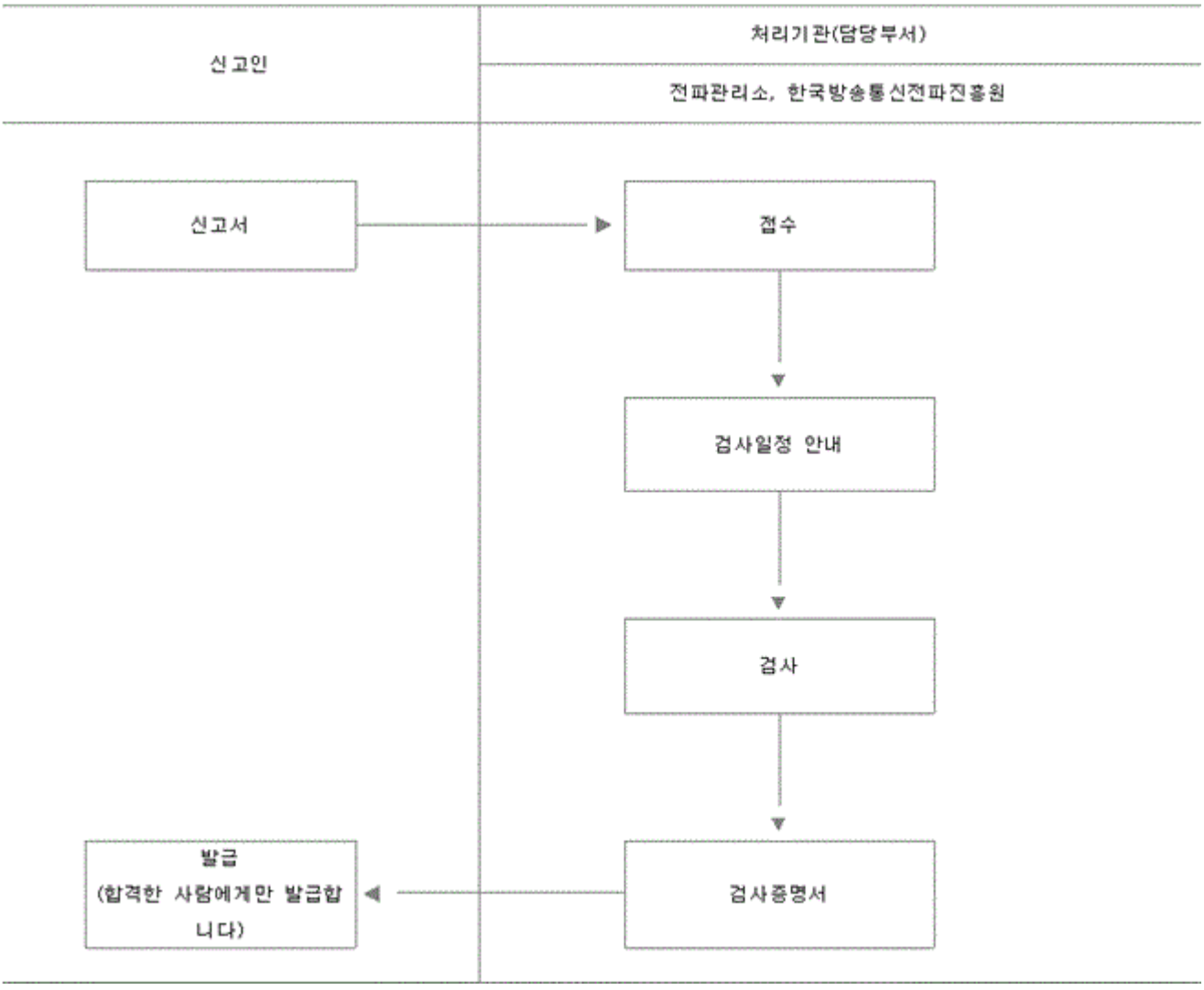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용도지역: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7. 12.>

(4쪽 중 제1쪽)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안테나공급전력 측정표)

1. 측정 연월일: . . .

2. 측정기명:

3. 측정자: ㊞

① 기기형식명							
② 측정계통도							
③ 지정전력	④ 전파형식 및 주파수	측정치					
		⑤ 안테나 저항	⑥ 부가용량	⑦ 양극능률	⑧ 안테나 공급전력	⑨ 정재파비	⑩ 실효 복사전력

작성방법

1. ⑤란은 안테나 임피던스 또는 시험 안테나의 저항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측정시 C 또는 L 등을 별도로 부가시켰을 때 그 값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주파수편차측정표)

1. 측정 연월일: . . .

2. 측정기명:

3. 측정자: ㊞

기기형식명				
구분 / 장치별	지정주파수 및 전파형식	허용편차	측정치	편차

(4쪽 중 제3쪽)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불요발사강도 측정표)

1. 측정 연월일: . . .

2. 측정기명 :

3. 측정자: ㊞

측정지점의 상황 및 측정조건	① 측정장소					
	② 측정기 안테나 높이	m		m		m
	③ 측정거리					
	④ 측정조건					
⑤ 전파형식 및 주파수		기본파 강도(dBm, dBμV/m)	불요발사 강도(dBm, dBμV/m)	기본파 강도(dBm, dBμV/m)	불요발사 강도(dBm, dBμV/m)	기본파강도 (dBm, dBμV/m)	불요발사 강도(dBm, dBμV/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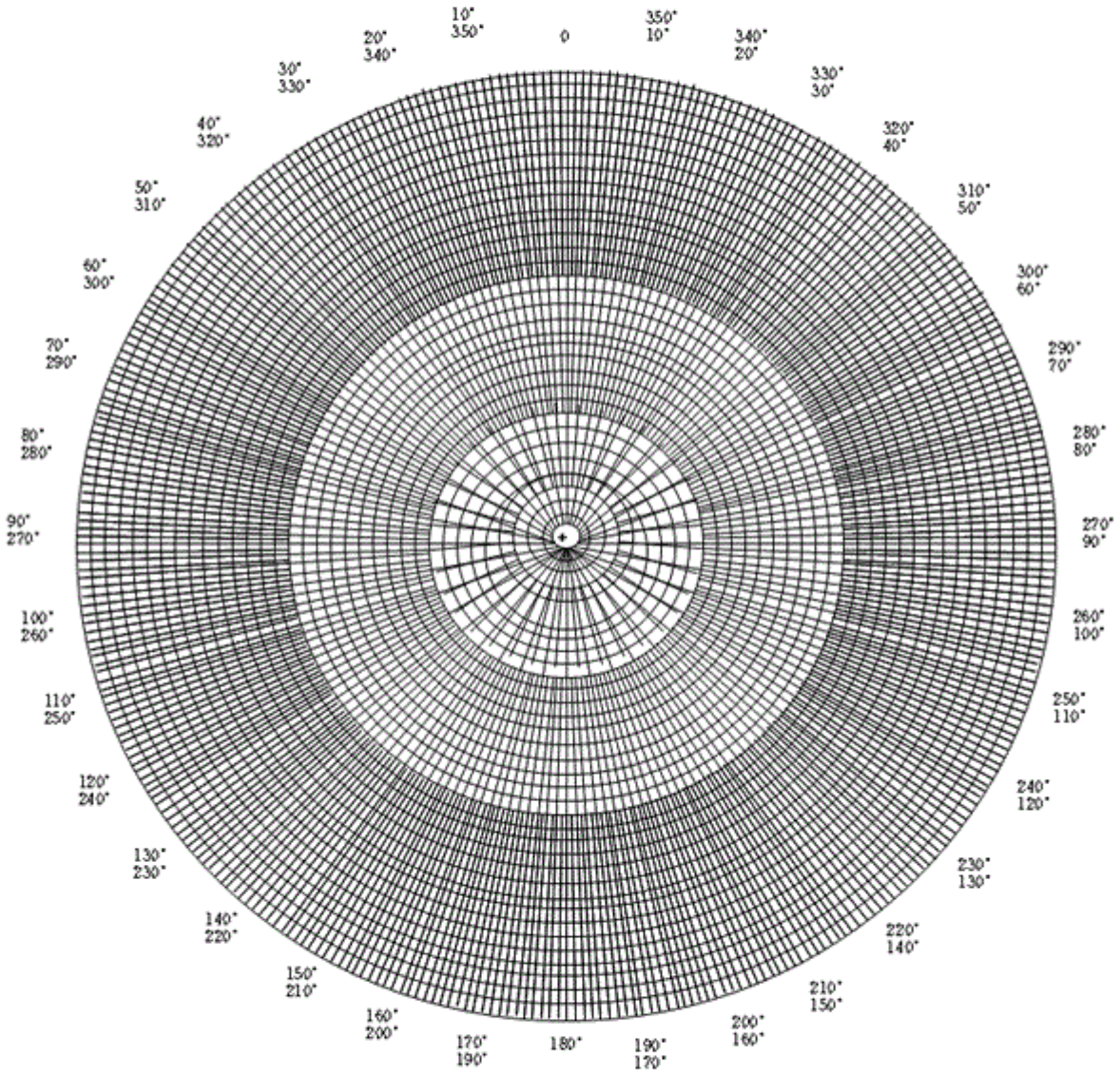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측정 시 동작상태는 평상 운용상태로 합니다.
2. 고조파 외 특히 전계강도가 심한 전파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그 주파수 및 전계강도치를 적어야 합니다.
3. ④란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감쇄값 등 측정 시의 조건을 적습니다.

(4쪽 중 제4쪽)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안테나 패턴 도표)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선국 / [ ]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신고) 관계 사항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무선국만 해당합니다)		개설허가·신고(변경 포함) 연월일
			허가번호		
준공기한	연장 전	. . . 까지	연장 후		. . . 까지
연장이유					

「전파법」 제24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의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무선국 허가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단,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신청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사유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정기검사 희망지			용도지역(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정기검사 희망일				

「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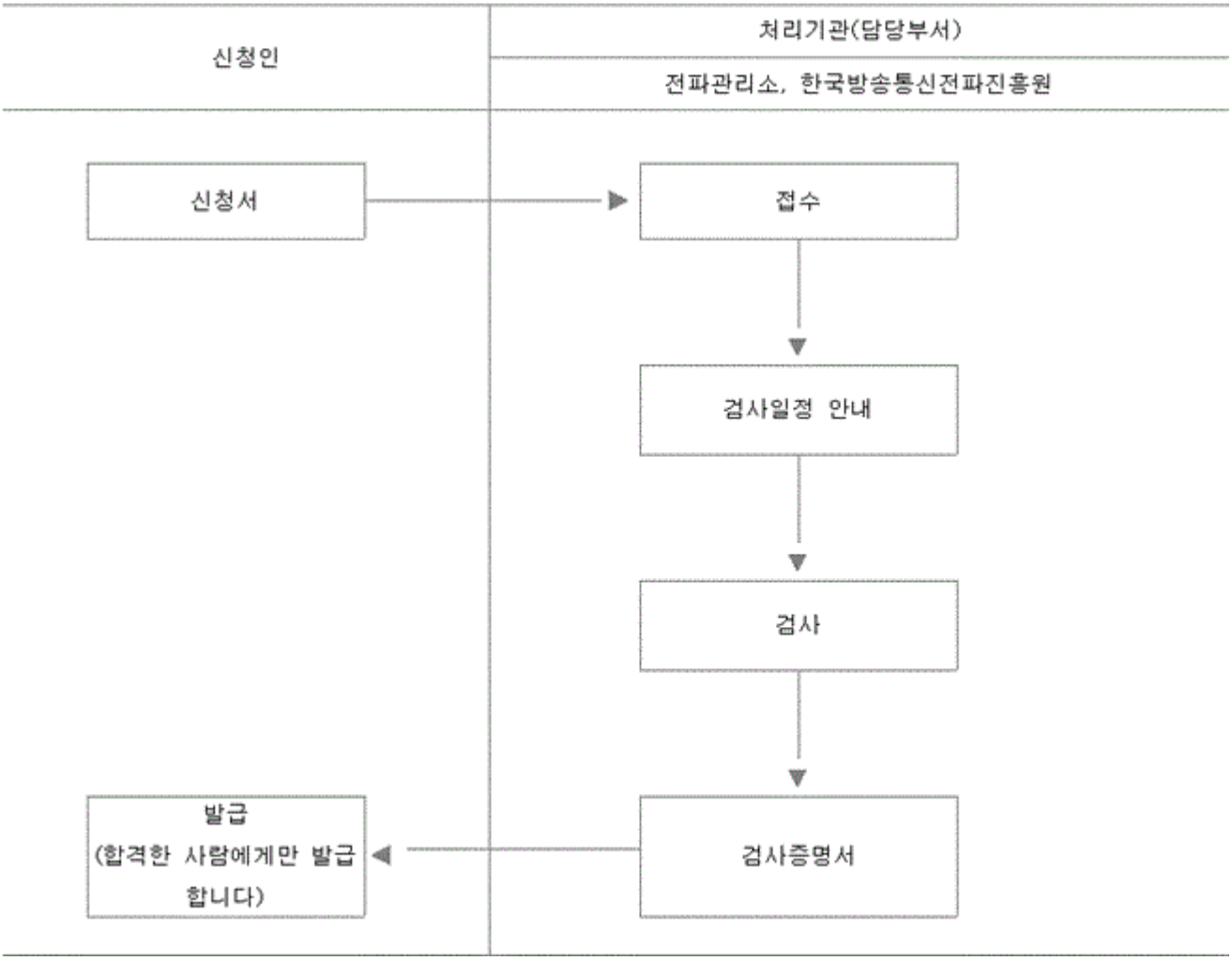
작성방법

용도지역: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서
접수
검사일정 안내
검사
검사증명서
발급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16. 7. 12.>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 검사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또는 호출부호			
검사일		다음 검사 예정시기	
검사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치사항 및 권고사항			

「전파법」 [ ]제24조제1항 / [ ]제24조제4항 / [ ]제24조제5항 / [ ]제24조제8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 ]준공(변경) / [ ]정기 / [ ]수시 / [ ]사용승인 운용 검사 결과

합격하였으므로 「전파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무선국 / [ ]전파응용설비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6. 7. 12.>

(앞쪽)

무선국 검사관증

사 진

3cm×4cm

(성 명)

( ) 전파관리소장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

(뒤쪽)

No:

CERTIFICATE OF INSPECTOR

(무선국 검사관증)

Organization(소속):

Name(성명):

Date of Birth(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파법 시행령」 제45조 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Director-General of ( ) Radio Management Office

President of Korea Communications Agency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4mm×86mm[PVC(비닐) 980.4g/m²]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선국 / [ ]전파응용설비 [ ]폐 지 / [ ]운용휴지 / [ ]재운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신고) 사항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지 또는 운용휴지	폐지 연월일 (휴지기간)		
		사유		
	재운용 개시일(재운용 신고 시에 작성합니다)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의 ([ ]폐지 [ ]운용휴지 [ ]재운용)를(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심사	→	대장 정리	→	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신설 2020. 12. 24.>

전파차단장치 ([ ]제조 [ ]수입 [ ]판매) 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연락처		

① 인가신청목적	
② 명칭	
③ 제조자명	
④ 수량	
⑤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전파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 ]제조 [ ]수입 [ ]판매)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관련 자료 3.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차단방법, 동작원리,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합니다) 4.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신청시 지참물 : 신청자(법인인 경우 담당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210㎜×297㎜[백상지 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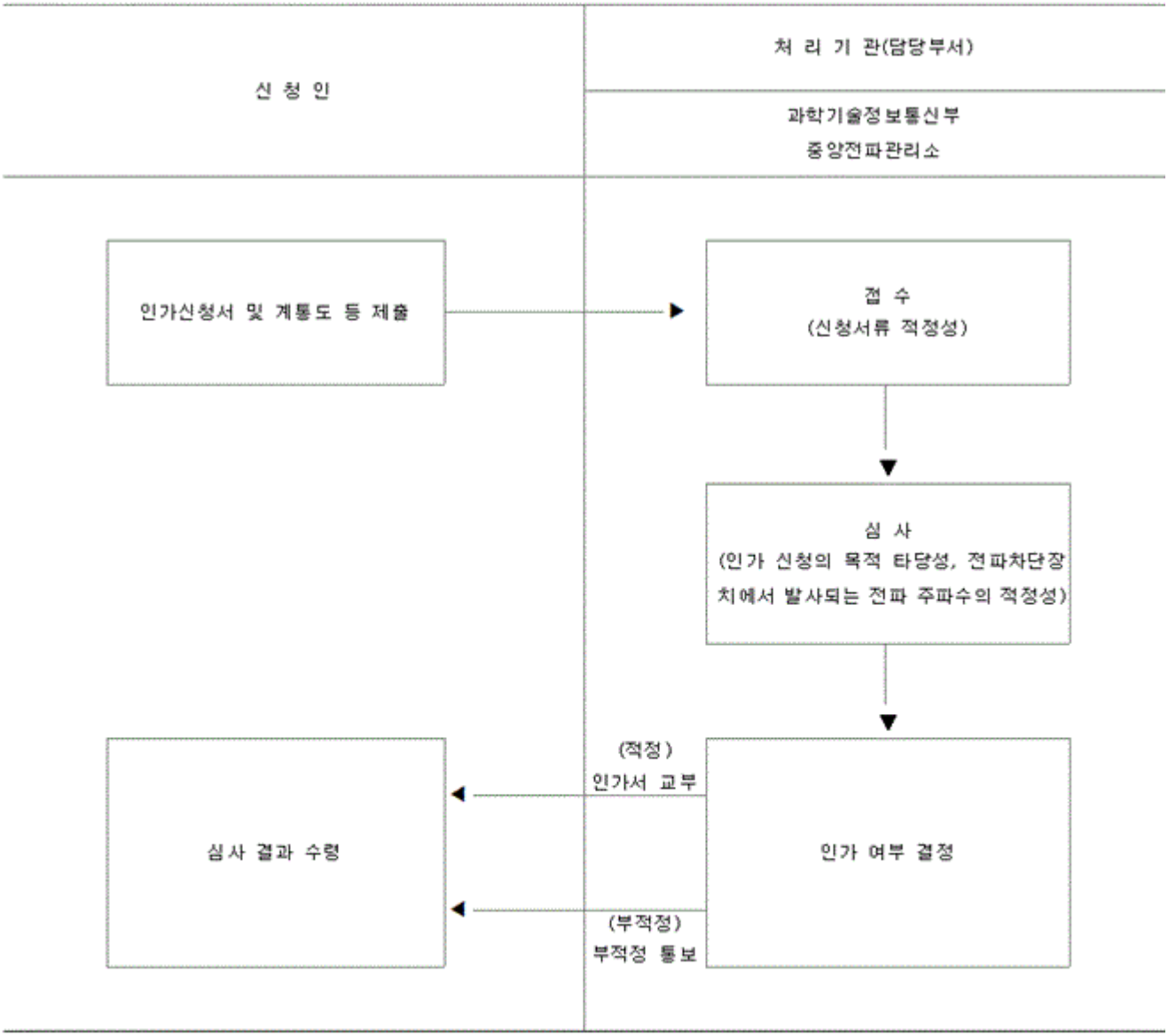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제①란 : 인가 신청 목적이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와 전파차단 대상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예시 :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를 위한 드론 대상 휴대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및 판매)
② 제②란 : 전파차단장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인가신청 전파차단장치가 다수일 경우 '①~⑤' 부분은 별지(양식 동일)로 제출합니다.
④ 동일한 전파차단장치라도 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요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위성망 운용개시 예정일	
위성궤도	[ ]정지궤도: 도 [ ]비정지궤도: 경사각 도
사용주파수 대역	
용도	
서비스 제공지역	

「전파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1부 2. 위성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요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국립전파연구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수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도·양수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양도·양수 예정일	주파수의 잔여 이용기간

「전파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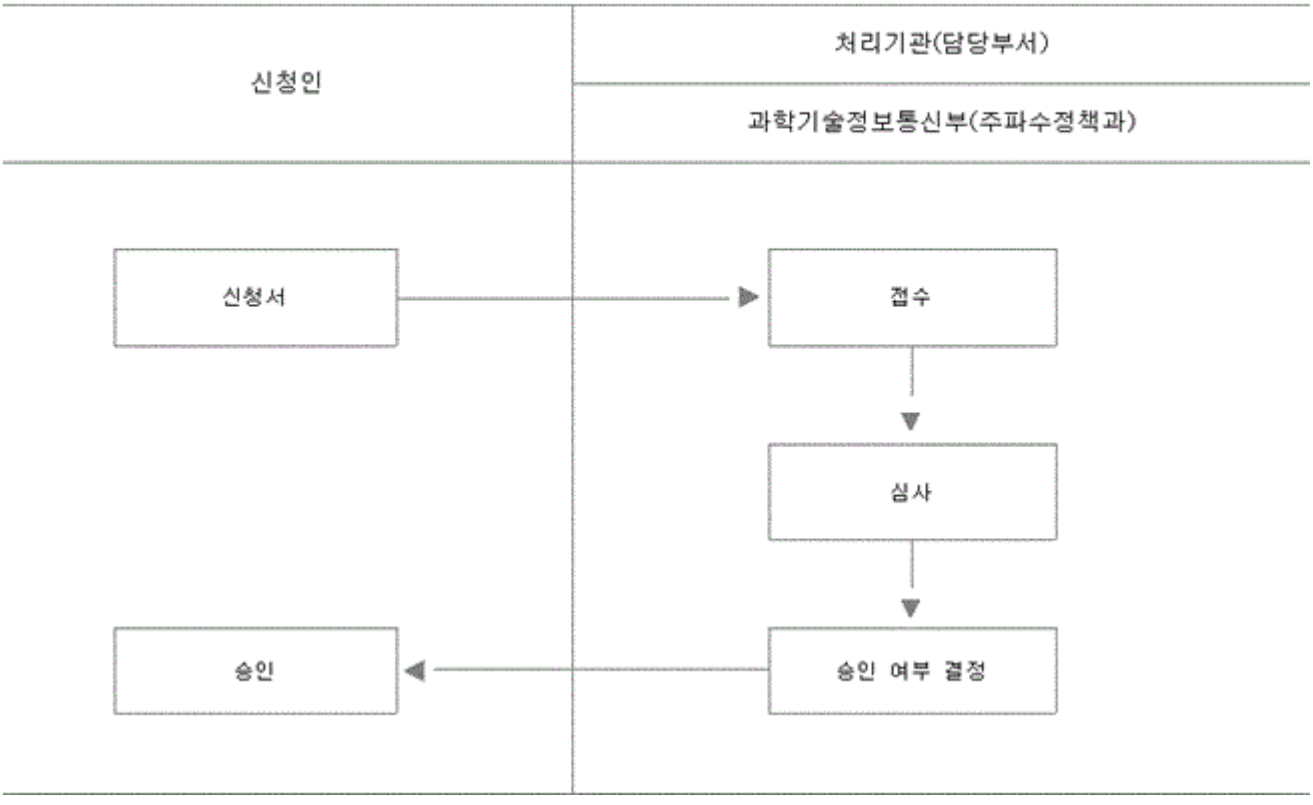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1부 6. 「전파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임대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차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대·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임대예정기간

「전파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임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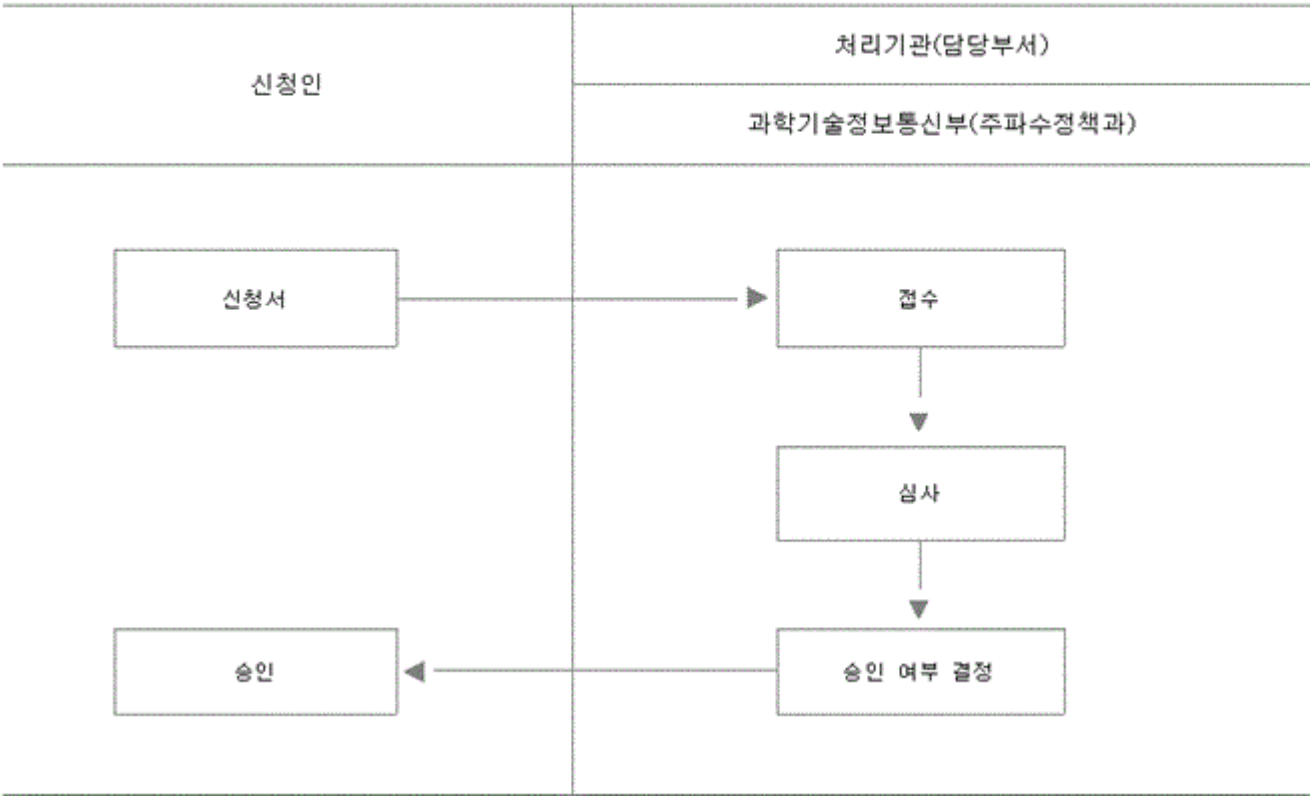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1부 6. 「전파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서

신청인	양도인	
	양수인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양도·양수일		
주파수의 잔여 이용기간		
승인조건		

「전파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 승인서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임대기간		
승인조건		

「전파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이용중단 사유				

이용 중단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이용 중단예정일

「전파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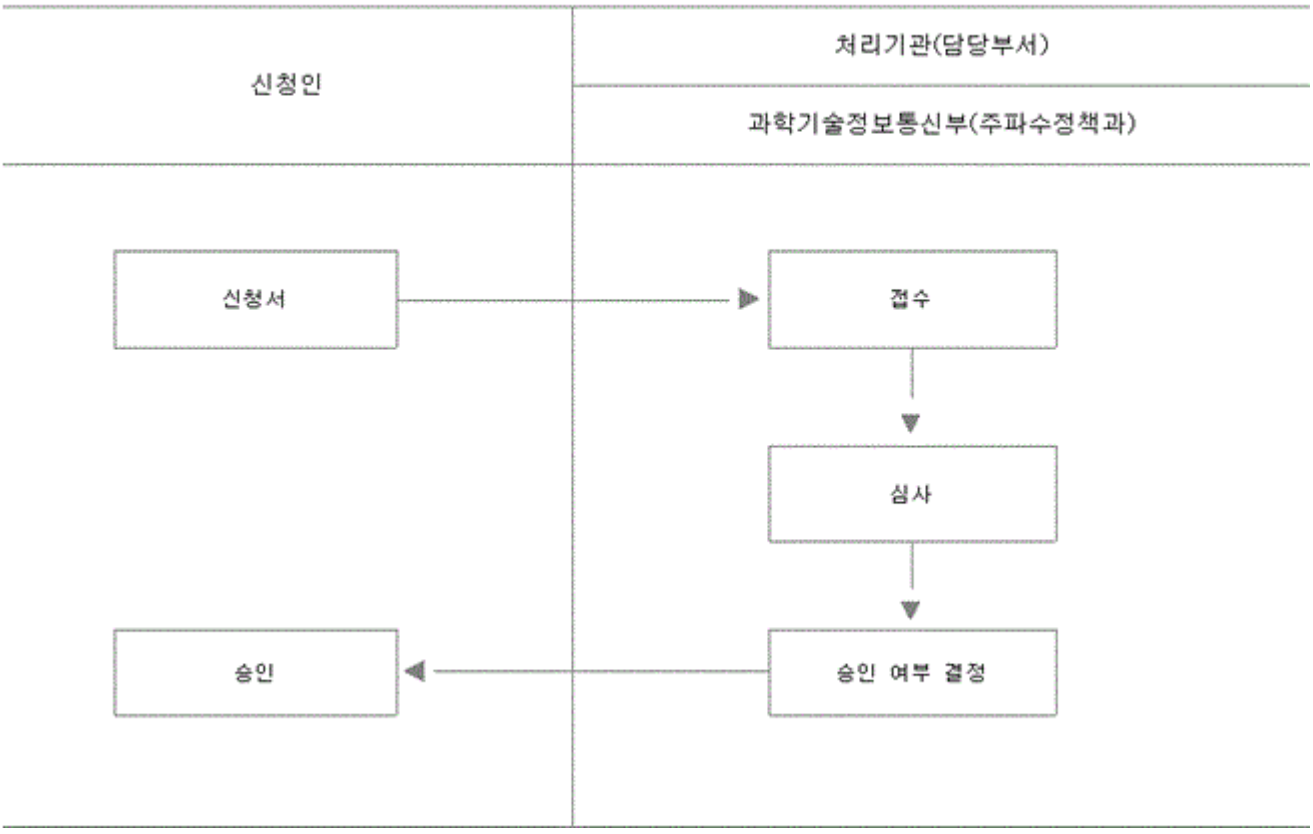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 1부 2.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 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7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

신청인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이용 중단일	
승인조건	

「전파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8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수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도·양수 관련 사항	허가번호	무선설비	양도·양수 예정일	허가 잔여 유효기간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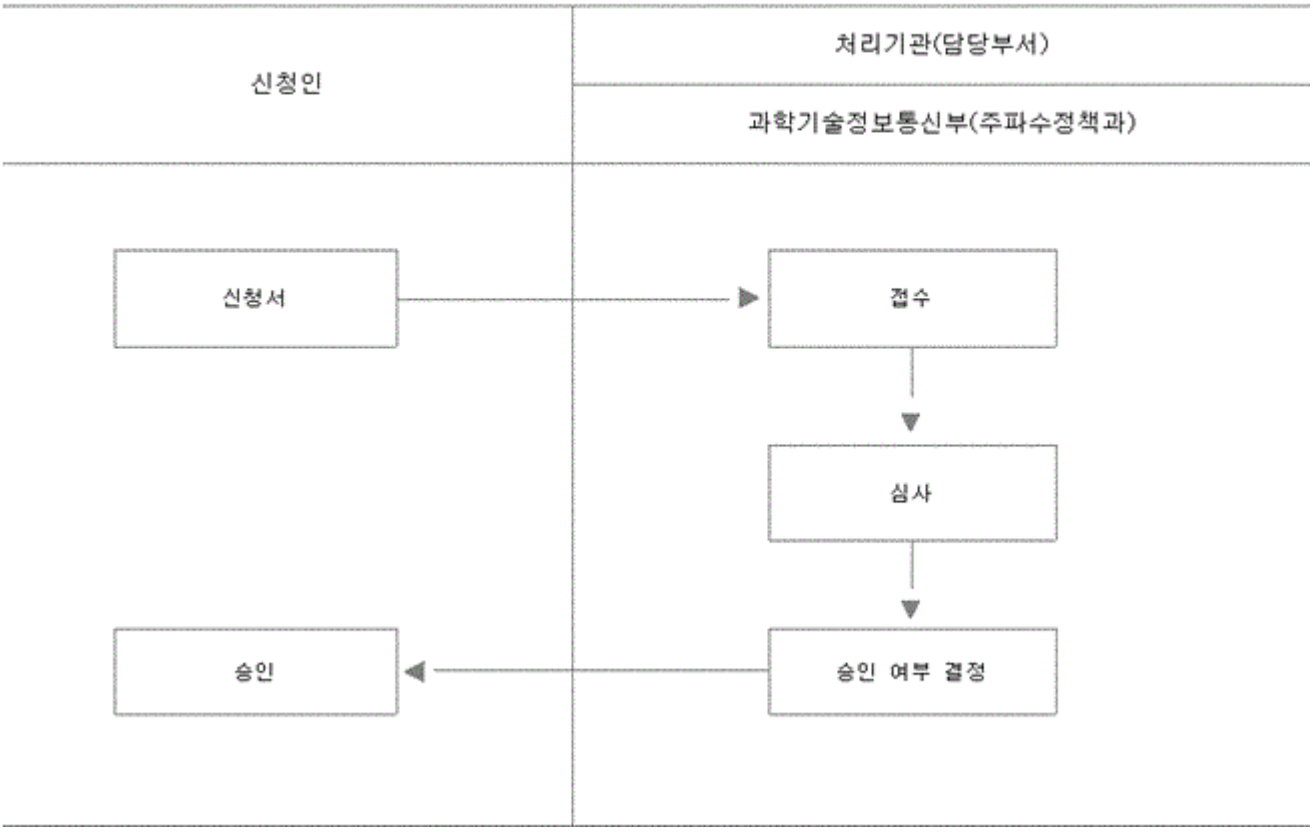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9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임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임대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차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대·임차 관련사항	허가번호	무선설비	임대예정기간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임차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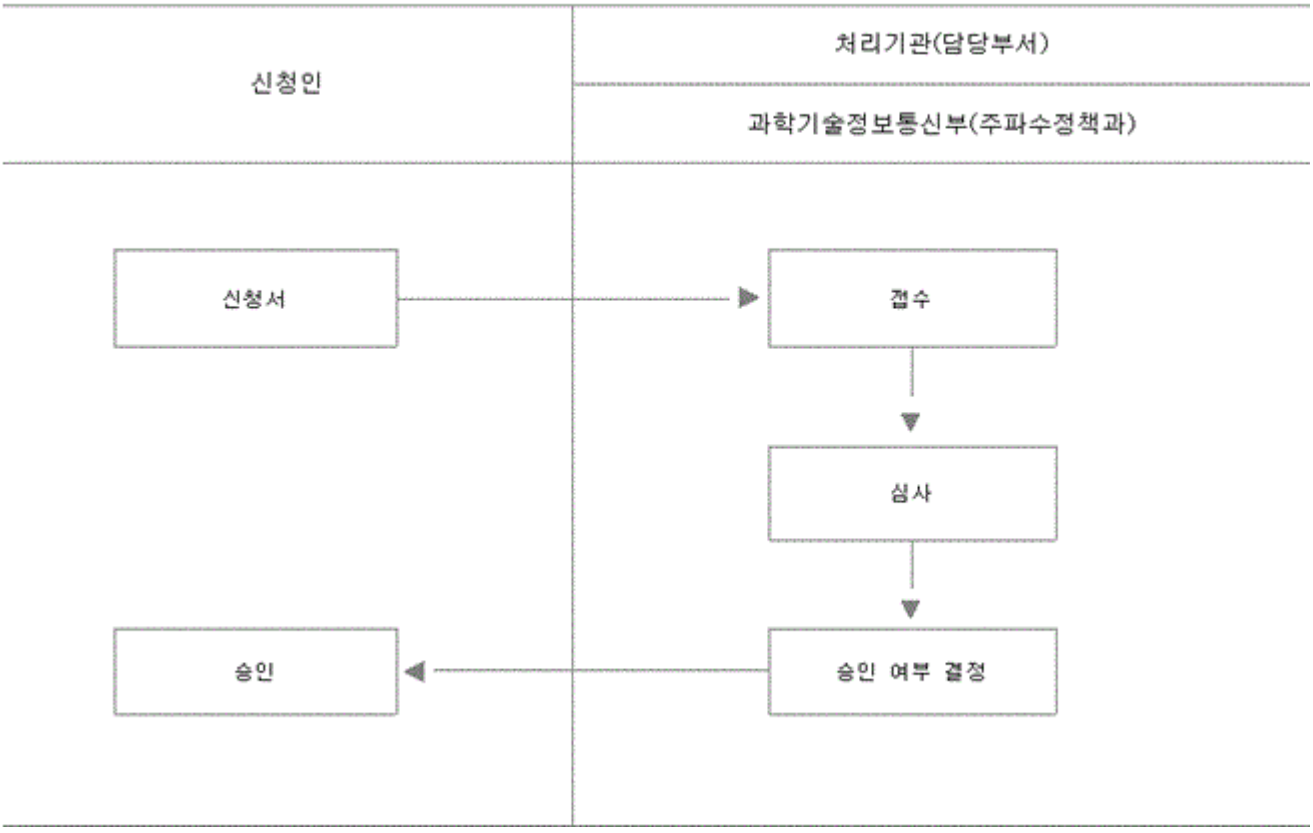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 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0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 ]위탁운용 / [ ]공동사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시설자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수탁운용/공동사용자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위탁운용/공동사용 관련사항	허가번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기간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 ]위탁운용 [ ]공동사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설자 (서명 또는 인)

수탁운용/공동사용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법인의 정관 1부 4. 법인의 주주 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5. 위성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심사 →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1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승인서

신청인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무선설비		
양도·양수일		
허가 잔여 유효기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운용목적		
승인조건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양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2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임차 승인서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허가번호		
무선설비		
임대기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운용목적		
승인조건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임차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3서식] <개정 2017. 7. 26.>

우주국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서

신청인	시설자	
	수탁운용/공동사용자	
허가번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기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사용 목적		
승인조건		

「전파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 ]위탁운용 [ ]공동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 297㎜[백상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일반사항	① 시설자명			
	②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③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		⑤ 주파수 대역	
	⑥ 무선국 주소			
	⑦ 설치장소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릅니다)	[ ] 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관리지역		

	⑧ 측정단위의 구분	⑨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⑩ 측정값	⑪ 노출지수
측정결과	[ ] 전력밀도(W/m^2) [ ] 전기장강도(V/m) [ ] 자기장강도(A/m)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기재요령

1. ④란: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적습니다.
2. ⑤란: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적습니다.
3. ⑨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습니다.
4. ⑩란: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
5. ⑪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2

※ 보고자 제출서류: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따른 전자파강도측정결과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5.9.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단,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요청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측정 희망지					
측정 희망일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요청인		처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자)	①법인명 (성명)		②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운용자 (임차인)	④법인명(성명)		⑤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⑦운용목적			

임대 사항	⑧무선설비 종별	⑨호출명칭	⑩허가(신고) 번호	⑪허가(신고 수리) 연월일	⑫임대대수	⑬운용기간

「전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 임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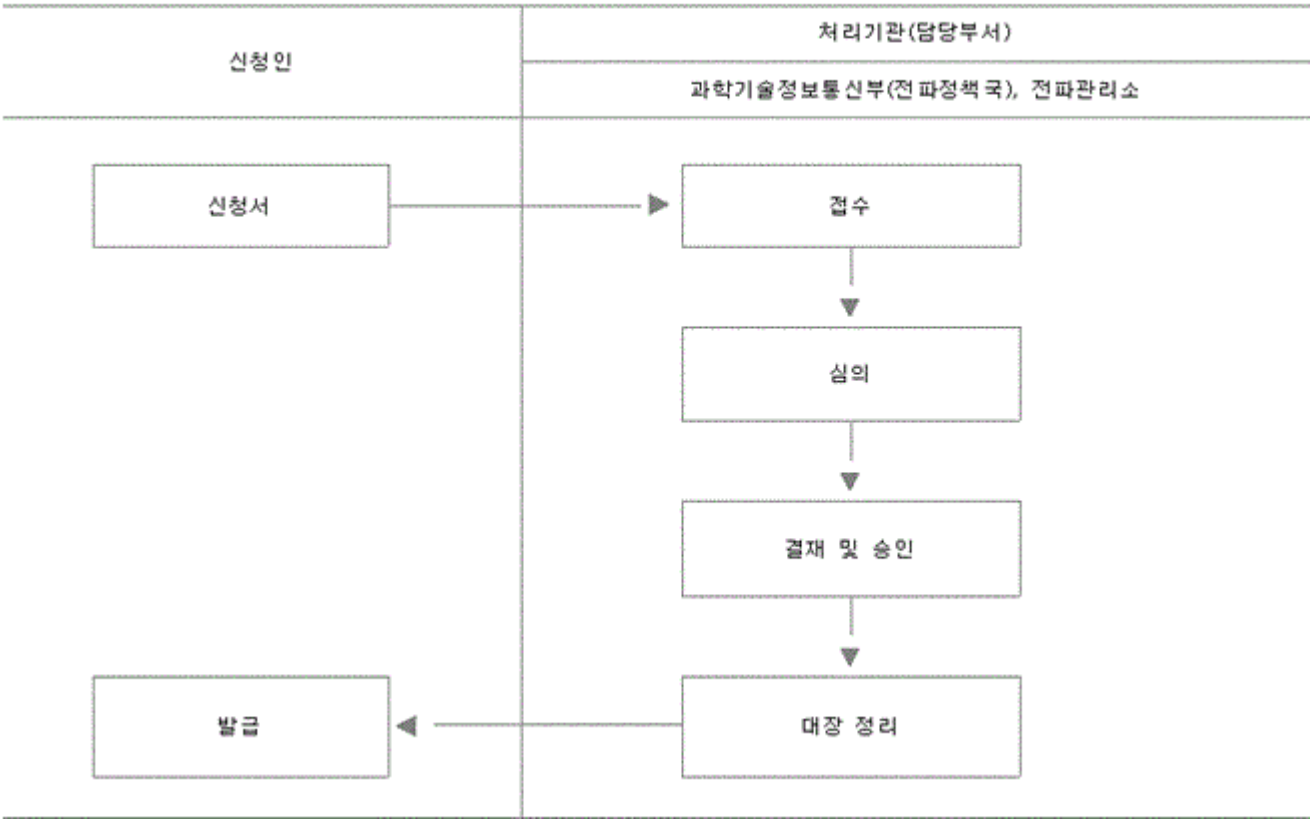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2. ④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3. ⑦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임대목적을 적습니다.
4. ⑧란: 임대대상 무선설비의 종별을 적습니다.
5. ⑨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호출명칭을 적습니다.
6. ⑩란: 임대하려는 무선설비의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⑪란: 허가일 또는 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8. ⑫란: 임대하려는 무선설비의 대수를 적습니다.
8. ⑬란: 임대하여 사용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7. 7. 26.>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사용자명	
무선설비 종별	
허가번호	
운용목적	
임대기간	

「전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직인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신청서

(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번호(신고번호)			호출명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 ]위탁운용 [ ]공동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및 승인	→	대장 정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7. 7. 26.>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 연월일	
시설자 (법인명 또는 성명)			
허가번호(신고번호)			
사용 목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공동 사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무선설비		

「전파법」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설비의 ([ ]위탁운용 [ ]공동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m²)]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공사의 종류				
부지의 위치 (지목, 토지번호)			건축물 등의 최고부의 지표고 및 해발고	
공사부문의 구조 및 주요 재질				
공사시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척 · 방위 · 높이 및 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조사관증

사 진

3cm×4cm

(성 명)

○○전파관리소장 인

(뒤쪽)

No:

조사관증

(CERTIFICATE OF INVESTIGATOR)

소속(Organization):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위 공무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Director-General of ○○ Radio Management Office)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4mm×86mm[PVC(비닐) 980.4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8. 9.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인명 (성명)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시설 개요서	④ 설치목적			⑤ 설비의 종류			
	⑥ 설치장소						
	⑦ 고주파 전류를 통하는 선로	전력선 반송	(1) 송전선명	(2) 구간	(3) 주요 선종	(4) 주파수	(5) 전압	(6) 선로의 길이
		유도식 반송	(7) 구간	(8) 주요 선종	(9) 선로의 길이	(10) 선로의 지표고	(11) 타용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1) 장치별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3) 고주파출력 (㎽, ㎾)	
	⑨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1. ④란: 사업상의 용도를 적습니다.

2. ⑤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또는 산업용, 의료용,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 등으로 적습니다.

3. ⑥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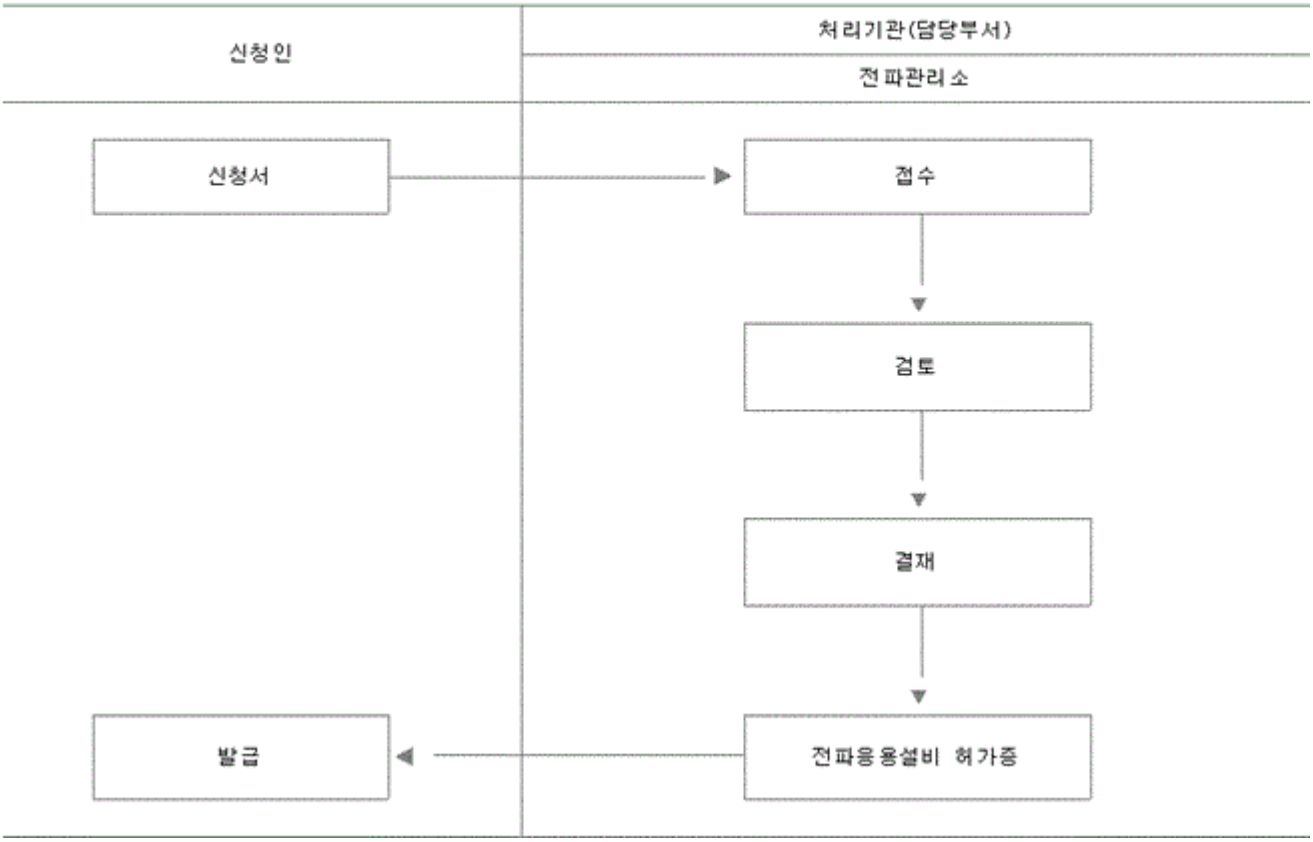
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단국과 중계국을 상치장소별로 적습니다.

제1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2장치(중계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3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주: 해당 통신계에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상치장소, 사용할 선로의 구간과 이동체의 종류(기관차, 자동차, 휴대용)를 적습니다.

나.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인 경우: 설치하려는 설비가 이동하는 것일 경우 이동체의 종류(자동장치, 휴대용)별 이동범위 및 상치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 사항	시설 종류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내역서	변경이유			
	구분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장치별
	운용목적			
	설치장소			
	기기(형식, 명칭 및 일련번호)			
	전파형식 및 주파수			
	고주파출력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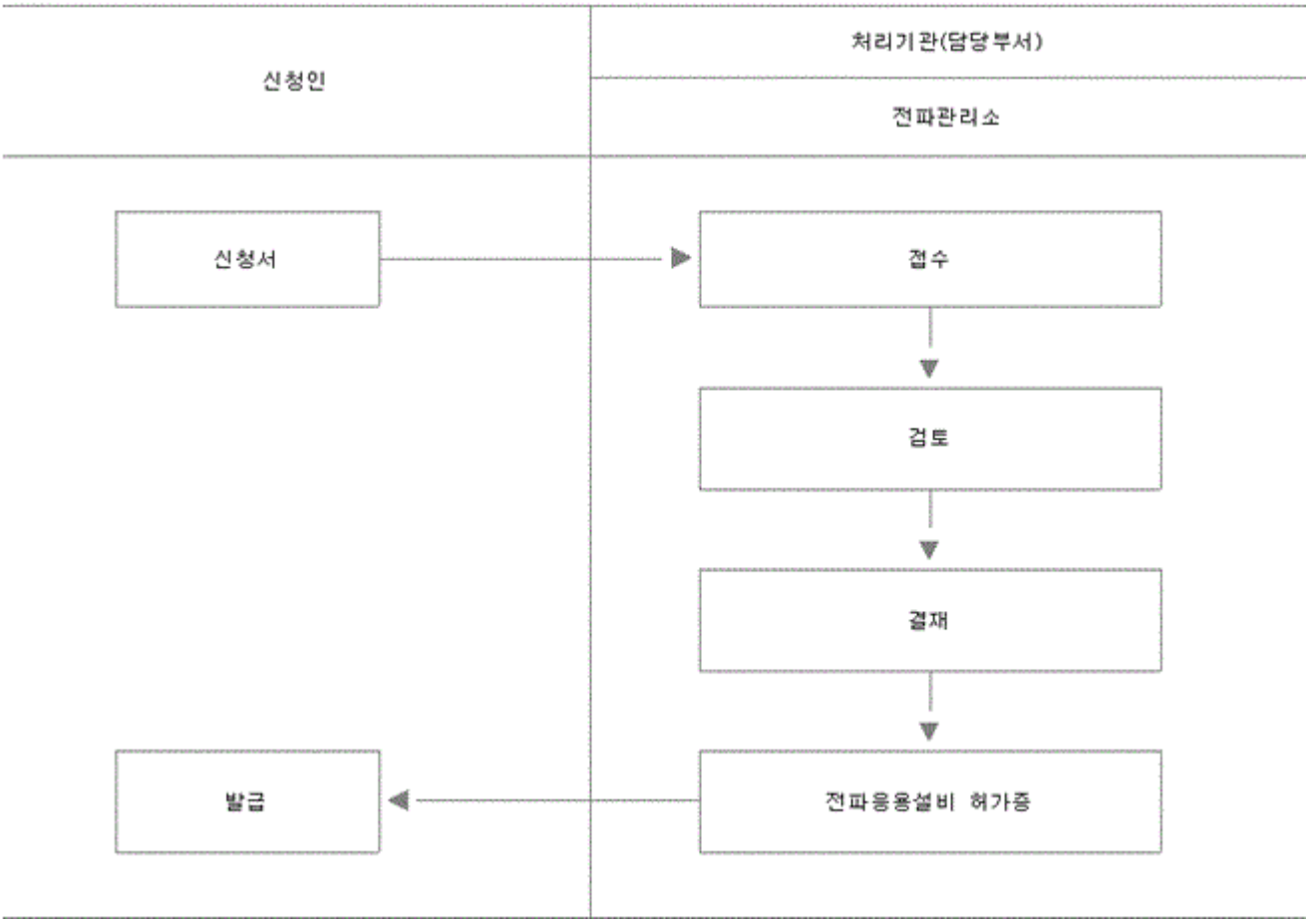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3. 1. 18.>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 송신장치

(1) 장치별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	
(3) 고주파출력 (W, kW)	
(4) 제조자명	
(5)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6) 접지방식	
(7) 보안장치 (통신용만 해당합니다)	
(8) 결합방식 (통신용만 해당합니다)	

2. 전원설비

(1) 구별	(2) 교류 및 직류의 구별	(3) 용량	(4) 전압	(5) 상수 및 주파수

(6) 차폐실의 유무 (산업용만 해당합니다)	
(7)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종류(산업용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제출도면	1. 송전선의 계통 및 경로도(전력선 반송설비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고주파 전류를 통하는 선로의 계통도(유도식 통신설비만 해당합니다) 1부 3. 차폐도 및 접지도(산업용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3. 1. 18.>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허가유효기간	
준공기한			
시설자명			
설치장소			
시설목적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			
고주파 출력 (W, ㎾)		접지방식	
차폐실 유무		건축물 종류	
고주파 전류를 통하는 전선로	길이(m)		
	송전압 또는 전선로 명칭		
부관(附款) 사항			

「전파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응용설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직인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설 2014.12.4.>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 ]인가신청서 [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신청인 (신고인) (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피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승계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전파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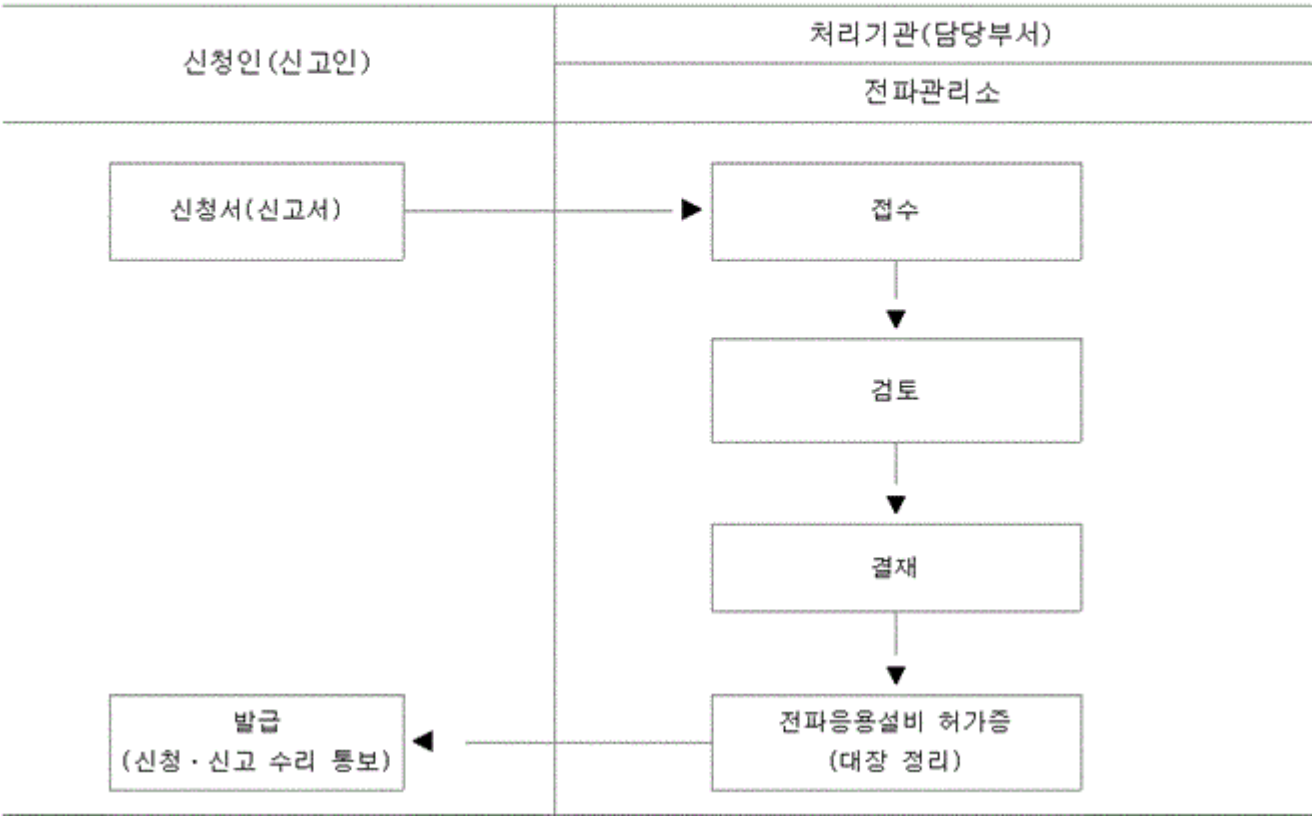
( )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000원 (허가증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대장 정리)
발급
(신청·신고 수리 통보)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전파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사용료의 일시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	→	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5.9.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www.cq.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 및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본인은 년도 제 회( ) 검정에 응시하고자 「전파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① 사진 (3.5cm×4.5cm)

② 수험번호	※	③ 응시자격		④ 응시지역	
⑤ 생년월일		⑥ 성명	한글	한자	
		⑦ 주소			

과목 또는 실기시험 면제신청(해당자만 적습니다)

⑧ 과목	1.	⑨ 경력	무선국 개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확인자	
	2.				⑪ 호출부호	
	3.		현재 자격		⑫ 자격증번호	

수 험 표

응시지역	
수험번호	
응시자격	

제 회 ( )검정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 수험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서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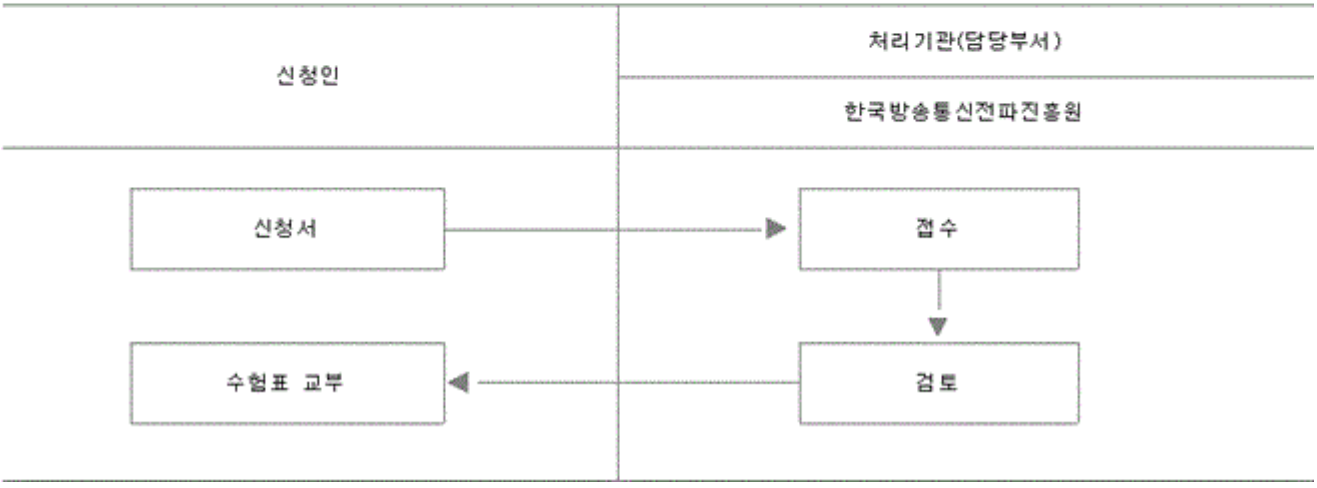
1. ①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규격의 동일 원판의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의 뒷면을 벗겨서 풀로 붙입니다.
2. ③란: 응시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3. ④란: 응시지역을 적습니다.
4. ⑤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차례로 적습니다.
5. ⑦란: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적고, 우편번호와 도로명·건물번호, 상세 주소까지 자세히 적습니다.
6. ⑧란: 과목면제 및 실기시험 면제 해당자만 적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⑨란: 무선국 개설 연월일부터 . . . 까지 적은 후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히 적어야 하며, 적은 사항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접수된 수험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15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 필기도구, 계산기 등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3. 부정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되며, 향후 일정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표는 기술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도 필요하므로 깨끗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는 증명사진 1장, 수수료, 수험표, 신분증(국가기관 발행)을 지참하고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장소 및 정확한 시험일시는 최소 시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곳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5.9.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www.cq.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자격종목 및 등급		응시지역	
합격 연월일		합격번호	

「전파법」 제7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의 사본(외국인만 해당합니다) 1부	「전파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7. 7. 26.>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는 금색

76㎜ × 115㎜ (표지: 백상지(200g/㎡)
내용: 백상지(120g/㎡))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RADIO OPERATOR'S LICENSE

기술 자격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자격증 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성명(국문):

생년월일:

사 진
(2.5㎝ × 3㎝)

위 사람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및 「전파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은 「전파법」 제7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 · 발급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1-

CERTIFICATE

NO.

Name:
Date of Birth:
Qualification:
Date of Issu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qualified for the Radio Operator under the Radio Wave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lso verified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Korea Communications Agency

-2-

면허

-3-

면허

-4-

변동사항

연월일	변동내용

-5-

유의사항

1. 이 자격증은 관계자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자격증은 무선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3. 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5. 자격이 취소·정지된 사람은 즉시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7. 7. 26.>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는 금색

76㎜ × 115㎜ (표지: 백상지(200g/㎡)
내용: 백상지(120g/㎡))

유의사항

1. 이 자격증은 관계자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2. 이 자격증은 무선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3. 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5. 자격이 취소·정지된 사람은 즉시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대 한 민 국

-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자격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성명(국문):
생년월일:

사 진
(2.5㎝× 3㎝)

위 사람은 「전파법」에 따라 기술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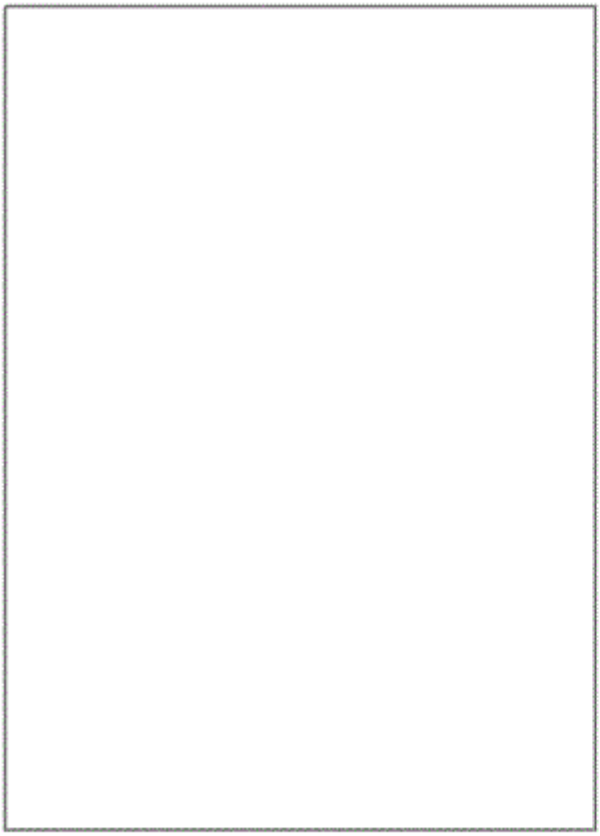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은 「전파법」 제7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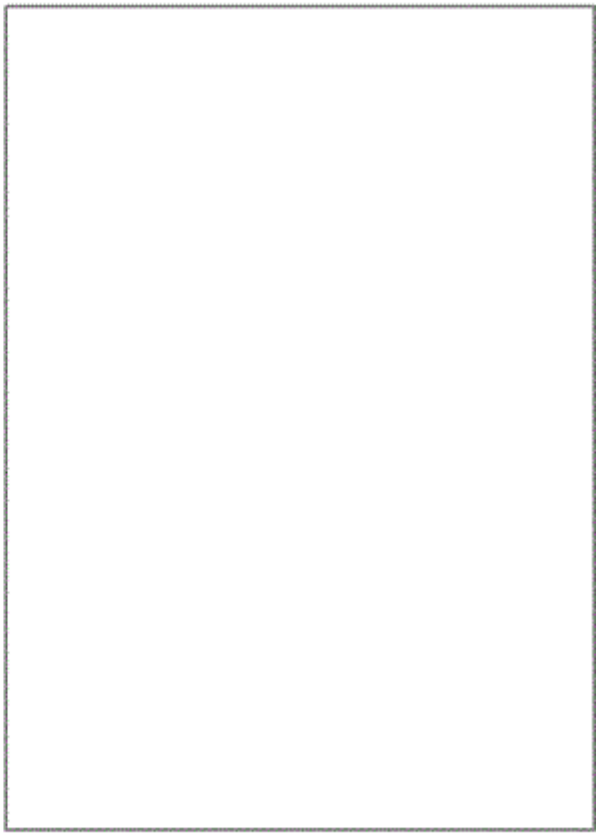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면허



-3-

면허



-4-

변동사항

연월일	변동내용

-5-

변동사항

연월일	변동내용

-6-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RADIO OPERATOR'S LICENSE

사 진 (2.5㎝×3㎝)	자격번호: 자격종목: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및 「전파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발급 연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은 전파법 제7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명)

85㎜×54㎜(경질염화비닐판 500g/㎡)

(뒤쪽)

CERTIFICATE

NO.

Name:
Date of Birth:
Qualification:
Date of Issu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qualified for the Radio Operator under the Radio Wave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lso verified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complemented to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사 진 (2.5㎝×3㎝)	자격번호: 자격종목: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파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발급 연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은 전파법 제7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 · 발급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85㎜×54㎜(경질염화비닐판 500g/㎡)

(뒤쪽)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5.9.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www.cq.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재발급 / [ ]정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자격증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분실 연월일	
신청사유				

「전파법 시행령」 제113조·제114조·제123조제3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 ]재발급 [ ]정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전파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및 검토 → 결재 →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7. 22.] [고시 제2024 - 3호, 2024. 7. 22.,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02 - 3400 - 2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변경·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검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7. "표본무선국"이란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
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
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서류검사"란 제2호에 따른 검사로서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사용승인무선국"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광중계기지국"이란 기지국의 변조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을 말한다.
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 - 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영에 따라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규정」제8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선박안전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4.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5. 「어선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
   나. 「어선설비기준」제172조, 제175조, 제188조, 제191조에 따라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제348조 및 제349조에 따른 무선설비
6.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
7.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 선박
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2.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또는 통합공공망용 육상국 및 이동중계국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 및 시설자는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장관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신고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 [별표1]와 성능검사 [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을 포함한 위험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종합시험)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만, 실용화시험국은 해당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절차 및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삭제
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 삭제

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조검사를 면제한다.

1. 안전시설
2. 보호장치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 전파의 형식 및 호출부호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 안테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5.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장소 상이로 부적합 시,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

⑧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서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드론·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 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대상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삭제
8.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장치가 운용휴지 상태인 경우 운용휴지기간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①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국
2. 해안국
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
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ㆍ대조검사 [별표1] 및 성능검사 [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

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조의2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 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 시 허가·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사용승인무선국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는 변경검사 시 허가·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에 따라 검사성적이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검사관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 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검사 공통적용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에 따른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변경·정기 및 수시검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및 항공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 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 의무설비가 성능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별번호(MMSI)가 허가증과 다른 경우
   다. 제1호에서 정한 설비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해당설비가 조난 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제26조제2항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에는 부적합 사유,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6개월 이내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증빙자료 등 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 또는 장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자가 제24조제5항에 의한 보완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재검사 기한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발급)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장 표본검사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 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설자는 표본검사 전에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허가정보(허가번호, 목적사항, 시설자명, 설치장소)를 기재한 표지를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 추출 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1주단위로 준공신고된 무선국 중 10%를 추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다만,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표본추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이 준공신고된 무선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에 대한 검사기간, 검사대상 수량과 검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 실시 전까지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①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
② 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비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 표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 시 표본검사대상무선국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을 검사당일에 시설자에게 공개한다. 단, 도서지역 및 출입허가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비표본무선국에 대해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전수검사) ①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 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수시검사

제33조(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무선국의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5조제5항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경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표본추출비율 10%를 제외한 20%에 검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실시한 전체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전수검사로 전환된 모집단의 불합격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구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에 따른 구간별 적용비율 >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	~3%	~6%	~9%	~12%	~15%
적용 비율	10%	20%	30%	40%	50%

③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추출은 비표본무선국에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다른 수시검사 대상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따른 무선국 및 혼신 파악 등을 위한 무선국은 수시검사지정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자에게 통보한 수시검사일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추출방법은 제29조제2항을, 무선국 공개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 - 6호,2011. 1.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1호,2012. 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4호,2012. 7.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5호,2014. 7.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6호,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7항 개정에 따른 사용승인 무선국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1호,2016. 6.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5호,2016. 11.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 1호,2018. 1.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 2호,2018. 8.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호,2019. 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2호,2019. 9.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0. 9. 2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2021. 6. 2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2022. 11. 1.>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호,2024. 1. 5.>

이 고시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호,2024. 5. 17.>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2024. 7. 22.>

이 고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 조 검 사

검사방법·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공통적용(무선국 한)	시설자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시설자가 동일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설치장소	1. 토지대장,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설치장소(안테나가 설치된 곳)가 동일한지를 확인 2. 송신안테나의 경도 및 위도의 좌표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실측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와 송신안테나의 좌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대조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기기형식·일련번호 및 전파형식·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공통적용(무선국 한)	안테나	안테나형식·구성·이득·복사방향·높이·길이·제조자·명칭과 급전선의 종류·길이 및 안테나 설치대의 종류·설치위치 등이 허가증 또는 공사설계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①방송국의 안테나형식·구성·이득·길이·높이·tilt 및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및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②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으로 안테나형식·구성·이득 및 지정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및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나)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설비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보호장치	전원회로에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 및 해안국	시험안테나 및 비상등	시험안테나 비치 및 비상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식별부호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이하 "위성 EPIRB"라 한다),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등의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MMSI)를 측정기 또는 자체 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유효기간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전지 유효기간, 위성 EPIRB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유효기간,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의 전지 유효기간을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교체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설치장소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설치장소, 위성 EPIRB 및 자동이탈장치 설치장소,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의 설치장소 확인	선박·항공기 조난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자위치 정보 등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에 선박의 위치(좌표) 및 시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지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방송국 및 무선표지국	원격제어 및 감시장치	허가신청서 등을 대조	적정하게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시험안테나	시험안테나 비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예비장치	예비장치 설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을 확인할 수 있는 ID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은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UHD는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가 해당 방송국과 일치하는지 확인	허가신청시 제출한 채널운용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항공기국	식별부호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의 식별부호를 측정기 또는 자체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비상국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우주국	설치장소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궤도의 유지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파발사 정지기능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전파발사 정지기능 유/무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공급전력 저하장치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유/무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지향 정밀도 (정지위성에 한함)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위성체의 송신안테나 지구방향 정밀도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구국	앙각	관제시스템 등에서 안테나의 앙각이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설치 여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조건으로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조건으로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심의 받은 사항 또는 설치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사용지역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이동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지역만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도·전파형식·주파수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안테나 형식·구성·이득이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한 무선국	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사용 중인 주파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광중계기지국은 사용 중인 주파수가 할당받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허가(신고)사항과 시설자를 대조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설치장소	허가(신고)사항과 동일여부를 토지 및 건물 등의 증빙서류와 대조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개별적용	전파응용설비	기기형식·일련번호 및 전파형식·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종단부진공관(또는 트랜지스터)	통신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종단부진공관(또는 트랜지스터)수량 및 명칭 등을 확인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별표 2]

성 능 검 사

검사방법 · 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공통적용(무선국 한)	1. 송신장치	(1) 고주파출력계, 주파수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을 송신기의 종단관과 급전선 사이(안테나 정합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의 후단, 외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 전단) 또는 측정용 단자(각각의 출력 신호를 개별 측정 또는 결합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연결하여 해당 검사항목을 측정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자체메타, 교신시험, 감시모니터,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동작여부를 확인	각 검사항목별로 기준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가.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단, 아마추어국은 허가 받은 주파수대역의 상한과 하한에서 측정)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주파수가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나. 점유주파수대역폭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통적용(무선국 한)	다. 불요발사의 허용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 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라.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및 실효복사전력(ERP)	(1)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설비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측정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안테나공급전력을 측정(필요시 무선설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2) 제1항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 동작상태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측정한 측정값과 다음의 환산기준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값이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통적용(무선국 한)		o 측정값의 환산기준 안테나공급전력 = 측정값 + 안테나 팩터 + 자유공간손실 + 측정손실 o 항목별 측정값 산출기준	

항 목	안테나의 임피던스		비 고
	50Ω	75Ω	
안테나 팩터	20log f(MHz)-Gi -29.78	20log f(MHz)-Gi -31.54	ITU권고 기준
자유 공간 손실	32.45+20log f(MHz)+20log d(km) 또는 92.45+20log f(GHz)+20log d(km)		〃
측정 손실	매칭패드(50Ω↔75Ω):5.72dB, 안입손실(안테나급전선형식 및 길이)		
전력 환산 방법	dBm값을 환산 : 전력(W)=10 (dBm-30/10) dBμV값을 dBm으로 변환 o 안테나 50Ω:dBm=dBμV-107, 75Ω:dBm=dBμV-108.75		측정한값 (dBm) 또는 (dBμV)을 W로 환산

※ f:측정주파수, Gi:안테나이득(dB), d: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간의 거리

(3) 허가증(신고증명서)에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또는 실효복사전력(ERP)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안테나공급전력에 안테나이득 및 급전선 등의 손실을 가감하고 그 값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공통적용(무선국 한)	마. 반송파 억압비(단측파대 무선설비에 한함)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반송파 억압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해상, 항공업무용 등 단측파대 무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바. 변조도 및 주파수편이	주파수편이계,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주파수의 변조도 또는 주파수편이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측정)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통적용(무선국 한함)	2. 수신장치 가. 수신설비의 부차적인 전파발사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전파발사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만, 송·수신 일체형 기기 및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설비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3. 종합시험	당해 무선국이 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선설비의 동작상태가 정상인지를 교신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운용 상태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 기능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 및 해안국	안테나공급 전력저하 장치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안테나공급전력을 측정하면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의 성능을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전환장치	지정된 시간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후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인지를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수신전용 장치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송신기에 부가되어야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경보자동전화장치, 경보자동전건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협대역인쇄전신장치 등)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 및 해안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위성EPIRB,선박자동식별장치 및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 레이다 등의 시험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항공기국 및 무선표지국	주파수 전환장치	지정된 시간 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 후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인지를 확인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수신전용 장치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항공기국 및 무선표지국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항공기용휴대무선설비, 거리측정장치, ATC트랜스폰더, 전파고도계 및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레이다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파응용설비	고주파출력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허가증에 기재된 고주파출력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허용편차(통신용)	주파수측정기 등으로 발진, 누설주파수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주파수대역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상한 및 하한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주파수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누설전계강도(통신용)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누설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주파수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전파응용설비	전계강도(통신용 이외)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고조파·저조파 및 기생발사의 강도(통신용)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고조파·저조파 및 기생발사의 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중파방송용·단파방송용)	변조직선성	변조주파수 1,000Hz를 10% 내지 80%까지 변조시킨 입력레벨(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과 출력레벨을 직선적으로 비례여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주파수특성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중파방송용·단파방송용)	종합왜율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대 잡음비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반송파의 진폭 변동율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 신호	출력단에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반송파 위상편이	출력단에 오실로스코프 등을 연결하여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중파방송용·단파방송용)	좌·우신호 분리도	우측(좌측) 입력단자를 종단시키고 좌측(우측) 입력단자에 100Hz 내지 7,500Hz 사이의 변조주파수로 40% 변조시켰을 경우의 출력레벨과 종단시킨 우측(좌측) 출력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좌·우신호 레벨차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출력단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레벨차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계강도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계강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전계강도를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전계강도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초단파방송용·동기FM방송용)	변조직선성	1,000Hz(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호는 오프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 편이	스테레오변조기의 좌우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키고 파이롯트 신호를 검파후 주파수편이계로 측정하여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주파수 특성	변조주파수를 1,000Hz 50%의 기준으로 하여 50Hz 내지 15,000Hz사이의 검파출력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Hz 내지 15,000Hz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 대 잡음비	1,000Hz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초단파방송용·동기FM방송용)	좌·우 분리도	(1) 스테레오변조기의 파이롯트신호의 변조도는 10%로하여 우측 입력단자는 종단시키고 좌측 입력단자에 50Hz 내지 15,000Hz 사이의 변조주파수를 100% 변조시켰을 경우의 출력레벨과 우측 출력레벨과의 비를 측정 (2) 부채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	스테레오 발생기의 입력단자에 입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pilot 신호를 on하고 스테레오 발생기의 출력단자 또는 검파기 출력단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초단파방송용·동기FM방송용)	실효복사전력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부반송파 기저대역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를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부반송파 주파수 편이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주반송파의 주파수 편이를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동기FM방송(보조)국간 중심주파수 차이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을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분석기로 중심주파수 측정(계측기에 GPS 동기 신호 입력)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동기FM방송(보조)국간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	(1)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을 1㎑ 100%(±75㎑) 변조신호 기준레벨로 최대주파수 편이 측정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원격제어장치로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및방송보조국(지상파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용)	대역외 발사	대역외 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스퓨리어스 발사	스퓨리어스 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가 첨두전력억압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변조오류율	변조오류율(MER)이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및방송보조국(지상파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용)	안테나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실효복사전력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비트수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를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의 형식	영상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과 색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 2 : 0 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비트율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비트율이 최대 19.4Mbps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보조데이터의 비트율	영상과 관련된 자막 데이터 등 영상 보조 데이터의 비트율이 최대 9,600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16비트 이상 24비트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부호화 목표비트율	음성신호의 부호화 비트율이 최대 512k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VSB 전송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비디오 파형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규격"의 규정에 의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대역외 발사강도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기준치)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 : -11.5(Δf+3.6)dB - 채널경계로부터 6㎒이상 : -110dB이하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6dB 이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기준치 : -104dBc/Hz@20㎑ 이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상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응답특성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실효복사 전력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효복사전력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실효복사전력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 응답특성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 1 dB 이내(RBW 30㎑)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대역외 발사강도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채널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 ±0.77MHz : -26dB . ±0.97MHz : -71dB . ±1.75MHz : -106dB (ITU-R 권고 BS.1660 채널마스크 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유효 전송속도	디지털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0.8Mbps 이상 1.7Mbps 이하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비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1) 전송주기가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PAT 500ms, PMT 500ms, PCR 100ms, OCR 700ms, CTS 700ms (2) 비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여부 확인 (기준치) - Pictur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num_slice_groups_minus1"의 값은 "0", "redundant_pic_cnt_present_flag"의 값은 "0" - Sequenc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pic_order_cnt_type"의 값은 "2", "num_ref_frames"의 값은 "3" (3) 오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여부 확인 (기준치) - AudioSpecificConfig( )에서 epConfig: 0 - GASpecificConfig( ) 에서 frameLengthFlag: 0, DependOnCoreCoder: 0 - bsac_header( )에서 sba_mode: 0 - general_header( ) 에서 ltp_data_present: 0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오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오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데이터 서비스의 신호형식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데이터 서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서비스방송 구성 채널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구성채널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보조국(초단파방송용·동기FM방송용)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를 1,000Hz 50%의 기준으로 하여 50Hz 내지 15,000Hz사이의 검파출력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변조직선성	1,000Hz(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호는 오프 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Hz 내지 15,000Hz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대 잡음비	1,000Hz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동기FM방송(보조)국간 중심주파수 차이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을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분석기로 중심주파수 측정(계측기에 GPS 동기 신호 입력)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동기FM방송(보조)국간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	(1) 동기방송망에 포함된 FM 방송(보조)국을 1kHz 100%(±75kHz) 변조신호 기준레벨로 최대주파수 편이 측정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원격제어장치로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보조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대역외 발사강도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기준치)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MHz : -11.5(Δf+3.6)dB - 채널경계로부터 6MHz이상 : -110dB이하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내 여부를 확인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6dB이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기준치 : -104dBc/Hz@20kHz이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보조국(디지털텔레비전방송용)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상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응답특성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단, 송신 출력, 안테나 이득, 형태 등 안테나 지향특성의 물리적 변경 요인이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아니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송보조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 응답특성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1dB 이내(RBW 30㎑)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대역외 발사강도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채널 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 ±0.77MHz : -26dB . ±0.97MHz : -71dB . ±1.75MHz : -106dB (ITU-R 권고 BS.1660 채널 마스크 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방송국(디지털위성방송용)	휘도신호와 색도신호의 비트수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를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 형식	압축된 색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과 색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 2 : 0 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비트율	프로그램 채널당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방송국(디지털위성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최대 24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오디오 신호의 최대비트율	압축된 음성신호의 비트율이 최대 1,066k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압축 알고리즘	압축된 음성신호의 알고리즘은 MPEG-Layer2 또는 Dolby Digital 또는 AAC, AAC Plus 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의 압축 알고리즘	압축된 영상신호의 압축알고리즘은 MPEG-2 SD급 일 경우 MainProfile@Main Level, MPEG-2 HD급 일 경우 MainProfile@HighLevel, MPEG-4(H.264) HD급 일 경우 High Profile@Level4 또는 Main Profile@Level4 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방송국(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영상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영상 엔코더 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오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MPEG-2 방식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MPEG-4 방식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방송국(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대역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A/D 변환 후 스피커를 통해서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	영상 신호분석기 등으로 영상 신호의 해상도가 320×240이상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중화 방식	MPEG신호 측정기로 다중화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필터의 롤-오프 계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방송보조국(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필터의 롤-오프 계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사용승인 무선국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당 무선국의 특성과 무선설비규칙 별표1의 주파수대와 무선국 종별을 고려하여 허용편차를 적용)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주파수가 허용편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공급전력	설비규칙 규정에 따라 안테나전력을 측정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필요시 무선설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통적용 무선국의 검사항목 중 라)항의 EIRP 및 ERP 측정방법을 적용)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안테나공급전력보다 20%를 초과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점유 주파수대역폭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불요발사의 허용치	사용승인서에 지정된 안테나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당 무선국의 특성과 무선설비규칙 별표4의 업무 또는 무선설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적용)	불요발사의 강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28㎓대역 이동통신 무선설비	총복사전력	(1) 통상 동작 상태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측정한 값(EIRP)을 다음의 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총복사전력(TRP)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빔고정(Beam Locking) 등 테스트모드(Test Mode)에서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측정한 값(EIRP)을 다음의 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총복사전력(TRP)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EIRP 측정값의 환산기준 > ○ 총 복사전력(TRP) = EIRP - 안테나 이득 = 안테나공급전력 - 손실 ※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 안테나공급전력 + 안테나 이득 - 손실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값이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허용편차	주파수 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주파수가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28㎓대역 이동통신 무선설비	점유주파수대역폭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인접채널 누설전력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측정)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불요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 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수신설비의 부차적인 전파발사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전파발사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재난망	(1) 해상망 단말기로 데이터통신 가능 여부 확인(해상망에서 상호운용성을 요청한 무선국에 한함) (2)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요청한 무선국 DU에 해상망 정보 입력 여부로 확인한다.	데이터통신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해상망	재난망 단말기로 통화 가능 여부 확인	통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철도망	(1) 재난망 단말기로 통화 가능 여부 확인	통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해상망 단말기로 데이터통신 가능 여부 확인(해상망에서 상호운용성을 요청한 무선국에 한함)	데이터통신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3) 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요청한 무선국 DU에 해상망 정보 입력 여부로 확인한다.	
			(4) 철도망(기간, 광역, 도시철도) 간에 음성, 데이터통신 가능 여부 확인(철도망 간 중첩되는 경우에 한함)	통화 및 데이터통신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별표 3]

기관별 관할구역(제5조 관련)

기관명칭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릉전파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전파관리소	전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위성전파감시센터	위성망 또는 위성망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무선국 소재 지역(영 제45조제5항2호, 3호에 한함)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성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무선국	성능성적표(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안테나공급전력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1면)	주파수편차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2면)	불요발사강도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3면)	안테나 Pattern 도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4면)
방송국	○	○	○	○
해안국	○	○	○	
의무선박국 (원양구역 항행 선박)	○	○		
의무항공기국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	○		

[별지 제1호 서식]

주파수측정표

□ 일반사항

시설자명	(전화 :)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공사업자	(인)	공사업등록번호	
측정연월일	. . .	측정기명	
측정자	(인)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측정사항

기기형식명	기기일련번호	지정주파수및 전파형식	허용편차	측정치	편차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

시설자명		(전화 :)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무선종사자배치일자		년 월 일
무선종사자	성명	
	자격종목및등급	
	등록번호	
	통신보안교육이수일자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재직증빙 서류 1부

[별지 제3호 서식]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일반사항

시 설 자 명	(전화 :)		
허 가 번 호			
시 설 자 주 소			

□ 선박사항

선 박 명			
선 박 번 호		총 톤 수	
허 가 번 호			
무선국명(선박명)			
호 출 부 호			
항 해 구 역		항해위치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성 명	자 격 종 별	자 격 번 호	배 치 일 자

□ 선박비치 측정기

장 비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제 조 사 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송신장치 측정부분 제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무선종사자 선원수첩 사본 1부 4. 선박 입·출항 확인서 1부 5. 위임장(대리 제출할 경우)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 전 지 □ 자동이탈장치	교체증명서	
시 설 자 명	(전화 :)		
허 가 번 호			
무 선 국 명			
호출명칭(부호)			
기 기 형 식 명			
기 기 일 련 번 호		MMSI NO	
교 체 일 자	. . .	유효기간	. . .
공 사 업 자 (전화:)	공 사 업 체 명		
	공 사 업 등 록 번 호		
	교 체 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전지·자동이탈장치를 교체한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교체확인 증명자료 1부.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시설설치확인서

시설자명		(전화 :)
허가번호		
무선국명		
설치장소		
낙뢰보호장치 설치여부		
접지장치 설치여부		
공사업자 (전화 :)	공사업체명	
	공사업등록번호	
	설치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안전시설설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낙뢰보호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2. 접지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별지 제6호 서식]

무선국 성능성적서

□ 일반사항

시 설 자 명	(전화 :)
허 가 번 호	
무 선 국 설 치 장 소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성 명	자 격 종 별	자 격 등 록 번 호	배 치 일 자	측 정 일 자
(인)				

□ 사용 측정기 내역

장 비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제 조 사 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성능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제6호 서식의 별지 서식)

[별지 제6호의2 서식]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

1. 대조부문

장치 번호	장치종별	기기명칭	기기일련번호	안테나 형식 및 구성

2. 성능부문

가. 송신장치측정

측정항목 / 장치별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불요발사	주파수대역폭	반송파억압비	변조도및편이	수신장치	종합시험
	지정주파수	편차	지정출력	편차	측정치	측정치	적부	적부	적부	

나. 원양선박 자체검사

기 기 내 역		구 분			비 고
장치 번호	장치종별	측정항목	성 능 (양호/불량)	통신상대방 (호출부호)	
	MF/HF(NBDP, DSC,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화장치)	동작상태			
	VHF(DSC)-1				
	VHF(DSC)-2				
	Two Way-1				
	Two Way-2				
	Two Way-3				
	위성 EPIRB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이탈기유효기간	년 월		
	SART-1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SART-2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AIS	동작상태			
	NAVTEX				
	RADAR-1			자체시험	
	RADAR-2				
MMSI. NO.		측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인쇄장치가 없는 경우는 사진 첨부)

1. MF/HF 자가진단 및 DSC 교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2. NAVTEX 자가진단 및 수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무선국운용결과서

□ 우주국 □ 선박지구국 □ 항공기지구국

시설자명		(전화 :)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설치장소		
기기제원	기기형식	
	일련번호	
	제조사	
무선종사자	성명	(인)
	자격종목및등급	
	동록번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위성중계기 성능점검 결과서 1부(우주국에 한함)
2. 기기 자체의 자기진단(Self Test), 통화내역(최근 일자 기재), 송수신 전문(최근 일자 기재) 중 사본 1부(선박지구국에 한함)
3. 통화내역서(최근 일자 기재) 사본 1부(항공기지구국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무선국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파법규 위반사항 및 내역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역(요약)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본인 진술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무선국 검사 보고서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사항

허 가 번 호		무선국종			
시 설 자 명		입 회 자			
시 설 자 주 소					
설(상)치장소					
송신안테나 좌표	동경 : 도 분 초, 북위 : 도 분 초				
무 선 국 명		호출부호(명칭)			
검 사 종 별		검사일자		판정	합 격 □ 불합격 □
검 사 수 수 료	원	비 고			

2. 검사결과

구 분	내 용	적	부	비 고
대 조 검 사	시설자, 설치장소,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등			
성 능 검 사	송 · 수신장치, 종합시험 등			

3. 무선종사자

지정자격 및 정원	무선종사자명/등록번호	통신보안교육	적	부	비 고

4. 종합평가(변경검사의 내용,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

[별지 제9호의2 서식]

제 호

무선국 검사 보고서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사항

승인번호		유효기간	
사용기관		입 회 자	
주 소			
용 도			
사용지역			
검사일자		판 정	합 격 □ 불합격 □
비 고			

2. 검사결과

구 분	내 용	적	부	비 고
대 조 검 사	사용기관, 용도, 사용지역, 안테나 형식 등			
성 능 검 사	출력, 대역폭, 종합시험 등			

3. 종합평가(승인 조건,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사자 직·성명 : ○○○○○○○

[별지 제9호의3 서식]

무선국 검사 내역서

○ 측정장비

장비명	모델명	일련번호	측정범위	비 고
예) 스펙트럼분석기	ESPI7		9㎑ ~ 7㎓	

○ 검사내역

송신장치								수신장치	검사결과	비고
구분	공급전력	불요발사	허용편차	대역폭	반송파억압비	변조도 및 편이	인접채널누설전력	부차적전파발사		
기준										
측정										

[별지 제10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조치 확인서</td></tr>
<tr><td colspan="2">시 설 자 명</td><td colspan="3">(전화 :)</td></tr>
<tr><td colspan="2">허 가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무 선 국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호 출 명 칭 (부 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설 치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위치 및 시간 정보</td><td>구 분</td><td>위치(위경도) 정보</td><td colspan="2">시간 정보</td></tr>
<tr><td>확 인 값</td><td>위도(° ′ ″)
경도(° ′ ″)</td><td colspan="2">오전 □ / 오후 □
:</td></tr>
<tr><td colspan="2">조 치 일 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 colspan="2">공 사 업 자
(전화:)</td><td>공 사 업 체 명</td><td colspan="2">(인)</td></tr>
<tr><td>공사업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조 치 자</td><td colspan="2">(인)</td></tr>
<tr><td colspan="5">「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5">※ 첨부서류 : 위치 및 시간정보 연동 증빙자료(사진 등) 1부.</td></tr>
</table>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 - 202 - 4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5. “주파수 허용편차”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이하 “Hz”로 한다)로 표시한다.
6.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필요주파수대역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8.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 발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 “스퓨리어스 발사”(Spurious 發射)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는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10. “불요발사”(不要發射)란 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말한다.
11. “대역외영역”이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2. “스퓨리어스 영역”이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 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3. “규격전력”이란 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4. “라디오 부표”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15. “급전선”(給電線)이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 경우 “수신장치”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로서 수신안테나와 급전선을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6. “첨두포락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X로 표시한다.
17. “평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Y로 표시한다.
18. “반송파전력”이란 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Z로 표시한다.
19. “안테나이득”이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안테나와 손실이 없는 기준안테나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로 표시한다.
20. “등가등방복사전력”이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等方性) 안테나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의 안테나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21.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22. “정격전압”이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표준방식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방식
2. 변조주파수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 및 전송방식
2. 압축방식
   가. 영상신호
   나. 음성신호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제7조(협대역·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7. 26., 2022. 1. 4.>

1. 500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 부표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송신설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2. 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14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 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행 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작동시킬 것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동 발전기, 원동 발전기, 무정전 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

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부칙 <제78호,2016.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부칙 <제86호,2022. 1. 4.>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4>

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주파수대	무선국 및 무선설비	허용편차 (Hz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백만분율)
9㎑ 초과 535㎑ 이하	1. 고정국	
	가. 9㎑ 초과 50㎑ 이하의 무선설비	100
	나. 50㎑ 초과 535㎑ 이하의 무선설비	50
	2. 해안국	100 1),2)
	3. 항공국	100
	4. 선박국	200 2),3)
	5. 선박의 비상 송신설비	500 4)
	6. 구명부기국	500
	7. 항공기국	100
	8. 무선측위국	100
	9. 표준주파수국	0.005
	10. 방송국	10Hz
535㎑ 초과 1,606.5㎑ 이하	방송국	10Hz
1606.5㎑ 초과 4,000㎑ 이하	1. 고정국 및 육상국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 1),2),5),6),7),8)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50 1),2),5),6),7),8)
	2. 선박국	40Hz 2),3),9)
	3. 육상이동국	50 10)
	4. 항공기국	100 8)
	5. 구명부기국	100
	6. 무선측위국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11)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 11)
	7. 방송국	10Hz 12)
	8. 표준주파수국	0.005
	9. 아마추어국	500
4㎒ 초과 29.7㎒ 이하	1. 고정국	
	가. 단측파대 및 독립측파대 발사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0Hz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0Hz
	나. 전파형식 F1B의 발사	10Hz
	다. 그 밖의 전파형식의 발사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
	2. 육상국	
	가. 해안국	20Hz 1),2),13)
	나. 항공국 및 그 밖의 무선국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 5),8)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50 5),8)

	다. 기지국	20 [5]
	3. 이동국	
	가. 구명부기국	50
	나. 선박국	
	1) 전파형식 A1A의 발사	10
	2) 그 밖의 전파형식 발사	50Hz [2),3),14)]
	다. 항공기국	100 [8)]
	라. 그 밖의 무선국	40 [15)]
	4. 방송국	10Hz [12)]
	5. 표준주파수국	0.005
	6. 아마추어국	500
	7. 간이무선국	50
	8. 라디오 부표국	50
	9. 우주국	20
	10. 지구국	20
29.7㎒ 초과 100㎒ 이하	1. 고정국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0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0
	2. 육상국	20
	3. 이동국	20 [16)]
	4. 무선측위국	50
	5.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1
	나. 그 밖의 방송국	2,000Hz [17)]
	6. 표준주파수국	0.005
	7. 아마추어국	500
	8. 간이무선국	50
	9. 우주국	20
	10. 지구국	20
100㎒ 초과 470㎒ 이하	1. 고정국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6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18),19)]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18),19)]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18)]
	2)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
	2. 해안국	10
	3. 항공국	20 [20)]
	4. 기지국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6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	7 [21)]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5. 선박국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	
	가. 156㎒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0
	나. 156㎒ 이하 또는 174㎒ 초과의 무선설비	50 [22]
	6. 항공기국	30 [20]
	7. 육상이동국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6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	7 [21],[23]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8. 무선측위국	500 [24]
	9.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1
	나. 그 밖의 방송국	2,000Hz [17]
	10. 표준주파수국	0.005
	11. 간이무선국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6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20
	12. 아마추어국	
	가. 1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0
	나. 1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500
	13. 우주국	20
	14. 지구국	20
	15. 특정소출력무선국	7 [25]
470㎒ 초과 2,450㎒ 이하	1. 고정국	
	가. 100와트 이하의 것	100
	나. 100와트 초과의 것	50
	2. 육상국	20
	3. 이동국	20
	4. 무선측위국	500 [24]
	5. 아마추어국	500
	6.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1
	나. 그 밖의 방송국	100
	7. 우주국	20
	8. 지구국	20
2,450㎒ 초과	1. 고정국	
	가. 100와트 이하의 것	200
	나. 100와트 초과의 것	50

10.5GHz 이하	2. 육상국 3. 이동국 4. 무선측위국 5. 아마추어국 6. 우주국 7. 지구국	100 100 1,250 [24)] 500 50 50
10.5GHz 초과 40GHz 이하	1. 고정국 2. 무선측위국 3. 방송국 4. 우주국 5. 지구국	300 5,000 [24)] 100 100 100

※ 비고

1. 표 중 Hz는 전파의 주파수단위로 1초간의 사이클을, 와트 및 킬로와트는 안테나공급전력의 크기와 단위를 말한다.
2. 표 중 안테나공급전력은 단측파대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첨두포락선전력(PX)으로, 그 밖의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균전력(PY)으로 한다.
3. 동일한 송신장치 및 동일한 주파수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편차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

1) 해안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Phase Shift Keying)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Hz
  ※ "위상 편이 방식"이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 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15Hz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Hz
2)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디지털선택호출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Hz로 한다.
3) 선박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Hz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40Hz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Hz
4) 선박의 비상송신설비가 주설비의 송신설비에 대한 예비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상송신설비에 대하여 선박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해안국 및 항공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Hz로

한다.

6)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Hz로 한다.

7) 해안국의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Hz로 한다.

8)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대역과 4㎒ 초과 29.7㎒ 이하의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이동(R)업무용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국: 10Hz

나) 국제업무를 하는 항공기국: 20Hz

다)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항공기국: 50Hz(가능하면 20Hz)

9)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0) 단측파대무선전화의 송신설비 또는 주파수 편이 방식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Hz로 한다.

11) 1,606.5㎑ 초과 1,8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표지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2) 반송파 전력이 10㎾ 이하이고 A3E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4㎒ 초과 5.95㎒ 이하의 무선설비: 15(10^{-6})

다) 5.95㎒ 초과 29.7㎒ 이하의 무선설비: 10(10^{-6})

13)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10^{-6})으로 한다.

14) 연안 또는 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선박국 송신설비로 반송파전력(PZ)이 5와트 이하이고 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의 F3E와 G3E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운용하는 첨두포락선전력(PX)이 1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 편차는 이 표에서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Hz로 한다.

16)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에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7) 108㎒ 이하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평균전력(PY) 50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00Hz로 한다.

18) 직접 주파수 변환을 사용하는 다단무선중계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10^{-6})으로 한다.

19)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10^{-6})

20) 채널 간격이 50㎑인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21) 채널간격이 2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2) 선상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10^{-6})으로 한다.

23)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5(10^{-6})으로 한다.

24)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은 레이다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발사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해당 업무에 분배된 대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주파수 허용편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25) 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0(10^{-6})으로 한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2]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

전 파 형 식	무선설비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A1A A1B	1. 1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50Hz
	2.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500Hz
A2A A2B	1. 75㎒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의 무선설비	6.5㎑
	2. 400.15㎒ 이상 406㎒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1㎒
	3. 1,668.4㎒ 이상 1,700㎒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6㎒
	4.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000Hz를 초과하여 2,200Hz 이하의 변조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5㎑
	5.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생존정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2.5㎑
H2A H2B	1.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000Hz를 초과하여 2,200Hz 이하의 변조주파수로 사용하는 것	3㎑
	2.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1.5㎑
A3E	1.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중통신무선국의 무선설비	8㎑
	2. 방송국과 방송중계(일반 대중에게 직접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중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무선설비	10㎑
	3. 스테레오포닉 방송[1]을 하는 방송국과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설비	15㎑
	4.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6㎑
R3E H3E J3E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	3㎑
C3F C9F F3E F8E G3E C2W C7W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

G7W		
F1D F1E F7D F7E	29.7㎒ 이상 50㎒ 이하, 72㎒ 이상, 76㎒ 이하, 138㎒ 이상 174㎒ 이하, 216㎒ 이상 223㎒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4㎑
	138㎒ 이상 174㎒ 이하, 216㎒ 이상 223㎒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8.5㎑
F1A F1B F1D G1A G1B G1D	1. 선박국 및 해안국의 무선설비로서 디지털선택호출·협대역직접인쇄전신·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에 사용하는 것	0.5㎑
	2. 1,644.3㎒ 이상 1,646.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0.6㎑
	3. 산란파에 따라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	2㎑
	4. 138㎒ 이상 174㎒ 이하, 216㎒ 이상 223㎒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 457.5㎒ 이상 467.6㎒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8.5㎑
	5. 2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	16㎑
	6. 406.0㎒ 이상 406.1㎒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0㎑
	7.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3㎑
F2A F2B F2D F9D F9X G2A G2B G2D K2A K2B	1. 138㎒ 이상 174㎒ 이하, 216㎒ 이상 223㎒이하, 335.4㎒ 이상 470㎒ 이하, 457.5㎒ 이상 467.6㎒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8.5㎑
	2. 29㎒ 이상 50㎒ 이하, 72㎒ 이상 76㎒ 이하, 146㎒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3. 2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	16㎑
	4. 940㎒에서 96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00㎑

	5. 400.15㎒ 이상 406㎒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1㎒
	6. 1,668.4㎒ 이상 1,7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6㎒
	7.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3㎑
F3E G3E	1. 29.7㎒ 이상 50㎒ 이하, 138㎒ 이상 174㎒ 이하, 216㎒ 이상 223㎒이하, 335.4㎒ 이상 470㎒ 이하, 457.5㎒ 이상 467.6㎒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8.5㎑
	2. 25.11㎒ 이상 27.5㎒ 이하, 29.7㎒ 이상 50㎒ 이하, 72㎒ 이상 76㎒ 이하, 146㎒ 이상 174㎒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이상 467.58㎒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16㎑
	3. 2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0㎑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180㎑
	5. 174㎒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00㎑
	6. 1) 방송국 2) 72㎒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200㎑
	7. 942㎒에서 96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00㎑
F8E F9W F9E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
F7W G7W	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
P0N K2A	1,670㎒ 이상 1,69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6㎒

(주)

1) "스테레오포닉 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 경우 "좌측(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측(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3]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

1. 경계기준

주파수 범위	협대역		광대역	
	기준치	경계기준	기준치	경계기준
가. 9㎑ < f_c ≦ 150㎑	250㎐	625㎐	10㎑	1.5B_N+10㎑
나. 150㎑ < f_c ≦ 30㎒	4㎑	10㎑	100㎑	1.5B_N+100㎑
다. 30㎒ < f_c ≦ 1㎓	25㎑	62.5㎑	10㎒	1.5B_N+10㎒
라. 1㎓ < f_c ≦ 3㎓	100㎑	250㎑	50㎒	1.5B_N+50㎒
마. 3㎓ < f_c ≦ 10㎓	100㎑	250㎑	100㎒	1.5B_N+100㎒
바. 10㎓ < f_c ≦ 15㎓	300㎑	750㎑	250㎒	1.5B_N+250㎒
사. 15㎓ < f_c ≦ 26㎓	500㎑	1.25㎒	500㎒	1.5B_N+500㎒
아. 26㎓ < f_c	1㎒	2.5㎒	500㎒	1.5B_N+500㎒

2. 특정업무에 대한 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	주파수 범위		협대역	
			기준치	경계기준
고정업무	14㎑ 초과 1.5㎒ 이하		20㎑	50㎑
	1.5㎒ 초과 30㎒ 이하	P_T ≦ 50와트	30㎑	75㎑
		P_T > 50와트	80㎑	200㎑

3. 특정업무에 대한 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	주파수 범위	광대역	
		기준치	경계기준
가. 고정업무	14㎑ 초과 150㎑ 이하	20㎑	1.5B_N+20㎑
나. 고정위성업무	3.4㎓ 초과 4.2㎓ 이하	250㎒	1.5B_N+250㎒
다. 고정위성업무	5.725㎓ 초과 6.725㎓ 이하	500㎒	1.5B_N+500㎒
라. 고정위성업무	7.25㎓ 초과 7.75㎓ 이하 7.9㎓ 초과 8.4㎓ 이하	250㎒	1.5B_N+250㎒
마. 고정위성업무	10.7㎓ 초과 12.75㎓ 이하	500㎒	1.5B_N+500㎒

바. 위성방송업무	11.7GHz 초과 12.75GHz 이하	500MHz	$1.5B_N$+500MHz
사. 고정위성업무	12.75GHz 초과 13.25GHz 이하	500MHz	$1.5B_N$+500MHz
아. 고정위성업무	13.75GHz 초과 14.8GHz 이하	500MHz	$1.5B_N$+500MHz

비고

1. "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f_c는 발사의 중심주파수, B_N은 필요주파수대역폭, P_T는 안테나 공급전력을 말한다.
4. 시스템의 지정주파수 대역이 두 개의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높은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기준을 적용한다.
5. 다중반송파 위성시스템 및 1차 레이다에 대한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SM.1541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4] <개정 2022. 1. 4>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

구분	업무 또는 무선설비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한 감쇠값(데시벨)
1	우주업무	43+10log(PY)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
2	무선측위업무	43+10log(PX) 또는 60dB 중 덜 엄격한 값
3	텔레비전방송업무	46+10log(PY)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이고, V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를 U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2㎽를 각각 초과하지 않을 것
4	초단파방송업무	46+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이고, 평균전력(PY) 1㎽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중파(MF)/단파(HF) 방송업무	50dBc이고, 평균전력(PY)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단측파대 이동국	첨두포락선전력(PX)보다 43dB 낮을 것
7	30㎒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 (단측파대 통신방식을 포함한다)	43+10log(PX) 또는 50dB 중 덜 엄격한 값
8	30㎒ 대역 미만의 업무 (우주업무, 무선측위업무, 방송업무, 단측파대 이동국, 아마추어 업무는 제외한다)	43+10log(X)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 경우 단측파대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X로, 그 외의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Y로 한다.
9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10	비상 송신설비	제한 없음
11	그 밖의 업무 및 무선설비	43+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비고

1.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허용치 측정방법은 국제전기통신연합권고 SM.329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다만, 레이다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M.1177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2.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측정기준대역폭은 주파수 9㎑~150㎑에서 1㎑로, 150㎑ ~30㎒에서 10㎑로, 30㎒ ~ 1㎓에서 100㎑로, 1㎓ 이상에서 1㎒로 한다. 다만, 우주업무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4㎑로 한다.
3. 기호 dBc는 무변조 반송파 전력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 다만, 반송파가 없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전력(PY)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
4. 평균전력(PY) 및 첨두포락선전력(PX)의 단위는 와트로 한다.
5. 아마추어업무에 사용되는 지구국은 30㎒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구로부터 2×1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우주업무를 하는 우주

국은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6. 혼신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표에 규정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말한다.
8. "비상송신설비"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비상위치지시용 송신기, 개인위치지시용 표지설비,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생존정의 송신설비, 비상 시 사용하는 육상, 항공, 해상 업무용 송신설비를 말한다.
9.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필요주파수대역폭의 250퍼센트만큼 떨어진 주파수로 한다. 다만,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경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5] <개정 2017. 7. 26.>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

1.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

구분	전파형식	전력의 표시
가.	A1A A1B A1D A2A A3C(전반송파[1]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다) A8W(전반송파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다) A9W(전반송파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다) B7W B8C B8E B9B B9W C3F(방송국 설비만 해당한다) C9F J2A J2B J3C J3E J8E K1A K2A K3E L1D L2A L3E M2A M3D M3E M7E P0N Q0N R3C	첨두포락선전력(PX)

	R3E R7B V3E	
나.	A3E(방송국 설비만 해당한다)	반송파전력(PZ)
다.	그 밖의 전파형식	평균전력(PY)(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환산비

전파형식	변조특성	환산비			비고
		반송파전력(PZ)	평균전력(PY)	첨두포락선전력(PX)	
A1A A1B			0.5	1	
A2A A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1 1	1.25 0.75	4 4	
A3E		1	1	4	
R3E			0.14	1	2)
B8E			0.075	1	3)
J3E			0.16	1	2)
A3C	가. 주반송파의 단속 나. 기타	1	0.5 1	1 4	
R3C			0.14	1	
J3C			0.16	1	
C3F C9F			1	1.68	방송국만 해당한다4)
C2W C7W			1	4	방송국만 해당한다
R7B			0.14	1	
R7A			0.075	1	
P0N			1	1/d	5)
K1A			0.5	1/d	
K2A K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1.25 0.75	4/d 4/d	
L2A L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1 0.5	1/da 1/da	5)

M2A M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1 0.6	1/da 1/da	
K3E			1	4/da	
L3E			1	1/da	
M3E			1	1/da	

(주)

1) "전반송파"란 양측파대(兩側波帶) 수신기에 의하여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 저감반송파 또는 억압반송파를 이용하는 단일통신로 송신장치의 첨두포락선전력(PX)은 하나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송신전력의 포화레벨로 변조한 경우의 평균전력(PY)으로 한다. 이 경우 "저감반송파"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하고, "억압반송파"란 수신측에서 복조(復調)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3) 저감반송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 또는 다중 통신로 송신장치의 첨두포락선전력(PX)은 임의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변조한 평균전력(PY)의 4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 통신로에 위의 변조주파수와 같은 강도로서 주파수가 다른 임의의 변조주파수를 가하였을 때에는 송신장치의 고조파 출력에서 제3차 혼변조 신호가 단일변조주파수만을 가하였을 때보다 25dB 내려간 것으로 한다.

4) 방송용 송신장치에서 페데스탈(시험용 영상신호)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냈을 때의 평균전력(PY)을 1로 한다.

5) 표 중 d는 충격계수(펄스폭과 펄스주기와 비를 말한다)를, da는 평균 충격계수를 표시한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6] <개정 2020. 12. 24.>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송신설비	허용편차	
	상한 퍼센트	하한 퍼센트
1.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의 송신설비	5	10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	10	20
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	5	5
4.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송신설비로서 25.11㎒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10	20
5.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405㎑부터 53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나.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부터 3,9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6.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나. 생존정의 송신설비 다.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라.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	50	20
7.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국의 송신설비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20	-
8. 그 밖의 송신설비	20	5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24.] [고시 제2026 - 4호, 2026. 7. 24.,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 - 338 - 47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 기자재 ’ 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ㆍ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삭 제>

7. <삭 제>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제3조의2(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류위원회는 기술·법률·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 : 법 제37조, 제45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인체보호분야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

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삭 제>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8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차목 1)과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적합등록증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3호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삭 제>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① , 나목, 다목 1), 바목 [2)부터 6)까지], 사목 1) [①, ②, ④],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보관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8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기적합확인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5장 잠정인증

제13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5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유효기간
6. 기타 허용 조건

제16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삭제>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다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커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마. 별표 1 제11호 차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제18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3.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함)
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제2항제3호라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은 제11조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 ②]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4. 별표 1 제11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1)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제21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4.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증의 교부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장 조사 및 조치

제23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기자재의 고유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시험 방법 등) ① 원장은 영 제1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적합 보고 등)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6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서 등의 재발급)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9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31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변경신고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 30일 이내 처리 :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02호,2011. 1.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시행 이후 새로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성평가를 유예한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2010-51호)"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9-5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12-16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부칙 제1조제2항의 본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4호,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2호,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제2014 - 16호,2014. 11.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5 - 4호,2015. 3.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5 - 26호,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6 - 9호,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6 - 24호,2016. 12. 7.>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4호 라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의 전자파강도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차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강도 적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7 - 8호,2017. 8.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 - 14호,2017. 12. 5.>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18 - 8호,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6호로 하고, 별표 7의 적합인증 기기부호 표시방법 중 제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6호로 하며,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제8호부터 제52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4호로 하고, 별표 1의 제7호부터 제9호와 별표 7의 적합인증 기기부호 표시방법 중 제7호부터 제9호와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18 - 13호,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접수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 - 1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18 - 17호,2018. 8.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19 - 12호,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9 - 14호,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1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러목과 별표 7의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6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 <생략>

부칙 <제2019-95호,2019. 1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0-7호,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의 1 중 116란의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를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로 한다.

부칙 <제2021-10호,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1-78호,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2021. 6. 28.)」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바. USN용 무선기기 5) 925㎒ 931㎒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21-16호,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하.부터 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7]의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4.부터 6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제2021-20호,2021.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대상기자재와 [별표 7]의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21-25호,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13호,2022.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라.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다)5925 6425㎒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22 - 20호,2022. 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2 - 14호,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3호,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5호,2023. 4.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 - 3호, 2023. 2. 3.) 중 [별표 1]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3-6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호,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② <생략>

부칙 <제2023-24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4-10호,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2024 - 12호,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5 - 16호,2025.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제3조에 따른 [별표 1]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2)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부칙 <제2025 - 2호,2025.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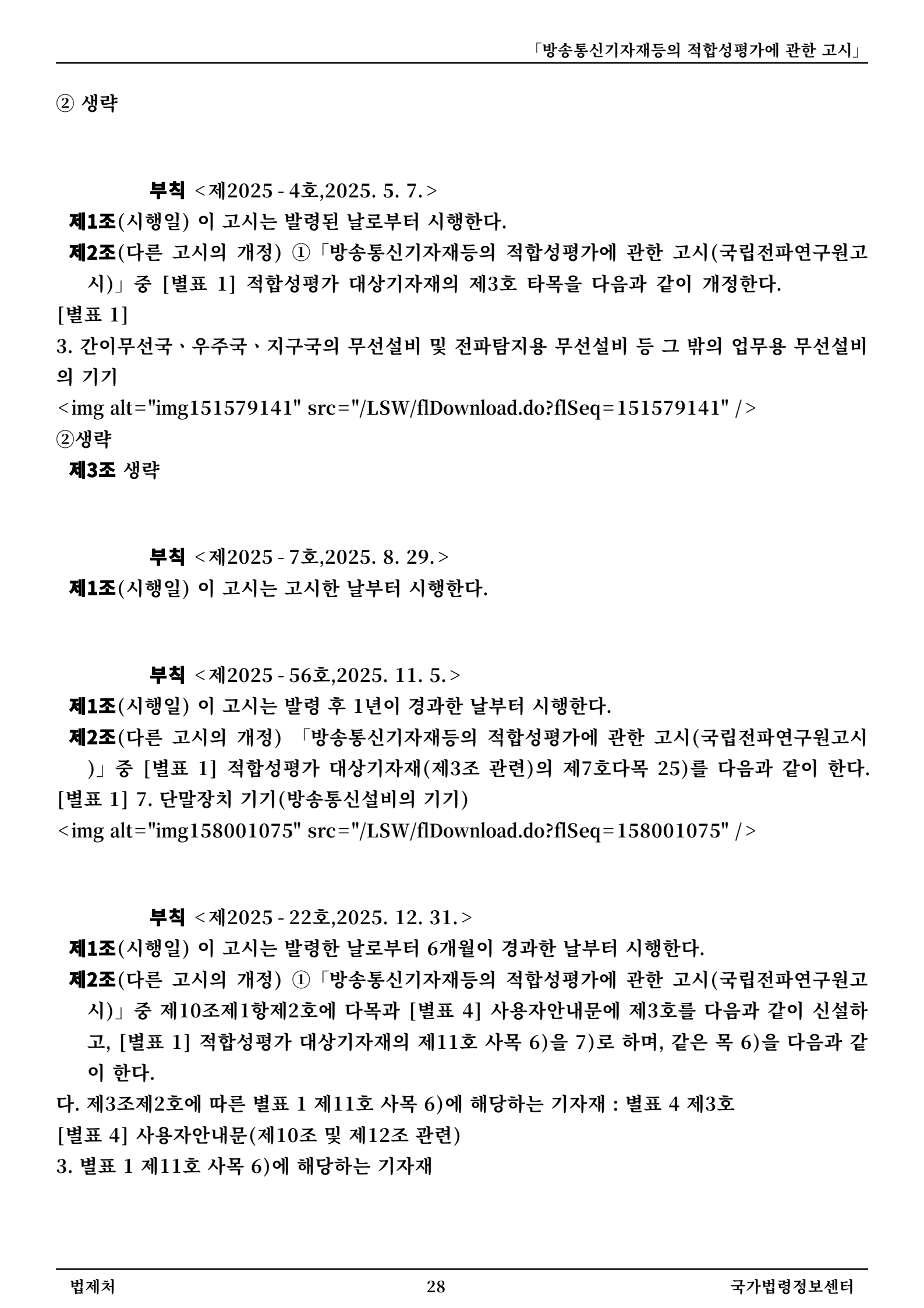
부칙 <제2025-4호,2025.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5-7호,2025.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6호,2025. 1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7호다목 2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부칙 <제2025-22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제10조제1항제2호에 다목과 [별표 4] 사용자안내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 사목 6)을 7)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3호

[별표 4] 사용자안내문(제10조 및 제12조 관련)

3.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별표 12] 제2호 가목의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조건(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제품시험에 적용된 기준을 기재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② (생략)

부칙 <제2026 - 10호,2026.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3조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5호라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5. 라목 5)의 5925 6425㎒, 6425 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6 - 2호,2026. 6.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 - 3호,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나목과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의 6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부칙 <제2026-4호,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4호 아목부터 러목까지를 자목에서 머목으로 하고, [별표 7] 제2호 41부터 67까지를 42부터 68까지로 하고, [별표 1]의 아목 및 [별표 7] 의 4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	○				○			SA	
	2) 해안국용	○	○				○			SB	
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	○				○			MR	
	2) MF·HF전용수신기	○	○				○			HR	
	3) VHF전용수신기	○	○				○			VR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	○				○			SH	
	2) VHF송수신장치	○	○				○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	○				○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사.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미부착형	○	○				○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				○			PLB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VA3	
카.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	○				○			T	
파.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하.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 지름 32㎝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 지름 25㎝이상 32㎝미만	○	○				○			RAM	
		다) 표시면의 유효 지름 18㎝이상 25㎝미만	○	○				○			RAS	
	2) 국내 항해용		○	○				○			RC	
	3) 국내 소형선박용		○	○				○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	
	2) 임의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B	
더.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	○				○			AIS2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	○				○			AIS3	
러.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	○				○			DHF1	
	2) 선박국용		○	○				○			DHF2	
머. 자율해상 무선 기기	종별 A		○	○				○			AMRD1	
	종별 B		○	○				○			AMRD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 비고

1.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나.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FSSES	
다.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마.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바.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2) 라디오로보트 기기		○				○			P2	
사.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아.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2) 해상용	○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자.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차.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카.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타.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수신장치	○	○		○		○			IPN5	
	5) 기 타	○	○				○			IPN9	
파.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MOB	

대상기자제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하.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RL	
거.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52	
	3) 기 타	○	○				○			FVG53	
너.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62	
	3) 기 타	○	○				○			FVG63	

※ 비 고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4)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5) 기타	○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4)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5) 기타	○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4)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5) 기타	○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TE2	
	4)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5) 기타	○	○				○			LTE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OT2	
	4)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 전환기능)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5) 기타	○	○				○			IOT9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12	
	3) 기 타	○	○				○			FVG13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22	
	3) 기 타	○	○				○			FVG23	
아.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7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72	
	3) 기 타	○	○				○			FVG73	
자.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차.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카.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PCS	
타.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3	
	2) 해상용	○	○		○		○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5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하.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거.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WIBRO	
너.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더.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 주파수 대역	○	○				○			WLL1	
	2) 26㎓ 주파수 대역	○	○				○			WLL2	
러.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3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32	
	3) 기 타	○	○				○			FVG33	
머.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42	
	3) 기 타	○	○				○			FVG43	

※ 비 고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 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 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 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E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 6425~7125㎒ 주파수 대역	○	○		○		○			LARN5F	
		바) 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	○				○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TSOL	
	13) 재난정보방송용 무선기기		○	○				○			CWB	
바. RFID용 무선기기	1) 900㎒ 주파수 대역		○	○		○		○			RFID1	
	2) 433㎒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 주파수 대역		○	○					○		RFID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 ~ 923.5㎒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 주파수 대역	○	○					○		USN3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4	
	5) 925㎒ ~ 931㎒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5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 주파수 대역	○	○	○	○		○			DCP17	
	2) 2.4㎓ 주파수 대역	○	○	○	○		○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 ~ 264㎒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 ~ 23.6㎓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 ~ 66㎓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3㎓ ~ 123㎓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 ~ 246㎓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 주파수 대역	○	○					○		SRD24	
	4) 70㎓ 주파수 대역	○	○					○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VWS1	
	2) 이동형 기기	○	○					○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	○					○		LPR	

※ 비 고

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라목 5)의 5925~6425㎒, 64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 등	○	○				○			HAM2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B41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종단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		○				○		C21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 2,048kbps ·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장치)	○		○				○		C31	
	4) PCM단국장치	○		○				○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1,544kbps ·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C9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A11	
	5) 팩스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8) 모뎀	○		○				○		A21	
	9) 팩스 모뎀	○		○				○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15) 원격제어기기	○		○				○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		○				○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		A86	
	21) 공중전화기	○		○					○	A18	
	22) ISDN 망종단기기(NTE)	○		○					○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스, ISDN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 등)	○		○					○	A63	
	25) 접속 커넥터 가)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			○					○	LOW11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3조제3항 관련 커넥터에 한함
	25) 접속 커넥터 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					○	USBCR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 대상기자재에 한함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A90	
	27) (삭 제)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라. 구내통신 설비류	1)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삭 제)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8-VSB)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12	
사. 분배기			○					○	LOW13	
아. 동축케이블			○					○	LOW14	
자. 보호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용)			○					○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용)			○					○	LOW16	
카. 광분배기			○					○	LOW17	
타. 광케이블			○					○	LOW18	
파. 직렬단자			○					○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가. 전파응용설비류 및 기기류 : 전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설비·기기류	1) 산업용·과학용 전파응용기기류 : 9 kHz~400 G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통신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전파에너지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기기	o (정의) 전파를 이용하여,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 또는 가열, 이온화, 진동, 입자의 가속과 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전자기 방사의 형태로 유도성이나 방사성 커플링을 사용하는 50 W 이하의 산업용·과학용 전파이용기기와 플라즈마 응용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초음파 세척기, 산업용 레이저 발진기, 플라스틱 예열기, 마이크로 전력 UV 방출기, 전기방전 부식기기,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정격입력이 10 kVA 이하), 산업용·과학용 전자레인지 및 유도가열기기, 전파를 이용한 플라즈마·초음파·열 발생기기 (생활가전기기류 제외)	○		○		ISM11
	2)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 및 기기 :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설비 및 기기	① 전자레인지	○		○		ISM41
		② 1,000 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		ISM42
		③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 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ISM43
		④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11 kW 이하)	○	○	○		ISM51
		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 (200 W 이하)	○	○	○		ISM52
		⑥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 kW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ISM53
	3) 전력선통신기기류	o (정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3 m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500 ㎶/m 이하인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력선 통신용 중계기, 전력선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선통신 모뎀, 전력선통신 브릿지, 전력선 통신 제어장치, 전력선 냉난방 장치 제어기	○		○		LIN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전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o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나. 생활가전기기류 : 정격 전류 16 A 이하 또는 정격입력 10 kW 이하이며, 생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상업용도 포함한다. ※ 전동기의 정격입력은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1) 전기청소기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공기, 물, 이물질을 빨아들여 청소하는 기기,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또는 융단의 세탁 등과 같이 바닥청소를 하는 기기,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물걸레청소기 포함), 로봇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침구청소기, 고압세척기, 실내용청소차, 전기광택기	○		○		CLN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LN1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 4)~11) : 계절가전 12)~16) : 주방가전 17)~18) : 이·미용가전 19)~26) : 생활가전 27)~29) : 건강가전 30)~31) : 게임오락기구	2) 전기냉장·냉동기류	o (정의)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하는 기기로 컴프레서 및 반도체 냉각방식 등으로 구동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냉장·냉동기기(쇼케이스 포함),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주류 냉장고	○		○		COL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OL12
	3) 전기세탁·탈수기류	o (정의) 의류(옷, 옷감 및 피혁 등)의 세탁 및 탈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세탁기, 탈수기, 일체형 세탁·탈수·건조기	○		○		WSM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초과하거나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 m/s를 초과하는 기기	○			○	WSM12
	4) 공기정 조전기류 ※ 공기청정기/가습기/제습기	o (정의) 실내 공기 또는 습도 조절을 위해 전동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는 기기와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산소 이온발생기), 가습기 및 제습기 (가열식, 초음파 및 복합식을 포함), 에어워셔, 오존 발생기, UV 공기청정기, 전기집진기, 전자식 마스크,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		○		AIR11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AIR12
	5) 선풍기류 및 송풍기류	o (정의) 전동모터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시키기나 압력 차이로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일정 공간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팬 코일 유닛 및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냉풍기, 전기에어커튼	○		○		FAN11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FAN12
	6) 냉·난방기류 ※ 에어컨	o (정의) 냉매시스템(열교환펌프, 컴프레서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창문형 에어컨, 공조시스템	○		○		SCD11
	7) 전기냉·온수기류 및 정수기류	o (정의) 수도관 연결 또는 물통의 물을 냉각기(컴프레서), 히터, 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가열, 냉각, 정수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냉·온수기(일체형 및 단독형 포함),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전기냉수기, 순간온수기, 전기정수기(전기이온수기 포함), 탄산수제조기	○		○		POT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8) 전열기구류 ※ 난방가전	o (정의) -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또는 축열재의 전기적 에너지를 열로 저장한 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신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욕실난방기(전구 모양 히터 포함), 전기라디에이터, 컨벡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축열식 포함), 보일러(전기보일러, 소형 전기보일러 등), 팰릿스토브(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방식에 한정), 전기난로(손·발보온기 포함), 전기냉·온수매트/침대, 전기핫팩(전기찜질기 포함), 온열의자,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		○		STV11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기가열기기					
	9) 전기매트류 ※ 전기매트/전기요	o (정의) 사용자가 깔거나 덮고 사용하는 온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침대, 카본매트, 온열매트	○	○	○		MAT11
		o 직류전원 사용제품은 전자파강도 시험 제외					
	10) 해충퇴치기류	o (정의) - 고전압을 사용하여 빛으로 유도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 빛 또는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거나 해충을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격살충기, 전기훈증살충기(모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해충집진기, 해충퇴치 라이트	○		○		BLD11
	11) 전동형스크린류 ※ 전동커튼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		○		CTN21
	12) 주방용 전열기기류 ※ 전기레인지/오븐/전기그릴/토스터기/에어프라이어/튀김기	o (정의) 가열판,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오븐기(오븐레인지 포함), 전기호브,	○		○		MWO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기그릴(휴대형 및 거치식 모두 포함),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토스터(팝업, 오븐 포함),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주방용 전열응용기기					
	13) 주방용 전동기기류 ※ 믹서기/블렌더	o (정의) 주방에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기 및 재료(과일, 고기, 음료, 가루 등)를 가공(분리 또는 혼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서믹서기, 전기블렌더,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거품기(크림 거품기 포함), 전기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분쇄기(원두 분쇄기 포함), 전기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면기, 전기절단기(육절·골절기), 주방용 전동응용기기	○		○		KTC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KTC12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닭털탈피기, 진공쌀통, 아이스크림/와인/소주 디스펜서					
	14) 주방용 전기 액체가열기기류 ※ 밥솥/전기포트/커피용품/전기쿠커/음료제조기/간식메이커	o (정의) 히터 또는 증기로 액체 및 음식을 가열하거나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압력 기능 포함)와 설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주방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포트(보온, 분유, 티포트, 멀티포트 포함), 전기약탕·중탕기, 커피메이커·머신(자동머신, 캡슐, 포함), 전기스팀쿠커(찜기),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청국장제조기, 제과·제빵기, 간식·이유식제조기, 증기조리기, 전기착유기, 전기용해기(왁스, 초콜릿, 파라핀용), 전기주온기, 주방용 액체가열응용기기	○		○		CUK11
	15) 전자유도가열식(IH) 조리기류	o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기와 전기액체 가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전기호브, IH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 IH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IH 전기주전자, IH 전기냄비, IH 전기물끓이기, IH 전기약탕기, IH 커피메이커, IH 전기스팀쿠커, IH 달걀조리기, IH 우유가열기, IH 젖병가열기, IH 요구르트제조기	○	○	○		IHU11
	16) 음식물 처리기류 ※ 위생관리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 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 (하수도법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기기로 한정)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		○		DIS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17) 이·미용기기류	o (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 신체를 손질하거나 상태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머리손질기(헤어스타일러, 브러쉬 포함), 전기고데기(전기 머리인두 포함), 전기드라이기(머리, 손톱 포함), 전기두피·모발관리기(전기헤어캡 포함),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안면 사우나기 및 피부마사지기, 제모기(전기·전동기, 레이저제모기 포함), 전동클렌저, 피부관리기(레이저미용기, 플라즈마 미용기, 롤링미용기기), 눈썹/네일관리기(전동눈썹정리기, 전동네일관리기, 네일드라이어), 적외선·자외선 등 피부관리기, 저주파·고주파 이·미용기기, 두피LED헬멧(두피개선헬멧), UV손톱경화기	○		○		HDR11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부관리기(전동클렌저, 미스트기, 피지관리기, 각질관리기, 피지 및 각질관리기), 히팅눈썹고데기, 편도결석흡입기, 귀지흡입기, 콧물흡입기, UV손톱경화기, 화장품어플리케이터					
	18) 전자유도가열식(IH) 가전기기류	o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가정용 전기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가습기, IH 피부관리기	○		○		IHH11
	19) 전기세척기류	o (정의) 발열체나 초음파,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주방용 기구나 생활용품, 신체를 세척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세척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정용 초음파세척기(과일야채세척기), 틀니·안경세척기(살균 포함), 구강청정기(전동칫솔기, 구강세척(세정)기)	○		○		COW11
		o 전기(식기)세척기의 전동기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OW12
	20) 전기건조기류	o (정의) FAN, 전동모터, 히터, 냉각을 이용하여 신체,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전기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 건조기, 의류관리기, 식품건조기(살균 포함), 전기식기건조기, 신발 관리기, 동절건조기	○		○		HRY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HRY12
	21) 전기다리미류 및 전기프레스기류	o (정의) 전열 장치로 가열시킨 판을 이용하여 직물류를 다리는 기기(스팀 기능 포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피기, 다림질 프레스기	○		○		IRN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22) 전동제봉기류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용 전동제봉기, 터프팅건	○		○		SEM11
	23) 전동침대류 및 전기의자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침대나 의자(소파)의 높이 또는 기울기를 변화시키거나 온열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침대, 전기의자(이발용의자, 각도조절의자 포함), 전동 소파(리클라이너)	○		○		CHR11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동책상, 전동 밥솥장, 전동옷장					
	24) 화장실용 전기기기류	o (정의) 화장실에서 자동으로 세정하거나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비데(자동세정·건조식 포함),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5) 유체펌프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 펌프	○		○		PUM11
		o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 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kW 이하' 이외의 기기	○			○	PUM12
		o 다음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진공펌프, 에어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26) 전자보관기 및 화폐교환기류	o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하거나, 지폐나 동전을 교환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		○		SEV11
	27) 헬스보조기기류 ※ 건강관리용품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헬스기구, 런닝머신, 워킹머신, 진동 운동기구, 전동기꾸리	○		○		HEA11
	28) 전기마사지기류 ※ 안마용품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마사지 기능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마사지기, 전기안마의자, 안마기	○		○		MSG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29) 전기사우나 기기류 ※ 냉온·점질용품/축육·좌훈용품	o (정의) 내장된 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시키거나, 물을 데울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용 전열기기, 전기반신·전신욕기, 전기욕조(독립적인 기포발생기를 포함), 전기좌훈·욕기(족욕기 포함)	○		○		SUN11
	30) 게임기구류 및 오락기구류	o (정의) 개인용 서비스 게임기구, 상업용 등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게임기구 및 오락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전자 다트판, 농구게임기, 전기게임응용기기 - 애완용 오락기기, 무선기능이 없는 전동모터 장난감(드론, 자동차, 보트 등)	○		○		GAM11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오락기구					
	31) 전기 장난감류	o (정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TOY11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32) 생활가전기기류 1)~31)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E
	33) 동식물용 전기기기류	o (정의) 전기 회로, 전동모터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 동식물 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애완동물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			○	POL11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먹이급여기, 애완동물 발 세척기, 이동형 캔넬(USB 또는 건전지(충전기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한함), 애완동물 배변 처리기, 동물용 UV살균브러쉬, 강아지 초음파/전격 짖음방지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34) 기타가정·상업용 전기기기	① 보풀제거기	○			○	CLE12
		② 기포발생기	○			○	BBL12
		③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페인트도장기, 스모그머신	○			○	MST12
		④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			○	VRM12
		⑤ 전기소독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게이트, 수영장용 자외선살균기, 의료폐기물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소독기	○			○	MST13
		⑥ 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			○	ROL12
		⑦ 과일껍질깎기	○			○	KCN12
		⑧ 감자탈피기	○			○	
		⑨ 전기정미기	○			○	
		⑩ 전기빵자르개	○			○	
		⑪ 전기주류숙성기	○			○	ELD12
		⑫ 전기시계	○			○	WAT12
		⑬ 컴프레서	○			○	COM12
		⑭ 전기분수기	○			○	WTP12
		⑮ 수도동결방지기	○			○	WTR12
		⑯ 식물재배기 o (정의) 모터, 빛(LED 포함) 또는 열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기	○			○	BIN12
		⑰ 전기작동 도어록(디지털 도어록)	○			○	DOR12
	35) 생활 가전기기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전기방향탈취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o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모터 또는 가열 기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공구나 기기	1) 전동공구류	o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연마, 절단, 고정, 변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샌더, 전기 그라인더, 전기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테이블톱, 직소/컷소,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전동 못총,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렌치, 전동 예초기, 전기 잔디깎이, 전기 가위, 전기해머, 폴리셔,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o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ETL12
		o 배터리 착탈식 전동공구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절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등 건설장비류 - 전동경작기, 가축사료파쇄기					
	2) 전기가열공구류 (전기가열기기)	o (정의) 전기 회로로 열을 발생시키는 공구나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열풍수축기	○			○	WDM11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솔더포트, 전기가열기기					
	3) 전기용접기류	o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아크용접기(전기 불꽃 용접기), 충형아크 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	IMV11
	4) 전기·전동 공구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o 정격입력이 10 kW(전기용접기류는 10 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라. 조명기기류 : 조명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 물체 또는 그 주변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조명을 위한 독립장치 및 그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조립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듈도 포함 : 실내·외, 이동, 고정, 매입, 매설, 특수용도, 전원공급장치(컨버터, 안정기 등) 내·외장 등 사용 장소 또는 목적, 형태와 무관하게 조명 용도의 기자재에 한정	**1) 형광등기구류**	o (정의) 전자식 안정기 및 자기식 안정기(초크 코일 및 글로우 스타터 등)를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형광등기구, 자기식 형광등기구	○			○	LIT11
	2) LED등기구류	o (정의) 1 k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LED등기구, LED 투광조명기구, LED조명 시스템, LED 경관조명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등명기(육상용)	○			○	LIT12
	3) 일반등기구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샹들리에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할로겐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고압방전등기구, 일반 투광조명기구, 일반 경관조명기구, 일반 보안등기구, 일반 가로등기구	○			○	LIT13
		o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 W를 초과하는 기기	○			○	LIT14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일반램프용),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 공급장치 포함)	○			○	IVT11
		o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IVT12
	5) 램프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			○	LIG11
	6) 기타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			○	LIT21
		② 조광기(디밍)	○			○	LIT22
		o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7) 조명기기류 1)~5)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L
	8) 조명기기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마.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교류 1 kV 이하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함	**1) 스위치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스위치, 전자식 온도조절기	○			○	SWT11
	2) 차단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차단기, 누전차단기	○			○	CBL11
	3)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접촉기 및 개폐기, 저압 모터 기동기	○			○	SWT12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제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o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함체(函體), 마더보드, 전원공급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탑), 태블릿, Box PC, Stick PC	○		○		IMC11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웹카메라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 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 카드, LAN 카드	○		○		IMC21
		③ 정보기술 단말장치 o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홈 네트워크 세대단말기	○		○		IMC31
		④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바목.1) 정보기기류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2) 방송수신기기류	o (정의)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를 수신할 목적으로 튜너 기능이 내장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TV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위성방송 수신기, 방송수신튜너, DMB 수신기	○		○		TVR11
	3) 오디오기기류	o (정의) 오디오(음성 포함)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앰프내장형 스피커, 오디오 증폭기(앰프), 오디오 레코더, 디지털 음성플레이어, 헤드셋(신호변환 또는 증폭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디지털오디오워크스테이션(DTM), 전자악기, 오디오시스템(홈시어터 포함), 오디오 조절기(이퀄라이저 포함)	○		○		AUD11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마이크					
	4) 비디오기기류	o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 (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카메라(캠코더, 액션캠 포함), CCTV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폰, 포토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		○		VDO11
	5) 멀티미디어 조합 및 응용기기류	o (정의) 정보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방송수신기 등 둘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응용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사전, e-북리더기, 전자번역기, 전자계산기, 전자시계(복합기능에 한함), 전자학습기, 전자게임콘솔기, 전자게임 주변기기, 전자게임패드, AI스피커, 스마트워치(밴드 포함), 스마트안경(글래스), VR 고글(VR 게임기 포함), 스캔 컨버터, 전자칠판(전자보드 포함)	○		○		MUL11
	6) 엔터테인먼트 기기류	o (정의) 극장, 방송국 또는 공연장에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목적의 제어 및 조합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무대 조명 제어기, DMX(Digital Multiplex) 제어기, 마이크 시스템, 방송용 카메라	○		○		ENT11
	7) 멀티미디어기기류의 1) ③, 2) ~ 6)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M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o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제사용이 불가한 기기(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축하 초 등)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사. 디지털기기류 : 9 ㎑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계산, 작업, 변환, 녹음, 파일링, 분류, 저장, 검색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1) 일반 환경 사용 기기 : 디지털기기로서, 일반 상용(220 VAC) 전원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직접 연결되거나,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된 직류 전원에 연결되는 기기와 배터리 구동 기기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o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로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팅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전동타자기, 제단기, 제본기, 번호표 발행기, 교통카드 충전기, 금전등록기,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계), 전자저울, 자동 캔시머, 레이저마킹 코딩기, 레이저각인기	○		○		IMO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터치기, 전자금고,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펜서, 전기소자기					
		② 자판기(자동판매기)	○		○		MHN11
		③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④ 신호변환 접속기 o (정의) 내부 회로를 이용하여 신호의 처리 및 변환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RS 232 변환기, USB 변환기, LAN 분배기, 멀티포트 변환기, USB 허브, 비디오 변환기 (RGB, DVI, HDMI, DP 등)	○		○		RST11
		⑤ 주차차단기(시스템 포함)	○			○	LIM21
		⑥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⑦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10 kVA 이하)	○			○	SEC11
		⑧ 전원 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 어댑터)	○			○	AVR11
		⑨ 이동형 또는 고정형 로봇기기	○		○		ROB11
		⑩ 자동차의 운행 안전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 내장형 전동기기 또는 디지털 제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HUD	○		○		AUT11
		⑪ 일반 환경 사용기기 ①, ②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D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⑫ 일반 환경 사용기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컨 등) o 카메라 렌즈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 액세서리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 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일반 환경의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o 주거지역 : 주택 및 아파트 등 o 상업지역 : 상점, 슈퍼마켓, 사무실, 은행, 공연(극)장, 음식점, 주유소, 주차장, 오락실, 스포츠센터 등 o 경공업지역 : 작업장, 실험실, 서비스센터 등					
	2) 고전압 설비 및 부속기기류	o (정의) 디지털기기로서, 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이 상용 전원이 아닌 중·고전압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별도의 전력망을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전압 공급기(Automotive Voltage Regulator), 전압/주파수 제어기(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			○	HVT11
	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류	o (정의) 저압 배전망(정격전압 1 kV 이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구동기기	○			○	PDS12
		o 고압 배전망(정격전압 1 kV 초과) 또는 특수전원을 이용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4)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	**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원 제어 시스템**	○		○		IMO11
		②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제어 시스템	○		○		IMO12
		③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정격 용량이 10 kVA를 초과하는 기기	○			○	IMO21
	5) 전원공급장치	**① 직류전원공급장치** o (정의)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정류하여 직류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직류전원장치, 어댑터(직류출력), 휴대용 충전기, USB 충전기	○		○		PWR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② 전원공급용 인버터 o (정의) 교류 또는 직류 입력을 특정 주파수를 갖는 교류 출력으로 전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교류출력 파워뱅크,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		○		PWR12
		③ 전기차 유선 충전기 o (정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 출력을 사용하는 완속/급속 충전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유선 충전기	○		○		PWR13
		④ 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			○	PWR21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o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파워뱅크(직류입출력) 포함) o 승강압케이블류(시거잭, 직류입출력 컨버터)					
	6) 승강장안전문(PSD)의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o (정의)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		RLS11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일반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이동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관련 부품	1) 전기자전거	o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	○		○		BIC
	2) 이동용 전동기기류	o (정의)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와 유사한 이동용 전동기기	○		○		MOV11
		o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2
		o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이동용 전동기기 단위 부품류	o (정의) 이동용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 완제품 및 전자회로 내장구성품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	○			○	MOV1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 단위부품					
		o 이동용 전동기기 또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단위부품류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음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 적합성 대상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 기기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① 자동차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기관 자동차	○			○	MOB11
		② 자동차 전장품 o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ADAS 기능이 있는 제품), 디지털콕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MOB31
		③ 전자식 운행 기록계 o (정의)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 기록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2) 전기철도기기류 :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기	① 철도 열차 및 완성 차량 o (정의)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차, 부수 차량, 간선 차량, 도시 철도 차량, 트램	○			○	TRA11
		② 철도차량 내 기기 o (정의) 철도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	○			○	TRA1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안테나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견인 변환기, 견인 모터, 출입문 제어기, 제동 제어 시스템, 횡선 표시기, 정보 안내기					
		③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o (정의)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 통신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			○	TRA13
		④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o (정의)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			○	TRA14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로 전자파적합성 시험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3) 승강기기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① 엘리베이터 장치** o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호출장치, 조작반, 주제어반, 도어 개폐장치, 감시 및 원격정보 시스템, 권상기, 비상통화 장치, 안전센서, 메인 인버터 (속도 제어용)	○		○		ELV11
		② 엘리베이터카 전기장치 o (정의) 엘리베이터카에 장착되는 기기로 엘리베이터 안전 부품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카 모니터, 승강기용 에어컨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단순 부착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ELV12
		③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장치 o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장치	○		○		ELV1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조작반, 주제어반, 권상기, 감시시스템, 무빙워크 제어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④ 승강기 장치 o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구성품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승강장 호출버튼, 인디케이터, 도어 인버터, 위치 표시기, 스크린 도어,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제어반	○		○		ELV14
	4) 소방용품기기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	**① 소방기기** o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플랩댐퍼	○		○		FIR
		② 소방용 조명기기 o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용 조명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도등, 비상조명등, 기타 소방용 조명기기	○		○		FIR21
차. 기타 특수조건의 기자재	**1) 가목, 나목, 마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 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	○	REC1
	2) 가목, 나목, 마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 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 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기기류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	○	REC2
	3) 가목, 다목, 라목, 마목, 마목, 사목 4) 및 5)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			○	IND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수조건의 기자재		○			○	REC3
	5)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o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일반표준(KS C 9610-6-2, KS C 9610-6-4)만을 적용하는 기자재 (다만, 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일반표준만을 적용하더라도 차목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임)						

※ 비 고

1.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2. 차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대표적인 품목은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대상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 외에도 기자재별 정의에 부합되고, 대표적인 품목과 기능, 동작 방식, 사용형태, 사용환경 등이 같으면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가목에서 차목까지의 기기로 볼 수 있는 주기능을 갖춘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삭 제>

[별표 3] <삭 제>

[별표 4]

사용자안내문(제10조 및 제12조 관련)

1.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3.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 V/m 내성 기준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 □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별표 12] 제2호 가목의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조건(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제품시험에 적용된 기준을 기재한다.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R	-	X	S	-	A	B	C	D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T'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5)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다음의 4) 및 5)의 사항은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 1)의 국가통합인증마크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관리번호

A	B	C	D	-	X	X	~	X	X
①					②				
공 개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공개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공개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공개자가 정할 수 있음

4) 제1호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

5)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공개)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고유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의 고유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인증(등록)번호" 또는 "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를 링크할 수 있다.

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 또는 포장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고유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고유번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고유번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등록)번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인증(등록)번호]

3)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기자재의 고유번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20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가. 조립컴퓨터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나.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관련)

1. 형식에 관한 기호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	
		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	
7. 송신 · 수신의 구별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8. 전력	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 " 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최대전력"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9. 전파형식	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10. 채널	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비 고>

1. 삭제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주파수 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해당항목을 기재한다. (대상기자재 기기부호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동일한 기기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삭제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목 / 구분	기자재	주파수	송·수신의구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8. 네비텍스수신기	○					
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1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항 목 /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수신의구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22.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3.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24.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25.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	○		○	○	
26.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2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28.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9.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32.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3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3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5.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6.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7.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8.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3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항 목 /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수신의구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4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별표 1 제4호 아목에 따른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2.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3.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44.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46.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7.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8.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9.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5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51.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53.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4. USN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5. 코드없는 전화기	○					
56.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57.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58.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59.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6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6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6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63.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항목 / 구분	기자재	주파수	송·수신의구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64.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	○	○	○	○	○
65.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6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67. 자율해상무선기기	○	○	○	○	○	
68.「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비고
1. 34. ~ 41., 65., 66.에 해당하는 무선기자재 중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형식표시 지정항목 중 기자재 외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신청 기자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제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 무선 [ ] 유선 [ ] EMC [ ] SAR [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 험 성 적 서 정 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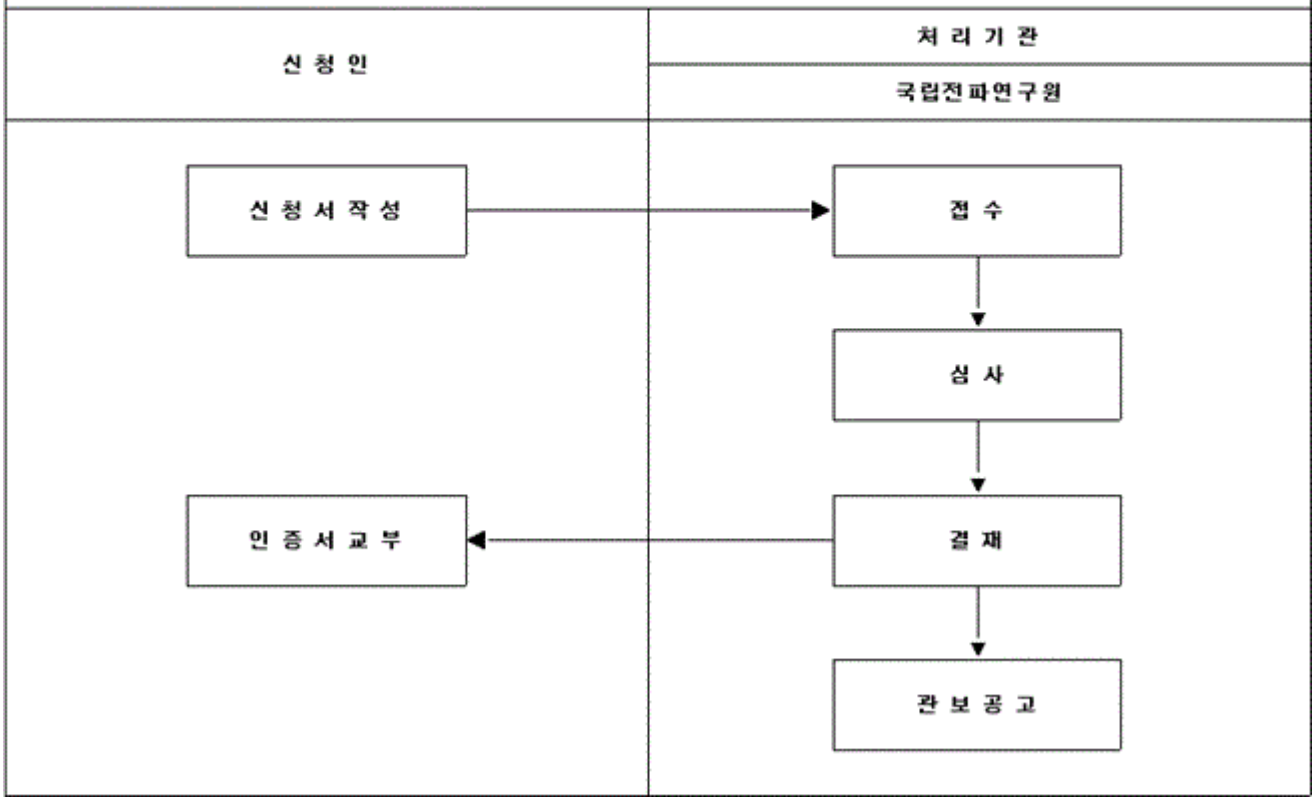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연 락 처	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구 분	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	제 1 순 위		제 2 순 위	
	제 3 순 위		제 4 순 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여권정보(개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 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12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8.29.>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	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 인증업무 책임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mail	
신청 기자재	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본인은 「전파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mail	

210㎜× 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 무선 [ ] 유선 [ ] EMC [ ] SAR [ ]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 험 성 적 서 정 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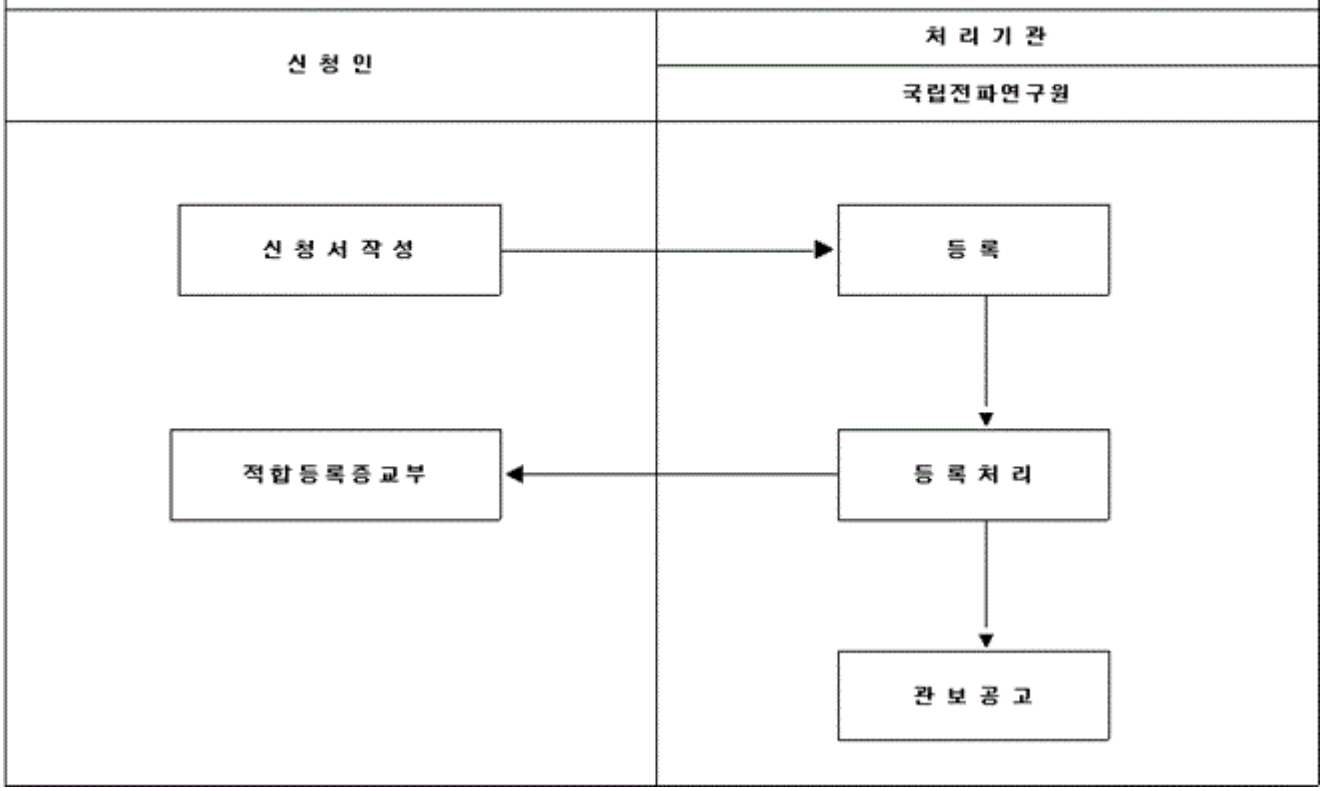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랙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8.29.>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보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업무담당자	(전화)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뒤쪽 참조
	제 품 식 별 부 호		구성품(모듈) 인증 등록관리번호	※ 뒤쪽 참조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뒤쪽 참조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기본모델	모 델 명 외관사진	파생모델	모 델 명 외관사진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	적합성평가 결 과	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	등록기기 보완유무
적 합 성 평가정보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 297㎜[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은 별표 1에서 정한 명칭 외에 통상적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한 기자재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 세탁기(Wi-Fi형), 블루투스)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구성품(모듈) 인증·등록·관리번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에 구성품(모듈)의 적합성평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7.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 기기부호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를 참고합니다.
- 추가 기기부호는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는 경우에 필히 기재하며 다수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포함)
- 형식기호는 무선기자재의 경우에 기재하며 별표 7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따라 기기부호와 주파수를 필히 기재합니다.(예 : LARN8-2402/2480+2412/2472+LARN5-5180/5220)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와 제2조제1의2호에 정의된 제조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8.2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12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 무선 [ ] 유선 [ ] EMC [ ] SAR [ ]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7.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9,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12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또는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사항	적합성평가의 종류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상기기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수 량		금 액	
④ 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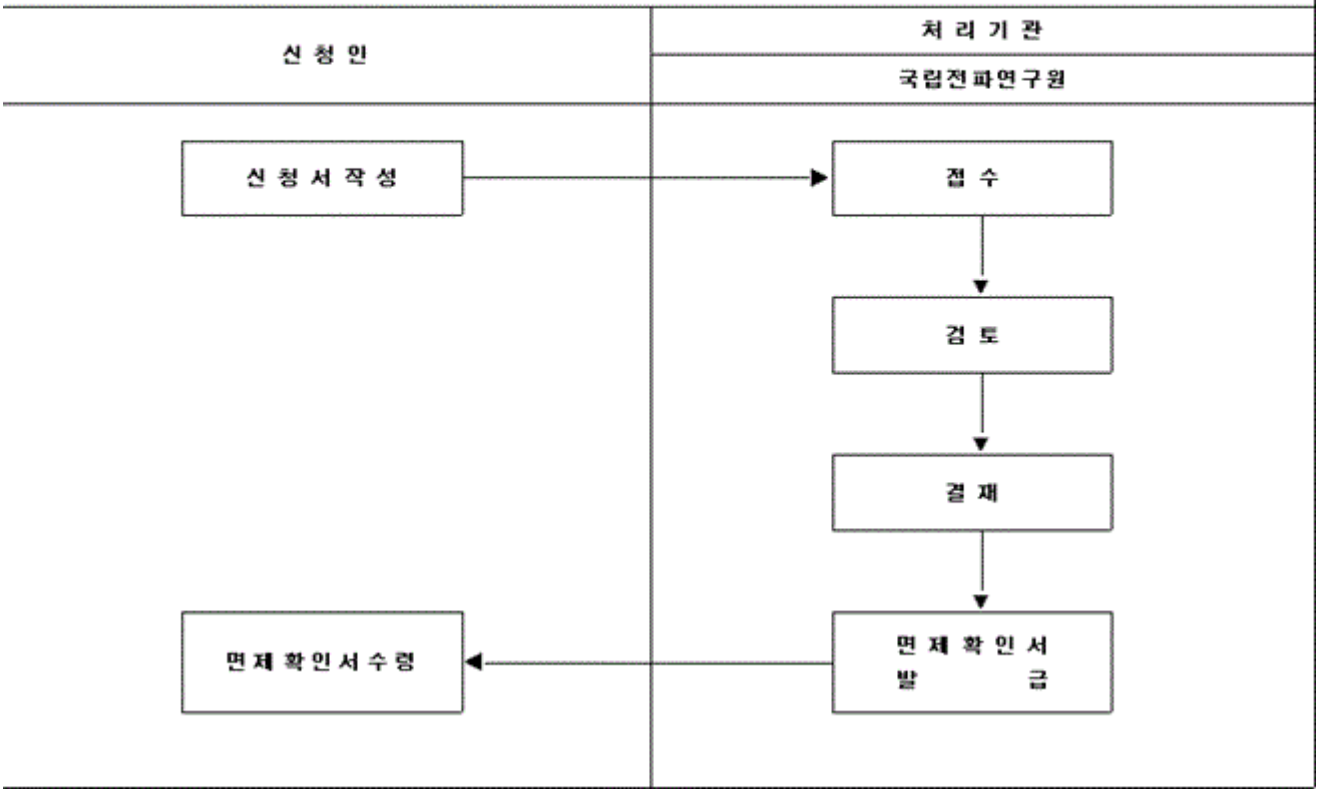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8.29.>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 적합성평가확인 / [ ] 사전통관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수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수입화물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래품명)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S 번 호		⑩ 인증등록·관리번호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수 량	
⑫ 제 조 자			⑬ 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개정 2012. 9.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6.28.>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신 청 인	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등록사항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적합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구성품 확인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시험성적서 발행일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3.19.>

(앞 쪽)

제 호

조사관증

사 진
3cm×4cm

성 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 × 86㎜ (PVC(비닐) 980.4g/㎡)

(뒤 쪽)

조 사 관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제71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해 지 사 유	□ 제조중단 □ 수입중단 □ 판매중단 □ 기타
기 타 사 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재 발 급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재 발 급 사 유	□ 분 실 □ 손 상 □ 기타
기 타 사 항	

제28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 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 기자재	적합성평가 구분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	[ ] 보 관 [ ] 미보관
	기자재명칭		제품식별부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서류

2.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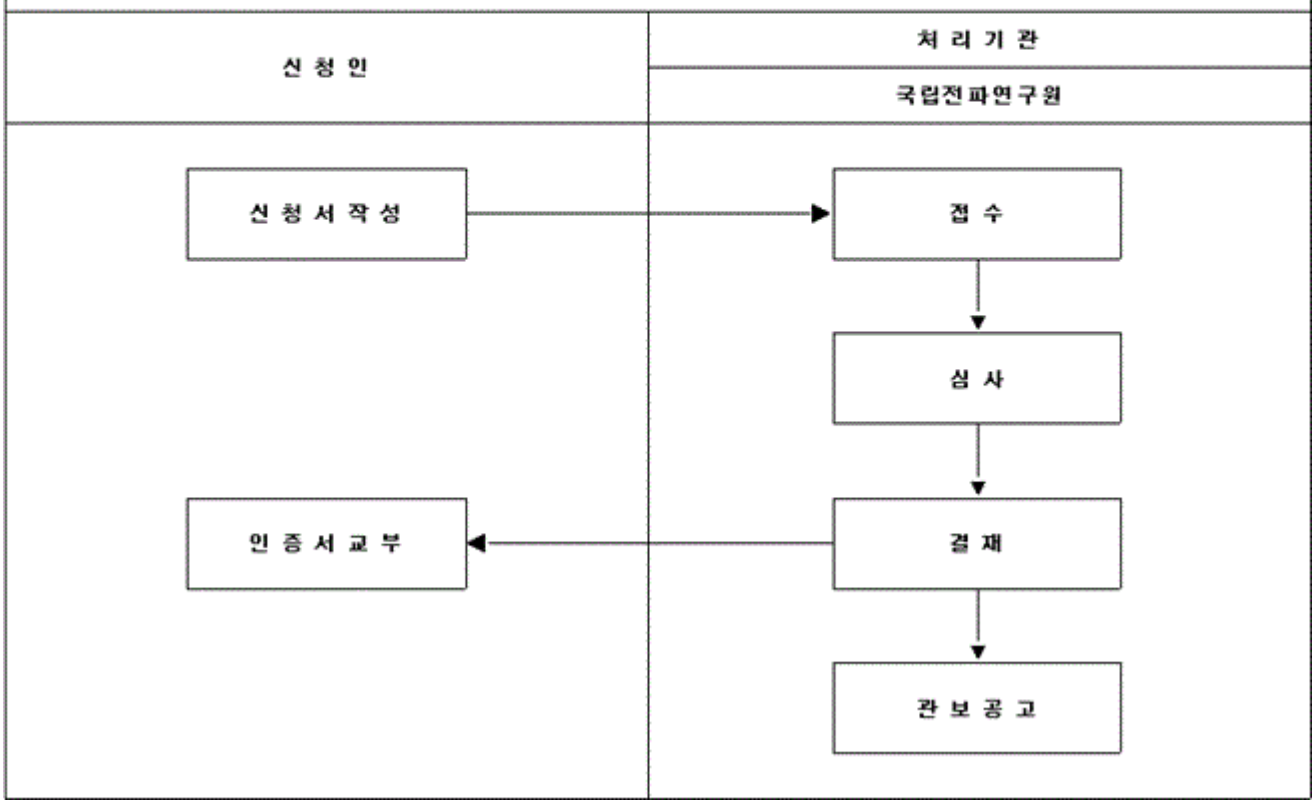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타

o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8.29.>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동일기자재 (신청기자재)	적합성평가 구분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동의자 (선인증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 사항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 제 공 [ ] 미제공		
	상 호 명		인증·등록·관리 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적합성평가 연월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적합등록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관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에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24.7.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Self-Conformity Decl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Declarer*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기자재 관리번호 *Equipment Management Number*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기자재의 외관 사진 *Exterior Photos of Equipment*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Conformity Assessment Application Standards*	
기타 변경사항 *Other Change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The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12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제정 2024.7.24.>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인증·등록·관리 번호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		판매수량	
부적합 발생일			부적합 발생장소	

부적합 내용

부적합 원인 분석내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전파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합 기자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3호서식] <제정 2024.7.24.>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인증·등록·관리 번호			모델명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통해 검증

고지 실적
- ㅇ 고지기간
- ㅇ 고지방법(유통사/구매자)
- ㅇ 고지내용(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따른 내용)

수거 등 내용 및 실적
- ㅇ 제조량(수입량) : (제조(수입)기간 :)
- ㅇ 판매량 : (판매기간 :)
- ㅇ 수거량 :

수거 등을 하지 못한 기자재에 대한 조치 계획

조치기간

증빙서류

「전파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 - 202 - 6433, 64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69조의2제2항、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5., 2024. 7. 9.>

[전문개정 2011. 1. 4.]

제2조 삭제 <2011. 1. 4.>

제3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19. 3. 12., 2019. 6. 25., 2021. 1. 5., 2022. 12. 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삭제<2022. 12. 6.>

20. 삭제<2022. 12. 6.>

21. 삭제<2022. 12. 6.>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1. 1. 4.>

제2장 일반적 조건

제4조(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해 등의 방지)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 4.>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 4.>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1. 4.>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7조(보호기 및 접지) ①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개정 2011.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

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0조(전원설비)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1. 4., 2024. 7. 9.>

1.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11조 삭제 <2017. 4. 25.>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 1. 4.>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4. 25.]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신설 2024. 7. 9.>

[본조신설 2017. 4. 25.]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4. 25.]

제18조(설치방법)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2017. 4. 25.>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5.>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2017. 4.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7. 4. 25.]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

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4. 25.>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 1. 4.>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19. 6. 25.>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4. 25.>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25.>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2017. 7. 26.>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4. 25.,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4.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7. 4. 25.]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4. 25.]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 4. 10.>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1. 1. 4.>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 4., 2017. 4. 25.>

제27조(통신규약)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 1. 4.>

제5장 보칙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2024. 7. 9.>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11. 1. 4.]

부칙 <제20664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2616호,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3082호,2011. 8. 1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3^ 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445호,2013. 3. 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998호,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617호,2019. 3. 1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9886호,2019. 6. 25.>(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4호,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ㆍ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72호,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조에 따른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모두 신청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설 치 대 상	설 치 장 소
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각 지하층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 및 시설	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3.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7. 4. 25.>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 보 면 적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구내통신실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제1호 외의 업무용 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12. 6.>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확보면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 초과 단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비 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2. 12. 6.>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2의2. 위 표에서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동단자함"이란 건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과 건물 내 수직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16.] [고시 제2026 - 17호, 2026. 6. 16.,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02 - 2110 - 16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 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16. <삭 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삭제>

제3조의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전파법」 제45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구내교환설비의 예비전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렬단자) <삭 제>

제6조(장치함 등) <삭 제>

제7조(구내배관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

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실내에서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각각 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따라 방송용 선로와 전력선은 상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 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방송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삭제>
4. 보호기
5. 신호처리기
6. 증폭기
7. 분배기 및 분기기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직렬단자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② <삭제>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빗물이 침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침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삭 제>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 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8조(신호처리기) ① <삭 제>

② 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2의1]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디지털 아날로그신호변환기) <삭 제>

제20조(동축케이블) <삭 제>

제21조(구내배선) <삭 제>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①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삭 제>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①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4]를 적용한다.

제25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6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제27조(동축케이블) <삭 제>

제28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9조(가입자설비) ①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② <삭제>

③ <삭제>

제30조(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6호,2008. 5. 1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27호,2009. 11. 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5호,2011. 3. 30.>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8호,2012. 10. 15.>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62호,2013. 10.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5호,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설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9호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시 개정규정에 따른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 및 관련 설비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설치할 수 없거나 해당 지역에서 방송신호 수신이 불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17 - 7호,2017.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 1호,2018. 1.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4조 및 제18조제3항 설비에 대한 경과 조치) 레벨조정기 및 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의 제조 또는 판매는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부칙 <제2026 - 17호,2026. 6.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송 주파수대역(제10조제2항 관련)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9조제3항의 [별표13]을 준용한다.
2. 에프엠라디오방송

채널	할당 주파수(MHz)	채널	할당 주파수(MHz)	채널	할당 주파수(MHz)	채널	할당 주파수(MHz)
1	88.1	26	93.1	51	98.1	76	103.1
2	88.3	27	93.3	52	98.3	77	103.3
3	88.5	28	93.5	53	98.5	78	103.5
4	88.7	29	93.7	54	98.7	79	103.7
5	88.9	30	93.9	55	98.9	80	103.9
6	89.1	31	94.1	56	99.1	81	104.1
7	89.3	32	94.3	57	99.3	82	104.3
8	89.5	33	94.5	58	99.5	83	104.5
9	89.7	34	94.7	59	99.7	84	104.7
10	89.9	35	94.9	60	99.9	85	104.9
11	90.1	36	95.1	61	100.1	86	105.1
12	90.3	37	95.3	62	100.3	87	105.3
13	90.5	38	95.5	63	100.5	88	105.5
14	90.7	39	95.7	64	100.7	89	105.7
15	90.9	40	95.9	65	100.9	90	105.9
16	91.1	41	96.1	66	101.1	91	106.1
17	91.3	42	96.3	67	101.3	92	106.3
18	91.5	43	96.5	68	101.5	93	106.5
19	91.7	44	96.7	69	101.7	94	106.7
20	91.9	45	96.9	70	101.9	95	106.9
21	92.1	46	97.1	71	102.1	96	107.1
22	92.3	47	97.3	72	102.3	97	107.3
23	92.5	48	97.5	73	102.5	98	107.5
24	92.7	49	97.7	74	102.7	99	107.7
25	92.9	50	97.9	75	102.9	100	107.9

3. 위성방송 할당주파수대: 950~2150㎒
4. 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할당주파수대역(174~216㎒)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1조제2항제4호가목 및 제11조제3항의 [별표18]을 준용한다.

[별표 2]

사용설비의성능기준(제11조제3항관련)

1. 수신안테나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단위	54~88㎒	88~108㎒	174~216㎒	470~608㎒	608~806㎒
이 득	dBi 이상	7	8	8	9	10
임피던스	ohm(Ω)	75	75	75	75	75
반사손실	dB 이상	8	8	8	8	8

나. 위성방송

안테나				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	편파 분리도	VSWR	입력주파수 범위	L.O	출력 정재파비	이득	잡음지수	출력 임피던스
Offset 파라볼라	41dBi 이상 (12㎓)	20dB 이상	1.3 이하	11.70~ 12.75㎓	10.75㎓ ±2㎒ 이내 (-30~+60℃)	2.5 이하	55dB 이상	1.0dB 이하 @25℃	75ohm

비고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위성방송에 한함

2. 레벨조정기

가. 단일채널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범위	㎒	470~771	UHD TV 채널 14번에서 56번 중 1개 채널
입력레벨	dBμV	37~87	
연속가변 감쇠량	dB이상	18	
주파수응답	dB이내	±2	5.83㎒ 대역 내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이상	14	
대역외 감쇠량 (S21파라미터)	dB이상	fc±4.5㎒에서 10, fc±5.0㎒에서 40, fc±6.0㎒이상 대역에서 60	fc = 채널중심주파수 대역외: 54~2,150MHz
신호대잡음비 (MER) 변화량	dB이하	1	연속으로 인접한 20dB ±1dB 이내의 입력 신호
입출력 삽입이득	dB이상	2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이내	±3	출력변화범위
스퓨리어스	dB이상	60	

나. 다중채널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범위	㎒	470~771	UHD TV 채널 14번에서

			56번 중 5개 채널이상
입력레벨	dBμV	37~87	
연속가변 감쇠량	dB이상	18	채널별
주파수응답	dB이내	±2	5.83㎒ 대역 내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이상	14	
대역외 감쇠량 (S21파라미터)	dB이상	fc±4.5㎒에서 10, fc±5.0㎒에서 40, fc±6.0㎒이상 대역에서 60	fc = 채널중심주파수 대역외: 54~2,150MHz
신호대잡음비 (MER) 변화량	dB이하	1	연속으로 인접한 20dB ±1dB 이내의 입력 신호
입출력 삽입이득	dB이상	20	
자동이득 조정범위	dB이내	±3	출력변화범위
스퓨리어스	dB이상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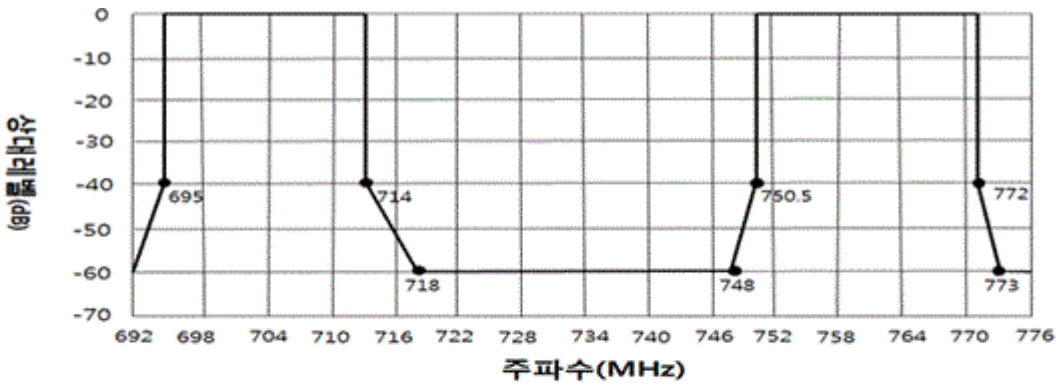
다. 700㎒ 주파수대역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범위	㎒	698~771	UHD TV 채널 (52,53,54,55,56)
입력레벨	dBμV	37~87	
연속가변 감쇠량	dB이상	15	대역
주파수응답	dB이내	±2	5.83㎒ 대역 내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이상	10	
대역외 감쇠량 (S21 파라미터)	dB이상	54~692㎒, 718~748㎒및 773~2150㎒에서 60dB이상 695㎒, 714㎒, 750.5㎒, 772㎒에서 40dB이상	그림 참조
신호대잡음비 (MER) 변화량	dB이하	1	연속으로 인접한 20dB ±1dB 이내의 입력 신호
입출력 삽입 이득	dB이상	20	
스퓨리어스	dB이상	60	

비고

가.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동일채널이어야 한다.

나. 채널의 시험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17.1dB(가우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3.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삭제>

4. 증폭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최대이득		dB 이상	30/35	
대역 내 이득편차		dB 이내	±1	
정격출력레벨		dBμV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dB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dB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dB 이하	-55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dB 이하	-55	
혼변조		dB 이하	-55	
잡음지수		dB 이하	10	
험 변조		dB 이하	-63	
반사손실		dB 이상	14	
자동이득조정(AGC)범위		dB 이상	±4	AGC적용제품
누설 전자파	54㎒이하	μV/m 이하	15	30m 기준
	54~216㎒	μV/m 이하	20	3m 기준
	216㎒이상	μV/m 이하	15	30m 기준

나. 54 ~ 2150㎒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Mhz	54~806	950~2150	
최대이득		dB 이상	30/35	40	
대역 내 이득편차		dB 이내	±1	±2	
정격출력레벨		dBμV 이상	105	110	
이득조정범위		dB 이상	10	10	
경사조정범위		dB 이상	10	6	
3차 상호변조(CTB)		dB 이하	-55	-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dB 이하	-55	-	
혼변조		dB 이하	-55	-	
잡음지수		dB 이하	10	10	
험 변조		dB 이하	-63	-63	
반사손실		dB 이상	14	8	
자동이득조정(AGC)범위		dB 이상	±4	-	AGC적용제품
3차 상호변조왜곡(IMD3)		dB 이하	-	-50	2tone 입력시
누설 전자파	54Mhz 이하	μV/m 이하	15	15	30m 기준
	54~216Mhz	μV/m 이하	20	20	3m 기준
	216Mhz 이상	μV/m 이하	15	15	30m 기준

5.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6. 분배기

가. 54 ~ 806Mhz용

구 분	단위	기 준 값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dB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반사손실	dB 이상	15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험변조	dB 이하	-65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임피던스	Ohm	75							

나. 54 ~ 2150Mhz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Mhz	54 ~ 806					950 ~ 2150					
분배수		2	3	4	6	8	2	3	4	6	8	
분배손실	dB 이하	4.5	7.5	8.5	11.5	13	6	9.5	11	16	18.5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20	20	20	20	17	17	17	17	17	
반사손실	dB 이상	12	11	10	9	9	12	11	10	9	9	
주파수응답	dB 이내	±1.5					±3					
전류통과용량	이상	DC 15V 0.5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1단자 이상

7. 광(光)분배기

구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8. 분기기

가. 54 ~ 806㎒ 용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손실	1분기	dB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dB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dB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dB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결합손실	1분기	dB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dB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dB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dB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반사손실		dB 이상	15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분기손실오차범위 내)									
험변조		dB 이하	-65(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전류통과형에만 적용)									

나. 54 ~ 2150㎒ 광대역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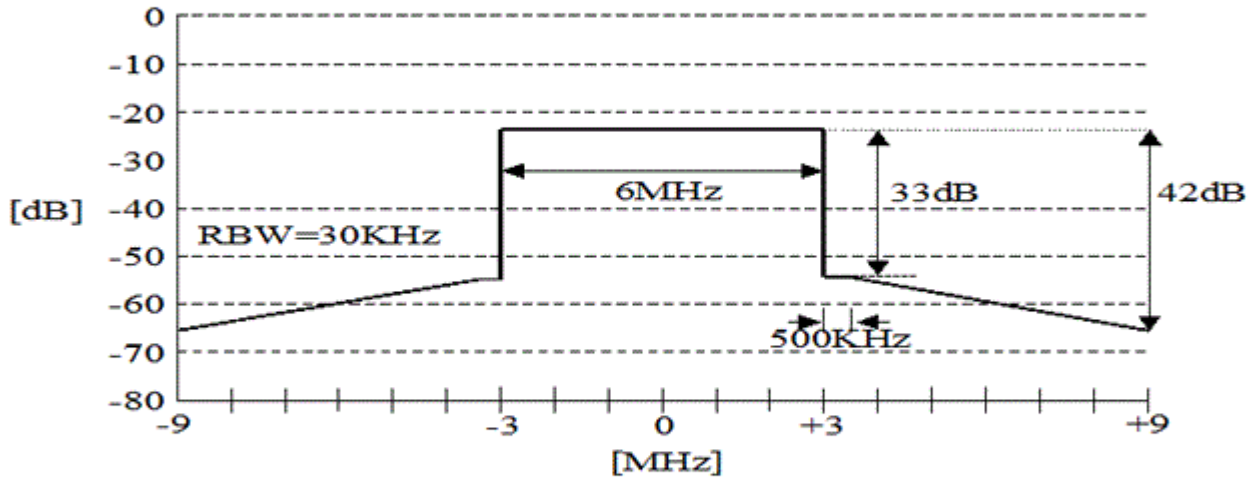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Mhz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 손실	1분기	dB 이하	2.5	2.0	1.5	1.3	1.0	4.5	3.5	3.0	2.7	2.5	
	2분기		5.0	2.7	2.5	2.0	1.5	6.5	5.0	3.5	3.0	2.7	
	4분기		-	-	5.5	3.0	2.5	-	-	7.0	4.0	3.2	
	8분기		-	-	8.7	4.5	3.5	-	-	10.5	6.0	5.5	
역결합 손실	1분기	dB 이상	21	23	25	27	29	20	22	22	22	25	
	2분기		21	23	25	28	30	20	20	20	20	20	
	4분기		-	-	21	22	30	-	-	20	20	22	
	8분기		-	-	22	24	25	-	-	20	20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2.5					
단자간 결합손실			20					18					
반사손실			10					9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2					분기손실 오차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 간

9. 신호처리기

가.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806	
입력레벨	dB㎶	35~85	ATSC 8-VSB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dB㎶	110±5	
인접채널 감쇄특성 (대역외)	dB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dB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dBc/Hz 이하	-98	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20㎑ 이격지점에서
주파수응답	dB 이내	±0.5	5.38㎒ 대역 내에서
그룹지연응답	ns 이내	±50	5.38㎒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dB 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7dB 이상의 입력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채널 2번부터 69번까지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삭제>

다.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1) 채널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레벨	dBμV	40~60	
출력레벨	dBμV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주파수특성	dB	±1	
채널 대역폭	kHz	280	
혐변조	dB 이하	-60	

(2) 광대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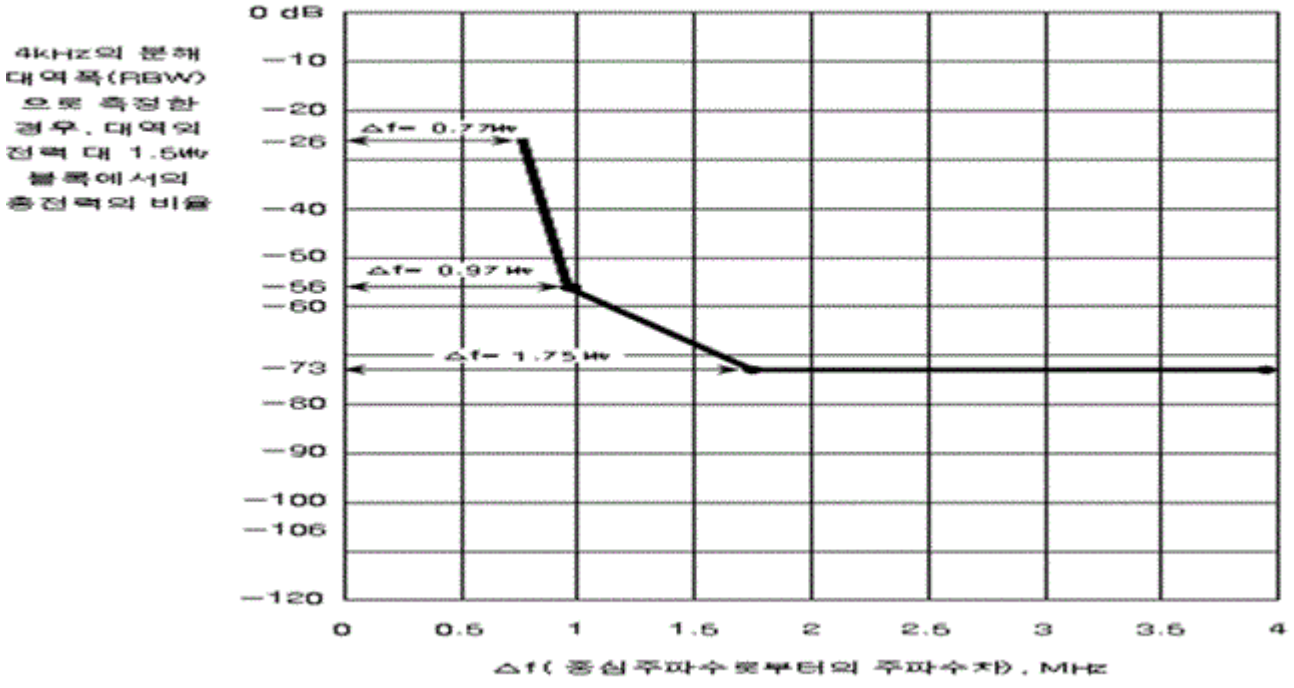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MHz	88 ~ 108	
입력레벨	dBμV	40 ~ 60	
출력레벨	dBμV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주파수특성	dB 이내	±1	
출력레벨 안정도	dB 이내	±1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출력조정범위	dB 이상	15	
잡음지수	dB 이하	10	
혐변조	dB 이하	-60	
감쇠특성	dB 이상	40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신호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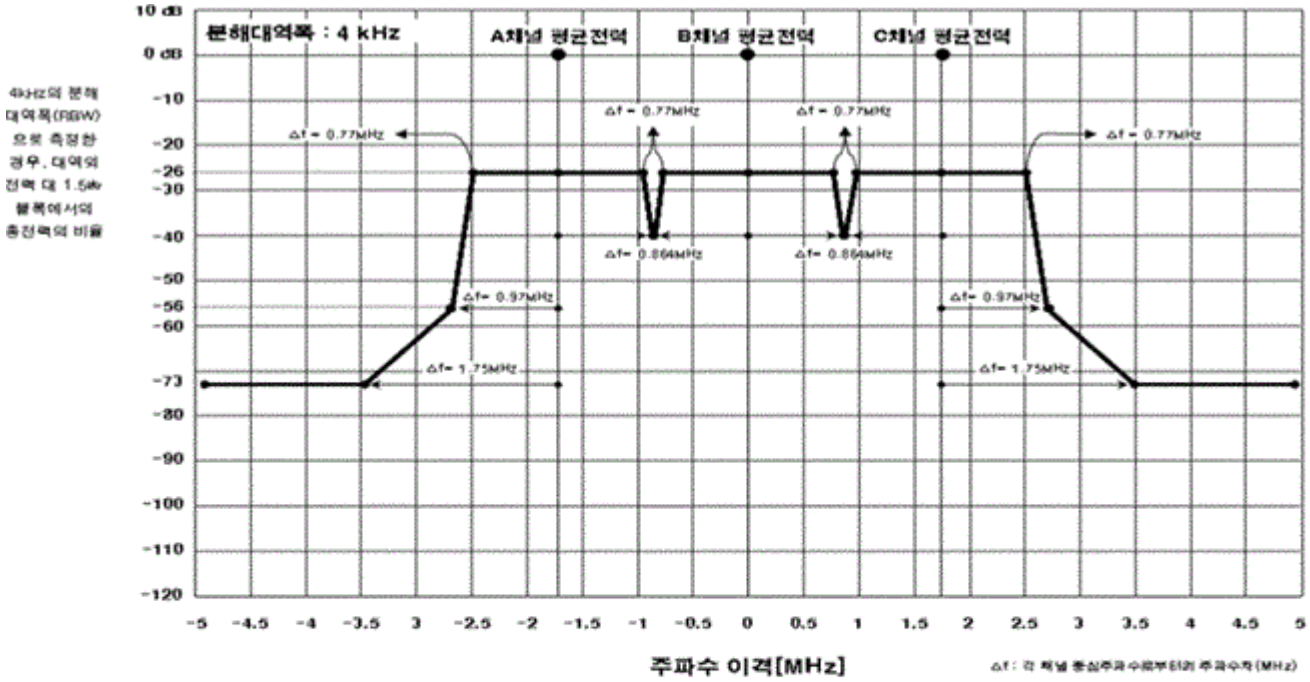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Mhz	6	174 ~ 216Mhz 범위 중
임피던스	Ω	75	공칭
입력레벨	dBμV	40 ~ 60	
출력레벨	dBμV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주파수특성	dB 이내	±1	
주파수안정도	kHz	±10	
출력레벨 안정도	dB 이내	±1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출력조정범위	dB 이상	15	
잡음지수	dB 이하	10	
험변조	dB 이하	-60	
인접채널 감쇄특성(대역외)	dB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인접채널 감쇄특성)

1) 단일채널인 경우



2) 복수채널인 경우



마.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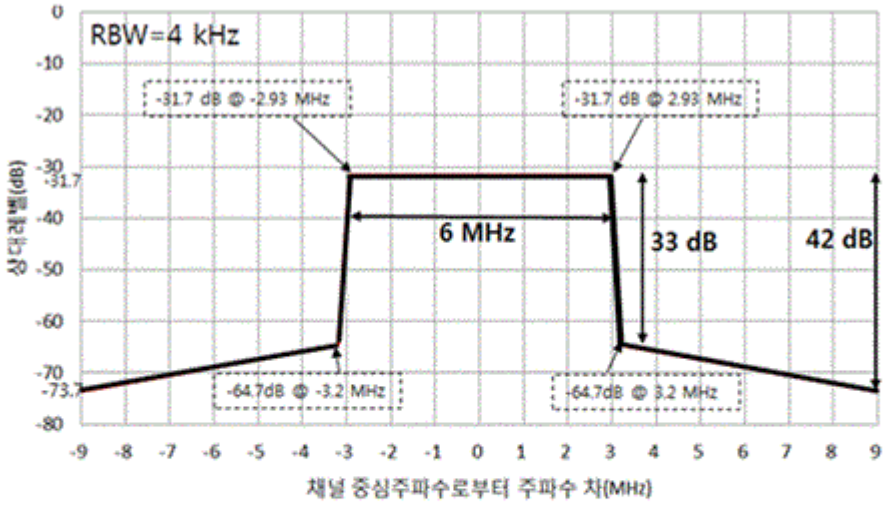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Mhz	54~771	
입력레벨	dBμV	37~87	ATSC 3.0 전송방식 기준
출력레벨	dBμV	112±5	
인접채널 감쇄 특성 (대역외)	dB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dB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dBc/Hz 이하	-98	LO 주파수로부터 20kHz 이격지점 단, 기준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부품 사양으로 대체
주파수응답	dB 이내	±1	5.83Mhz 대역 내에서
첨두전력대평균 전력비(PAPR)	dB 이하	13	시간율 99.9% 기준
신호대잡음비	dB 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8dB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1.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채널 2번부터 56번까지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널의 시험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 잡음비 17.1dB(가우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10. 직렬단자

가. (54~806 용)

(1)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Mhz	54 ~ 806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입손실	중간형(직렬형)	dB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병렬형)	dB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직렬형)	dB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병렬형)	dB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dB이하	±1.5								
단자간결합손실		dB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 응답		dB이내	±0.75								

(2)종단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Mhz	54 ~ 806								
삽 입 손 실	dB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dB 이내	±1.5								
반 사 손 실	dB 이상	15								
주파수 응답	dB 이내	±0.75								

비고 : 삽입손실 1dB, 3dB, 5dB는 정합형으로 사용

나 . 54 ~ 2150㎒ 광대역용

(1)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손실	중간형(직렬형)	dB 이하	3	2.5	2	1.4	1.2	4.5	3.5	3.0	2.7	2.5	
	중간분기형(병렬형)		5	3	2.5	2	1.4	6.5	5.0	3.5	3.0	2.7	
역결합손실	중간형(직렬형)	dB 이상	22	24	26	27	30	20	22	22	22	25	
	중간분기형(병렬형)		20	22	24	25	27	20	20	20	20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2.5					
단자간결합손실		dB 이상	20					20					
반사손실		dB 이상	10					9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1.5					분기손실 오차범위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간

(2)종단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2150								
분기손실	dB	1	3	5	8	11	14	17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반사손실	dB 이상	13(54~806㎒) / 10(950~2150㎒)								
주파수응답	dB 이내	±1								

비고 : 삽입손실 1dB, 3dB, 5dB는 정합형으로 사용

11. 동축케이블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사손실		dB 이상	21											
절연저항		MΩ/km이상	1,000											
임피던스		ohm(Ω)	75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 도체간/분
정전용량		pF/km	52±3											
누설전파	54MHz 이하	μV/m이하	15											30m기준
	54 ~ 216MHz	μV/m 이하	20											3m기준
	216MHz 이상	μV/m 이하	15											30m기준
감쇄량 (20℃)		주파수 (MHz)	54 ~ 806MHz용							950 ~ 2150MHz용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dB/km (최대치)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	124.3	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12. 광(光)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단일모드광섬유(SMF)	
파장(nm)	1310	1550
손실(dB/km)	0.5 이하	0.4 이하

비 고

가. 광배선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광섬유의 크래딩에 가하는 광 파워는 수신기에 과부하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특등급)의 경우에는 전송데이터가 집중되는 구내 간선계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3. 광(光) 송(수)신기

구 분	규격	기 준 값		비고
광 파장	nm	1310 ±10 또는1550 ±10		
광 입출력	dBm	광 출력	0 이상	광 송신기
		광 입력	-8 ~ -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	MATV	54 ~ 806	
		위성대역	950 ~ 2150	
주파수응답	dB 이내	MATV	±1	
		위성대역	±2	
CNR	dB 이상	48		광 수신기 −6dBm 입력기준
2차 상호변조(CSO)	dB 이하	-58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 상호변조(CTB)	dB 이하	-60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 상호변조왜곡(IMD3)	dB 이하	-55		위성대역,2톤 테스트
광케이블전송거리	km이상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14.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삭 제>

15. 중계기용 무선기기 특성과 관련한 기술기준은 다음의 기술기준을 각각 준용(주파수 허용편차, 불요발사 허용치, 전계강도)한다.

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1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7조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별표 2의 1]

사용설비의성능기준(제18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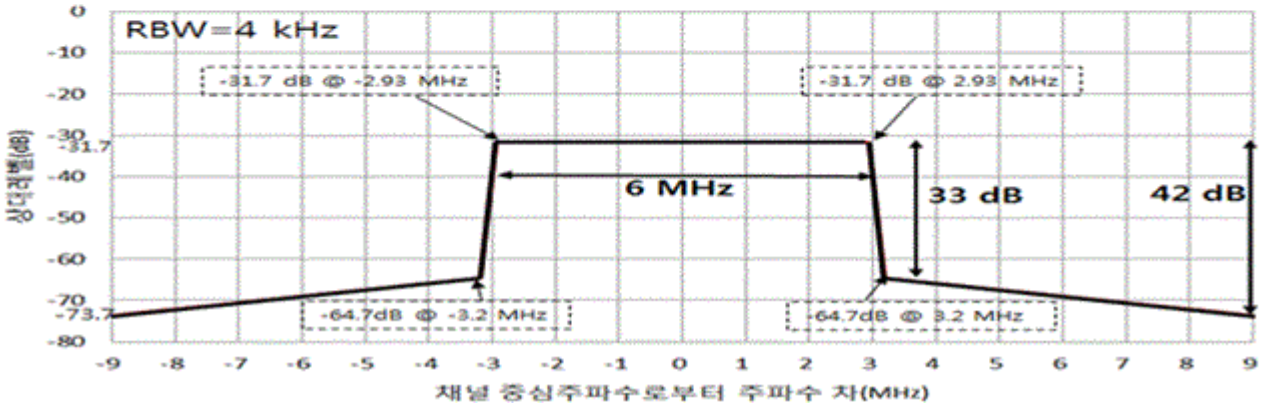
1. 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771	
입력레벨	dB㎶	37~87	ATSC 3.0 전송방식 기준
출력레벨	dB㎶	105±5	
인접채널 감쇄 특성 (대역외)	dB 이하	그림참조	연속으로 인접한 채널을 입력한 경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dB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dBc/Hz 이하	-98	LO 주파수로부터 20kHz 이격지점 단, 기준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부품사양으로 대체
주파수응답	dB 이내	±2	5.83㎒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MER) 변화량	dB 이하	1	연속으로 인접한 20dB ± 1dB 이내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가.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채널 2번부터 56번까지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널의 시험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17.1dB(가우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Mbps 등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별표 3]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제22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FM포함)	55 ~ 85dBμV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37 ~ 67dBμV 39 ~ 69dBμV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23 ~ 53dBμV
	디지털위성방송채널	36 ~ 66dBμV
채널 간의 레벨 차(동일변조방식)	인접사용 채널 간	5dB이내
	비인접사용 채널 간	10dB이내
신호대잡음비(S/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22dB이상 24dB이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14dB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dB이상

비고

가. 기준 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단, 안테나 최초 임력신호의 S/N비가 미달할 경우 정상품질의 신호원 인가 시 기준)이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준 값은 지하층의 층 단자함에서의 질적 수준을 말하고, 측정항목 중 출력레벨은 채널전력을 말한다.

나. 삭제

[별표 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제24조제2항 관련)

1. 증폭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하향특성	주파수대역	㎒	54~1,002 또는 88~1,002	
	대역내 이득편차	dB이내	±1.25	
	정격출력레벨	dBμV이상	105	
	최대이득	dB이상	20/25/30/35/4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dB이상	10	
	경사조정범위	dB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dB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2차 상호변조(CSO)	dB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혼변조	dB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잡음지수	dB이하	10	
	험변조	dB이하	-63	
	반사손실	dB이상	14	
상향특성	주파수대역	㎒	5.75~41.75 또는 5.75~65	
	대역내이득편차	dB이내	±0.75	
	정격출력레벨	dBμV이상	97	
	최대이득	dB이상	2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dB이상	10	
	경사조정범위	dB이상	4	
	상호변조	dB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혼변조	dB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잡음지수	dB이하	10	
	험변조	dB이하	-63	
	반사손실	dB이상	15	
전원	전송망전원 사용 시	V	AC 60~90	
	상용전원 사용 시	V	AC 110/220±10%	

※ 하향특성 중 최대이득은 증폭기에 전달되는 전계의 세기에 따라 그 이득을 달리 할 수 있다.

2. 분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1,002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손실	1분기	dB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dB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dB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dB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결합손실	1분기	dB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dB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dB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dB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 오차		dB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 결합손실		dB이상	20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응답		dB이내	±0.75										분기손실 오차범위내
험변조		dB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 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3. 분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1,002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dB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간 결합손실	dB이상	20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응답	dB이내	±0.75								
험변조	dB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 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4. 직렬단자의 특성

가.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1,002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입 손실	중간형 (직렬형)	dB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dB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dB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dB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dB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dB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TV단자와 분기단자 사이)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 응답		dB이내	±0.75									

나. 종단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1,002									
삽입손실	dB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dB이하	±1.5									공칭손실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 응답	dB이내	±0.75									

비고 : 삽입손실 1dB, 3dB, 5dB는 정합형으로 사용

5. 동축케이블 특성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1,002								
정재파비		이하	1.2								
절연저항		MΩ/㎞이상	1,000								
임피던스		Ω	75								공칭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도체 간/분
정전용량		pF	52±3								
누설전파	54㎒이하	㎶/m이하	15								30m기준
	54~216㎒	㎶/m이하	20								3m기준
	216㎒이상	㎶/m이하	15								30m기준
감쇄량		㎒	10	50	150	250	350	450	750	864	

									이상	
	dB/㎞ (최대치)	5.1	9.1	12.1	22.0	28.6	34.6	47.0	52	17C
		7.8	17.6	31.9	41.8	50.0	57.2	70.9	76.5	12C
		12.0	25.4	42.2	54.0	65.7	73.4	96.2	106.2	10C
		15.7	30.7	55.1	71.0	86.2	95.9	124.3	133.7	7C
		23.8	47.2	77.2	98.9	117.1	137.0	178	195	5C
차폐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6.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 ~ 1,002	
임피던스		Ω	75	공칭
삽입손실		dB이하	1.2	
반사손실		dB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dBmV이하	-30	
충격파 방전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7. 광(光)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단일모드광섬유(SMF)	
파장(㎚)	1310	1550
손실(dB/㎞)	0.5 이하	0.4 이하

비 고

가. 광배선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광섬유의 크래딩에 가하는 광 파워는 수신기에 과부하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9. 광(光)분배기

구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10. 광(光) 송(수)신기

구 분	규격	기준값		비고
광 파장	nm	1310 ±10 또는1550 ±10		
광 입출력	dBm	광 출력	0 이상	광 송신기
		광 입력	-8 ~ -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	상향	5~75~41.75 또는 5.75~65	
		하향	54~1,002 또는 88~1,002	
주파수응답	dB 이내	상향	±1	
		하향	±2	
CNR	dB 이상	48		광 수신기 -6dBm 입력기준
2차 상호변조(CSO)	dB 이하	-58		CATV대역, 15채널 전송기준
3차 상호변조(CTB)	dB 이하	-60		CATV대역, 15채널 전송기준
3차 상호변조왜곡(IMD3)	dB 이하	-60		상향, 2톤 테스트
광케이블전송거리	km이상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별표 5]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제29조제2항 관련) <삭제>

[별표 6]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의 질적수준(제30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1,002㎒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		55~ 85dBμV
	디지털채널	8VSB	37~67dBμV
		QPSK	29~59dBμV
		64QAM	35~65dBμV
		256QAM	42~ 72dBμV
채널 간의 레벨차 (동일 변조 방식)	인접사용 채널 간		5dB이내
신호대 잡음비(S/N비)	아날로그채널		40dB이상
	디지털채널	8VSB	22dB이상
		QPSK	14dB이상
		64QAM	20dB이상
		256QAM	27dB이상

비고 : 기준 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수준이고 측정항목 중 출력레벨은 채널전력을 말한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시행 2025. 11. 28.] [고시 제2025-10호, 2025. 11. 28.,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061-338-46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4. 규정 제17조·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2조의2·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홈네트워크설비
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
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관로·맨홀 등의 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7.2.>
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
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7.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8.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1의2.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집중구내통신실 등)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
12.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일 건물 내의 국선단자함이나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의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3.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4. <삭제>
15. "동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終端)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6.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7. "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引入)되는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18.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9. "급전선"이라 함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20.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21. "홈네트워크 주장치(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등을 포함한다)"라 함은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23.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호기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방법

제4조(보호기 성능) ① 보호기의 기본회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기의 성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의 과전압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 - E, L2 - E간에 인가할 때 184V 이상 28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100V/㎲의 상승전압을 L1 - E, L2 - 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6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3. 보호기는 1000V/㎲의 상승전압을 L1 - E, L2 - 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③ 보호기의 과전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 - T1, L2 - T2간에 교류 110V 250㎃를 인가할 때 1분이내, 교류 110V 1A를 인가할 때 2초 이내에 동작하여 부동작 전류 이하로 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가 제거되면 자기 복구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L1 - T1, L2 - T2간에 직류 150㎃를 3시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호기의 발화방지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 - E, L2 - E간에 60㎐, 5A를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압 방전소자의 발화방지 장치가 동작하여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보호기는 과전압 방전소자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L1 - T1, L2 - T2간에 교류 220V, 3A을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5조(접지저항 등) ①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③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 이상의 피、브이、씨(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導電性)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凍結深度)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2. 금속성 함체(函體)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제3장 선로설비 설치방법

제6조(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통신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설치한 방송통신설비에 방해를 줄 염려가 없고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 압		30cm이상
고 압	강전류케이블	30cm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cm이상

2.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35,000V 이하의 것	강전류케이블	50㎝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1m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2m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2m이상
60,000V를 초과하는 것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10,000V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제8조(전주의 안전계수) ① 전주의 안전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표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1.0 이상으로 하고, 제4호의 경우 1.5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주의 구별	안전계수
1. 도로상 또는 도로로부터 전주 높이의 1.2배에 상당하는 거리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주	1.2
2. 다음에 해당하는 가공통신선을 가설하는 전주 가. 구조물로부터 그 전주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내에 접근하는 가공통신선 나. 타인의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되거나 그 전주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내에 접근하는 가공통신선 다. 철도 또는 궤도로부터 그 전주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내에 접근하거나 도로,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가공통신선	1.2
3. 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을 공가하는 전주	1.5
4. 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을 공가하는 전주	2.0

② 전주에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안전계수를 전주의 안전계수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전주의 안전계수는 그 전주에 개설하는 시설물의 인장하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등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가하여진 것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9조(풍압하중) ① 옥외통신설비에 대한 기본풍압하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풍압을 받는 시설물			시설물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전주류	목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80㎏
	철주	원통주	80㎏
		삼각주 또는 사각주	190㎏
		각주(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	150㎏
		기타의 것	240㎏
무선시설류	철탑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	170㎏
		기타의 것	290㎏
	철탑에 부착 시설되는 안테나류		200㎏
	마이크로웨이브안테나		200㎏
기타	통신선 또는 보조선		100㎏
	완철류 또는 함류		160㎏

주) 설계풍속 40㎧를 적용한 것임.

② 강풍지역외 시가지에서는 전주 및 기타 시설류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강풍지역에서는 과거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제1항의 풍압하중 이상을 적용한다.
④ 무선시설류는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2배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의 경우 제1항의 풍압하중을 적용하고 철탑 붕괴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선설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다설지역에서는 제1항의 풍압하중 또는 통신선 또는 보조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제1항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 하중중 큰 것을 적용한다.
⑥ 통신선 및 보조선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는 통신선에 대한 제1항의 풍압하중 인가시 설계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한 전주류에 설치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의한 풍압하중을 적용한다.

제10조(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
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 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과 구조, 교통, 통신, 전력의 공급과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에 관하여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그 설치한 날로부터 1월내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호망) ① 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망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망
   가.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보호망의 바깥둘레를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망
   가. 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세로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가로선은 지름 2.6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라.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망과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각각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종 보호망에 있어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를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보호망이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폭은 보호망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이상으로 한다.
3. 제2종 보호망은 제1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망은 제2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4조(보호선) ① 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선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선
   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나. 보호선의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75㎝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선
   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 공사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45° 를 넘는 각도로 교차하여야 한다.
2.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3. 보호선이 가공통신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길이는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일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
4. 제2종 보호선은 제1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선은 제2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5조(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 압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30㎝이상(강전류전선설치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15㎝ 이상)
	강전류절연전선	60㎝이상(강전류전선설치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30㎝ 이상)
고 압	강전류케이블	40㎝이상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80㎝이상

②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공사상 부득이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경우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나. 목주의 경우에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3이상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이 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2미만인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가공통신선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6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① 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 중 더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이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
      (2) 가공통신선을 지름 4㎜의 아연도금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의 것으로 조가하여 설치한 경우
      (3) 가공통신선이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4)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인 경우
      (5)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제2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6) 가공강전류전선이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3.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이 되는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4.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주와 전주사이에서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되는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에 의해 설치된 경우
   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설치된 경우
6. 제2호의 제2종 보호선 또는 제1종 보호망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가공통신선을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그 지지물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

나.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5이상인 경우

다. 가공강전류전선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경우

라. 가공통신선이 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강전류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지름 5㎜의 경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
   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
   마.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
3.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통신선중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2. 가공강전류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제18조(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하 "전차선등" 이라고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전차선등의 지지물 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전차선이 저압일 경우는 60㎝이상, 고압일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이 고압의 전차선등과 45° 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거나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과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1.2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
   나.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
3. 가공통신선이 전차선등과 45° 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전차선등과 보호선 또는 보호망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

②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거리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공통신선 또는 교류전차선의 절단이나 이들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 또는 그 지지물과 교류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일 것
   나. 가공통신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면적이 38㎟2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이상인 것을 설치할 것
3.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으로서 안전계수가 2.0이상이여야 한다.
4. 전주(철탑은 제외)에는 통신선방향으로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통신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지선을 설치한다.
5. 가공통신선이 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9조(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①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2이상 동일의 지지물에 연속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완철과는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저압으로서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강전류케이블이거나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인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 압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	30㎝이상
	강전류절연전선	75㎝이상(설치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60㎝미터 이상)
고 압	강전류케이블	50㎝이상(설치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30㎝미터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1.5m이상(설치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1m이상)

②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1의 동일의 지 지물에 한하여 가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고, 그 사용전압이 고압으로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고압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고압강전류절연전선인 경우에는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 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통신선, 강전류전선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과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이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이 강전류케이블인 경우에 그들이 직접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때에는 지지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공통신선[전력보안용(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설치하는 전기철도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특고압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일 것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일 것

나. 가공강전류전선은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55㎟2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선을 사용할 것

다.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할 것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할 것

2.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일 것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로 한다.

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① 교류 600V이하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 및 그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력선과의 결합부품 또는 결합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 - 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② 교류 600V초과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통하여 전력선에 접속되어야 하며, 이 보안장치에 접속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 - 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지중통신선) ①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퓨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해저통신선) 해저통신선은 해저 강전류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대한 위해방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옥내통신선 이 격거리) ①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선과 통신선간 신호간섭 및 화재전이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4.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선로 설치 통로)、트레이、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제24조(지하관로 공수) ①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空數)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1. 계획케이블 조수

종 류	조 수 산 출 (단위 : 조)	비 고
시내케이블	1. 종국용량 1,000회선 이하 국소 = 1 2. 종국용량 10,000회선 미만 국소 = 종국용량×피더케이블공급배율÷1,200 3. 종국용량 10,000회선 이상 국소 가. 특별시,광역시,인구과밀지역 =종국용량×피더케이블공급배율÷2,700 나.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 =종국용량×피더케이블공급배율÷2,400 다. 군이하 지역 =종국용량×피더케이블공급배율÷1,500	1.종국용량은 15년 후의 예상수요수 로 한다. 2.신규서비스계획 또는 선로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관로의 수요 발생은 계획케이블조수 산출시에 추가 반영한다. 3.피더케이블 공급배율은 일반적으로 1.43을 적용한다.
중계 및 시외케이블과 기타수요	장기계획에 의해 적용	

2. 환경배율

적 용 구 간	배 율
사유지, 수요변동이 적은 외딴섬,벽지 등	1
일반도로, 보도구간	1.3
고속도로, 유료도로, 고급 보도블럭도로 및 철 근으로 보강 또는 동상방지된 도로로서 재굴 착이 극히 어려운 도로	2
교량철가, 터널, 궤도횡단, 간선도로횡단, 지하 철, 지하상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공동구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영구시설물등 때문에 장래 증설이 극히 어려운 구간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관 공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수용케이블 조수	예비관 공수
1이상 10이하	1
11이상 20이하	2
21이상	3

제25조(지하관로의 관경)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용 도	지하관로 적용관경
주관로, 배선관로	100㎜이상
인상분선관로(인수공과 전주간)	36㎜ 내지 80㎜

제4장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제1절 구내통신선로설비

제26조(국선의 인입) ①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수공(hand hole)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수공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수공 등을 별표2제1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내의 맨홀 또는 수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표2제2호 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2.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③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수공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1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로를 철거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이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별표 1 제1장제1절제2호에 따라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을 말한다.

⑥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수공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수공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20세대 이상 : 최소 54㎜ 이상

나. 20세대 미만 : 최소 36㎜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제28조(구내배관 등) ①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규정보다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③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그물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구부러진 관)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이내이어야 한다.

⑥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덕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①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③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선이 광케이블인 경우는 보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보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보호기를 통하여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1.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다.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3.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은 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공용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은 실외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삭제, 2013.11.18.)

⑥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분배를 위한 증폭기와 분배기, 보호기 등을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은 제1항부터 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국선단자함 내부에는 절연보조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용도별 회선설비와의 접속 및 선로설비의 수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용도별 설비의 설치 시 타 설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상호간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제30조(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①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파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제31조제2항에 따른 실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다만,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실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구내 통신선의 배선) ① 구내 통신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삭제>

제33조(구내배선 요건) ① 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한 개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별표 11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
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별표 11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서 각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3.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5.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1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나.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한 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각 건축물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3.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
5.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나.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③ 구내배선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조제5항, 구내선의 배선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제34조(예비전원 설치)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선 수용 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운용하는 국선수용용량 10회선 이상인 교환설비 및 광전송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제35조(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배관 등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2.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mm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에서 배관의 설치 구간은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로 한다.
4. 배관 및 덕트는 제28조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까지 배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이 제28조제5항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상호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제36조(접속함)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길이가 40 m를 초과할 경우
2.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제37조(접지시설) 접지시설은 제5조의 규정 및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본 절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원시설) ① 중계장치 등의 상용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전원선은 KS C IEC 60332 시리즈 규격 중 전원선의 설치방법에 부합된 해당 시험조건(이하 "전원선 시험조건"이라 한다)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선 시험조건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규정하는 다른 규격이 있는 경우 이 규격에 적합한 전원선도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장소확보 등) ①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

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장소에 송수신용 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을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협의대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주 등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설치시기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설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2012.9.28)

제40조(인입시설 등) (삭제, 2012.9.28)

제41조(장치함) (삭제, 2012.9.28)

제42조(옥내배관) (삭제, 2012.9.28)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삭제, 2012.9.28)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삭제, 2012.9.28)

제45조(예시도) (삭제, 2012.9.28)

제5장 통신공동구·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방법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 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①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준에 따른다.

2.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의 경우에는 1.5 m 이상으로 한다.

③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맨홀 또는 수공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 ① 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맨홀 또는 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 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 - 1호,2012. 1.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2 - 18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3 - 15호,2013.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3 - 196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10호,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5 - 19호,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 - 65호(2005.7.28.)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7 - 4호,2017. 5.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7 - 13호,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8 - 30호,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9 - 11호,2019. 7.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는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 완료 전인 건축물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2020 - 10호,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 - 16호,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23호,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별표6, 별표11,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

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표 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표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 - 11호,2024.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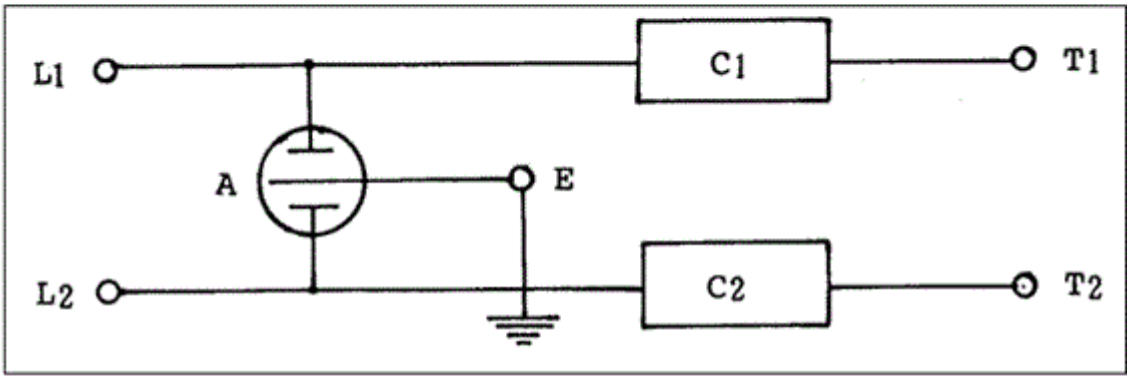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 - 10호,2025. 11.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제1항 관련)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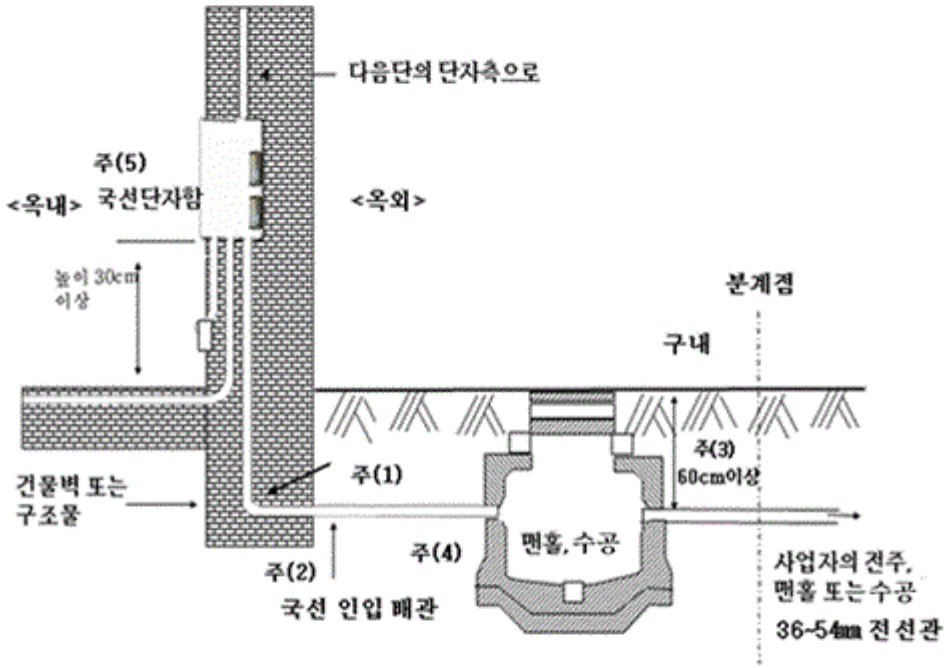


(주) L1, L2 : 외선측 단자
T1, T2 : 내선측 단자
E : 접지선 단자
A : 과전압방전소자
C1, C2 : 과전류제한소자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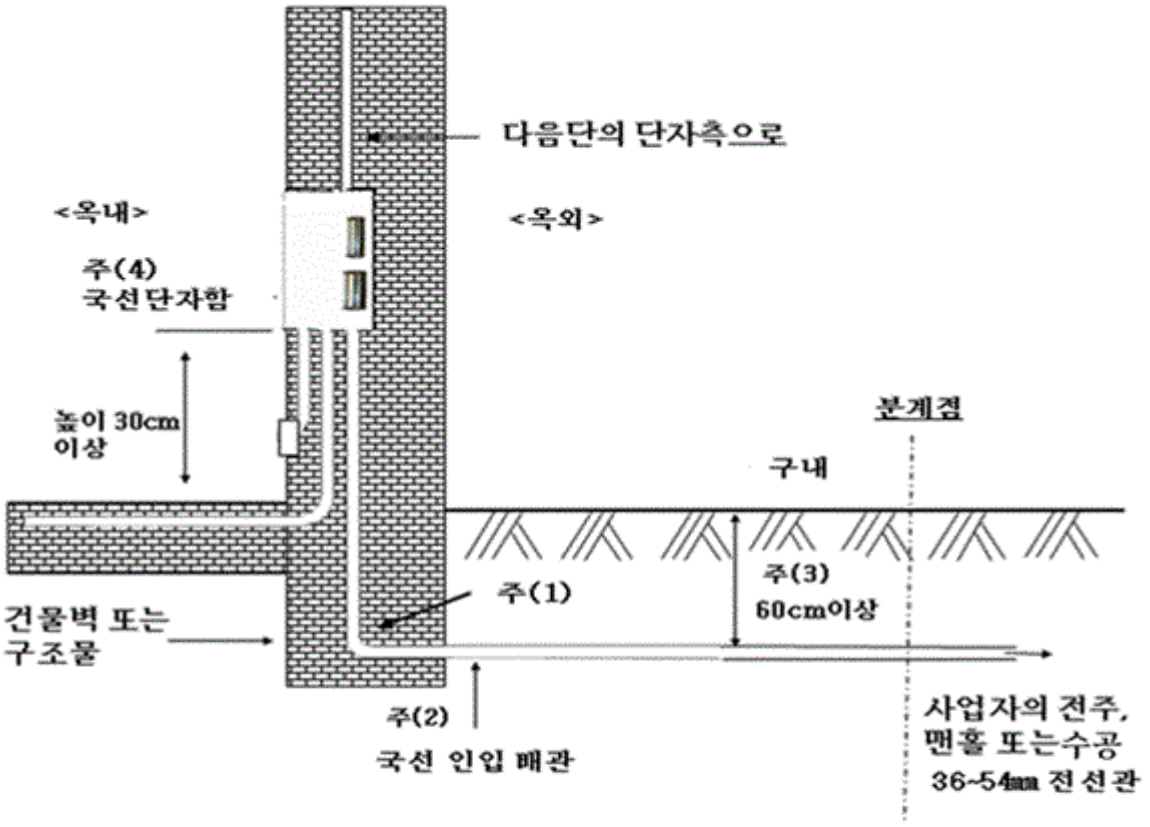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맨홀 또는 수공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5.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2.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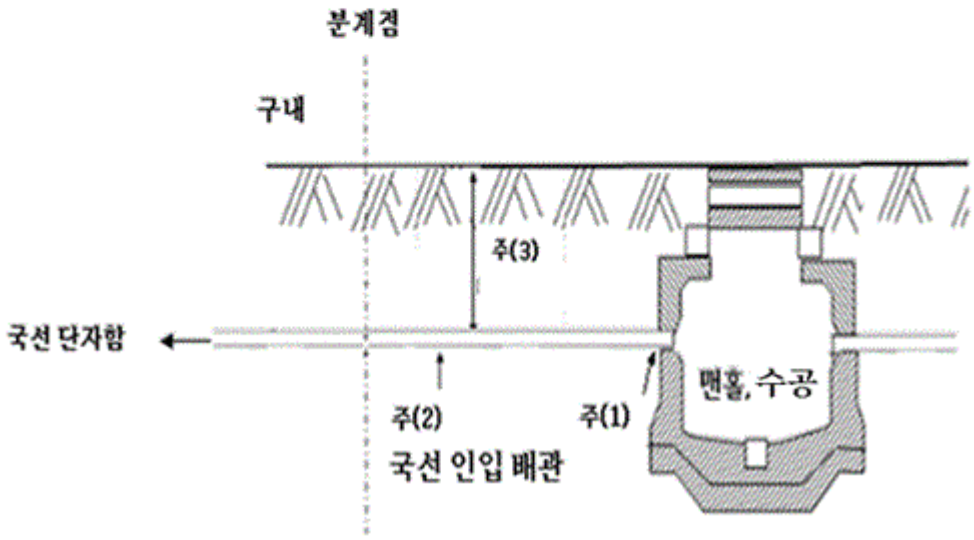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별표 2의1](제26조제3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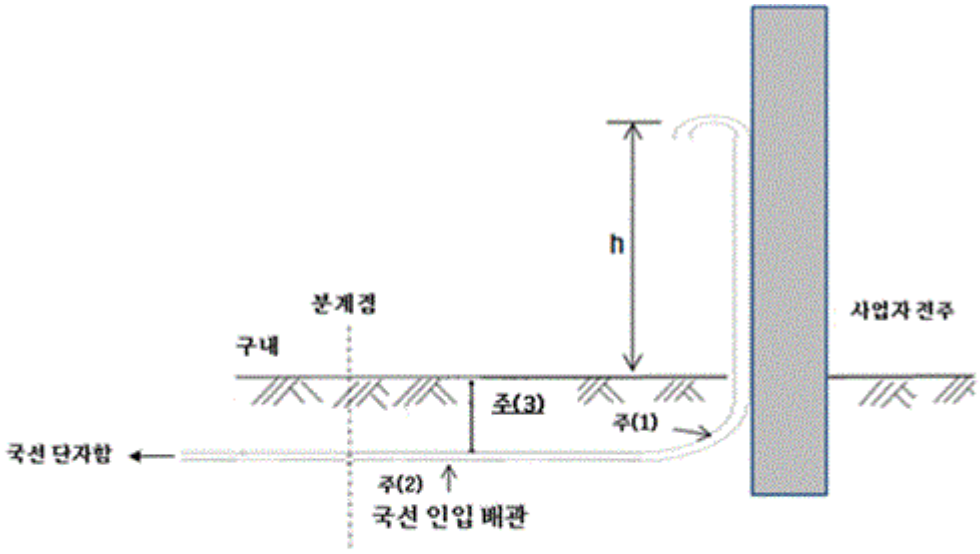


주) 1. 맨홀 및 수공 연결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제47조제2항의 기준에 따를 것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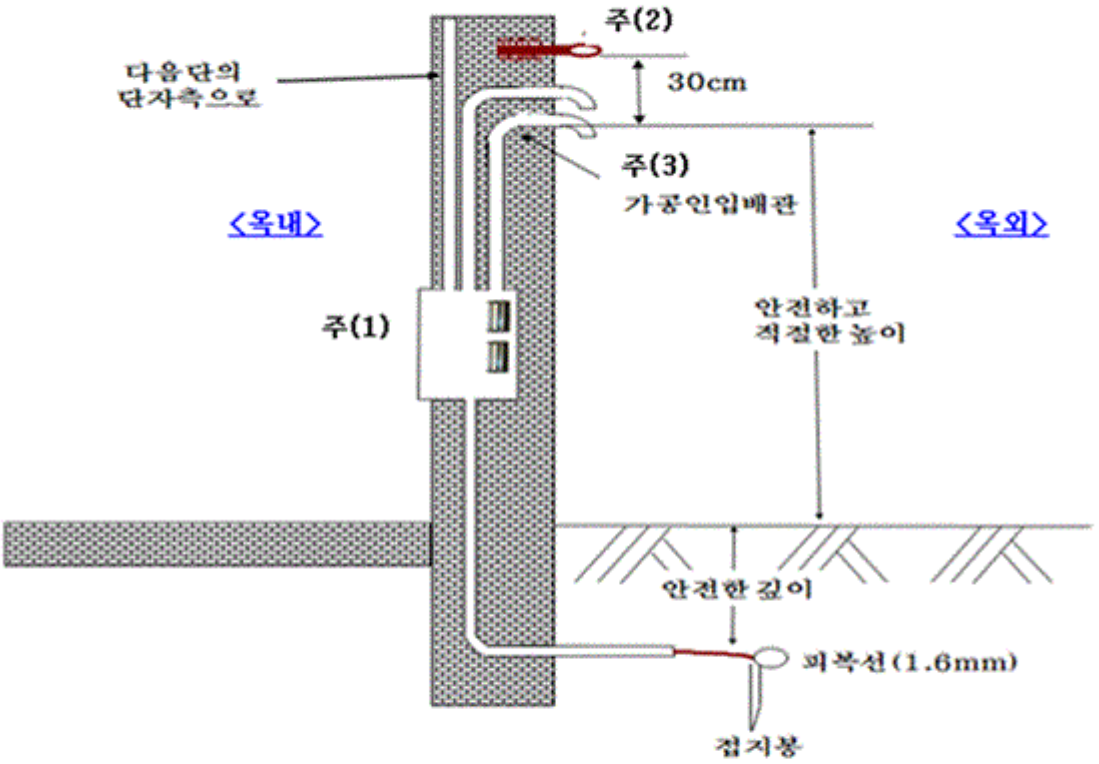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제47조제2항의 기준에 따를 것

4. '인입배관의 높이(h)'는 20 cm 이상 50 cm 이하일 것

[별표 3](제26조제4항 관련)

가공인입의 표준도



주) 1. 국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지름 16 mm 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별표 4](제29조제4항 관련)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50MΩ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단자함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 dB 이하(주3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주4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 기능, 피뢰 기능 및 접지 기능	접지 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크기	0.2㎡ 이상(깊이 80㎜ 이상, 한변의 길이 400㎜ 이상)(주5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常濕)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제29조제7항에 경우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의 크기는 0.56㎡ 이상(깊이 130㎜ 이상, 한 변의 길이 700㎜ 이상)일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삭제, 2013.11.18.)
7.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8.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제30조제3항)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실단자함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50MΩ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단자함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dB이하(주5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 폐 장 치	문(주6	
	보 호 장 치	접지기능(주7	접지 기능
	전 원 시 설	AC전원 단자(주8	AC 전원단자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제33조제3항 관련)

링크성능 기준

1.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기준값
반사손실 (dB, 이상)	1.0-10.0	18.0
	10.0-16.0	15.0
감쇠 (dB, 이하)	1.0	3.0
	4.0	6.5
	10.0	11.2
	16.0	14.9
근단 누화손실 (dB, 이상)	1.0	39.1
	4.0	29.3
	10.0	22.7
	16.0	19.3

나.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	케이블 등급별 기준값		
		100 ㎒	250 ㎒	500 ㎒
반사손실 (dB, 이상)	1	17.0	19.0	19.0
	16.0	17.0	18.0	18.0
	100.0	10.0	12.0	12.0
	250.0	-	8.0	8.0
	500.0	-	-	6.0
감쇠 (dB, 이하)	1.0	3.0	3.0	3.0
	16.0	9.1	8.0	8.2
	100.0	24.0	21.3	20.9
	250.0	-	35.9	33.9
	500.0	-	-	49.3
근단 누화손실 (dB, 이상)	1.0	60.0	65.0	65.0
	16.0	43.6	53.2	53.2

	100.0	30.1	39.9	39.9
	250.0	-	33.1	33.1
	500.0	-	-	26.1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이상)	1.0	57.0	62.0	62.0
	16.0	40.6	50.6	50.6
	100.0	27.1	37.1	37.1
	250.0	-	30.2	30.2
	500.0	-	-	23.2
원단감쇠대누화비 (dB, 이상)	1.0	57.4	63.3	63.3
	16.0	33.3	39.2	39.2
	100.0	17.4	23.3	23.3
	250.0	-	15.3	15.3
	500.0	-	-	9.3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 (dB, 이상)	1.0	54.4	60.3	60.3
	16.0	30.3	36.2	36.2
	100.0	14.4	20.3	20.3
	250.0	-	12.3	12.3
	500.0	-	-	6.3
전달지연(ns, 이하)	10.0	555	555	555
전달지연변이(ns, 이하)	10.0	50	50	50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dB 이하
	1,550	7dB 이하
다중모드	850	13dB 이하
	1,300	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나.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dB 이하
	1,550	3.45dB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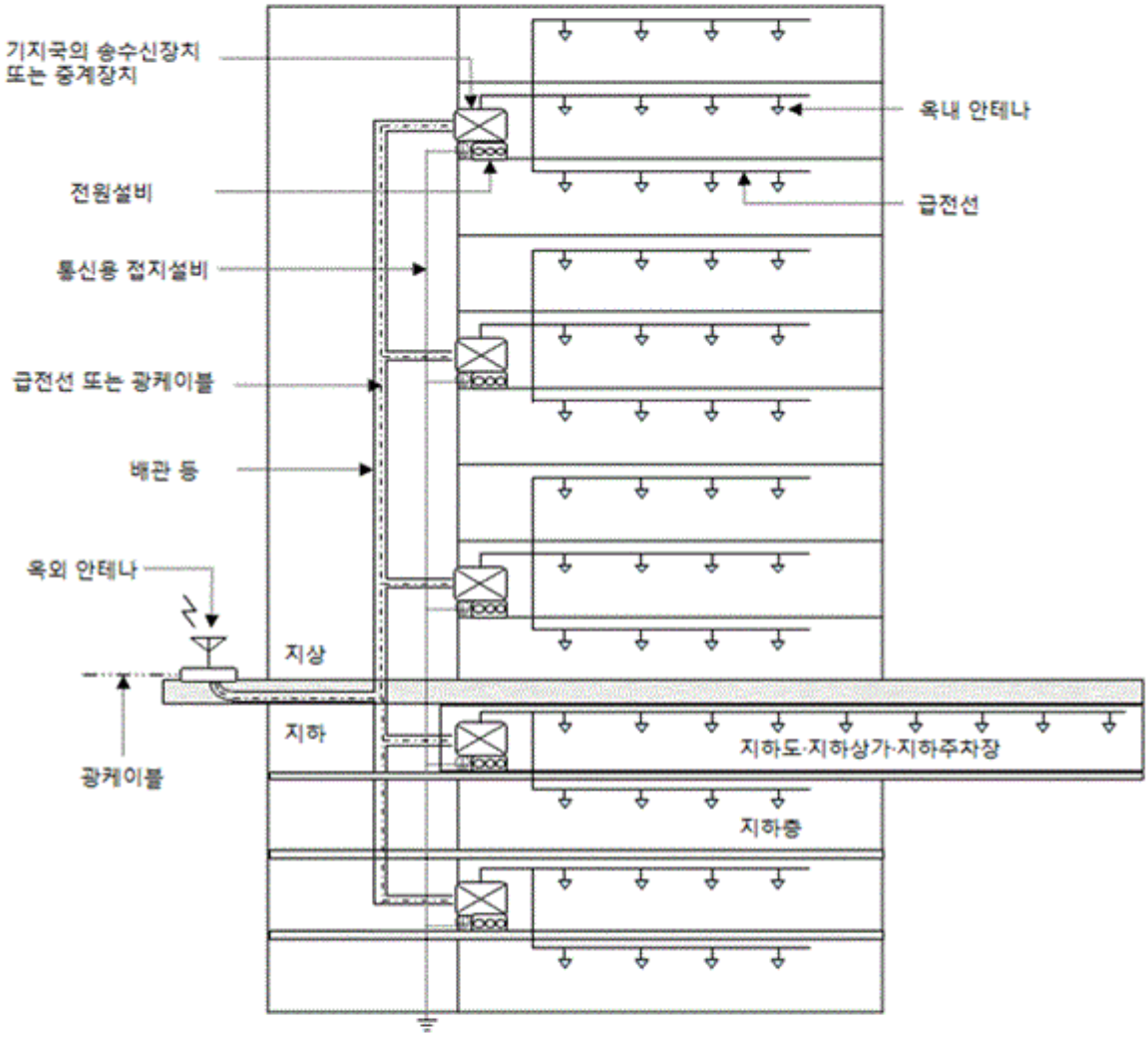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별표 7](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1.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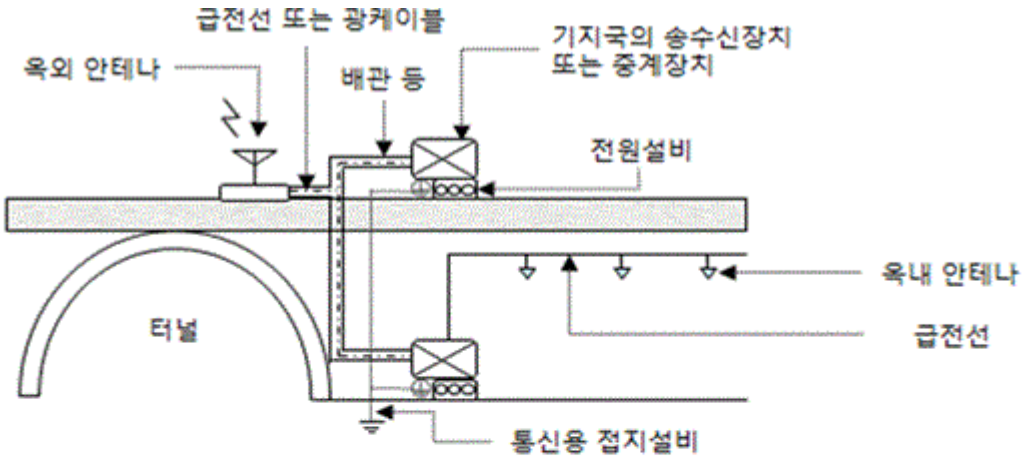
가. 건축물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표준도를 따른다.

나. 터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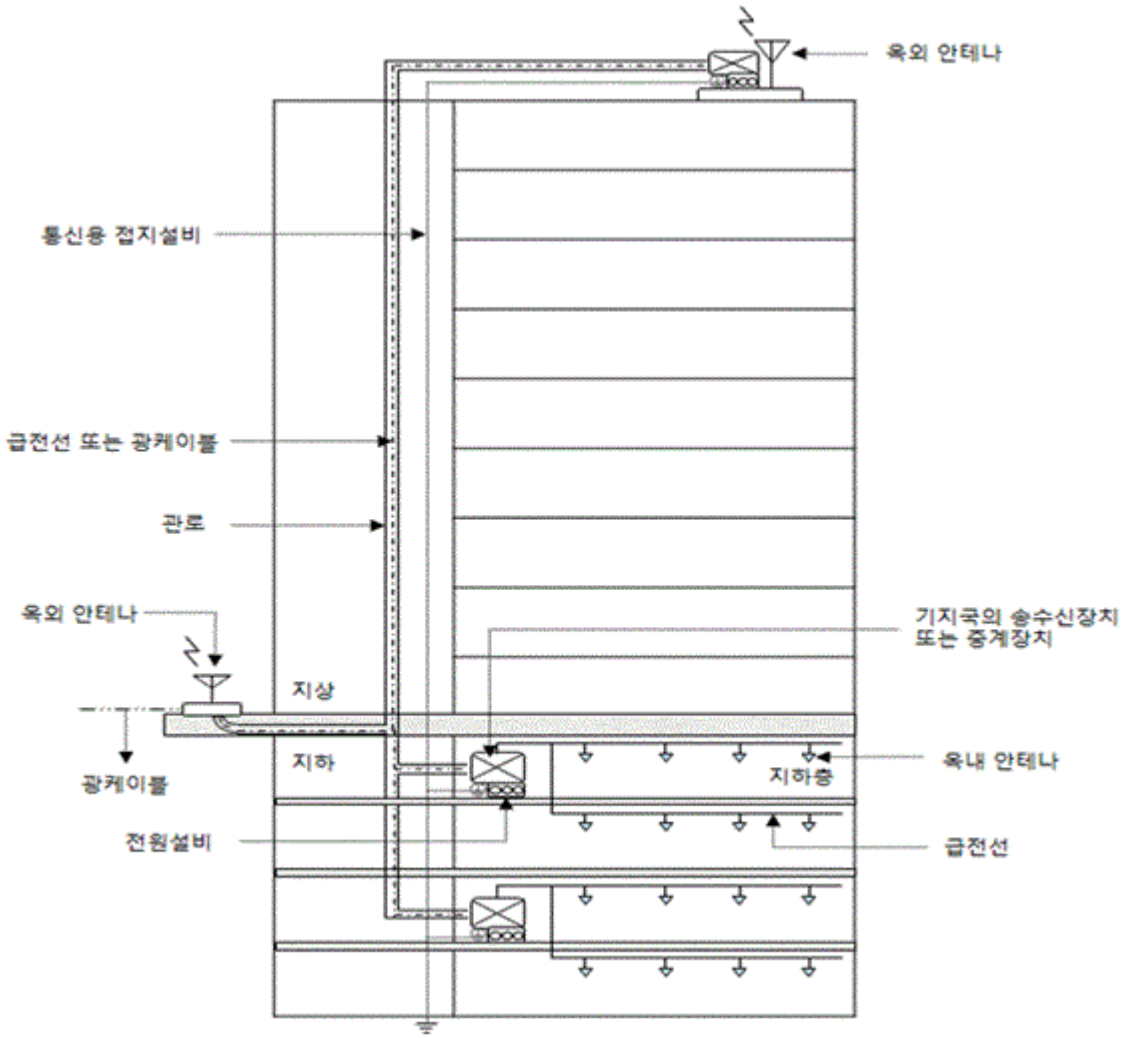


주) 1. 터널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터널 내부 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접지시설 및 전원설비 등을 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길이에 따라 신호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터널 내부에 2개 이상의 중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복수 터널인 경우 각 터널 별로 각각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터널 내부로 관통할 때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 m^2 당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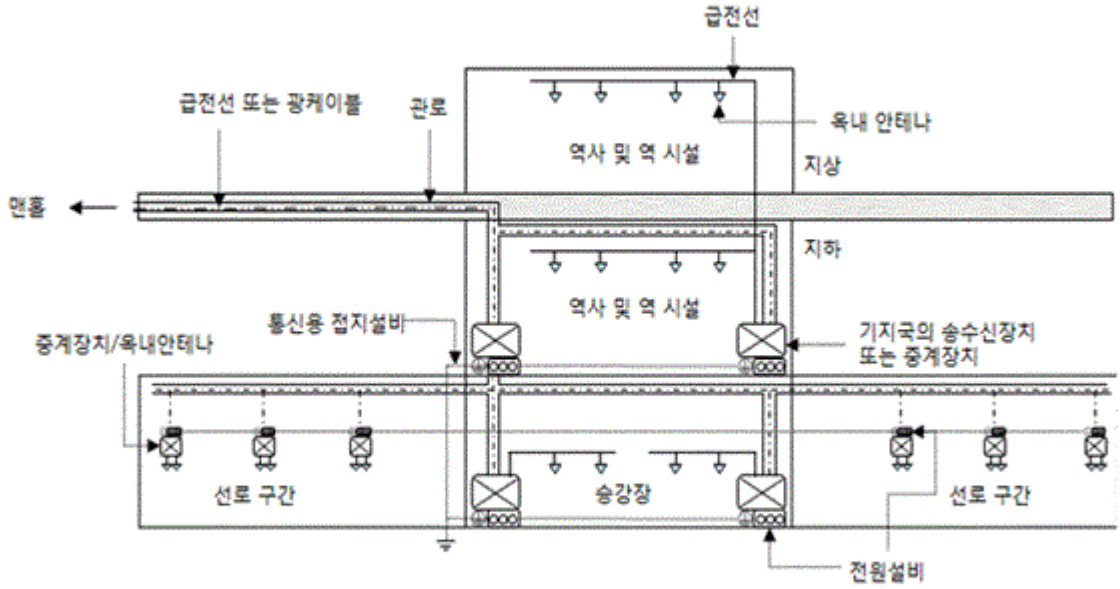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5.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을 제외한 지하층에

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규정 별표 1의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 m 간격마다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전달특성, 구조물의 환경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접속함의 성능

구 분	함 체
절 연 저 항	50 MΩ 이상
개 폐 장 치	여닫이식
재 질 조 건	두께 1.5 ㎜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별표 8](제37조 관련) (삭제, 2017.5.11)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등의 표준도 (삭제, 2017.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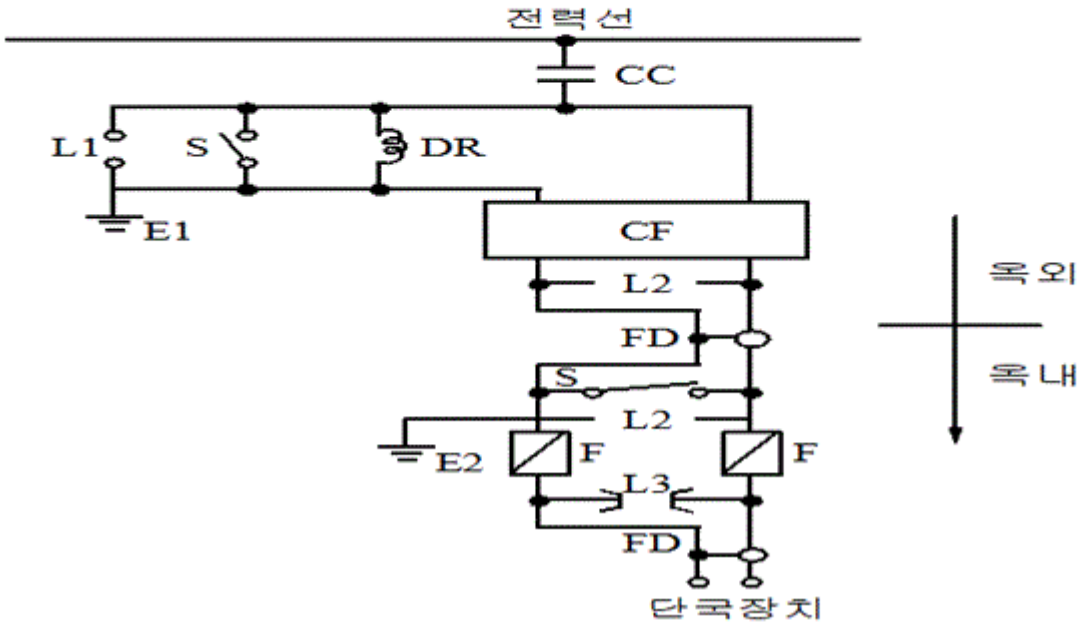
[별표 9](제43조 관련) (삭제, 2012.9.28)

레벨조정기 등의 성능기준 (삭제, 2012.9.28)

1. 레벨조정기 (삭제, 2012.9.28)
2. 주파수변환기 (삭제, 2012.9.28)
3. 수신증폭기 및 선로증폭기 (삭제, 2012.9.28)
4. 분배기 및 분기기 (삭제, 2012.9.28)
5. 직렬단자 (삭제, 2012.9.28.)

[별표 10](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항 관련)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주)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L_1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이상 3,0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_2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이상 1,6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_3 : 교류 300V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F : 정격전류 10A이하의 포장퓨즈

S : 접지용 개폐기

DR : 전류용량 2A이상의 배류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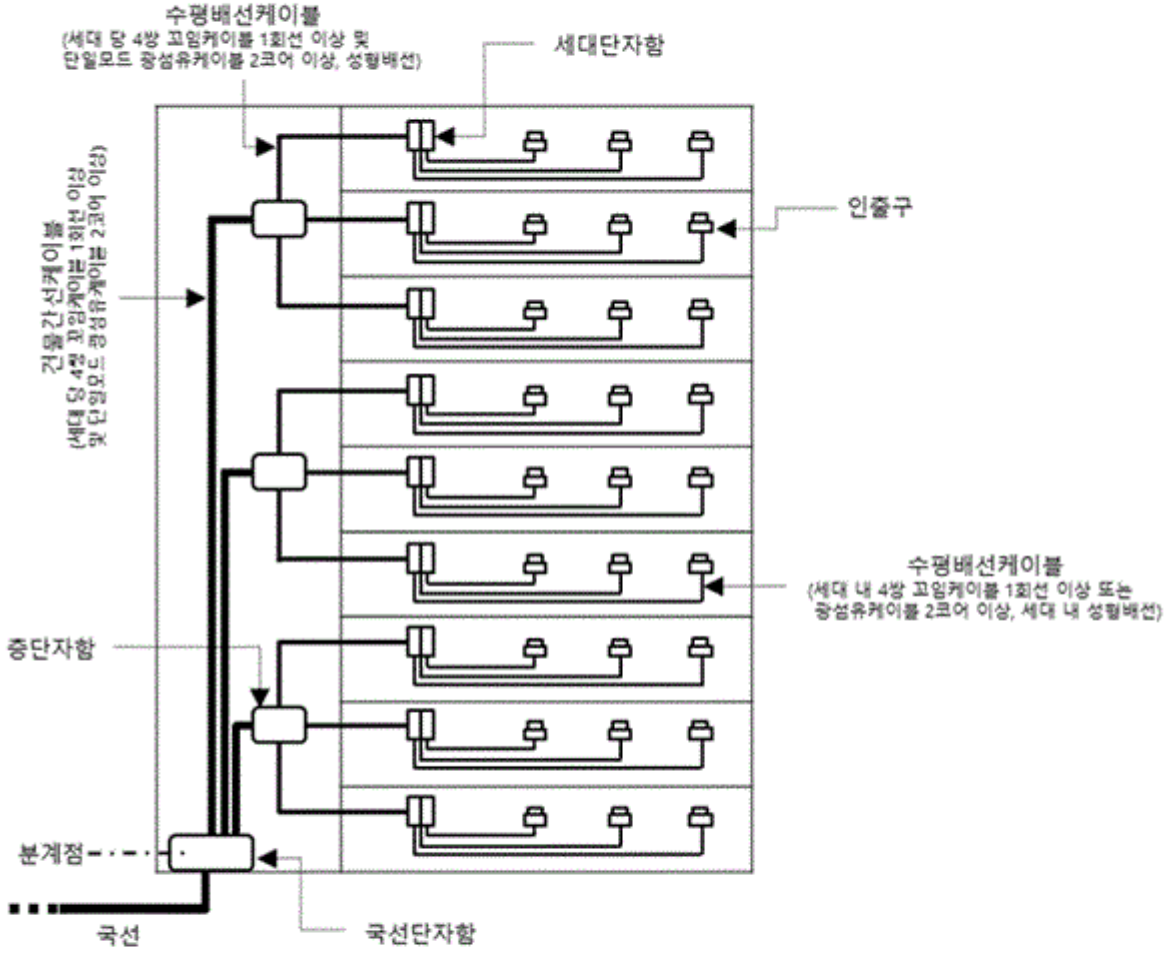
FD : 동축케이블

E_1 및 E_2 : 각각 단독의 접지

[별표 11] (제33조제1항 관련)

주거용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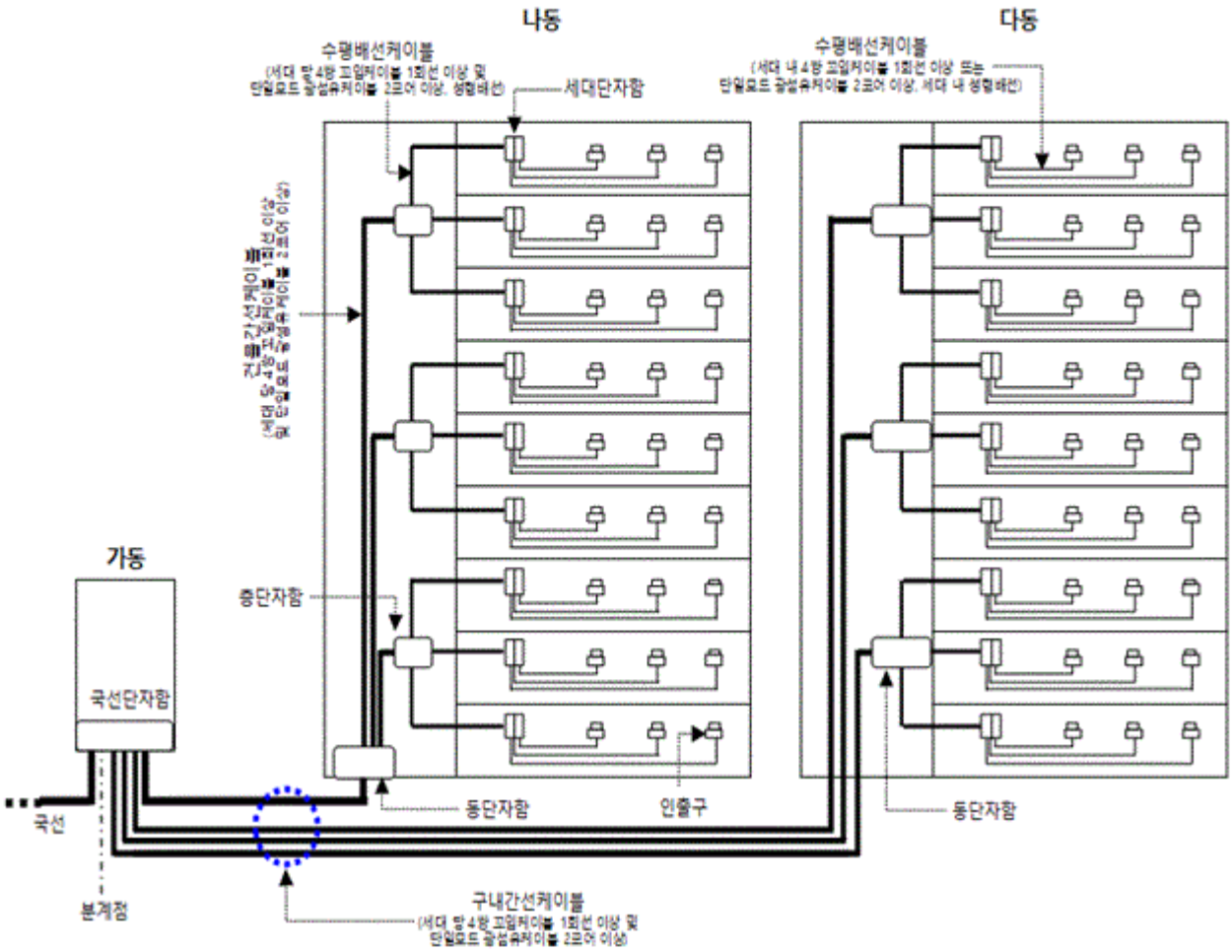
1. 한 개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주) 1. 단독주택의 구내 배선 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 표준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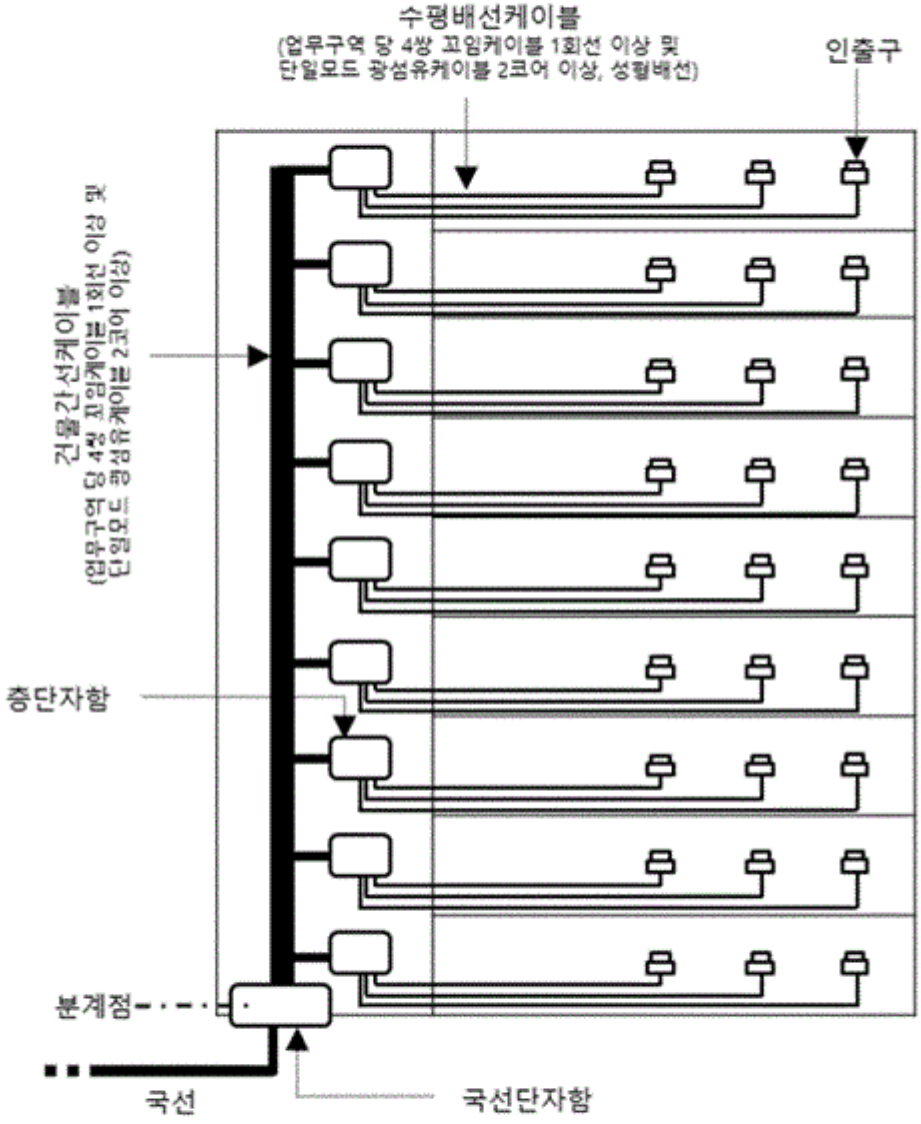
주) 1.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이 나동 또는 다동 등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내부 또는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별표 12] (제33조제2항 관련)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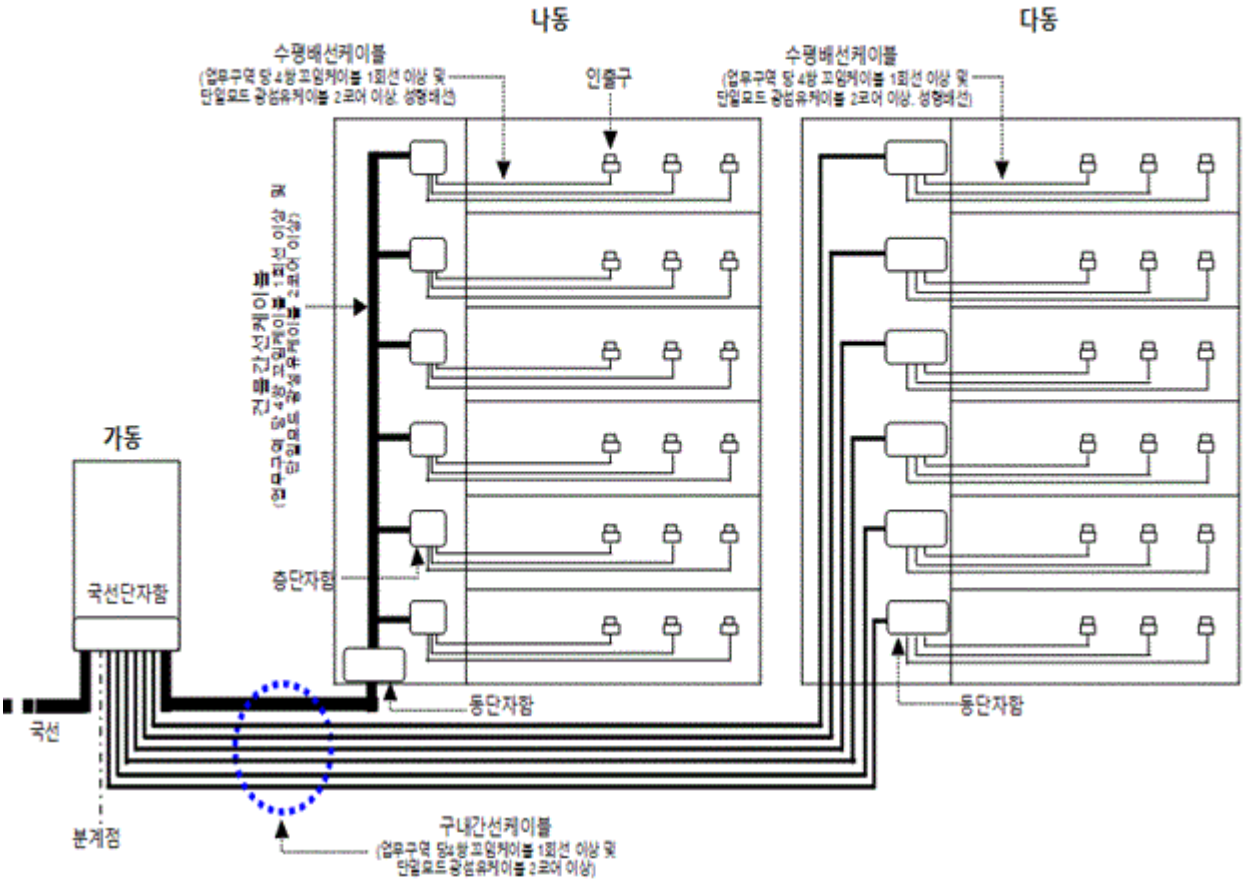
1. 한 개의 건물인 경우



주) 1.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주) 1.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이 나동 또는 다동 등 어느 하나의 건물 내부 또는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시행 2026. 3. 1.] [고시 제2025 - 25호, 2025. 12. 24., 타법개정]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044 - 205 -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pressure chamber)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안지름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2.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

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신설 2025. 12. 24.>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분당 13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⑬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설치방법은 적합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른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32호,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5-25호,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② ~ ⑧ 생략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시행 2023. 2. 10.] [고시 제2023 - 7호, 2023. 2. 10., 일부개정]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044 - 205 - 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 - 46호,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 - 7호,2023.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시행 2022. 12. 1.] [고시 제2022 - 6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044 - 205 - 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다섯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두 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세제곱미터(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⑦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⑧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되,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중계기 및 감지기 사이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②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65호,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시행 2020. 12. 10.] [고시 제2020 - 1028호, 2020.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044 - 201 - 376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비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제3조(인증심사기준)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4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연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 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및 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건축주 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제7조(사후관리의 범위)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련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설비에 대하여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후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인증업무 담당부서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때 인증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센터 중 한국부동산원을 지능형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12조(인증표시 홍보기준) ① 건축주 등은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등) ①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예비인증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본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의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비율 및 적용방법 등 완화기준은 별표 7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기준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로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 - 716호,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966호, 2006.2.15)은 폐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2012년 7월 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의 경과조치) 이 기준 제6조는 종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종전의 기준이 이 기준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12 - 512호,2012. 8. 1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180호,2016.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1028호,2020. 12. 10.>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주거시설

부문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건축 계획 및 환경 (5개)	A-01	거주자의 Life Cycle 변화	거주 공간의 변화와 확장이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적용된 평면 및 설비 계획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A-02	피난계획	화재발생시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A-03	승강기 설비	거주자에게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평균대기시간 및 원격감시 여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1
	A-04	리모델링 계획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설비 공간의 계획 수립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2
	A-05	신재생에너지 적용 외피계획	건축물의 외피 등에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1
기계설비 (6개)	M-01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단지 및 세대 내에 적절한 난방, 급탕 및 쾌적한 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계설비 시스템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3
	M-02	거주자의 쾌적성 및 편의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용된 설비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M-03	고효율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적용된 고효율 시스템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M-04	내진설계	거주자 및 건축물을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 내진설계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2
	M-05	제어 및 감시	운영자 및 관리자가 효율적인 단지관리를 위해서 적용된 제어 및 감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2
	M-06	신기술 적용	설비의 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2
전기설비 (5개)	E-01	전기 및 정보통신 관련실 배치	전기관련실의 침수방지, 전력기기 및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관련실의 위치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3
	E-02	수변전 설비의 계획	전원공급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변압기 구성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E-03	비상발전 계획	비상시 세대 내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적용된 비상 발전기 용량 및 비상전력 공급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3
	E-04	전력간선 설비	전력간선의 안정적 공급 및 부하증설을 대비해서 전력간선용량 예비율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E-05	써지 보호 설비	각종 전력기기가 안정적으로 동작되기 위한 써비 보호 설비의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정보통신 (6개)	T-01	통합배선 시스템의 배선규격	건물 내 원활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구내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4
	T-02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설치 수준	거주자에게 쾌적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홈오토메이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4
	T-03	CCTV 설치 수준	단지 내 보안을 위한 CCTV의 설치 개소 및 화소수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3
	T-04	CCTV 녹화 및 백업	안정적인 CCTV 영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CCTV 카메라의 녹화방식과 백업방식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T-05	에너지 데이터 표시 및 정보 조회 기능	세대 내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시 및 정보 조회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T-0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세대 내 에너지 소비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시스템 통합 (6개)	S-01	통합 SI서버	시스템통합(SI)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서버의 운영방식 및 소프트웨어 구성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 항목	4
	S-02	통합대상 시스템	시스템통합(SI)의 효율성 및 기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과 인터페이스(interface)된 개별 시스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4
	S-03	통합 SI서버 관리	시스템통합(SI)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부문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S-04	통합 SI서버 백신 및 보안	시스템통합(SI) 서버의 보안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및 보안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S-05	에너지 정보수집 대상설비	운영자 및 관리자가 단지 내 공용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에너지 계측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S-06	단지 에너지 정보수집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단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제공되는 에너지 정보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시설경영관리 (9개)	P-01	시설 관리조직 구성원의 수준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조직 및 그 구성원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P-02	작업관리 기능	효율적인 작업관리의 구현을 위하여 작업관리의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3	자재관리 기능	효율적인 자재관리의 구현을 위하여 자재관리의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4	에너지관리 기능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P-05	운영업무 매뉴얼 비치수준	설비의 점검, 예방, 고장 및 수선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운영업무 매뉴얼 비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6	운영데이터 축적 수준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7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다양성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종수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P-08	시설관리품질평가 수준	시설 관리 품질 평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품질평가 종수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9	시설관리 고객 만족도 평가 체계 수준	시설 관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지표수	**37**		**100**

부 문	지 표 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5	10
기계설비	6	15
전기설비	5	15
정보통신	6	20
시스템통합	6	20
시설경영관리	9	20
합 계	**37**	**100**

[별표 2]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비주거시설

부문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8개)	A-01	건축물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실내 공간의 용도 변경에 대한 유연성 확보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A-02	건축물 피난안전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안전 공간까지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계획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A-03	이중 바닥구조	업무 공간의 배치 변경에 대응 가능한 배선 수납공간 확보 여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A-04	E/V 성능 및 코어계획	엘리베이터 평균대기시간과 수송능력에 대한 평가 및 코어의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A-05	일사차폐시설	냉방 부하절감을 위해서 적용된 일사차폐시설 개수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A-06	편의시설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의시설 공간의 설치위치 개소 및 구성 내용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A-07	리모델링 계획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설비 공간의 계획 수립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A-08	신재생에너지 적용 외피계획	건축물의 외피 등에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기계설비 (7개)	M-01	열원설비 반송방식	열원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용된 반송방식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M-02	온도제어설비	최적의 실내 환경 구현을 위해서 적용된 온도제어 설비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M-03	외기도입과 제어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적용된 외기 도입 및 제어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M-04	에너지절약기법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적용된 에너지절약기법 개수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M-05	냉방, 난방, 급탕 에너지사용량 계측	에너지사용량 계측을 위해서 냉방, 난방, 급탕, 환기에 적용된 에너지 계측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M-06	절수설비	수자원의 절약을 위해서 적용된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M-07	신기술 적용	설비의 성능•품질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신제품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전기설비 (9개)	E-01	전기실 안전 계획	전기관련실의 침수방지, 전력기기 및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관련실의 위치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E-02	전원설비 구성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예비변압기 구성 및 발전기 용량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E-03	자유배선공간확보 (EPS)	안전한 배선통로 확보와 전기기기의 설치 및 운전, 개보수가 원활하도록 EPS(Electrical Pipe Shaft)공간의 면적 확보 여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E-04	써지 보호 설비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안정적으로 동작되기 위한 써비 보호 설비의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E-05	고조파 보호 설비	각종 전력기기의 동작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조파 보호 설비의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E-06	소방 안전설비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 안전설비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E-07	피뢰설비	낙뢰 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뇌 보호시스템 등급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E-08	전력 사용량 계측	전력계통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 설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E-09	조명제어 설비	건물 내 시설된 조명기구 수량 중 조명제어 설비에 의하여 제어 되는 조명기구의 비율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정보통신 (13개)	T-01	구내정보 통신 기반시설	건물 내 원활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구내정보 통신 기반 시설 및 시스템박스 설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T-02	백본장비 및 사용자 연결장비	거주자에게 고속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백본장비 및 사용자 연결 장비의 네트워크 속도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부문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T-03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백본 및 간선의 구성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T-04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네트워크의 상태를 감시하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T-05	무선 LAN	건축물 내 사용자 위치와 상관없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안(인증)기능이 있는 무선 AP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T-06	출입관리 보안 시스템	외부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출입보안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T-07	CCTV 설치수준	건축물의 보안을 위한 CCTV의 설치 위치 및 설치 개소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T-08	CCTV 녹화 및 백업	안정적인 CCTV 영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CCTV 카메라의 녹화방식과 백업방식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T-09	다목적 회의 지원 시스템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용된 다양한 회의 지원 시스템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T-10	종합 안내 시스템	건축물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안내 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T-11	차량 출입시스템	차량 출입의 편리성을 위해서 적용된 차량 출입 시스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T-12	주차유도 및 위치인식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적용된 주차 공간 유도 및 주차 위치 인식 시스템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T-13	CATV / MATV	긴급 재난 발생 시 원활한 방송을 위한 MATV와 CATV 설비의 망구성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시스템 통합 (11개)	S-01	통합서버 이중화	시스템통합(SI)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서버의 운영방식 및 소프트웨어 구성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S-02	개방형 표준통신 프로토콜	통합 시스템과 개별 시스템간의 상호 통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protocol)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S-03	SI서버 백신 및 보안	시스템통합(SI) 서버의 보안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및 보안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1
	S-04	통합대상 시스템	시스템통합(SI)의 효율성 및 기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과 인터페이스(interface)된 개별 시스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S-05	화재연동 시나리오	화재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를 위하여 연동되는 대상 시스템의 종류 및 연동시나리오 구성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S-06	방범연동 시나리오	침입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를 위하여 연동되는 대상 시스템의 종류 및 연동시나리오 구성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3
	S-07	추가연동 시나리오	특정 상황 발생시 건축물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연동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S-08	BEMS 데이터 표시 및 조회기능	관리자 및 운영자가 건물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BEMS 데이터 표시 및 조회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S-09	실내•외 환경정보 수집 및 제어 기능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실내•외 환경정보 수집을 위하여 실내•외 환경정보 수집 및 제어 기능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S-10	설비정보에 대한 분류 체계	BEMS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와 기록을 위한 설비정보 분류체계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S-11	DB 관리를 위한 TAG 체계	BEMS 데이터 수집 및 입력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DB 관리 TAG 체계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시설 경영 관리 (12개)	P-01	시설관리 조직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조직 및 그 구성원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P-02	작업관리 기능	효율적인 작업관리의 구현을 위하여 작업관리의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1
	P-03	자재관리 기능	효율적인 자재관리의 구현을 위하여 자재관리의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P-04	모바일 관리기능	모바일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바일관리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P-05	운영 데이터 축적 수준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부문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P-06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다양성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종수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07	KS표준의 적용 수준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국가표준(KS S 1004-2) 서비스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1
	P-08	운영업무 매뉴얼 비치수준	설비의 점검, 예방, 고장 및 수선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운영업무 매뉴얼 비치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P-09	에너지관리 기능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기능 적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P-10	에너지 분석, 예측 및 목표관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분석, 예측 및 목표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11	보고서 제공	건축물에서 관리되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보고서 제공 수준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2
	P-12	BEMS 운영관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BEMS의 활용을 위하여 BEMS의 운영관리 체계 및 계획 수준에 대하여 평가	필수항목	2
		지표수	60		100

부 문	지 표 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8	13
기계설비	7	12
전기설비	9	15
정보통신	13	20
시스템통합	11	20
시설경영관리	12	20
합 계	60	100

[별표 3]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4조 관련)

1. 주거시설

등 급	심사점수	비고
1등급	85점 이상 득점	100점 만점
2등급	80점이상 85점미만 득점	
3등급	75점이상 80점미만 득점	
4등급	70점이상 75점미만 득점	
5등급	65점이상 70점미만 득점	

2. 비주거시설

등 급	심사점수	비고
1등급	85점 이상 득점	100점 만점
2등급	80점이상 85점미만 득점	
3등급	75점이상 80점미만 득점	
4등급	70점이상 75점미만 득점	
5등급	65점이상 70점미만 득점	

3. 복합건축물

등 급	심사점수	비고
1등급	85점 이상 득점	100점 만점
2등급	80점이상 85점미만 득점	
3등급	75점이상 80점미만 득점	
4등급	70점이상 75점미만 득점	
5등급	65점이상 70점미만 득점	

[별표 4]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제3조 관련)

1. 점수 배점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부 문	공동주택 (연면적: 20,000㎡)	판매시설 (연면적: 10,000㎡)
	점 수	점 수
건축계획 및 환경	7	7
기계설비	11.8	12.0
전기설비	12	12
정보통신	15	15
시스템통합	13.2	14.0
시설경영관리	14.6	14.6
점 수 합 계	**73.6**	**74.6**

2. 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73.93\text{점} = \frac{(73.6 \times 20{,}000 + 74.6 \times 10{,}000)}{(20{,}000 + 10{,}000)}$$

3. 기준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100\text{점} = \frac{(100 \times 20{,}000 + 100 \times 10{,}000)}{(20{,}000 + 10{,}000)}$$

4. 등급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73.93점 (4등급) = 73.93 / 100

※ 해당 시설의 자능형건축물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로 평가

※ 해당 시설의 자능형건축물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시설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80%미만일 경우 평가불가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해당 시설의 면적비율을 반영한 총점

$$\text{복합건축물 총점} = \frac{\Sigma\,(\text{시설별 총점} \times \text{시설별 연면적})}{\text{대상건축물의 총연면적}}$$

$$= [\{\text{주거시설 총점} \times \text{주거시설 연면적}\} + \{\text{비주거시설 총점} \times \text{비주거시설 연면적}\}] \div \text{총연면적}$$

[별표 5]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1. 일반사항

1)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자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한다.

2)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자체평가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평가항목 중에서 그 성질상 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통합평가
① 2인 이상의 신청자에 의한 인증대상 건축물 건축사업이 하나의 건축물 건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심사대상 건축물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분량은 A4, 파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거자료(부록, 첨부)를 포함하며 분량의 제한은 없다.

3)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원본 1부이며 신청자도 1부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심사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자체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시청각 기록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지능화 수준 및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6) 자료의 구성

①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제출되는 서류 및 도서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8) 평가서 심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실시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로써 개선요구사항, 관찰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2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5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1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 여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여 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4.5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4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1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여 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이하	0.5	80,000㎡초과 ~ 100,000㎡이하	1.8
10,000㎡초과 ~ 20,000㎡이하	0.7	100,000㎡초과 ~ 120,000㎡이하	2.0
20,000㎡초과 ~ 30,000㎡이하	0.8	120,000㎡초과 ~ 150,000㎡이하	2.2
30,000㎡초과 ~ 40,000㎡이하	0.9	150,000㎡초과 ~ 200,000㎡이하	2.4
40,000㎡초과 ~ 50,000㎡이하	1.0	200,000㎡초과 ~ 300,000㎡이하	2.6
50,000㎡초과 ~ 60,000㎡이하	1.2	300,000㎡초과 ~ 400,000㎡이하	2.8
60,000㎡초과 ~ 70,000㎡이하	1.4	400,000㎡초과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text{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frac{(\text{주거시설 수수료} + \text{비주거시설 수수료}) \times (\text{주거시설 항목수} + \text{비주거시설 항목수})}{2 \times \text{비주거시설 항목수}}$$

2.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심사수수료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2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2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일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3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2.5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이하	0.5	80,000㎡초과 ~ 100,000㎡이하	1.8
10,000㎡초과 ~ 20,000㎡이하	0.7	100,000㎡초과 ~ 120,000㎡이하	2.0
20,000㎡초과 ~ 30,000㎡이하	0.8	120,000㎡초과 ~ 150,000㎡이하	2.2
30,000㎡초과 ~ 40,000㎡이하	0.9	150,000㎡초과 ~ 200,000㎡이하	2.4
40,000㎡초과 ~ 50,000㎡이하	1.0	200,000㎡초과 ~ 300,000㎡이하	2.6
50,000㎡초과 ~ 60,000㎡이하	1.2	300,000㎡초과 ~ 400,000㎡이하	2.8
60,000㎡초과 ~ 70,000㎡이하	1.4	400,000㎡초과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text{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frac{(\text{주거시설 수수료} + \text{비주거시설 수수료}) \times (\text{주거시설 항목수} + \text{비주거시설 항목수})}{2 \times \text{비주거시설 항목수}}$$

[별표 7] 완화 기준(제13조 관련)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예시)>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 적용방법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비율]
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 완화비율]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비율]

※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축기준완화 신청서(제13조관련)

건축기준 완화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지 조 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구
	지 목	용도지구 /
	용도 지구 /	용도구역 /
신청 건물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 ] 지능형 건축물 인증 ( )등급	최대 완화 비율 합계 (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 용적률 ( )%	[ ] 건축물 높이 ( )%	[ ] 대지 조경면적 ( )%	신청 완화 비율 합계
완화적용 후 변 경 기준	적용 전: %	적용 전: m	적용 전: ㎡	%
	적용 후: %	적용 후: m	적용 후: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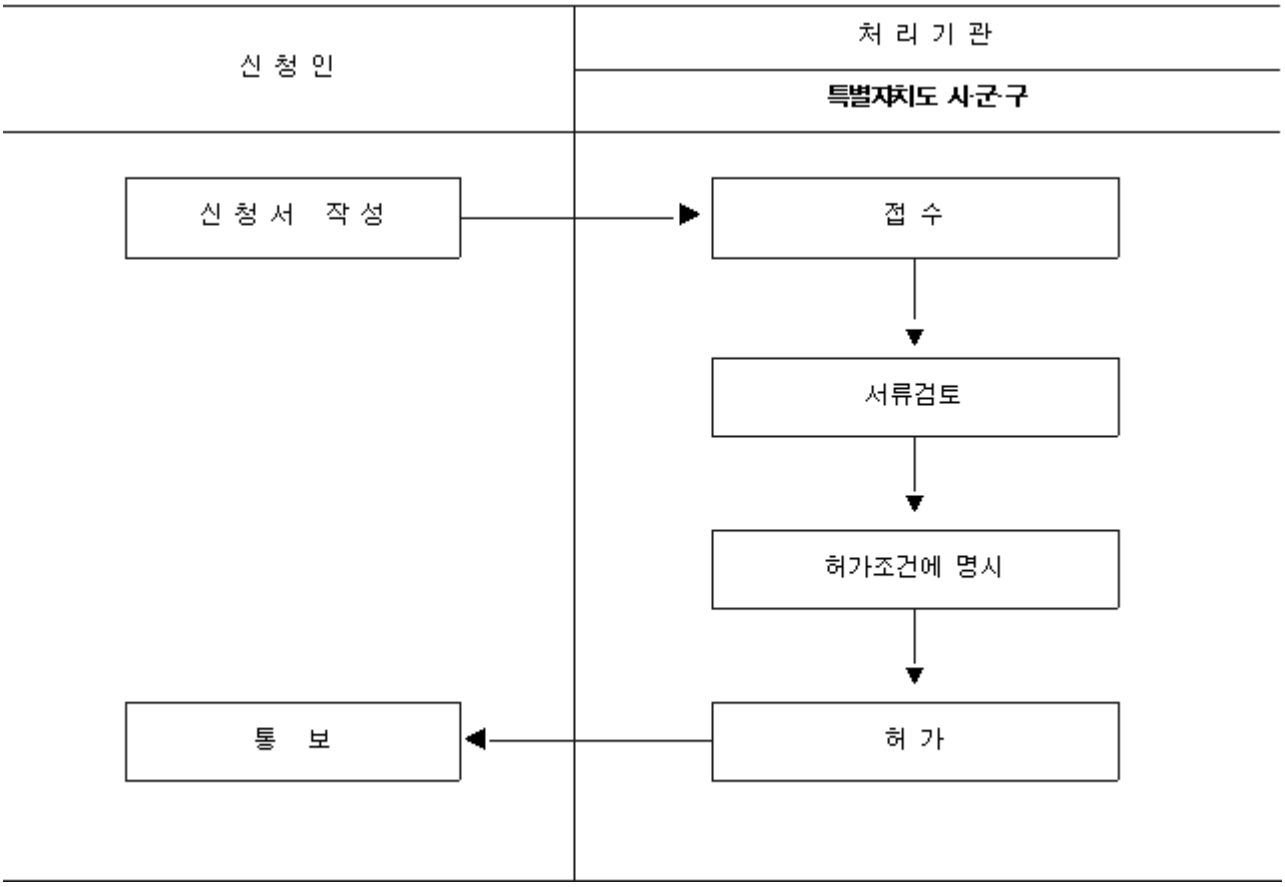
첨 부 서 류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1부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 12. 27.] [훈령 제251호, 2023. 12.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044-202-49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산업·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아날로그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산업·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을 말한다.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806㎒ 811㎒, 851㎒ 856㎒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 728㎒, 773㎒ 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 · 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 ·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
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3. 예산 집행의 효율성
4. 안전 확보 필요성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 · 신고 제한의 예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 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 소방 : 2020년 12월 31일
2. 경찰 : 2023년 12월 31일
3. 철도 : 2028년 12월 31일
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제6조(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 · 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 ·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

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8호,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정 2018. 11. .>

재난안전관계기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분 야	기관명
경 찰	• (경찰청) 본청 • (지방 경찰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소 방	• (소방청) 본청,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지자체	•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특별자치 시·도) 세종, 제주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경	• (해양경찰청) 본청 • (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군	• 육군 · 공군 · 해군 및 소속 부대
전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의료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가천의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강릉 동인병원, 원주 기독병원, 목포 한국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철도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공사(서울, 인천, 부산), 도시철도공사(대전, 광주, 대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알, 공항철도 주식회사, 네오트랜스,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기타	•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법무부, 병무청, 산림청, 해수부 • (지방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고양시상수도본부 • (공공기관) 예술의전당,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법인사업자) 부산울산고속도로, 지케이해상도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기관명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기관의 소속기관(지역본부 등)을 포함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11. 1.] [고시 제2023 - 34호, 2023. 1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044 - 202 - 493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

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노포닉방송"이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스테레오포닉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3. "좌(또는 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또는 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4.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5. "파이롯트 신호"란 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6. "주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의 신호를 말한다.

7. "부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의 신호로서 부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 생긴 측파대를 말한다.
8. "디엠파시스"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9. "프리엠파시스"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편파"란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을 말한다.
11.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을 디지털로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13.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코픽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14. "프로그램 채널"이란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란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 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TC1/SC29/WG11을 말한다.
16. "부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기준영상에 추가로 사용되는 영상을 말한다.
17.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과 동기하여 제공하는 전사(Transcription) 문자열과 부가 정보 문자열로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18. "기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 중 기준이 되는 2D 영상을 말한다.
19.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 방식"이란 3 비트로 구성된 8 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20.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21. "디지털 위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2. "디지털 위성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3. "디지털 위성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의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24. "서비스 정보(SI:Service Information)"란 수신기에서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구성과 선택한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한 위성 반송파와 영상, 음성, 데이터 스트림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

를 의미한다.

25. "DVB - S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란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EN 300 421 규격을 말한다.
26. "DVB - S2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 2)"란 고효율 오류정정 부호화 및 다중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DVB - S에 비해 향상된 전송효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EN 302 307 규격을 말한다.
27. "역방향호환모드"란 DVB - 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 이때 DVB - S 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상위전송스트림"이라하고, DVB - S2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하위전송스트림"이라 한다.
28.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9. "PSK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0. "APSK (Amplitud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성좌점을 원 형태로 2개 이상의 전력 크기를 갖도록 배치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1. "H - 8PSK (Hierarchical 8 Phase Shift Keying)"란 신호점 간 데이터 성능을 계층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계층적으로 차등화하여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2.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34.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음성ㆍ음향 또는 그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5.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36. "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이란 ISO/IEC14496 - 3에서 정의한 부호화 방식 중 하나로서 채널당 1 kbps 단위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고품질 오디오 압축 부호화 방식을 말한다.
37.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8.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39. "π/4 - DQPSK(Differential QPSK)"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위상을 바로 전에 전송된 심볼의 위상에 0도, 90도, 180도, 270도의 4가지 중에 해당하는 위상을 더하고 천이위상 45도(π/4)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40.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41. "전송 프레임"이란 전송의 기본 단위로 동기채널, 고속 정보채널, 주서비스채널로 구성된다.
42.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위성 송신설비 및 지상 중계설비를 이용하여 극초단파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3.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45.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46.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코드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확산하고 신호를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47.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 Ultra High Definition TV) 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4K(3840x2160) 해상도를 포함하는 디지털 비디오, 실감형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8.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9.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50.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51. "부트스트랩 (Bootstrap)"은 각 전송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전송프레임의 가장 앞부분에 삽입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52. "출력저감 제어기술"은 AM 방송국의 변조 레벨에 따라 반송파 전력 레벨 또는 반송파 및 측 대역 전력 레벨 모두를 변화시키는 송신기 제어 기술을 말한다.
53. "동기FM방송" 이란 방송구역이 인접 또는 일부 중첩되는 2개 이상의 FM방송국이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54. "RDS2(Radio Data System 2) 부가서비스"란 국제표준 IEC 62106 - 1에 따라 초단파(FM)방송의 오디오 서비스에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비장치) ① 방송국에는 방송중단사고를 예방하고 송신신호를 안정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비송신장치 및 예비전원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이 1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은 100 W)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송신장치가 병렬조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국은 제1항에 따른 예비송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안테나) 방송국에는 송신기의 기기조정 및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험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중파 (AM) 방송용 무선설비) ①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95%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따라 적어도 95%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모노포닉방송과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직교진폭변조는 음성신호의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로 동위상반송파를 진폭변조한 출력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반송파를 직교진폭 변조한 출력을 합성한 후 진폭변조분을 제거하여 위상편이(직교변조 위상각)만을 갖는 반송파를 만들어 재차 합신호에 의해서 진폭 변조하는 방식으로 할 것

(2) 변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 = (1+M)\cos(2\pi f_c t+\ominus)$ $\ominus = \tan^{-1}(S+P\sin 2\pi f_p t/1+M)$

f_c : 반송파의 주파수 f_p : Pilot 신호의 주파수

M : 합신호(L+R) S : 차신호(L-R)

L : 좌측신호 R : 우측신호

P : Pilot신호 $\ominus$: 직교변조 위상각

t : 시간

단 M, S, L, R, P는 반송파 전압에서 정규화된 값

3. 변조주파수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5,000 Hz 이내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7,500 Hz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는 25 Hz (±)0.1 Hz 이내로 할 것

나.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는 (±)0.0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5. (반송파의 위상편이)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 및 차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위상편이는 (±)0.78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6. 종합왜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Hz에서 5,000 Hz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100 Hz에서 7,500 Hz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변조도를 각각 40% 또는 합한 신호의 변조도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7. 신호대 잡음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Hz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50 dB 이상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Hz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대하여 50 dB 이상이어야 하며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각각 4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42 dB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 특성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Hz에 의하여 100 Hz에서 5,000 Hz까지 50 % 변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편차가 (±)2 dB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의 특성은 변조주파수가 400 Hz인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에 의해 5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조주파수가 400 Hz인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에 의해 각각 4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00 Hz에서 7,500 Hz까지의 편차는 별표 1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9. (좌·우 출력 레벨차)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Hz에서 7,500 Hz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입력하여 40% 변조를 한 경우에 출력된 우측신호와 좌측신호와의 레벨차는 (±)1.5 dB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 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40%의 변조를 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100 Hz에서 7,500 Hz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20 dB 이상이어야 할 것
11.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변조주파수 1,000 Hz로서 0%에서 95% 까지 변조할 때, 반송파의 진폭의 변동율은 ±5%(0.43dB)이내 일 것.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별표2의 1]의 반송파 레벨에서 ±10%(0.83dB)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1,000 Hz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동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0% 에서 95% 까지 진폭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이내일 것
12.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값(mV/m)이 허용치 이상일 것. 다만, 출력저감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 허용치 이상일 것.

(1) 0.1 ㎾ 미만 $140\sqrt{P}$ (2) 0.1 ㎾ 이상 1 ㎾ 미만 $180\sqrt{P}$

(3) 1 ㎾ 이상 5㎾ 미만 $200\sqrt{P}$ (4) 5 ㎾ 이상 50 ㎾ 미만 $250\sqrt{P}$

(5) 50 ㎾ 이상 $300\sqrt{P}$ (6) P = 안테나공급전력(㎾)

13.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허가 받은 수평지향특성 일 것.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4.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5%, 하한 10% 이내일 것. 다만, 출력저감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변조율에 따라 [별표2의 1]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력저감제어기술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용 1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운용 기간, 운용 방식, 최대 출력 저감율을 알려야 하며,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종료 시 제1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파(AM)방송용 채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초단파 (FM) 방송용 무선설비) ①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100%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하고 주반송파는 음성신호로 변조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포닉방송의 경우와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주반송파는 주채널 신호와 부채널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로써 변조할 것

(2) 부채널 신호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변조 후 발생하는 부반송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할 것

3. (변조주파수)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15,000 Hz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주파수는 19 ㎑이고 허용편차는 (±)2 Hz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파수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에서 10% 범위 이내일 것

다. (파이롯트 신호와 부반송파의 위상오차)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롯트 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오차는 (±)3도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할 것

5. 최대주파수편이

가.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가하는 경우 주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와 부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동일한 것으로 하며 각각의 최대치는 제5호가목에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45%를 넘지 않도록 할 것

6. (종합왜율) 송신장치 등은 각각의 변조 주파수에 대해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을 것

변조주파수(Hz)	종합왜율(%)
50 부터 100	3.5 이내
100 부터 7,500	2.5 이내
7,500 부터 15,000	3.0 이내

7. (신호 대 잡음비) 1,000 Hz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최대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μs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60 dB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특성) 송신장치 등은 75 μs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9. (좌·우 신호레벨차)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해당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디엠파시스를 행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50 Hz에서 15,000 Hz까지의 주파수에서 (±)1.5 dB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50 Hz에서 15,000 Hz까지의 주파수에서 30 dB 이상일 것

11. (잔류진폭변조잡음) 송신장치 등의 잔류진폭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1,000 Hz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주반송파에 100% 로 주파수변조를 한 경우의 출력레벨과 입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의 직선검파 한 출력레벨과의 비가 50 dB 이상일 것

12.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의 잔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1% 를 넘지 아니 할 것

13.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조건

가.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형태의 변조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RDS2 부가서비스의 변조방식은 2PSK 일 것

나. 부반송파 기저대역은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것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4와 같을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53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5와 같을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할 것

다. 부반송파 주파수편이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 적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 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4) (1), (2), (3)항에서 기저대역 75 ㎑에서 99 ㎑까지의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다중 부반송파에 의하여 부가서비스를 방송할 경우에 모든 반송파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라. 다중 부반송파에 의한 스퓨리어스 발사는 억제되어야만 하고, 동일채널 및 인접채널의 초단파(FM)방송 또는 다른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

마. RDS2 부가서비스는 가, 나, 다, 라목을 따르고, 부반송파의 세부 조건은 국제표준 IEC 62106 - 1을 만족할 것

(1) 모노토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6Hz 이내로 할 것

(2)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2Hz 이내로 할 것

15. 방송 주파수배열

가.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4와 같을 것

나.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5와 같을 것

다.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6과 같을 것

라.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7과 같을 것

16.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7.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② 동기FM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방송국 간 중심주파수 차이가 (±)2 Hz 이내이고,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는 (±)1㎑ 이내이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초단파(FM)방송용 채널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단파방송용 무선설비) 단파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

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 - 제1부: 기존 채널"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 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

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Hz 이상 20,000 Hz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Hz 이상 120 Hz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 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 Hz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조건

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 Mbps로 할 것

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 - 2 MP@HL 또는 MPEG - 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 - 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 - 2를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 방송의 경우 부가영상의 부호화 알고리즘은 AVC/H.264 Main Profile@Level4.0 또는 High Profile@Level4.0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국제 표준인 ISO/IEC 14496 - 10(MPEG - 4 Part 10)을 따를 것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 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CEA - 708 - D 규격을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CEA - 708.1 규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 데이터는 기준영상을 통해 전송할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 - 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9를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 자, 반자 52 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 자, 반자 40 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 줄일 것

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

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 kbps로 할 것

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 - 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며,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MPEG-2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을 따를 것

나. 전송채널(6 ㎒대역)은 하나의 HDTV 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HDTV 프로그램 채널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3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7. 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 할 수 있을 것

8. 오류정정

가. 오류 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 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방식과 격자 부호 세그먼트 인터리빙 방식으로 할 것

9.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변조방식은 8-VSB 방식으로 할 것

나. 전송 속도는 10.762 M symbols/sec로 할 것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 당 주파수 대역폭은 6 ㎒로 할 것

라. 펄스 정형 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 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할 것

마. 데이터신호와 동기신호 심볼에는 직류 레벨의 파일럿 신호를 더할 것

바.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1)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될 것

(2) 데이터 세그먼트와 데이터 필드의 시작점에 세그먼트 동기 신호와 필드 동기 신호를 각각 삽입할 것

(3)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사. 송신장치의 기술적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 10과 같이 500 ㎑의 측정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500 ㎑ 이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7 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500 ㎑ 초과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1.5(Δf+3.6)} dB 이하이며,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110 dB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 이하인 경우, 별표 11과 같이 500 ㎑의 측정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² /1.44)} 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dB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2) 신호대 잡음비는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7 dB 이상일 것

(3) 위상잡음은 20 ㎑에서 Hz당 -104 dBc 이하일 것
(4) 주파수응답특성은 6 ㎒ 대역내에서 ±0.5 dB 이내일 것
(5)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별표 12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10.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2.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pm 1 \times 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1과 같이 500 ㎑의 측정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Delta f^2/1.44)\}$ ㏈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dB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별표 13과 같다.

제10조(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 또는 20/21 ㎓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다만, 20 ㎓ 대역은 19.8 ~ 20.2 ㎓ 대역을 포함함
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3. 각 서비스 신호를 구성하는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비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 또는 ISO/IEC 23008-2 | ITU-T권고 H.265를 따를 것

5. 오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ATSC A/52, ISO/IEC 13818-3, ISO/IEC 14496-3, 또는 SCTE 194-1을 따를 것

6.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신호의 다중화 방식은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의 처리는 국제 표준인 DVB SI(EN 300 468)를 따를 것

다. 제한수신 기능은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라. 단, 다중화, 서비스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 및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할 것

7.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4)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에서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할 것

8.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PSK 또는 APSK 방식으로 하며, 변조방식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 계수는 0.35 이하로 할 것

9.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제11조(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Hz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Hz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 kbps로 할 것

(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 kbps로 할 것

(다)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일 것

(라)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3. 비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에 따른 음성、음향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비디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6.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7. 오류 정정 및 분산

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 및 주파수 인터리빙(Frequency Interleaving)을 적용하고,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에는 주파수 인터리빙만을 적용할 것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536 ㎒로 할 것

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다. 변조는 π/4 - D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라. 유효 전송 속도는 0.8 Mbps 이상 1.7 Mbps 이하로 할 것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4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 2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 71 dB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 106 dB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 이하인 경우, 별표 15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 5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3 ㎒에서 - 106 dB 이하로 적용한다.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dB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16을 기준으로 편차가 1 dB 이내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Hz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Hz 이내

(5)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 하한 11% 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dB 이내일 것

9.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다.

11. 안테나의 지향특성은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Hz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Hz 이내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536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7과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dB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73 dB 이하일 것. 다만, 별표 18과 같이 연속한 3 개의 채널을 수용한 6 ㎒ 통합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19와 같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dB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채널은 별표 18과 같다.

제12조(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①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술기준은 2.6 ㎓ 대역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며, 각 신호는 보조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나. 그 외 방송신호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는 화면의 화소수(가로×세로)가 320×240 이상일 것
   나.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6 또는 8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Hz 이하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Hz로 할 것
   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24 이하일 것
5. 데이터 신호의 포맷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
6.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4496-10 (MPEG-4 Part 10) | ITU-T Rec. H.264 Baseline Profile@L1.3 방식을 따르고,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은 768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 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7.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 - 1 (MPEG - 2 System)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를 것

8. 오류정정 및 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 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분산 방식은 바이트 인터리빙(Byte Interleaving) 및 비트 인터리빙(Bit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고, 파일롯트 신호에는 바이트 인터리빙 방식만을 사용할 것

9.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변조는 QPSK 및 BPSK 방식으로, 전송은 CDM 방식으로 할 것

나.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25 ㎒로 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 - 오프계수는 0.22로 할 것

라. 송신장치의 반송파 신호 주파수 허용 편차는 50 ppm으로 할 것

마.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 56.2 dBm 이하일 것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pm 50 \times 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5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 56.2 dBm 이하일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dB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제13조(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①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를 것
3. 비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2의 Main 10 Profile 또는 Scalable Main 10 Profile, Main tier, Level 5.2의 내용을 따를 것
4. 오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3의 LC(low complexity) Profile, Level 1, 2 또는 3의 내용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신호 등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채널로 다중화 할 것
   나. 전송채널(6㎒ 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을 전송할 경우 적어도 하나의 4K UH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일 전송채널로 다중화 할 것
   다.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규격에서 규정한 IP(Internet Protocol) 기반 다중화 방법을 따를 것
6. 오류정정 및 변조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LDPC 부호와 BCH 부호, LDPC 부호와 CRC32 부호, LDPC 부호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것
   나. 변조방식은 QAM(QPSK 포함) 방식으로 하며, 변조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7. 전송방식은 OFDM 방식으로 하며, 전송 프레임, 전송 다중화 방식, 부트스트랩 등의 송신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②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470㎒ 미만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1 이내이고 470㎒ 이상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0.3 이내일 것. 다만 단일주파수망(SFN)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규정 값에 불구하고 ±2.1Hz 이내로 할 것
2. 전파의 형식은 D7W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6㎒ 이내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5퍼센트 이내일 것
4.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

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120 dB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31.6 - 190.37{절대값(△f) - 2.93}] dB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83 - 9.23{절대값(△f) - 3.2}] dB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95 - 5.56{절대값(△f) - 4.5}] dB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126 dB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 15 ㎒ 초과 - 8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126 dB 이하이고, - 8 ㎒ 초과 - 4.5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95 - 8.86{절대값(△f) - 4.5}] dB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31.6 - 190.37{절대값(△f) - 2.93}] dB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83 - 9.23{절대값(△f) - 3.2}] dB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95 - 5.56{절대값(△f) - 4.5}] dB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 126 dB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0와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인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5.2 - 185.93{절대값(△f) - 2.93}] dB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39 - 9.23{절대값(△f) - 3.2}] dBm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51 - 5.56{절대값(△f) - 4.5}] dBm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76 dBm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 - 185.93{절대값(△f) - 2.93}] dB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39 - 9.23{절대값(△f) - 3.2}] dB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51 - 5.56{절대값(△f) - 4.5}] dB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82 dBm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 15 ㎒ 초과 - 8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82 dBm 이하이고, - 8 ㎒ 초과 - 4.5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51 - 8.86{절대값(△f) - 4.5}] dBm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 - 185.93{절대값(△f) - 2.93}] dB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39 - 9.23{절대값(△f) - 3.2}] dB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51 - 5.56{절대값(△f) - 4.5}] dB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 82 dBm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1과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 불요발사는 별표 22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9 ㎑ 이상 174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dBm 이하일 것

나. 174 ㎒ 이상 40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2 dB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dB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6 dBm 이하일 것

다. 400 ㎒ 이상 718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dBm 이하일 것

라. 718 ㎒ 이상 96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 dB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dB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 dBm 이하일 것

마. 960 ㎒ 이상 1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dBm 이하일 것

바. 1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dBm 이하일 것

6.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송신기의 첨두전력억압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율 99.9%로 13 dB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변조오류율(MER)은 27 dB 이상일 것

8.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0.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1.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할 것

③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조건에 따를 것

④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80호,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5일 이전에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무선설비는 제9조제1항제9호사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105호,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5일 이전에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무선설비는 제9조제1항제9호사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9-83호,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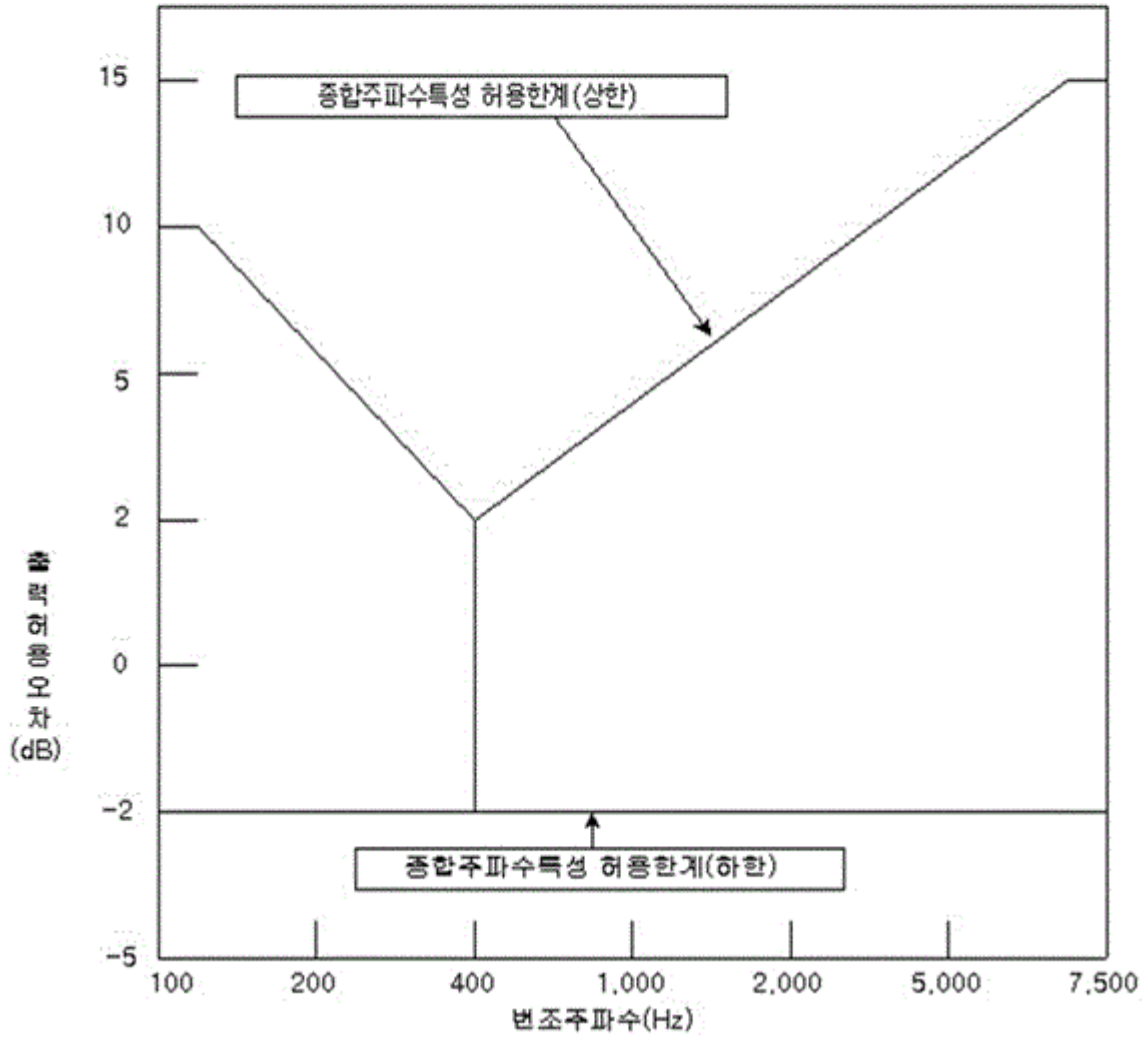
부칙 <제2023-34호,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종합주파수특성 허용범위

(제6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2]

중파(AM)방송용 채널

(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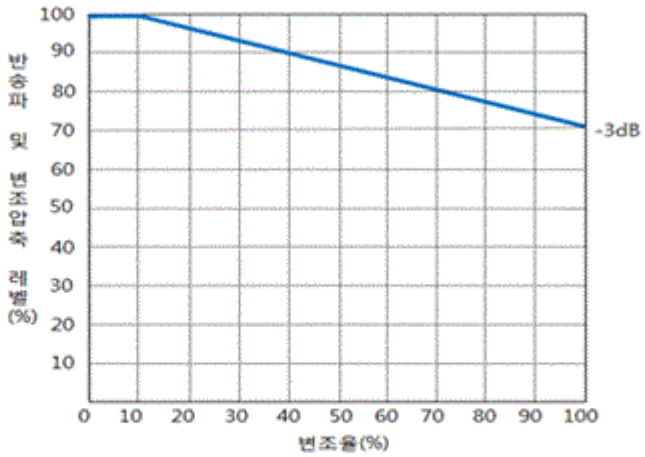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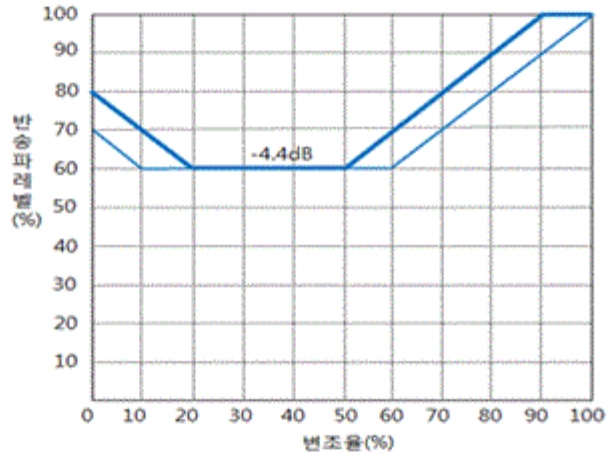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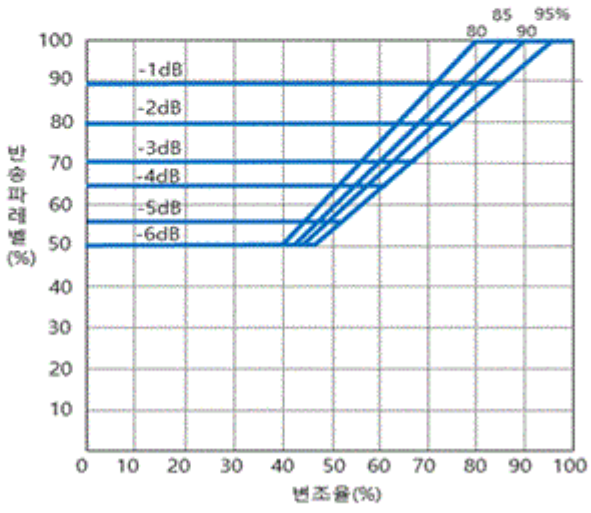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1	531	31	801	61	1071	91	1341
2	540	32	810	62	1080	92	1350
3	549	33	819	63	1089	93	1359
4	558	34	828	64	1098	94	1368
5	567	35	837	65	1107	95	1377
6	576	36	846	66	1116	96	1386
7	585	37	855	67	1125	97	1395
8	594	38	864	68	1134	98	1404
9	603	39	873	69	1143	99	1413
10	612	40	882	70	1152	100	1422
11	621	41	891	71	1161	101	1431
12	630	42	900	72	1170	102	1440
13	639	43	909	73	1179	103	1449
14	648	44	918	74	1188	104	1458
15	657	45	927	75	1197	105	1467
16	666	46	936	76	1206	106	1476
17	675	47	945	77	1215	107	1485(△)
28	684	48	954	78	1224	108	1494
19	693	49	963	79	1233	109	1503
20	702	50	972	80	1242	110	1512
21	711	51	981	81	1251	111	1521
22	720	52	990	82	1260	112	1530
23	729	53	999	83	1269	113	1539
24	738	54	1008	84	1278	114	1548
25	747	55	1017	85	1287	115	1557
26	756	56	1026	86	1296	116	1566
27	765	57	1035	87	1305	117	1575
28	774	58	1044	88	1314	118	1584(△)
29	783	59	1053	89	1323	119	1593
30	792	60	1062	90	1332	120	1602(△)

주) 1. 할당주파수란의 (△)표는 Low Power Channel임.

[별표 2의1]

출력저감제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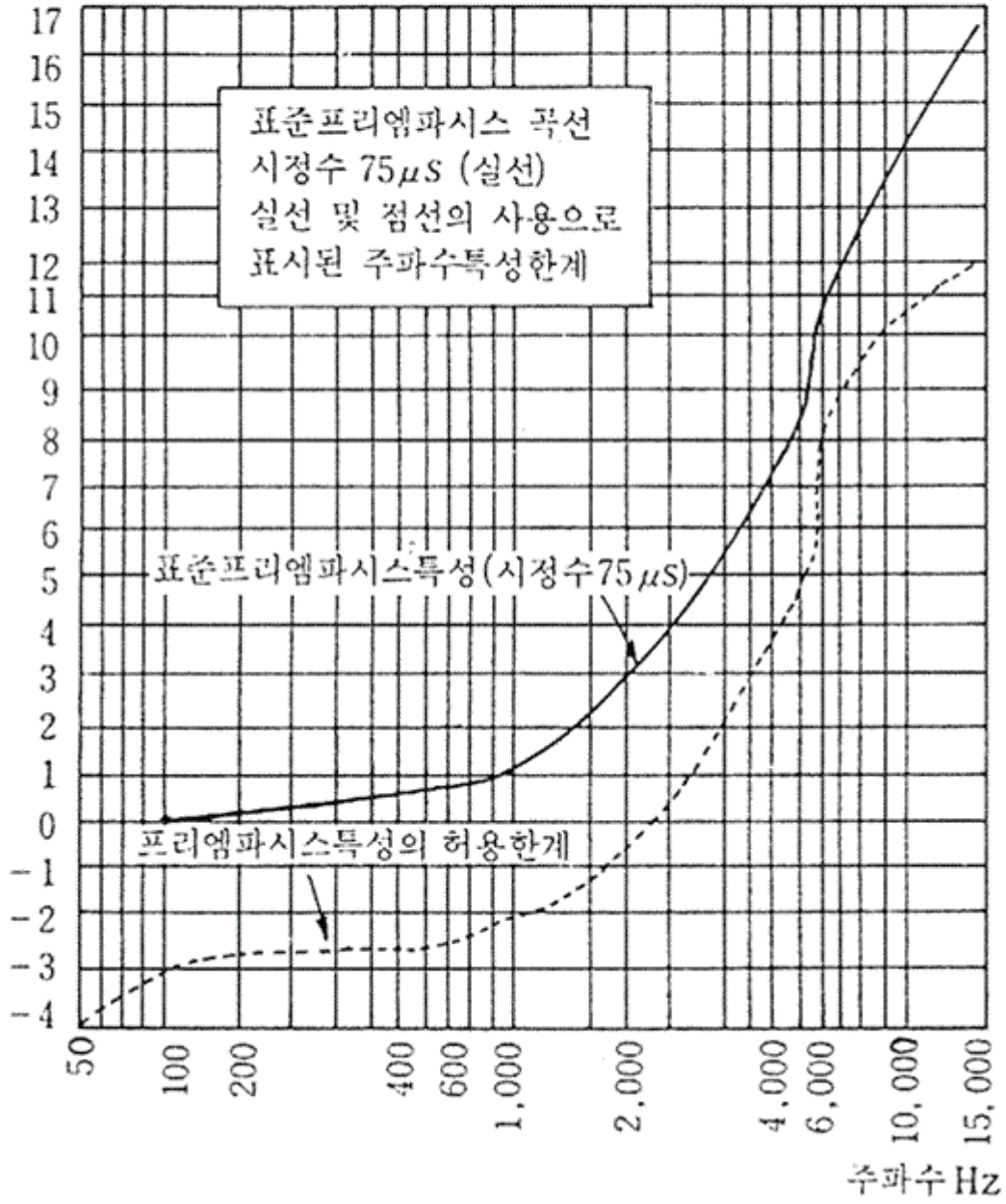
(제6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제6조제1항제14호 관련)

AMC (Amplitude Modulation Companding)	
DCC (Dynamic Carrier Control)	
ACC (Adaptive Carrier Control)	

[별표 3]

표준프리엠파시스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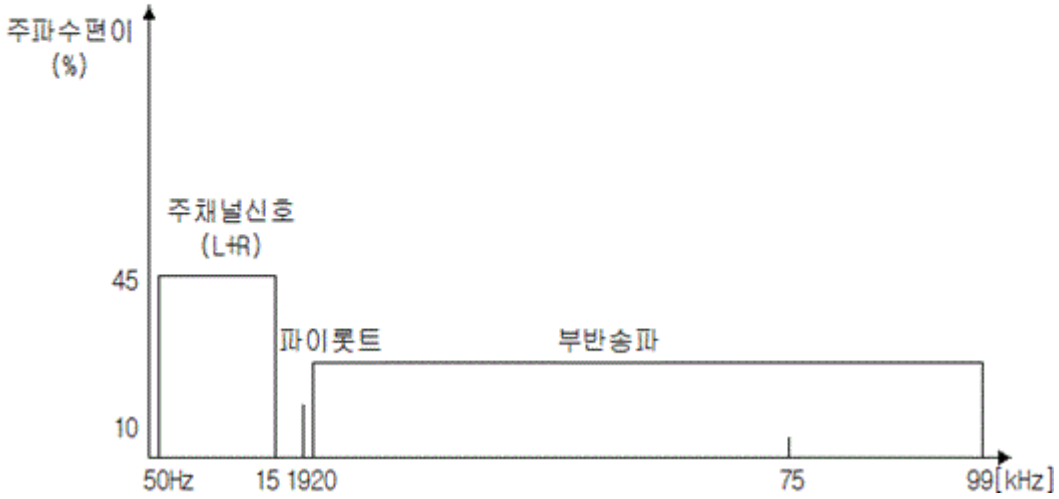
(제7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4]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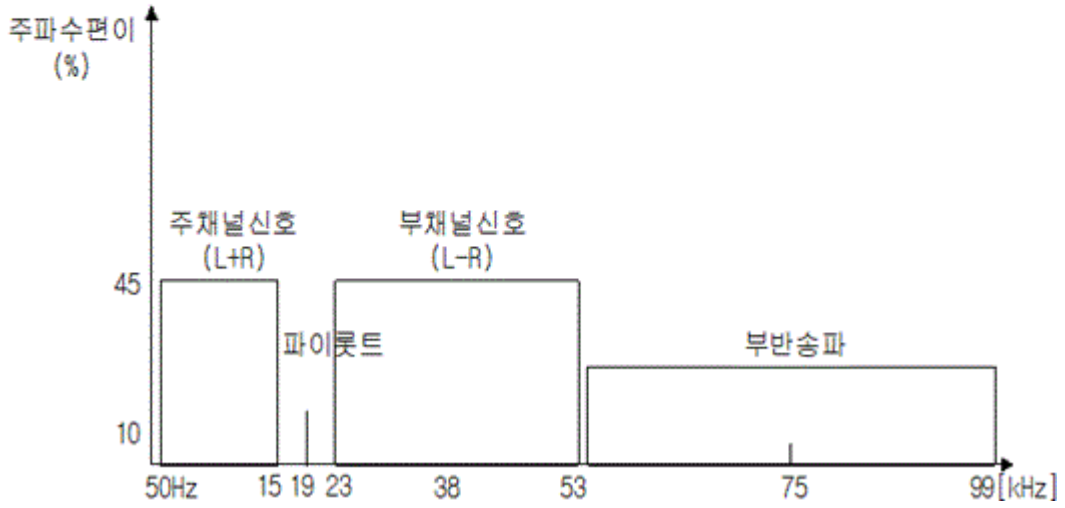
(제7조제1항제14호나목 및 제1항제15호가목 관련)



[별표 5]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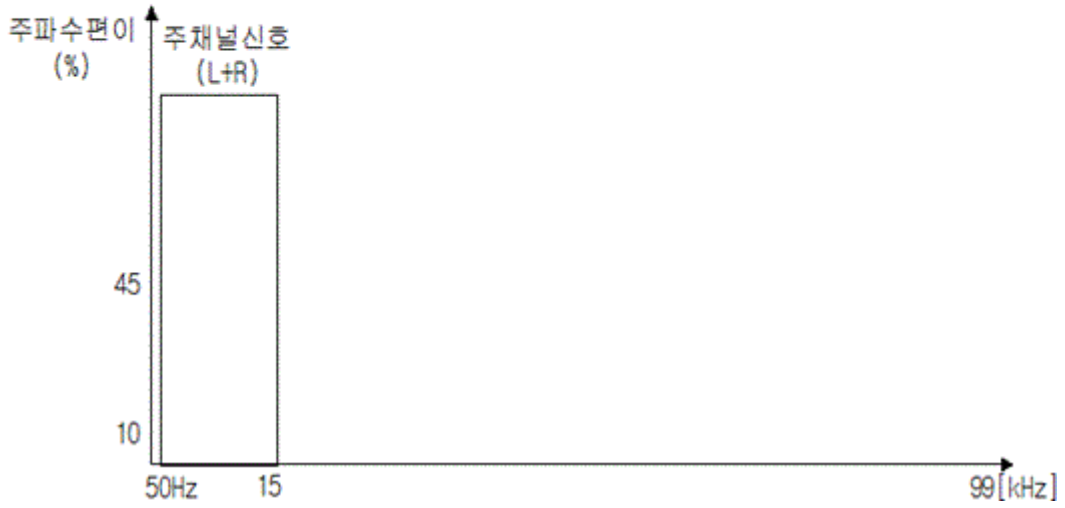
(제7조제1항제14호나목 및 제1항제15호나목 관련)



[별표 6]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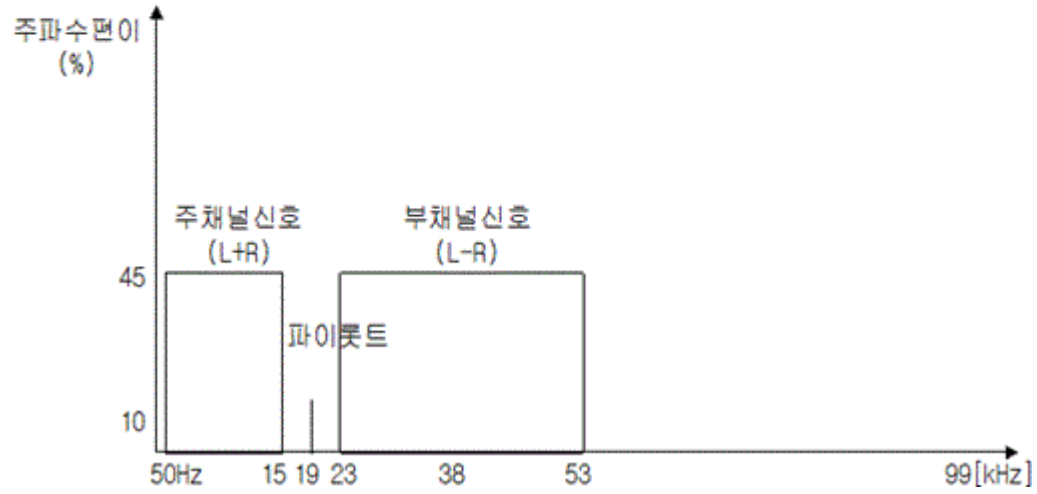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관련)



[별표 7]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제7조제1항제15호라목 관련)



[별표 8]

초단파(FM)방송용 채널

(제7조제3항 관련)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채널번호	할당주파수 (㎒)
1	88.1	26	93.1	51	98.1	76	103.1
2	88.3	27	93.3	52	98.3	77	103.3
3	88.5	28	93.5	53	98.5	78	103.5
4	88.7	29	93.7	54	98.7	79	103.7
5	88.9	30	93.9	55	98.9	80	103.9
6	89.1	31	94.1	56	99.1	81	104.1
7	89.3	32	94.3	57	99.3	82	104.3
8	89.5	33	94.5	58	99.5	83	104.5
9	89.7	34	94.7	59	99.7	84	104.7
10	89.9	35	94.9	60	99.9	85	104.9
11	90.1	36	95.1	61	100.1	86	105.1
12	90.3	37	95.3	62	100.3	87	105.3
13	90.5	38	95.5	63	100.5	88	105.5
14	90.7	39	95.7	64	100.7	89	105.7
15	90.9	40	95.9	65	100.9	90	105.9
16	91.1	41	96.1	66	101.1	91	106.1
17	91.3	42	96.3	67	101.3	92	106.3
18	91.5	43	96.5	68	101.5	93	106.5
19	91.7	44	96.7	69	101.7	94	106.7
20	91.9	45	96.9	70	101.9	95	106.9
21	92.1	46	97.1	71	102.1	96	107.1
22	92.3	47	97.3	72	102.3	97	107.3
23	92.5	48	97.5	73	102.5	98	107.5
24	92.7	49	97.7	74	102.7	99	107.7
25	92.9	50	97.9	75	102.9	100	107.9

[별표 9]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한글 자막 기본 문자표

(제9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구분	KS X 1005-1(유니코드)		KS X 1001(완성형 코드)	
	블록 이름	범위 (16진수)	블록 이름	범위 (16진수)
영문 (로마문자)	라틴(Basic Latin)(95 자) 라틴 보충-1(Latin-1 Supplement) (96 자)	0020~007E 00A0~00FF	1 바이트 로마 문자 (7 bit) (95 자)	20~7E
한글	한글(Hangul) (11,172 자)	AC00~D7A3	2 바이트 완성형 한글*2) (2,350 자)	B0A1~C8FE
특수문자 (약물)	KS X 1001 완성형 코드의 2바이트 완성형 특수 문자와 동일 문자 집합 (986 자)*1)		2 바이트 완성형 특수문자*2) (986 자)	A1A1~ACFE
한자	7,744 자*3)		4,888 자	

*1) KS X 1005-1 유니코드의 특수문자(약물)는 여러 블록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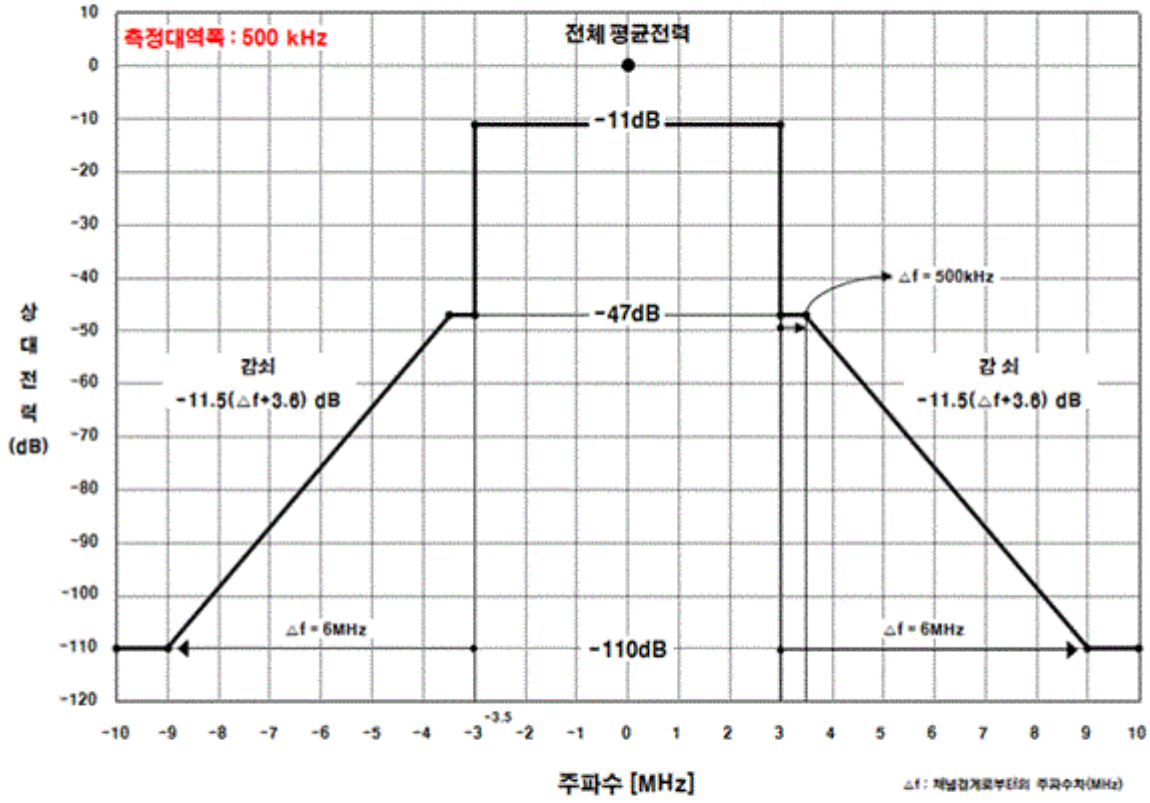
*2) KS X 1001 2 바이트 완성형 코드의 경우, 두 번째 바이트의 범위는 16진수 코드 A1 ~ FE이다.

*3) KS X 1001 및 KS X 1002 규격에서 사용되는 한자만을 사용한다.

[별표 10]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9조제1항제9호사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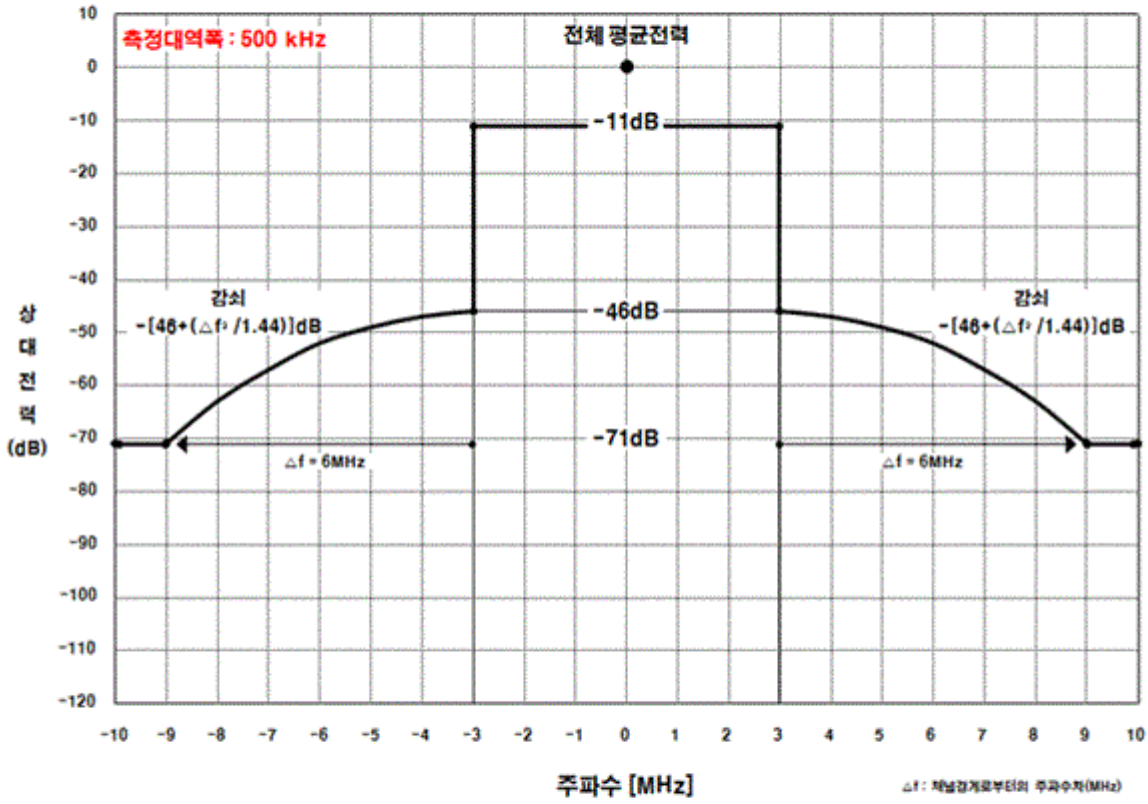


주) 500 ㎑의 측정대역폭이란 중심주파수를 중심으로 ±250 ㎑ 대역내에서 측정하는 대역폭이다. 500 ㎑ 측정대역폭의 전력은 1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전력을 합하여 측정한다. 500 ㎑ 측정대역폭의 중심주파수는 Δf를 0.25 ㎒에서 시작하여 5.75 ㎒까지 0.5 ㎒씩 증가시켜 적용한다.

[별표 11]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9조제1항제9호사목 및 제9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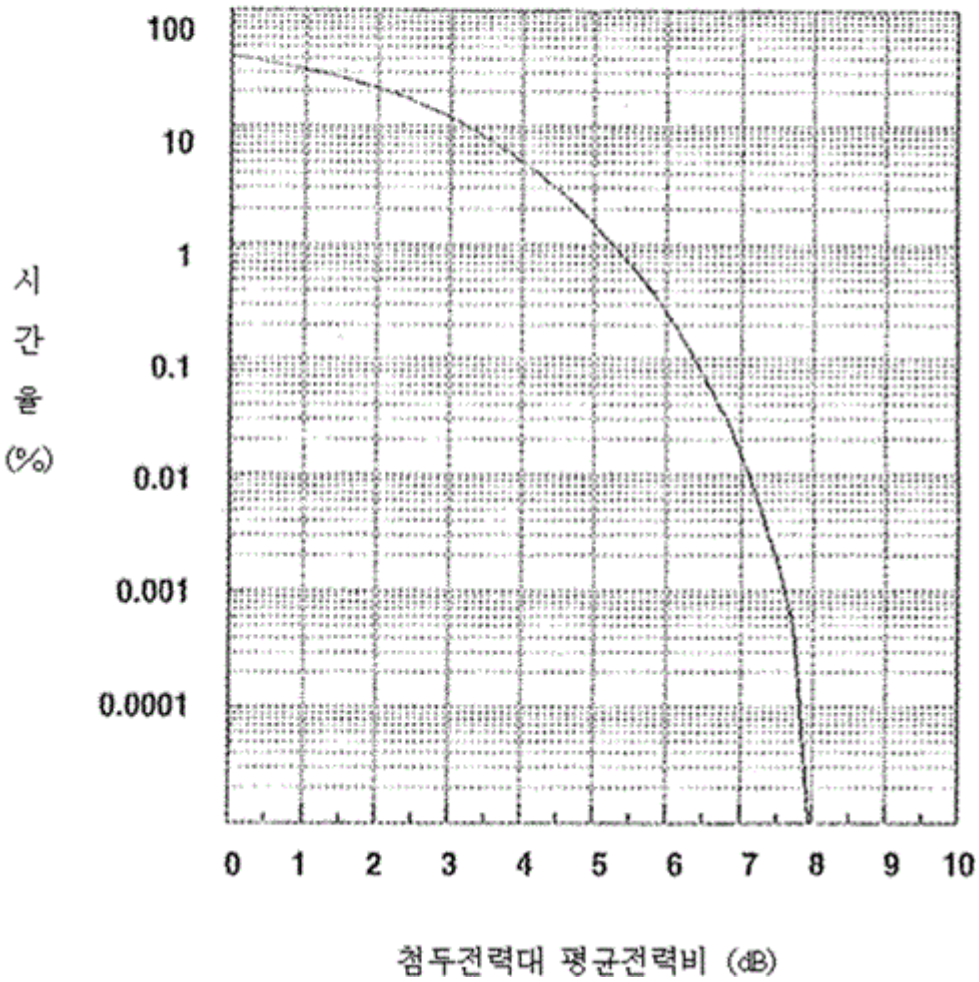


주) 500 ㎑의 측정대역폭이란 중심주파수를 중심으로 ±250 ㎑ 대역내에서 측정하는 대역폭이다. 500 ㎑ 측정대역폭의 전력은 1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전력을 합하여 측정한다. 500 ㎑ 측정대역폭의 중심주파수는 Δf를 0.25 ㎒에서 시작하여 5.75 ㎒까지 0.5 ㎒씩 증가시켜 적용한다.

[별표 12]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의 허용범위

(제9조제1항제9호사목 관련)



[별표 1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제9조제3항 관련)

채널 번호	주파수대 (㎒)	할당 주파수 (㎒)	채널 번호	주파수대 (㎒)	할당 주파수 (㎒)
2	54-60	57	30	566-572	569
3	60-66	63	31	572-578	575
4	66-72	69	32	578-584	581
5	76-82	79	33	584-590	587
6	82-88	85	34	590-596	593
7	174-180	177	35	596-602	599
8	180-186	183	36	602-608	605
9	186-192	189	37	608-614	611
10	192-198	195	38	614-620	617
11	198-204	201	39	620-626	623
12	204-210	207	40	626-632	629
13	210-216	213	41	632-638	635
14	470-476	473	42	638-644	641
15	476-482	479	43	644-650	647
16	482-488	485	44	650-656	653
17	488-494	491	45	656-662	659
18	494-500	497	46	662-668	665
19	500-506	503	47	668-674	671
20	506-512	509	48	674-680	677
21	512-518	515	49	680-686	683
22	518-524	521	50	686-692	689
23	524-530	527	51	692-698	695
24	530-536	533	52	698-704	701
25	536-542	539	53	704-710	707
26	542-548	545	54	753-759	756
27	548-554	551	55	759-765	762
28	554-560	557	56	765-771	768
29	560-566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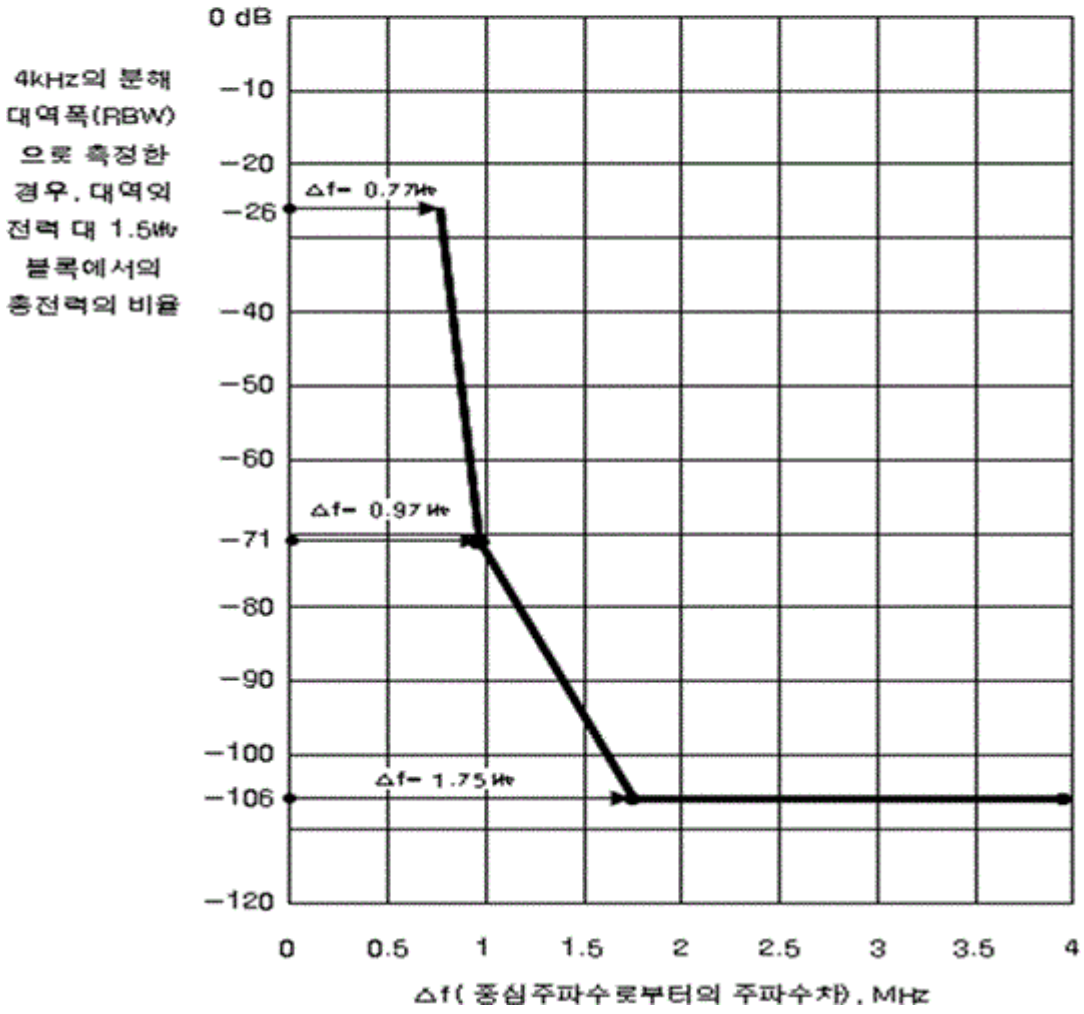
주1) 채널번호 7에서 13까지는 지상파 DMB용 채널에 우선 적용한다.

주2) 채널번호 52에서 56까지는 UHD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한다.

[별표 14]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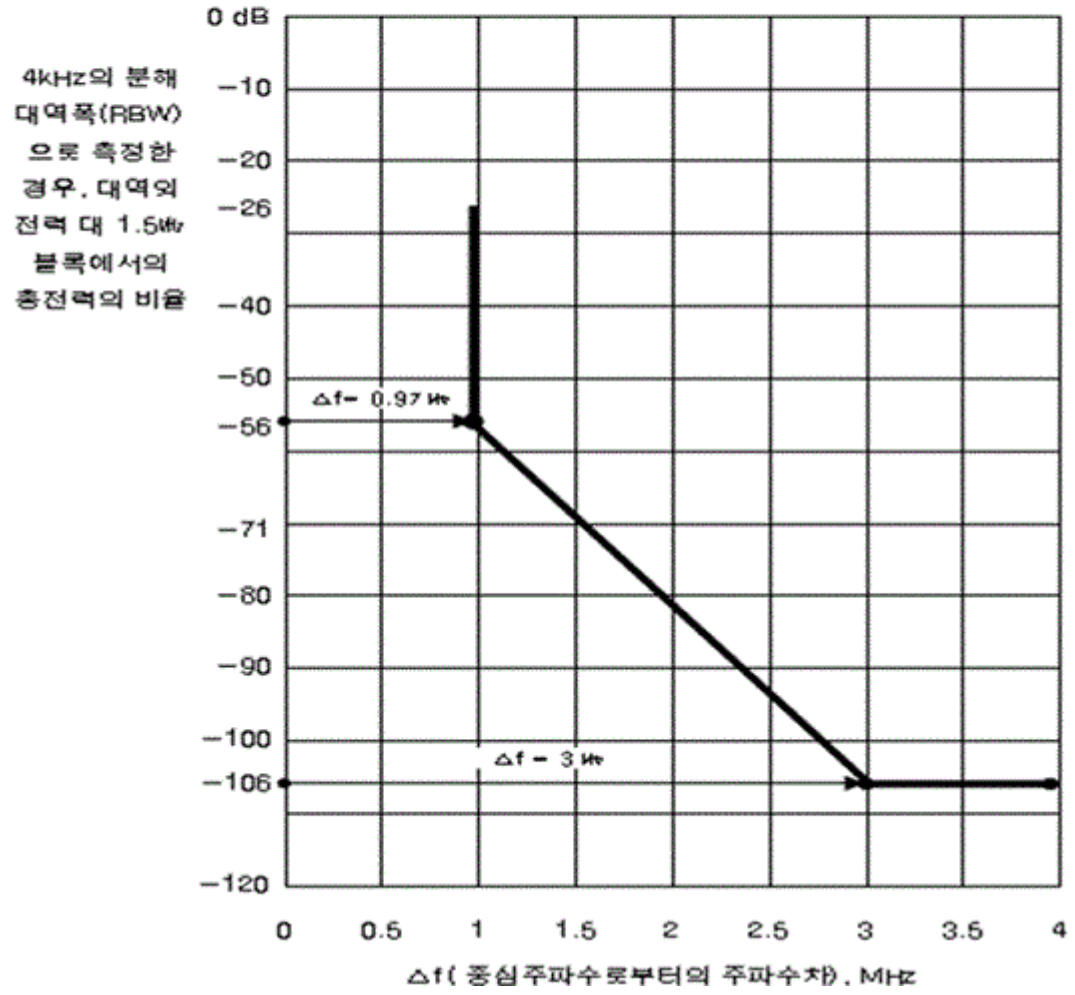
(제11조제1항제8호바목 관련)



[별표 15]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2)

(제11조제1항제8호바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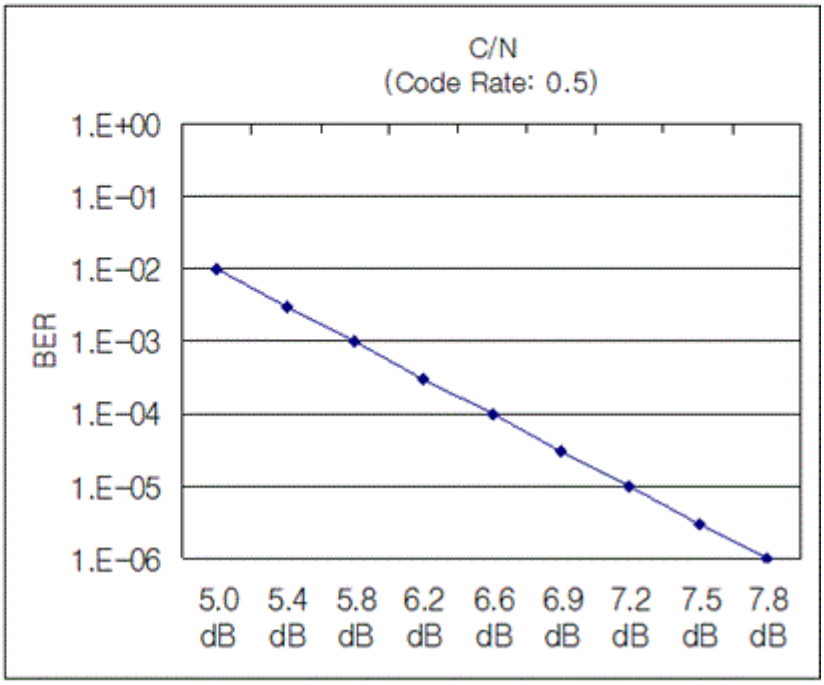


[별표 16]

신호대 잡음비

(제11조제1항제8호바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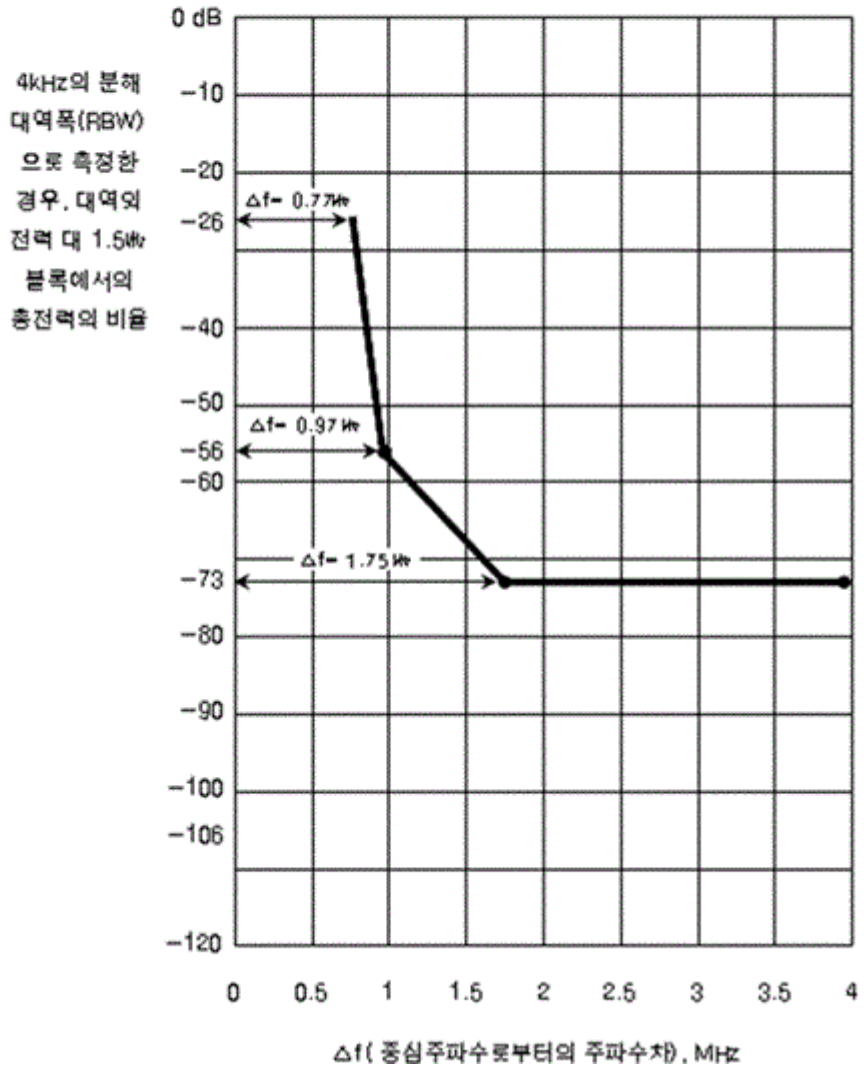
BER	C/N
$1*10^{-2}$	5.0 dB
$3*10^{-3}$	5.4 dB
$1*10^{-3}$	5.8 dB
$3*10^{-4}$	6.2 dB
$1*10^{-4}$	6.6 dB
$3*10^{-5}$	6.9 dB
$1*10^{-5}$	7.2 dB
$3*10^{-6}$	7.5 dB
$1*10^{-6}$	7.8 dB



[별표 17]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3)

(제11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별표 18]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채널

(제11조제2항제4호가목 및 제11조제3항 관련)

채널번호	주파수대(㎒)	할당주파수(㎒)
7A	174.512~176.048	175.280
7B	176.240~177.776	177.008
7C	177.968~179.504	178.736
8A	180.512~182.048	181.280
8B	182.240~183.776	183.008
8C	183.968~185.504	184.736
9A	186.512~188.048	187.280
9B	188.240~189.776	189.008
9C	189.968~191.504	190.736
10A	192.512~194.048	193.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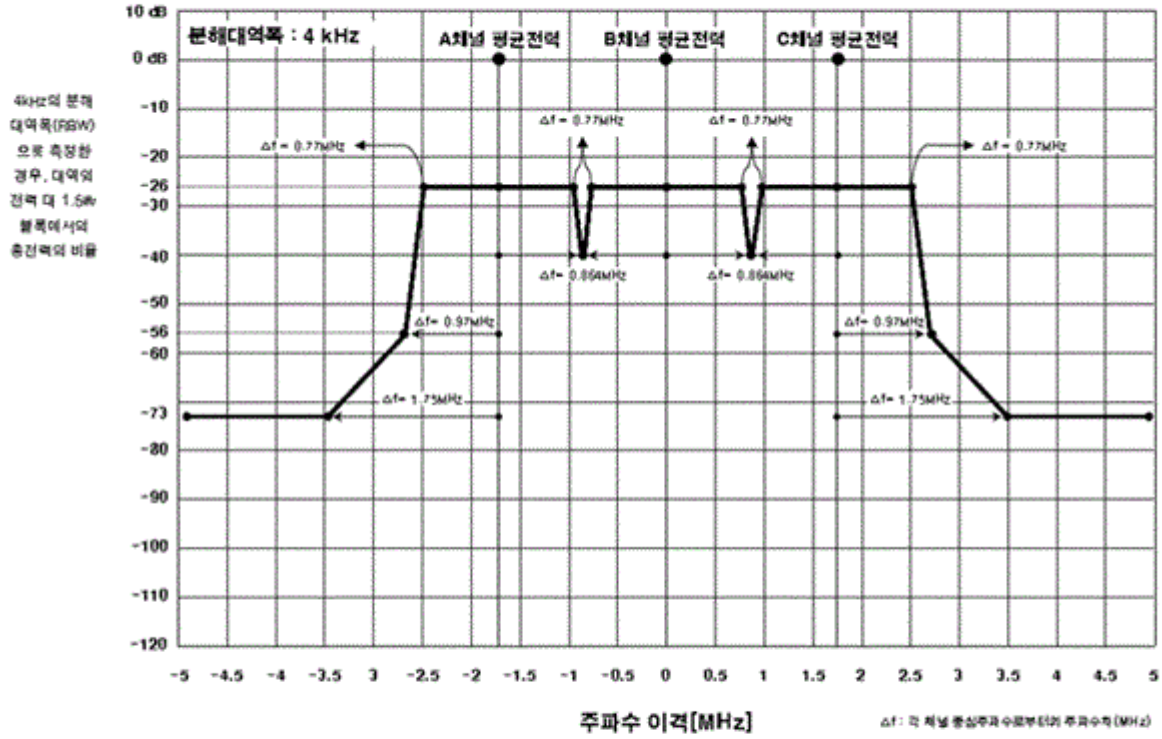
채널번호	주파수대(㎒)	할당주파수(㎒)
10B	194.240~195.776	195.008
10C	195.968~197.504	196.736
11A	198.512~200.048	199.280
11B	200.240~201.776	201.008
11C	201.968~203.504	202.736
12A	204.512~206.048	205.280
12B	206.240~207.776	207.008
12C	207.968~209.504	208.736
13A	210.512~212.048	211.280
13B	212.240~213.776	213.008
13C	213.968~215.504	214.736

주) 채널명은 채널번호에 서비스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서비스가 여러개인 경우 서비스 뒤에 숫자를 일련하여 붙인다.
예) 비디오 1개, 오디오 2개, 데이터 1개 : 7A-V1, 7A-A1, 7A-A2, 7A-D1
※서비스 : 비디오 서비스(V), 오디오 서비스(A), 데이터 서비스(D)

[별표 19]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4)

(제11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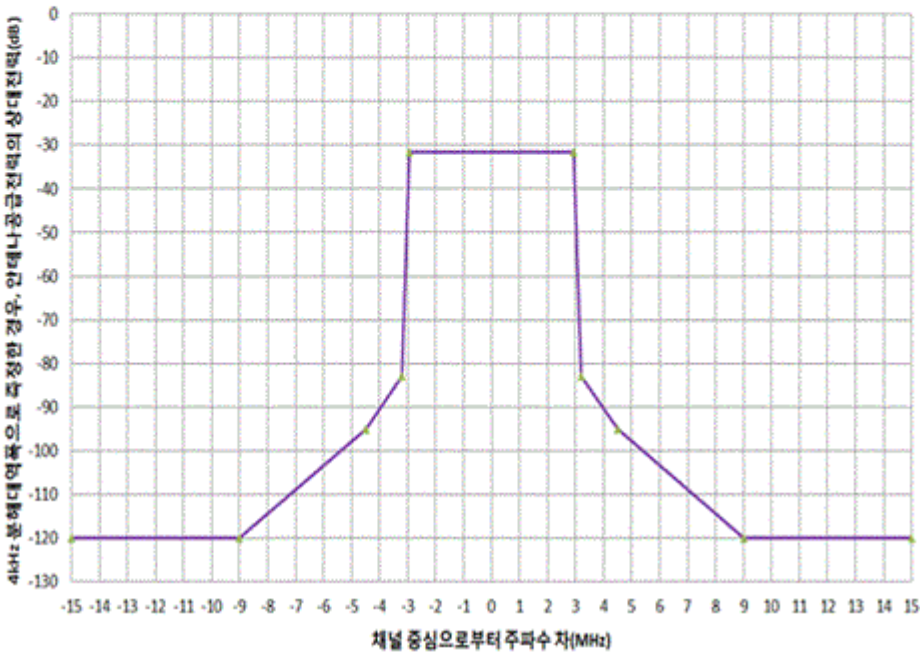


1) A채널의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73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dB 이하이며, ±0.77 ㎒에서 -2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864 ㎒에서 -40 dB 이하일 것
2) B채널의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864 ㎒에서 -40 dB 이하일 것
3) C채널의 중심주파수로부터 -0.864 ㎒에서 -40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dB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dB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73 dB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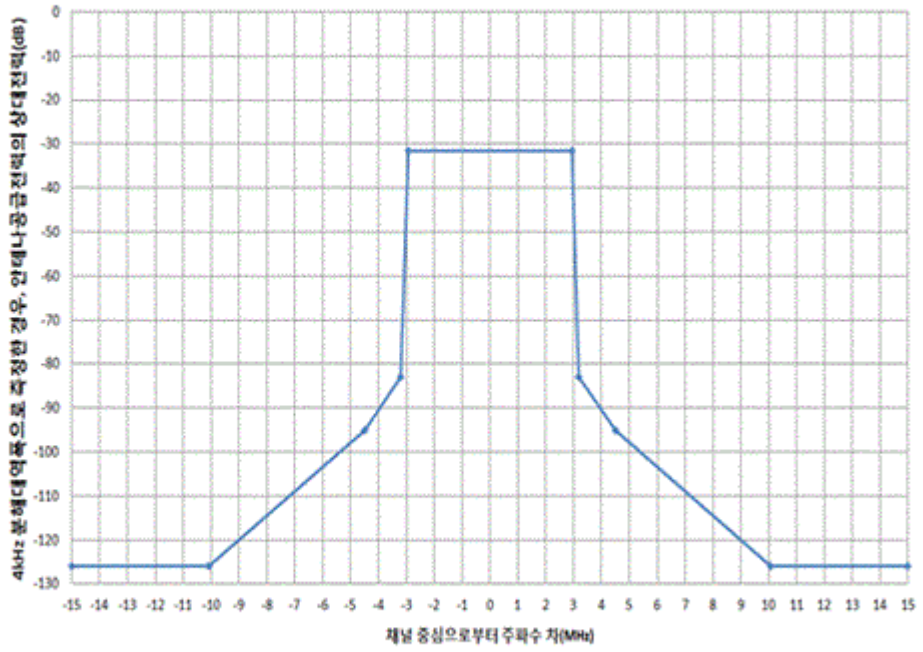
[별표 20]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13조제2항4호가목(4)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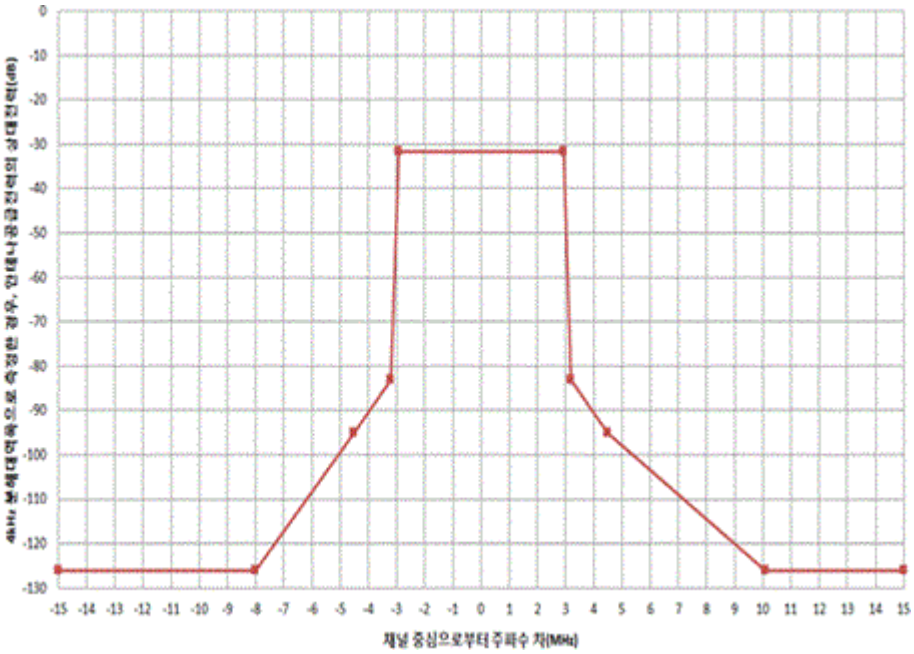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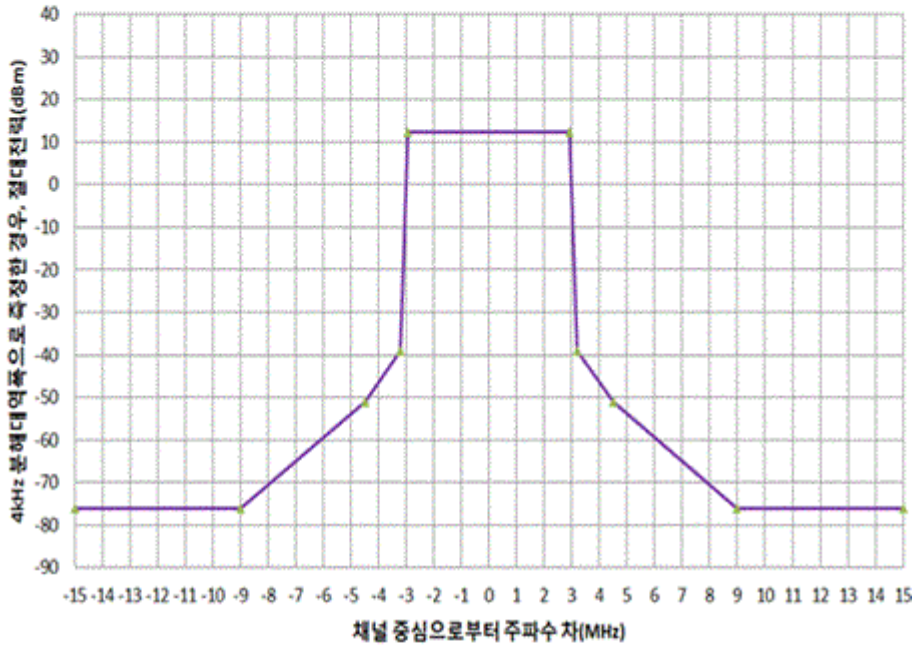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채널 중심으로부터 주파수 차(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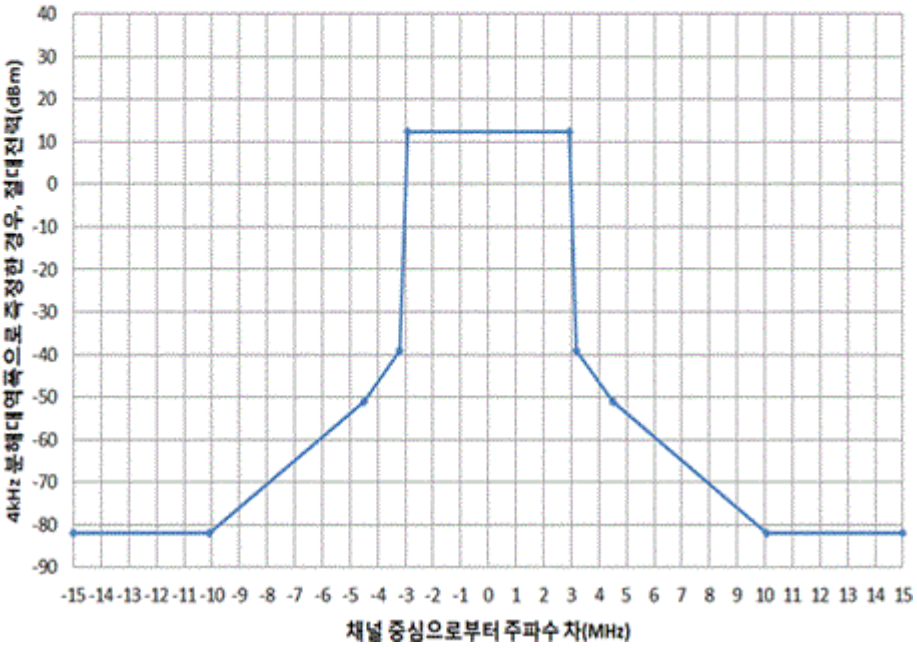
[별표 21]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13조제2항4호나목(4)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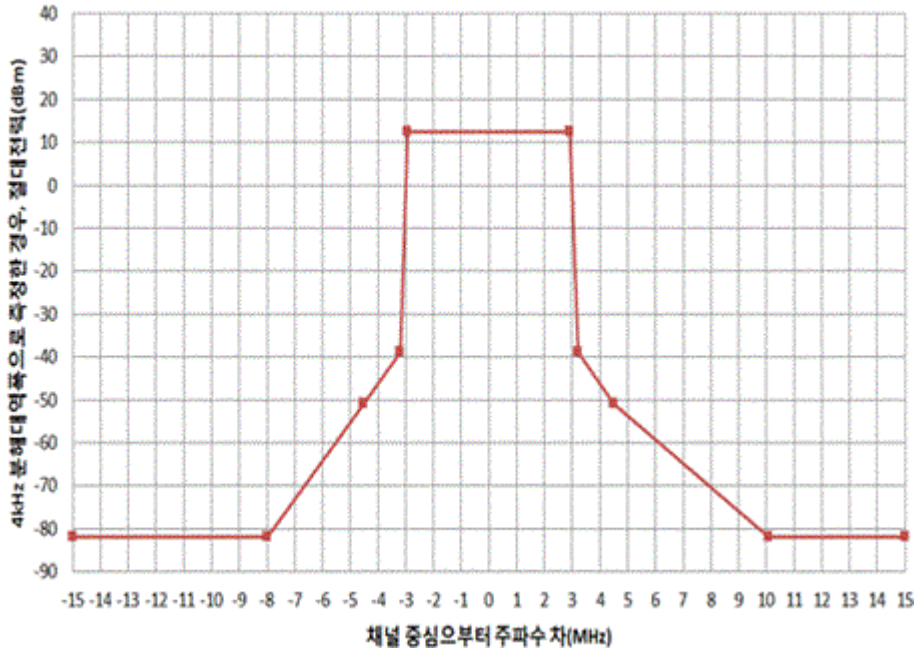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



[별표 22]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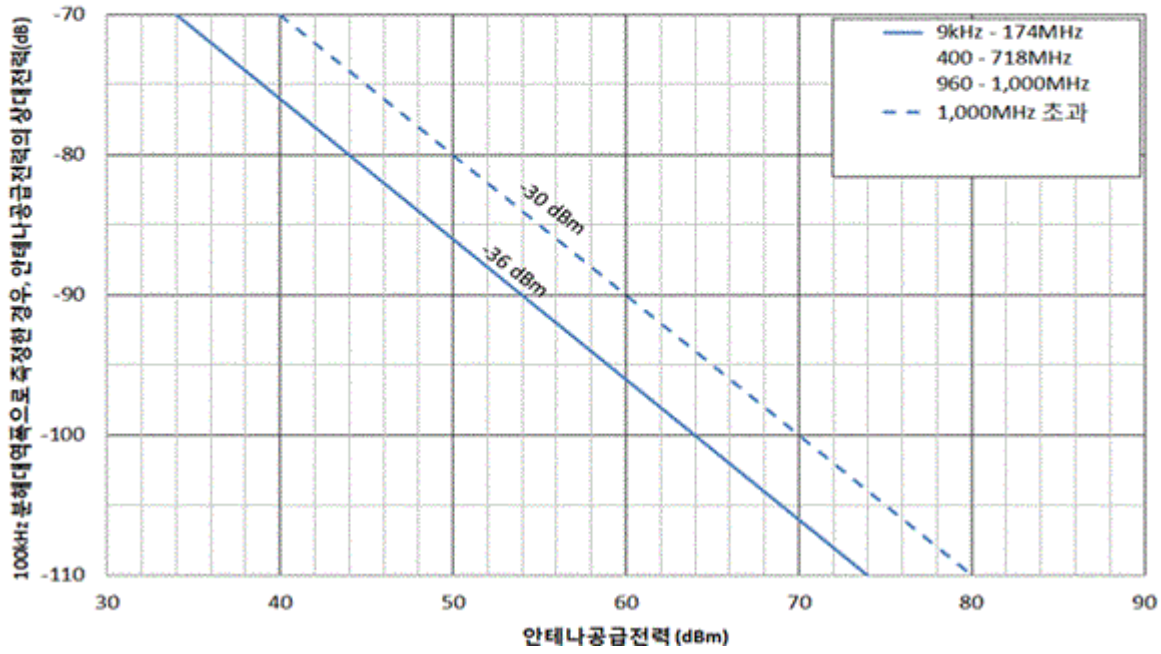
(제13조제2항제5호 관련)

주파수	기준값	분해 대역폭	비고
9 ㎑ 이상 174 ㎒ 미만	-36 dBm	100 ㎑	(그림1)
174 ㎒ 이상 400 ㎒ 미만	-82 dBm, P < 25 W 인 경우 -126 dB, 25 W ≤ P < 1,000 W 인 경우 -66 dBm, 1,000 W ≤ P 인 경우	4 ㎑	(그림2)
400 ㎒ 이상 718 ㎒ 미만	-36 dBm	100 ㎑	(그림1)
718 ㎒ 이상 960 ㎒ 미만	-76 dBm, P < 25 W 인 경우 -120 dB, 25 W ≤ P < 1,000 W 인 경우 -60 dBm, 1,000 W ≤ P 인 경우	4 ㎑	(그림2)
960 ㎒ 이상 1,000 ㎒ 미만	-36 dBm	100 ㎑	(그림1)
1,000 ㎒ 이상 4.5 ㎓ 미만	-30 dBm	100 ㎑	(그림1)

※ 비고 : 표 중 P는 송신기의 안테나공급전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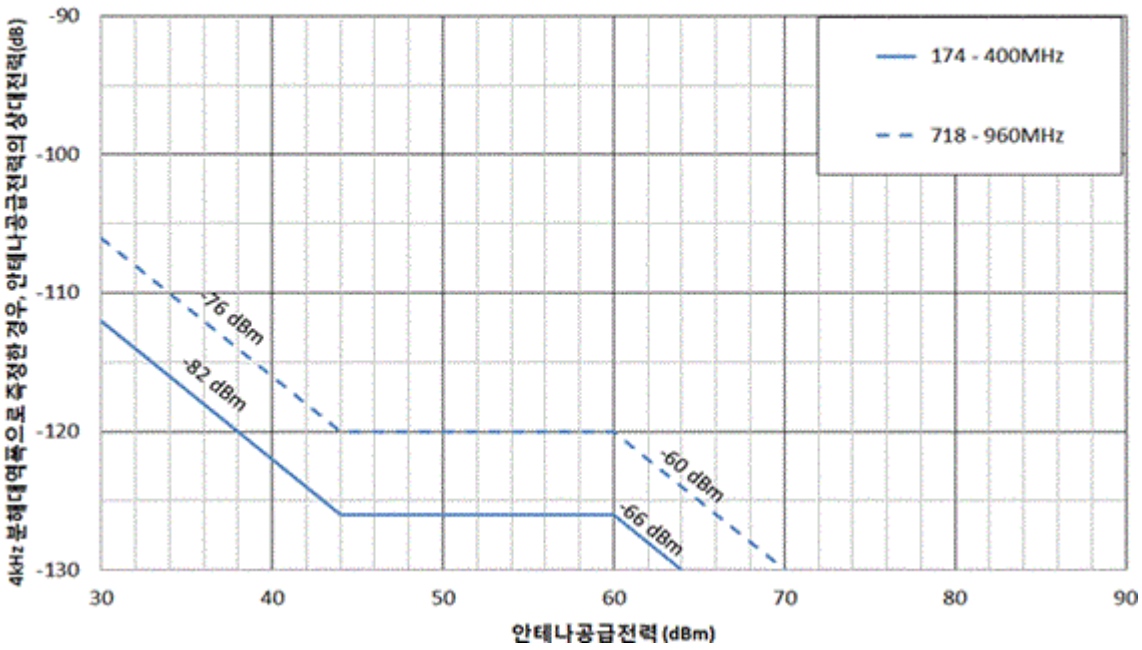
(그림1)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분해대역폭 100 ㎑)



(그림2)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분해대역폭 4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68호, 2024. 1.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 - 202 - 6465 ,64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12. 21.>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2. 21.,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2. 10.>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4. 1. 23.>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21., 2020. 6. 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6. 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12. 18., 2007. 12. 21., 2009. 5. 22.,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024. 1. 23.>

제11조(보호조치 명령)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4. 1. 23.]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

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제14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23.>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제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⑥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2015. 12. 22.>

③ 삭제<2015. 12. 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⑤ 삭제<2015. 12. 22.>

제5장 삭제 <2009. 5. 22.>

제17조 삭제 <2009. 5. 22.>

제18조 삭제 <2009. 5. 22.>

제19조 삭제 <2009. 5. 22.>

제20조 삭제 <2009. 5. 22.>

제21조 삭제 <2009. 5. 22.>

제22조 삭제 <2009. 5. 22.>

제23조 삭제 <2009. 5. 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6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21., 2020. 6. 9., 2022. 6. 10., 2024. 1. 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2015. 12. 22.>
3. 삭제<2009. 5. 22.>
4. 삭제<2009. 5. 22.>
5. 삭제<2009. 5.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6. 10., 2024. 1. 2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삭제<2017. 3. 14.>

⑤ 삭제<2017. 3. 14.>

⑥ 삭제<2017. 3. 1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2024. 1. 23.>

부칙 <제6383호,2001. 1. 26.>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6호,2002. 12.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전문업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본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777호,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9> 까지 생략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 정보통신부령 " 을 " 지식경제부령 " 으로 한다.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국무조정실장 " 을 " 국무총리실장 " 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 제2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 정보통신부령 " 을 " 지식경제부령 "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 제2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4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08호,2009. 5. 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 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 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국무총리실장 " 을 " 국무조정실장 "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 " 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 보호진흥원 " 을 각각 " 인터넷진흥원 " 으로 한다.

<1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3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3호,2015. 6. 2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590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9호,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6호,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8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7호,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0호,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8호,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 - 202 - 6465 ,64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2. 3.,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개정 2012. 5. 23.]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 ” 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 5.>

⑤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④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1.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⑤ 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23.]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4급상당 공무원, 5급·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 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시행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5.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5. 23.]

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5. 23.]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수립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2017. 7. 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개정 2012. 5. 23.>

[제목개정 2012. 5. 23.]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급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
4.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보호책임관 간 정보 교류 등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25. 1. 1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전문개정 2012. 5. 23.]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③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14. 12. 9.>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개정 2012. 5. 23., 2014. 12. 9.>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정여부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 관리기관의 명칭
4. 수행업무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3. 9.>

⑤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본조신설 2012. 5. 23.]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 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 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후에는 매년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1. 3. 9.>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4.>

③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4.>

④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14.>

1.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2. 취약점 분석·평가의 범위 및 항목
3.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 14.>

②정보공유·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4.>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3. 기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③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2. 5. 23.>

제24조 삭제 <2021. 3. 9.>

제24조의2 삭제 <2023. 3. 7.>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6., 2025. 1. 14.>

[전문개정 2011. 4. 6.]

부칙 <제17308호,2001.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 등의 일정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의 통보, 위원회에의 제출 및 확정의 일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8006호,2003. 6. 23.>(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제2호중 " 정보보호전문업체 "를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로 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4호,2004. 12.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생략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을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3! 내지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6>생략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을 "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188>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을 "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 국무조정실장 "을 " 국무총리실장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 정보통신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 정보통신부 "를 각각 "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정보통신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 "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 정보통신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7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 정보통신부령이 " 를 " 지식경제부령으로 " 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7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92호,2009. 8. 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 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 " 을 " 행정안전부령 "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9호,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806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한 관리기관의 장은 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을 “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자치부차관

4# 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28호,2015. 12. 2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생략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미래창조과학부령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한다.

<5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421호,2018. 12. 2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7호,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을 그 명령을 받은 날로 보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2896호,2022. 9. 6.>

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1호,2023. 3. 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2호,202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6호,2025. 1. 14.>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1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통상부차관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 부터2(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88>부터 <313>까지 생략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

구성원	역할 또는 경력·자격기준
반장(정보보호책임자)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의 총괄
관리기술 담당	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등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운영경력 소유자,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자
메인프레임 담당	중형급이상의 컴퓨터 관리 경력자
응용프로그램 담당	해당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경력자
서버 담당	유닉스, 리눅스, Windosw-NT등 각종 서버관련 기술 보유자
정보보호 담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운영자, 정보보호정책·위험분석 또는 취약점 점검·평가등의 보안관리기술 경력자
네트워크 담당	WAN, LAN, NMS 및 무선통신등에 관한 기술 및 각종 통신 프로토콜 기술 보유자

비 고 : 관리기관은 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담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야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14.>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항 목	기 준
가. 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
나. 기술인력의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5인이상(5인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다. 시설 및 장비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라. 정보보호관리규정	-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그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

비 고

1.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라. 정보보호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200	350	5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750	1,500	3,000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 - 202 - 6465 ,64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 · 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 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3. 24.,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6.]

제3조 삭제 <2017. 5. 4.>

제4조 삭제 <2011. 4. 6.>

제5조 삭제 <2011. 4. 6.>

제6조 삭제 <2011. 4. 6.>

제7조 삭제 <2011. 4. 6.>

제8조 삭제 <2011. 4. 6.>

제9조 삭제 <2011. 4. 6.>

제10조 삭제 <2011. 4. 6.>

제11조 삭제 <2011. 4. 6.>

제12조 삭제 <2011. 4. 6.>

제13조 삭제 <2011. 4. 6.>

부칙 <제115호,2001.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3.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04. 7. 6.>(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06. 7. 19.>(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제9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을 각각 " 「전자정부법」 " 으로 한다.

제2조 중 " 정보통신부령 " 을 " 지식경제부령 " 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 정보통신부장관을 " 을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 로,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 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09호,2011. 4. 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 5.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제6호·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행정안전부령 ”을 “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 <제93호,201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령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3(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56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으로 한다.

③ 생략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 기술 인력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 인력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비 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5.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정보보호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보호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2조제1항 따른 기술인력(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5. 4.>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1.4.6>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1.4.6>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1.4.6>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1.4.6>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1.4.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시행 2022. 7. 1.] [고시 제2021 - 15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044 - 201 - 33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 - 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이란 홈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곳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세대단자함 :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

나. 통신배관실(TPS실) :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라. 그 밖에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제9조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제2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제5조(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망의 배관·배선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홈게이트웨이)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홈게이트웨이는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단말기) 세대내의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과 단지서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단지네트워크장비) ①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rack)으로 설치하며,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단지서버) ①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지서버는 상온·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 보안 문제

나. 통신망 이상발생에 따른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운영 불안정 문제

제10조(홈네트워크사용기기)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 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지기
   가.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
   가.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량출입시스템
   가.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무인택배시스템
   가.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ㆍ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 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 20%로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홈네트워크 설비가 다음 공간에 설치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단자함

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신배관실

가.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집중구내통신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및 홈네트워크 보안

제12조(연동 및 호환성 등) ① 홈게이트웨이는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기인증 등) ①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

제14조(유지·관리 등) ①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하자담보기간과 내구연한을 표기할 수 있다.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 ①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부칙 <제2009-90호,2009. 3. 4.>

제1조(시행일 및 적용례) 이 기준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1년 3월 4일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660호,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70호,2011. 3. 4.>

제1조(시행일 및 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47호,2013. 4.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89호,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4호,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서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66호,2016. 8.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51호,2016. 11.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45호,2020.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1533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보안요구사항
1. 데이터 기밀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2. 데이터 무결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 조치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3. 인증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
4. 접근통제	자산·사용자 식별, IP관리, 단말인증 등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 분류, 접근권한 부여·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
5. 전송데이터 보안	승인된 홈네트워크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6. 7. 7.] [고시 제2026-3호, 2026. 7. 7.,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061-338-46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이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 개인이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간단한 행정안내 및 마을 공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통신을 목적으로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5.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6. "점유주파수대폭 또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도로 주변에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안전 및 교통정보 서비스(긴급 상황 지원,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8. "드론탐지레이다"란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받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가표준(KSW9000) 5.1에서 정한 드론에 대한 표적정보(거

리, 위치, 이동속도 등)를 확인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전파법 시행령」및「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다. 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2.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pm 1.5 \times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 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pm 1.5 \times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 36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 dB

② 422 MHz 주파수대역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기의 형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고정형일 것
2. 송신시작 10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송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송신 시간 제한장치를 갖추고 자동으로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3. 통신방식이 단향통신방식일 것
4.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5. 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의2와 같을 것
7.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5조(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71 76 ㎓, 81 8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dBW 이하, 전력밀도는 150 ㎽/100 ㎒ 이하 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최소 43 dBi 이상이고 안테나 빔폭의 반치각은 1.2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x 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내일 것
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구 분	불요발사허용치	비고
대역외발사	A=11+0.4(S-50)+10log(B)	다만, 감쇠량이 56dB 이상이거나 불요발사 절대전력이 -13 dB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 감쇠량(dBc) B : 점유주파수대폭(㎒) S : 점유주파수대폭에 대한 중심주파수로부터의 이격주파수의 백분율(%)
스퓨리어스발사	A=43+10log(P)	A : 감쇠량(dBc) P : 평균전력(W)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국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 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1)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2) 우주국의 설치장소(궤도위치)는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 다만, 비정지궤도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1) 우주국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궤도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2) 8025 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에 따라 고정위성업무용 또는 기상위성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kHz 폭에서 -174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8025 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의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1 MHz 폭에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35 dB(W/m2) ($0 \leq \phi < 5^\circ$)

-135 + 0.5 (ϕ - 5) dB(W/m2) ($5 \leq \phi < 25^\circ$)

-135 dB(W/m2) ($25 \leq \phi \leq 25^\circ$)

ϕ: 위성 송신신호와 수평면 사이의 각

다. 궤도의 유지

(1)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실험국 제외)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 ° 이내로 유지할 것

(2) ⑴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 °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3)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이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주국과 지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구 표면상의 위성 안테나 빔 패턴과 위성의 지정된 서비스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자세를 교정하여야 한다.

(나) 사전 허가된 위성 경도 위치 유지 범위를 만족하기 위한 동서 방향의 궤도 유지 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타 위성망에 더 큰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위성망으로부터 더 큰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위성망의 관련 주관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정지궤도위성 송신안테나의 지향 정밀도: 정지궤도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안테나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1) 반전력 빔폭의 10 %가 공칭 지향 방향 내에 있거나

(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

가. 공통조건

1) 지구국 송신안테나의 최대복사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하 ‘ 앙각 ’ 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과 같을 것

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

나) 가)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 이상

다)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 이상

2) 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을 것

3)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지구국으로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국은 다음의 조건을 갖출 것

가) 이동형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 다만, 이동형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할 것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할 것,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할 것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할 것

4) 해상이동형지구국의 경우 별표 4의2의 등가등방복사전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항공이동형지구국의 경우 별표 4의3의 전력속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경우, 다음을 만족할 것

$G = 29 - 25 \log(\phi)$ dBi $(\alpha \leq \phi \leq 7^\circ)$

$G = +8$ dBi $(7^\circ < \phi \leq 9.2^\circ)$

$G = 32 - 25 \log(\phi)$ dBi $(9.2^\circ < \phi \leq 48^\circ)$

$G = -10$ dBi $(48^\circ < \phi \leq 180^\circ)$

다만, D/λ가 50 이하 일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할 것

$G = 32 - 25 \log(\phi)$ dBi $(\alpha < \phi \leq 48^\circ)$

$G = -10$ dBi $(48^\circ < \phi \leq 180^\circ)$

G : 안테나 이득(dBi), φ : 최대복사 방향으로부터의 각(°),

α : 1 ° 와 100λ/D 중 큰 값(°), D : 안테나 직경(m), λ : 파장(m)

다. 삭제

라. 24.65 24.75 GHz를 이용하는 위성업무용 지구국의 안테나 지름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가목에서 라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65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 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 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송、수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2.5 ㎒ 이내일 것

(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2 dB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 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25° 이상 일 것

(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dB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dB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dB + 10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대역(GHz)	무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1.0~2.0	-68	-	1 ㎒
2.0~10.7	-62	-	
10.7~14	-56	-	
14~14.5	-56	-11	
14.5~21.2	-56	-	
21.2~60	-50	-	

(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dBW/40 ㎑)
6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바. 가목에서 마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 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 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송、수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나) 반송파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MHz 이내이고, 전체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0 MHz 이내일 것

(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5 dB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35° 이상 일 것

(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dB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dB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dB + 10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대역(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1.0~2.0	-68	-	1 ㎒
2.0~10.7	-62	-	
10.7~14	-56	-	
14~14.5	-56	-11	
14.5~21.2	-56	-	
21.2~60	-50	-	

(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dBW/40 ㎑)
7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사. 마목과 바목을 제외한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지구국으로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국의 조건

1) 최소 및 최대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국경간 공급 협정에서 승인된 위성망과 통신하기 위한 상향링크의 제원을 만족할 것

2)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송신 점유주파수대역의 가장자리 양쪽 끝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00 %까지의 임의의 구간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밀도가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점유주파수대역폭내의 평균전력밀도의 최대값보다 40 × log(F/50 + 1) dB 이상 작을 것. 여기서 F는 점유주파수대역폭 양쪽 끝에서부터 이격된 주파수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의 백분율로 표시함

나) 송신 점유주파수대역의 가장자리 양쪽 끝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00 % 초과 주파수 임의의 구간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밀도가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점유주파수대역폭내의 평균전력밀도의 최대값보다 40 dB 이상 작을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별표 4의4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축외(off - 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별표 4의5의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의 안테나 이득은 별표 4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에만 적용할 것

3. 지상업무용 무선국의 송신 출력제한 : 우주무선통신업무용과 동등한 사용 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 10 ㎓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은 13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1)에도 불구하고 송신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0.5도 이내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7 dBW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정지궤도로부터 0.5도에서 1.5도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55 - 8、(1.5 - X) dBW (여기서 X는 정지궤도로부터 이격된 각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10 18.6 ㎓ 및 18.8 ㎓ 초과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안테나공급전력은 10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21.4 22 GHz 대역을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송신신호의 전력속밀도는 인접국가 국경의 지상 3 m 높이에서 - 120.4 dB (W/(㎡/MHz))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8.6 18.8 ㎓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안테나공급전력은 - 3 dB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제7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 17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2.5 x 10^{-6}
이내
나. 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5 x 10^{-6}
이내
4. 최대 주파수편이는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dB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 - 2.88 ㎑) dB(F : 4.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dB(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dB
마.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dB
6. 무선탐지이동국의 안테나의 절대이득은 2.15 dBi 이하일 것

제8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25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 기술

구 분	조 건
주파수범위	26.1 ㎒~50 ㎒, 72 ㎒~76 ㎒, 146 ㎒~174 ㎒, 335.4 ㎒~470 ㎒ 주파수대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파수
전파형식	A2A, A2B, A1D, A2D,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
주파수허용편차	335.4 ㎒ ~ 470 ㎒ 주파수대역은 4×10^{-6}, 기타 주파수대역은 15×10^{-6} 이내
변조주파수	3 ㎑ 이내
주파수편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 5 ㎑ 이내
점유주파수대역폭	A2A, A2B, A1D, A2D 는 10 ㎑ 이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16 ㎑ 이내

제9조(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9.7 MHz 50 MHz, 72 MHz 76 MHz, 138 MHz 174 MHz, 216 MHz 223 MHz, 335.4 MHz 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 공통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2.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이상 15㎑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 이상 174 ㎒ 이하 또는 335.4㎒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pm 1.5 \times 10^{-6}$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4.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pm 1.5 \times 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반송파전력	1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포화레벨로 변조한 때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R3E전파의 경우에는 18±2 dB J3E전파의 경우에는 최소한 40 dB이 각각 낮은 값
출력임피던스	가능한 한 75 Ω(선박국과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토온주파수	가능한 한 1400 Hz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는가능한 한 350 Hz 부터2700 Hz)	가능한 한 6 dB 이내(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종합왜와 잡음	1400 Hz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레벨을 가하여 복조한 경우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dB 이상(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측파대	상측파대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송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2 Hz,선박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5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Hz에서 2700 Hz까지)	3 ms 이하일 것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 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 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감 도		신호 대 잡음비가 20 dB인 때의 정격출력의 2분의1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이 3 μV 이하일 것
하나의 신호선택도	통과 대역폭	6 dB 저하의 폭이 가능한 한 2.4 kHz 이상 3 kHz 이하
	감 쇠 량	26 dB 저하의 대역폭이 ±1.7 kHz 이내 46 dB 저하의 대역폭이 ±1.9 kHz 이내 66 dB 저하의 대역폭이 ±2.1 kHz 이내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40 dB 이상
실효선택도		강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 μV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의 희망파에서 4 kHz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 dB 억압하는 방해파 입력전압이 10 mV 이상일 것
국부발진기의 주파수		주파수 변동은 1시간당 13 MHz 이하일 때에 ±20 Hz 이하, 3 MHz를 넘을 때에 ±50 Hz 이하일 것.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희망파를 50 Hz 이하의 주파수 차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중합왜와 잡음		1400 Hz의 주파수로 변조된 30 μV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때에는 정격출력의 2분의 1에서 1400 Hz의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dB 이상

5. 제4호의 수신 장치에서 린콤팩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2 Hz, 선박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5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합주파수특성(변조주파수 350 Hz 이상 2700 Hz 이하)	6 dB 이내일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Hz 이상 2700 Hz 이하)	3 ms 이하일 것

6. 제5호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1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①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해당기기의 전용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테나공급전력은 10 W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800 ㎑ 이하, 디지털방식은 ±20 ㎑ 이하일 것

나.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4 ㎒ 이하, 디지털방식은 ±1 ㎒ 이하일 것

② 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해당 기기의 전용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테나공급전력은 1 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12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 50 ㎒, 72 76 ㎒, 138 143.6 ㎒, 146 174 ㎒, 273 328.6 ㎒, 335.4 470 ㎒, 923.55 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 2000 Hz 이내로서 별표 6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를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2.5 ㎼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 이하일 것

제13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pm 2.5 \times 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Hz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6)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 부터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Hz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dB 이상일 것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pm 3 \times 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pm 4 \times 10^{-6}$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dB (F : 10㎑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dB(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dB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dB

(나)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dB (F: 12.5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dB(P: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dB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dB

(다)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 - 2.88㎑) dB(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dB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dB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적은 감쇠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14조(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 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10^{-6} 이하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 36 dBm	100 ㎑
1 ㎓ 이상	- 30 dBm	1 ㎒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 57 dBm	100 ㎑
1 ㎓ 이상	- 47 dBm	1 ㎒

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10^{-6} 이하일 것

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917 MHz 922.1 MHz 주파수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2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실효복사전력은 1 W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10^{-6} 이하일 것
4. 호핑 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0 kHz 이하일 것
5. 호핑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0개 이상일 것
6. 하나의 호핑 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7.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897.90 MHz 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3 W 이하일 것
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 x 10^{-6} 이내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kHz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變位) 주파수로 단위는 kHz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6.2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dB

나.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kHz 이상 9.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dB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kHz 이상 50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dB,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작은 값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dB. 단, 1 GHz 미만에서는 100 kHz 분해대역폭을 1 GHz 이상에서는 1 MHz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718 ㎒ 728 ㎒ 및 773 ㎒ 783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말기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기지국 방향은 단일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 복신방식 일 것 (단, 이동국의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이내일 것(단,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1.4 ㎒ 이내일 것)

다.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dB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 +12 Hz)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m 초과 24 dB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 +12 Hz)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 +12 Hz)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80 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dBm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 dB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 dB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 dB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dB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m초과 24 dB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 dB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 dB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dB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dB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 dB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 dB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dB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dB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dBm 이하일 것

(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dB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기지국 또는 육상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dB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698 ㎒ 이상 710 ㎒ 이하에서 76 dB 이상일 것

4.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x 1 x 10^{-7} + 15 Hz)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2 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 이상 ±6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 dB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 이상 ±1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 dB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1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 dBm 이하일 것(단, 708 ㎒ 이상 710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 이상 ±2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 dBm 이하일 것 (단, 703 ㎒ 이상 708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dB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 이상 7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 dBm 이하이고, 758 ㎒ 이상 77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 dBm 이하이며, 773 ㎒ 이상 8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 dBm 이하일 것)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dB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dB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dB 이상 낮은 값일 것

5.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dB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53 dB 이상일 것

6. 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와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7.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신장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은 340 ㎽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4 ㎒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 1 × 10^{-7} + 15Hz) 이내일 것

라. 대역외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5~6) ㎒	-16.5 dBm 이하	30 ㎑
±(6~10) ㎒	-8.5 dBm 이하	1 ㎒
±(10~15) ㎒	-11.5 dBm 이하	1 ㎒
±(15~20) ㎒	-23.5 dBm 이하	1 ㎒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36 dBm 이하	100 ㎑
1 ㎓ ~12.75 ㎓	-30 dBm 이하	1 ㎒

바. 제7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703 ㎒~708 ㎒	-26.2 dBm 이하	6 ㎒
708 ㎒~710 ㎒	-26.2 dBm 이하	6 ㎒
470 ㎒~703 ㎒	-26.2 dBm 이하	6 ㎒
758 ㎒~773 ㎒	-32 dBm 이하	1 ㎒
773 ㎒~803 ㎒	-50 dBm 이하	1 ㎒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

8. 사물인터넷 단말기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부차적 전파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57 dBm 이하	100 ㎑
1 ㎓ ~12.75 ㎓	-47 dBm 이하	1 ㎒

제18조(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 924.645 924.655 ㎒ 및 924.695 924.705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pm 1 \times 10^{-6}$ 이내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10 ㎑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Fd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 이상 6.2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 이상 9.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 이상 5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 50+10log10(P) ㏈, 또는 70 ㏈ 중 작은 값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 다만, 1 ㎓ 미만에서는 100 ㎑ 분해대역폭을, 1 ㎓ 이상에서는 1 ㎒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5855 5875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
2.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 접속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일 것
3.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865 ㎒일 것
4.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의 $\pm 0.1 \times 10^{-6}$

이내일 것

6.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가. 대역외발사

점유주파수대역폭 끝으로부터 이격 주파수	기준값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0~1 ㎒	-21 dBm	30 ㎑
±1~5 ㎒	-10 dBm	1 ㎒
±5~20 ㎒	-13 dBm	1 ㎒
±20~25 ㎒	-25 dBm	1 ㎒

나. 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 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36 dBm	100 ㎑
1 ㎓ 이상	-30 dBm	1 ㎒

제20조(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 (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①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28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8.9 ㎓ 2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제9항을 준용할 것

②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4.7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720 ㎒ 4820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제10항을 준용할 것

제21조(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8.5 8.6 ㎓, 15.7 17.2 ㎓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스퓨리어스발사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P)에 대해 43+10log(P) [dB] 또는 60 dB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레이다의 경우 개별 주파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하며, 그 너비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 보다 20 dB 낮은 지점 사이의 폭으로 한다.

2. 8.5 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펄스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Q1N, Q3N, V1N, V3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20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3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3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33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30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50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Delta F/B(-40))$[dB] 이하일 것 ($\Delta 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3. 8.5 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6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6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42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2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Delta F/B(-40))$[dB] 이하일 것 ($\Delta 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4. 15.7 17.2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9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9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200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6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Delta F/B(-40))$[dB] 이하일 것 ($\Delta 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 - 28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주파수지정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전파형식 중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및 GXE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 8.5㎑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점유주파수대폭 16㎑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점유주파수대폭을 16㎑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기존 시설자에게만 적용하고,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③ 별표 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이 16㎑ 전용 무전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전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한다.

④ 별표 1의 주파수 422.0000 422.0500㎒(5파), 422.9625 423.0625㎒(9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은 기존 시설자에게만 허용한다.

제6조(무선국의 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8.5㎑인 무선국의 적합인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 무선국의 적합인증 종료는 2012년 6월 30일까지(기존 시설자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할 수 있다) 적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선국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며 해당 무선설비는 기존 시설자가 재허가 받아서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 <제2013 - 2호,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1호,2013. 10.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호,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제2014-7호,2014. 5.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으로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수명만료 시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중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14-12호,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각각 제15조(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로 분리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본다.

제3조(제4조 및 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 MHz 174 MHz, 216 MHz 223 MHz, 335.4 MHz 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 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제2015 - 1호,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15호,2015. 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개정된 별표 1의 주파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 - 25호,2015. 11.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1)의(라), (2)의(라), (3)의(라), (4)의(다),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30호,2015.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21호,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에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부칙 <제2017-8호,2017. 8.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6호,2018.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호,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하.부터 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7]의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4.부터 6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269-1, 269-2, 269-3, 270-1, 270-2, 270-3, 348-3, 349-5, 349-6, 522, 60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 및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③ 2.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

(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18.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부칙 <제2021-35호,2021. 12. 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호,2023. 4.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사하는 중심주파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표시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주파수 대역은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주파수 분배、회수、재배치 정책 등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 5. 10.) 제4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1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사하는 중심주파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 기 운용 중인 무선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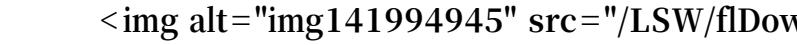
제2조(표시에 관한 사항) 제4조제12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주파수 대역은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주파수 분배、회수、재배치 정책 등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 2. 3.) 중 [별표 1]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0호,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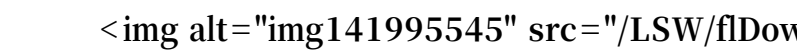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3호, 2024. 5. 30.)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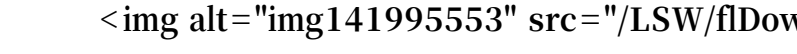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제3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용 중 이거나 기구축된 무선국은 제1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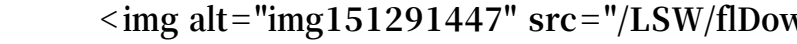
부칙 <제2025-2호,2025.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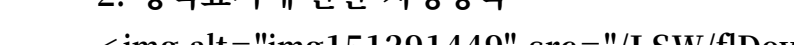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과 3. 전자파적합성 지정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부칙 <제2025-4호,2025.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시험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제3조(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2014. 7. 2.) 부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35.4 MHz 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과 허가、신고는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허용한다.

부칙 <제2025-5호,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나목과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의 6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목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의 "272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를 "272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용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로 한다.

제3조(제6조제2호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영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구국으로서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개설신고 되었던 무선국 기자재(동일 모델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파생모델에 한한다)는 이 개정 고시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해당하는 무선국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6조제2호 무선설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기자재와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간이무선국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제4조 관련)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46.5125 146.5250 146.5375 146.5500 146.5625 146.5750 146.5875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146.51250 146.51875 146.52500 146.53125 146.53750 146.54375 146.55000 146.55625 146.56250 146.56875 146.57500 146.58125 146.58750	4K00F1D 4K00F1E	5W 이하	
222.4500 222.4625 222.4750 222.4875 222.5000 222.5125 222.5250 222.5375 222.5500 222.5625 222.5750 222.5875 222.6000 222.6125 222.6250 222.6375 222.6500 222.6625 222.6750 222.6875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222.7000 222.7125 222.7250 222.7375 222.750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222.7625 222.7750 222.7875 222.8000 222.8125 222.8250 222.8375 222.8500 222.8625 222.8750 222.8875 222.9000 222.9125 222.9250 222.9375 222.9500 222.9625 222.9750			
222.45000 222.45625 222.46250 222.46875 222.47500 222.48125 222.48750 222.49375 222.50000 222.50625 222.51250 222.51875 222.52500 222.53125 222.53750 222.54375 222.55000 222.55625 222.56250 222.56875 222.57500 222.58125	4K00F1D 4K00F1E	5W 이하	
222.58750 222.59375 222.60000 222.60625 222.61250 222.61875 222.62500 222.63125 222.63750 222.64375 222.65000	4K00F1D 4K0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222.65625			
222.66250			
222.66875			
222.67500			
222.68125			
222.68750			
222.69375			
222.70000			
222.70625			
222.71250			
222.71875			
222.72500			
222.73125			
222.73750			
222.74375			
222.75000			
222.75625			
222.76250			
222.76875			
222.77500			
222.78125			
222.78750			
222.79375			
222.80000			
222.80625			
222.81250			
222.81875			
222.82500			
222.83125			
222.83750			
222.84375			
222.85000			
222.85625			
222.86250			
222.86875			
222.87500			
222.88125			
222.88750			
222.89375			
222.90000			
222.90625			
222.91250			
222.91875			
222.92500			
222.93125			
222.93750			
222.94375			
222.95000			
222.95625			
222.96250			
222.96875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222.97500			
422.4750 422.4875 422.5000 422.5125 422.5250 422.5375 422.5500 422.5625 422.5750 422.5875 422.6000 422.6125 422.6250 422.6375 422.6500 422.6625 422.6750 422.6875 422.7000 422.7125 422.7250 422.7375 422.7500 422.7625 422.7750 422.7875 422.8000 422.8125 422.8250 422.8375 422.8500 422.8625 422.8750 422.8875 422.9000 422.9125 422.9250 422.9375 422.950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423.0750 423.0875 423.1000 423.1125 423.1250 423.1375 423.1500 423.1625 423.175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3.1875 423.2000 423.2125 423.2250 423.2375 423.2500 423.2625 423.2750 423.2875 423.3000 423.3125 423.3250 423.3375 423.3500 423.3625 423.3750 423.3875 423.4000 423.4125 423.4250 423.4375 423.4500 423.4625			
423.4750 423.4875 423.5000 423.5125 423.5250 423.5375 423.5500 423.5625 423.5750 423.5875 423.6000 423.6125 423.6250 423.6375 423.6500 423.6625 423.6750 423.6875 423.7000 423.7125 423.7250 423.7375 423.7500 423.7625 423.7750 423.7875 423.8000 423.8125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3.8250 423.8375 423.8500 423.8625 423.8750 423.8875 423.9000 423.9125 423.9250 423.9375 423.9500 423.9625 423.9750 423.9875			
422.47500 422.48125 422.48750 422.49375 422.50000 422.50625 422.51250 422.51875 422.52500 422.53125 422.53750 422.54375 422.55000 422.55625 422.56250 422.56875 422.57500 422.58125 422.58750 422.59375 422.60000 422.60625 422.61250 422.61875 422.62500 422.63125 422.63750 422.64375 422.65000 422.65625 422.66250 422.66875 422.67500 422.68125	4K00F1D 4K00F1E	5W 이하	
422.68750 422.69375 422.70000	4K00F1D 4K0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2.70625 422.71250 422.71875 422.72500 422.73125 422.73750 422.74375 422.75000 422.75625 422.76250 422.76875 422.77500 422.78125 422.78750 422.79375 422.80000 422.80625 422.81250 422.81875 422.82500 422.83125 422.83750 422.84375 422.85000 422.85625 422.86250 422.86875 422.87500 422.88125 422.88750 422.89375 422.90000 422.90625 422.91250 422.91875 422.92500 422.93125 422.93750 422.94375 422.95000			
423.07500 423.08125	4K00F1D 4K00F1E	5W 이하	
423.08750 423.09375 423.10000 423.10625 423.11250 423.11875 423.12500 423.13125	4K00F1D 4K0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3.13750 423.14375 423.15000 423.15625 423.16250 423.16875 423.17500 423.18125 423.18750 423.19375 423.20000 423.20625 423.21250 423.21875 423.22500 423.23125 423.23750 423.24375 423.25000 423.25625 423.26250 423.26875			
423.27500 423.28125 423.28750 423.29375 423.30000 423.30625 423.31250 423.31875 423.32500 423.33125 423.33750 423.34375 423.35000 423.35625 423.36250 423.36875 423.37500 423.38125 423.38750 423.39375 423.40000 423.40625 423.41250 423.41875 423.42500 423.43125 423.43750 423.44375 423.45000	4K00F1D 4K0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3.45625			
423.46250	4K00F1D 4K00F1E	5W 이하	
423.46875			
423.47500			
423.48125			
423.48750			
423.49375			
423.50000			
423.50625			
423.51250			
423.51875			
423.52500			
423.53125			
423.53750			
423.54375			
423.55000			
423.55625			
423.56250			
423.56875			
423.57500			
423.58125			
423.58750			
423.59375			
423.60000			
423.60625			
423.61250			
423.61875			
423.62500			
423.63125			
423.63750			
423.64375			
423.65000			
423.65625			
423.66250			
423.66875			
423.67500			
423.68125			
423.68750			
423.69375			
423.70000			
423.70625			
423.71250			
423.71875			
423.72500			
423.73125			
423.73750			
423.74375			
423.75000			
423.75625			
423.76250			
423.76875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3.77500 423.78125 423.78750 423.79375 423.80000 423.80625 423.81250 423.81875 423.82500 423.83125 423.83750 423.84375 423.85000 423.85625 423.86250 423.86875 423.87500 423.88125 423.88750 423.89375 423.90000 423.90625 423.91250 423.91875 423.92500 423.93125 423.93750 423.94375 423.95000 423.95625 423.96250 423.96875 423.97500 423.98125 423.98750			
444.0250 444.0375 444.0500 444.0625 444.0750 444.0875 444.1000 444.1125 444.1250 444.1375 444.150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444.02500 444.03125 444.03750	4K00F1D 4K00F1E	5W 이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44.04375			
444.05000			
444.05625			
444.06250			
444.06875			
444.07500			
444.08125			
444.08750			
444.09375			
444.10000			
444.10625			
444.11250			
444.11875			
444.12500			
444.13125			
444.13750			
444.14375			
444.15000			

[별표 1의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제4조제2항 관련)

주파수(MHz)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22.0000 422.0125 422.0250 422.0375 422.0500	8K50F(G)2D 8K50F(G)3E	5 W 이하	
	8K50F1D 8K50F1E		제4조제2항제7호관련
421.996875 422.003125 422.009375 422.015625 422.021875 422.028125 422.034375 422.040625 422.046875 422.053125	4K00F1D 4K00F1E	5 W 이하	제4조제2항제8호관련

[별표 2] 삭제 <2013.12.18>

[별표 3]

우주국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제6조제1호나목 관련)

주파수대	수평면위의 도래각(δ) 및 전력속밀도의 한계값(dBW/㎡)						기 준 대역폭
	0° -5°	5° -25°		25° -90°			
1670-1700㎒	-133 (기상보조업무와 공유의 경우 적용)						1.5㎒
1525-1530㎒ 1670-1710㎒ 2025-2110㎒ 2200-2300㎒	-154	-154+0.5(δ-5)		-144			4㎑
2500-2690㎒	-152	-152+0.75(δ-5)		-137			4㎑
3500-4200㎒ 4500-4800㎒ 5670-5725㎒ 7250-7850㎒	-152	-152+0.5(δ-5)		-142			4㎑
5150-5216㎒	-164						4㎑
6700-6825㎒	-137	-137+0.5(δ-5)		-127			1㎒
6825-7075㎒	-154	-154+0.5(δ-5)		-144			4㎑
	-134	-134+0.5(δ-5)		-124			1㎒
8025-8500㎒	-150	-150+0.5(δ-5)		-140			4㎑
10.7-11.7㎓	-150	-150+0.5(δ-5)		-140			4㎑
12.2-12.75㎓	-148	-148+0.5(δ-5)		-138			4㎑
15.43-15.63㎓	-127	5° -20°	20° -25°	25° -29°	29° -31°	31° -90°	1㎒
		-127	-127+0.56 (δ-20)	-113	-136.9+25log(δ-20)	-111	
17.7-19.3㎓	-115	-115+0.5(δ-5)		-105			1㎒
19.3-19.7㎓ 21.4-22.0㎓ 22.55-23.55㎓ 24.45-24.75㎓ 25.25-27.501㎓	-115	-115+0.5(δ-5)		-105			1㎒
31.0-31.3㎓	-115	-115+0.5(δ-5)		-105			1㎒
31.8-32.3㎓	-120	-120+0.75(δ-5)		-105			1㎒
32.3-33㎓	-135	-135+(δ-5)		-115			1㎒
37.5-40㎓	-127	5° -20°	20° -25°	-105			1㎒
		-127+(4/3)(δ-5)	-107+0.4 (δ-20)				
40-40.5㎓	-115	-115+0.5(δ-5)		-105			1㎒
40.5-42㎓	-120	5° -15°	15° -25°	-105			1㎒
		-120+(δ-5)	-110+0.5 (δ-15)				
42-42.5㎓	-127	5° -20°	20° -25°	-105			1㎒
		-127+(4/3)(δ-5)	-107+0.4 (δ-20)				

[별표 4]

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

(제6조제2호가목2세호 관련)

주파수대(GHz)	대 역 폭	앙 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1~15	4kHz	≤0°	40dBW
		0<Θ≤5°	40+3ΘdBW
15 초과	1MHz	≤0°	64dBW
		0<Θ≤5°	64+3ΘdBW

1) 1~15GHz 주파수대역에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등가등방 복사전력은 기준대역폭 4kHz에서 +55dBW로 한다.

2) 15GHz 초과 주파수대역으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기준대역폭 1MHz에서 +79dBW로 한다.

3) 1W를 0dBW로 한다.

[별표 4의2]

해상이동형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제6조제2호가목4세호 관련)

송신 주파수 대역(㎓)	수평면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수평면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5.925~6.425	17 dBW/MHz	20.8 dBW
14~14.5	12.5 dBW/MHz	16.3 dBW
27.5~30	24.44 dBW/14MHz	-

[별표 4의3]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제6조제2호가목5세호 관련)

송신 주파수 대역(㎓)	지표면 최대 전력속밀도 (dB(W/㎡ · MHz))	전파 도달각(θ)
14~14.5	-122	$\theta \leq 5^{\circ}$
	$-127 + \theta$	$5^{\circ} < \theta \leq 40^{\circ}$
	-87	$40^{\circ} < \theta \leq 90^{\circ}$
27.5~30	-127.7	$\theta \leq 1^{\circ}$
	$-127.7 + 18\log\theta$	$1^{\circ} < \theta \leq 12.4^{\circ}$
	-108	$12.4^{\circ} < \theta \leq 90^{\circ}$

[별표 4의4]

부차적 전파발사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제6조제2호사목4세호 관련)

1. 5.850 GHz~7.075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2.0 ~ 5.850	-72	-	100 ㎑
5.850 ~ 7.075	-72	-21	
7.075 ~ 10.7	-72	-	
10.7 ~ 21.2	-66	-	
21.2 ~ 40	-60	-	

2. 13.75 GHz~14.8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2.0 ~ 10.7	-72	-	100 ㎑
10.7 ~ 13.75	-66	-	
13.75 ~ 14.8	-66	-21	
14.8 ~ 21.2	-66	-	
21.2 ~ 40	-60	-	

3. 27 GHz~31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1.0 ~ 2.0	-78	-	100 ㎑
2.0 ~ 10.7	-72	-	
10.7 ~ 21.2	-66	-	
21.2 ~ 27	-60	-	
27 ~ 31	-60	-21	
31 ~ 40	-60	-	

[별표 4의5]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제6조제2호사목5세호 관련)

1. 5.850 GHz~7.075 GHz 대역 송신

전송방식	전송 편파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dBW/4kH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ϕ)
최대 200 kHz 협대역 아날로그(또는 대역 가장자리의 명령 캐리어의 경우 최대 1MHz)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29.5-25logϕ	1.5° ≤ ϕ ≤ 7°
			8.5	7° < ϕ ≤ 9.2°
			32.5-25logϕ	9.2° < ϕ ≤ 48°
			-9.5	48°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32.5-25logϕ	3° ≤ ϕ ≤ 48°
			-9.5	48°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19.5-25logϕ	1.5° ≤ ϕ ≤ 7°
디지털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26.3-25logϕ	1.5° ≤ ϕ ≤ 7°
			5.3	7° < ϕ ≤ 9.2°
			29.3-25logϕ	9.2° < ϕ ≤ 48
			-12.7	48°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29.3-25logϕ	3° ≤ ϕ ≤ 48°
			-12.7	48°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16.3-25logϕ	1.5° ≤ ϕ ≤ 7°

2. 14 GHz~14.8 GHz 대역 송신

전송방식	전송 편파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dBW/4kH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ϕ)
최대 200 kHz 협대역 아날로그(또는 대역 가장자리의 명령 캐리어의 경우 최대 1MHz)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21-25logϕ	1.5° ≤ ϕ ≤ 7°
			0	7° < ϕ ≤ 9.2°
			24-25logϕ	9.2° < ϕ ≤ 19.1°
			-8	19.1°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24-25logϕ	3° ≤ ϕ ≤ 19.1°
			-8	19.1°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11-25logϕ	1.5° ≤ ϕ ≤ 7°
디지털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15-25logϕ	1.5° ≤ ϕ ≤ 7°
			-6	7° < ϕ ≤ 9.2°
			18-25logϕ	9.2° < ϕ ≤ 19.1°
			-14	19.1°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18-25logϕ	3° ≤ ϕ ≤ 19.1°
			-14	19.1°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5-25logϕ	1.5° ≤ ϕ ≤ 7°

3. 13.75 GHz~14 GHz 대역 송신

전송방식	전송 편파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dBW/4kH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ϕ)
최대 200 kHz 협대역 아날로그(또는 대역 가장자리의 명령 캐리어의 경우 최대 1MHz)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21-25logϕ	1.5° ≤ ϕ ≤ 7°
			0	7° < ϕ ≤ 9.2°
			24-25logϕ	9.2° < ϕ ≤ 48°
			-18	48°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24-25logϕ	3° ≤ ϕ ≤ 48°
			-18	48°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11-25logϕ	1.5° ≤ ϕ ≤ 7°
디지털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15-25logϕ	1.5° ≤ ϕ ≤ 7°
			-6	7° < ϕ ≤ 9.2°
			18-25logϕ	9.2° < ϕ ≤ 48°
			-24	48°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18-25logϕ	3° ≤ ϕ ≤ 48°
			-24	48°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5-25logϕ	1.5° ≤ ϕ ≤ 7°

4. 27 GHz~31 GHz 대역 송신

전송방식	전송 편파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dBW/MH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ϕ)
디지털 전송	동편파 (co-polarization)	수평 (tangent plane)	32.5-25logϕ	2° ≤ ϕ ≤ 7°
			11.5	7° < ϕ ≤ 9.2°
			35.5-25logϕ	9.2° < ϕ ≤ 19.1°
			3.5	19.1° < ϕ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35.5-25logϕ	3.5° ≤ ϕ ≤ 7°
			14.4	7° < ϕ ≤ 9.2°
			38.5-25logϕ	9.2° < ϕ ≤ 19.1°
			6.5	19.1° < ϕ ≤ 180°
	교차편파 (cross-polarization)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22.5-25logϕ	2° < ϕ ≤ 7°

5. 동편파(co-polarization) 공통 사항

가. 정지궤도위성에 수평으로 접하는 경우: ±(7~180)° 범위의 최대 10% 구간에서는 최대 3dB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나. 정지궤도위성에 수직으로 접하는 경우: 주 반사판을 벗어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각도 범위에서는 최대 10% 구간에 대해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별표 4의6]

안테나 이득

(제6조제2호사목6세호 관련)

1. 동편파(co-polarization) 전송의 경우

송신 주파수 대역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안테나 이득 (dBi)	안테나 최대복사방향(0°)으로부터의 이격각(φ)
14 GHz~14.8 GHz 또는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하지 않는 경우	수평 (tangent plane)	29-25logφ	1.5° ≤ φ ≤ 7°
		8	7° < φ ≤ 9.2°
		32-25logφ	9.2° < φ ≤ 48°
		-10	48° < φ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32-25logφ	3° < φ ≤ 48°
		-10	48° < φ ≤ 180°
14 GHz~14.8 GHz 대역 운용	수평 (tangent plane)	29-25logφ	1.5° ≤ φ ≤ 7°
		8	7° < φ ≤ 9.2°
		32-25logφ	9.2° < φ ≤ 19.1°
		0	19.1° < φ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32-25logφ	3° < φ ≤ 19.1°
		0	19.1° < φ ≤ 180°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	수평 (tangent plane)	29-25logφ	2° ≤ φ ≤ 7°
		8	7° < φ ≤ 9.2°
		32-25logφ	9.2° < φ ≤ 19.1°
		0	19.1° < φ ≤ 180°
	수직 (perpendicular plane)	32-25logφ	3.5° ≤ φ ≤ 7°
		10.9	7° < φ ≤ 9.2°
		35-25logφ	9.2° < φ ≤ 19.1°
		3	19.1° < φ ≤ 180°

2. 교차편파(cross-polarization) 전송의 경우

송신 주파수 대역	정지궤도위성에 접하는 방향	안테나 이득 (dBi)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ϕ)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하지 않는 경우	수평 (tangent plane)	19-25logϕ	1.8° < ϕ ≤ 7°
	수직 (perpendicular plane)	19-25logϕ	3° < ϕ ≤ 7°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a plane)	19-25logϕ	2° < ϕ ≤ 7°

3. 동편파(co-polarization) 공통사항

가. 정지궤도에 수평으로 접하는 경우: ±(7~180)° 범위의 최대 10% 구간에서는 최대 3dB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나. 정지궤도에 수직으로 접하는 경우: ±(3~180)° 범위의 최대 10% 구간에서는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별표 5]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9조제1호가목 관련)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무선설비	전파형식
4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1D, F1E, F7D, F7E
8.5 kHz	1.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3E, G3E
	2. 주파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1D, G1D, F1E,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16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2D, G2D, F3E, G3E

[별표 6]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

(제12조제1호가목 관련)

1. 변조주파수

A군		B군		C군		D군	
번호	변조주파수(Hz)	번호	변조주파수(Hz)	번호	변조주파수(Hz)	번호	변조주파수(Hz)
0	562.5	0	712.5	0	862.5	0	1012.5
1	577.5	1	727.5	1	877.5	1	1027.5
2	592.5	2	742.5	2	892.5	2	1042.5
3	607.5	3	757.5	3	907.5	3	1057.5
4	622.5	4	772.5	4	922.5	4	1072.5
5	637.5	5	787.5	5	937.5	5	1087.5
6	652.5	6	802.5	6	952.5	6	1102.5
7	667.5	7	817.5	7	967.5	7	1117.5
8	682.5	8	832.5	8	982.5	8	1132.5
9	697.5	9	847.5	9	997.5	9	1147.5

2. 호출신호번호 및 변조주파수 조합표

가. 100번째의 것

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호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0	1~ 100	A	A	8	801~900	A	C
1	101~ 200	B	B	9	901~1000	D	D
2	201~ 300	B	A	10	1001~1100	D	C
3	301~ 400	A	B	11	1101~1200	D	B
4	401~ 500	C	C	12	1201~1300	D	A
5	501~ 600	C	B	13	1301~1400	C	D
6	601~ 700	C	A	14	1401~1500	B	D
7	701~ 800	B	C	15	1501~1600	A	D

(주) F1은 최초의 1음의 주파수, F2는 다음 1음의 주파수일 것

나. 각 군의 1번부터 100번까지의 것

구 분		F1의 변조주파수의 번호									
		0	1	2	3	4	5	6	7	8	9
F2	0	1	3	7	13	21	31	43	57	73	91
의	1	2	4	8	14	22	32	44	58	74	92
변	2	5	6	9	15	23	33	45	59	75	93
조	3	10	11	12	16	24	34	46	60	76	94
주	4	17	18	19	20	25	35	47	61	77	95
파	5	26	27	28	29	30	36	48	62	78	96
수	6	37	38	39	40	41	42	49	63	79	97
의	7	50	51	52	53	54	55	56	64	80	98
번	8	65	66	67	68	69	70	71	72	81	99
호	9	82	83	84	85	86	87	88	89	90	100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시행 2024. 6. 1.] [고시 제2024 - 19호, 2024. 5.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044 - 202 - 67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8. "업무연속성계획"이라 함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난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보관할 것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 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 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 - 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③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 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주요시설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건축·전기설비·소방설비·재난 등 변경사항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말한다.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인적·제도적 안전성 점검 ·지도
3.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4. 재난대비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감독 업무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자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 대책
5. 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

② 사업자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복원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 유형별 긴급대응 및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복원활동을 위한 세부절차 및 활동내용
3.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반영
4. 기타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처리)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점검을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5호,2008. 5. 19.>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7호,2009. 11. 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9호,2012. 3.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5호,2013. 8.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09호,2014. 12.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9호,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특례) 보호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구축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제8조의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보호조치 세부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대체조치 이행계획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협의회를 통해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업자가 1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된 대체조치 이행계획을 사업자가 계획대로 달성한 경우

[별 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제8조관련)

구분	목표	항 목	내 용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접근제어 및 감시	BMS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 시스템(이하 BMS)을 갖추고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BMS 외에 화재징후를 사전탐지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여야 한다.
		구역별 전원관리	· 전력차단 시, 차단구역을 최소화하여 전력공급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분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력 이중화	·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2N 이상의 이중화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 설비(주·예비)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장치	· 주요시설중 중앙감시실, 전산실, 전력감시실, 통신장비실, 방재센터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개폐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출입기록	·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기록(모든 출입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 CCTV녹화, 출입통제장치의 로그기록)을 출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 주요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한 출입기록(외부 방문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을 출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 보호	· 전산실내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고객의 컴퓨터장비 등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Rack)에 설치한다.
		중앙감시실	· 주요시설중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에 대하여 각 시설의 기능별 작동상황 및 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CCTV가 촬영한 영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
		CCTV	· 주요시설의 출입구와 주요시설중 전산실·통신장비실·배터리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 방재센터는 화재감시센서의 작동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도록 하고, 화재발생시에 경보신호를 통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화재감지센서와 연동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방재센터는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 동작시점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4의 2의 '가', '나'를 준용한다.
	가용성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전력(비상전력을 포함),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UPS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전력감시실을 두되,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정전전원	·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장치(UPS)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한다. ·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기능을 탑재해야하며, UPS 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재난 시 UPS의 전력차단 및 바이패스 전환이 필요하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며, UPS실이 배터리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원격 바이패스 전환 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
		축전지설비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은 UPS(정류기 포함)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0KWh 미만 시에도 방화포 설치 등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사용 시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준용한다. ·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은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배터리 일체형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서버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가발전설비	· 자가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전산실내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 및 항온항습기와 집적정보통신시설내에 설치된 유도등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수변전설비	· 배전반에 단락·지락 및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전기(Relay)를 설치하고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수변전설비는 중앙감시실 또는 전력감시실과 연동되어야 한다.
		접지시설	· 주요시설의 정보시스템 장비 등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한다.
		항온항습기	·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비상조명 및 유도등 설비	·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바닥 또는 작업면의 조도가 최소 10룩스(lux)이상이 유지되도록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지역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방호성	벽면의 구성	·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실의 벽면과 접한 천장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
		유리창문 설비	· 주요시설관련 건물내부의 창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방재성	하중안전성	· UPS, 변압기, 배전반, 자가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은 최소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적재하중치(장비의 단위면적당 중량과 건축물의 구조를 고려하여 계산한 하중치에 2.5<안전율>를 곱한 값)가 50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값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 지역에 열감지 또는 연기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요시설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을 설치한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건물은 화재 및 물리적 충격에 견디기 위해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바닥재, 내벽, 천장 등의 건물 내부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발생시에도 잘 연소되지 않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한다.
		수해방지	·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주요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벽을 포함한다)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공(방수시공 등)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을 병행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적 보호조치	보호관리 체계화	상근경비원	·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경비원을 둔다.
		전문기술자	·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전기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을 두되, 해당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	· 집적정보통신시설내의 모든 보호조치를 계획, 감독, 통제하며 비상시 재난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하되,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고 교육하는 등 소속 직원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모의대응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시행 2025. 1. 1.] [고시 제2024 - 893호, 2024.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044 - 203 - 3991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044 - 203 - 39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① <삭제>

②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5항ㆍ제6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준 제2조제2항,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④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⑤ 규칙 제2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인증 및 재평가) ① 규칙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규칙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하며,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축주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인증 또는 재평가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③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주택 :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3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

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용 활용) ①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증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 및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의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2년마다 교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중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부교수 이상인 사람
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48호,2013. 5.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은 폐지한다. 다만,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8월31일까지 적용대상 및 인증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1019호,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7-76호,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75호,2018.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574호,2020.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12.31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3-911호,2023.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93호,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 년)

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frac{\text{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text{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text{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text{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text{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text{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평가

2. 에너지자립률(%)

$$\text{가. 에너지자립률(\%)} = \frac{\text{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text{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times 100$$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kWh/㎡·년)
=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보정계수)

1)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다.

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kWh/㎡·년)
=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주)
1. 제1호 및 제2호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를 말한다.
2. 제2호의 평가면적은 제1호에 따른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한다.
3. 제1호 냉방부문 평가 시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시스템 설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대상건물에서 생산 · 저장 · 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4	정보감시	·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5	데이터 조회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6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현황 및 증감 분석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8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9	에너지 소비 예측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11	제어시스템 연동	·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12	종합 유지관리	·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13	시스템 확장성	·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대상 및 항목 확인은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 산정 기준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 · 년)	비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 · 년)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 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 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 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미만	

주)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
3. 제1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2호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말한다.
4.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말한다.
5. 제2호에서 주거용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을 말하며, 비주거용이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3호는 별표1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별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적용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

구 분	실내온도
냉 방	26℃
난 방	20℃

[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 용 면 적 의 합 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 용 면 적 주1)의 합 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80호, 2026. 2.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 - 202 - 6221, 6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 - 2110 - 1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 - 202 - 64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 - 2110 - 1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44 - 202 - 6142, 61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삭제<2013. 3. 23.>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2025. 10. 1.>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2. 10.,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2025. 10. 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2025. 10. 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5. 10. 1.>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5. 10. 1.>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9. 12. 10.>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8. 2. 21.>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7. 3. 14., 2017. 7. 26.,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 3. 14., 2017. 7. 26., 2025. 10. 1.>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3. 8. 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2025. 10. 1.>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13.,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2025. 10. 1.>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2025. 10. 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3.>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3.>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6. 8.,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2025. 10. 1.>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6. 8.]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 2025. 10. 1.>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21. 6. 8.]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7. 26.,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9.>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7. 26., 2025. 10. 1., 2026. 2. 19.>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26. 2. 19.>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26. 2. 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2., 2026. 2. 19.>

[제목개정 2012. 1. 17.]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8. 3. 13., 2018. 12. 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14. 6. 3.]

[제목개정 2015. 12. 22.]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5. 12. 22.>]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7장 보칙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43조(보고·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2025. 10. 1.>
1. 방송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 17., 2015. 12. 1., 2015. 12. 22., 2021. 6. 8.>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2. 1., 2019. 12. 10., 2024. 2. 13.>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12. 1., 2017. 7. 26., 2025. 10. 1.>

부칙 <제10165호,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93호,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제11200호,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3호,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4호,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0호,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3호,2014. 6. 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 <제13072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9호,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1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574호,2017. 3.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0호,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0호,2018. 3. 1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15호,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9호,2018. 12. 24.>(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을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751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98호,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52호,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5호,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4호,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7호,2025. 1. 21.>(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제3항·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80호,2026. 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 - 202 - 6221, 6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44 - 202 - 6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2 - 2110 - 29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 - 202 - 64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 - 2110 - 1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 - 202 - 437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 - 2110 - 14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6. 25., 2017. 7. 26., 2025. 10.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응용 및 개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8. 4.]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4.>

1.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1.>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2025. 10. 1.>

④ 삭제<2020. 8. 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15. 6. 22.>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신설 2020. 8. 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2020. 8. 4., 2025. 10. 1.>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9., 2020. 8. 4.>

[제목개정 2020. 8. 4.]

제13조의2 삭제 <2016. 5. 31.>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10. 30., 2017. 7. 26., 2025. 1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2025. 10. 1.>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 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1조(관리규정)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3. 7. 3.>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 7. 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신설 2023. 7. 3.>

1.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6. 5. 31.]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2021. 12. 9., 2025. 10. 1.>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2025. 10. 1.>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

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신설 2021. 12. 9.>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9.>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2. 9.>

[본조신설 2016. 5. 31.]

[제목개정 2021. 12. 9.]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2021. 1. 5.,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2025. 10. 1.>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2025. 10. 1.>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신설 2016. 5. 31.>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 7. 31., 2016. 5. 31.>

[제목개정 2012. 7. 31.]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 중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2.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등에 설치되는 비상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②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보조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방송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 도로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부터 수신시설의 설치 유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2.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 지역 전체 구간에 대해서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4. 22.]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5. 4. 22.>]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8조의3에서 이동 <2025. 4. 22.>]

제7장 보칙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18., 2025. 10. 1.>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7. 2., 2023. 7. 3., 2025. 10. 1.>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점검으로 한정한다)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5. 4. 22.,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0. 8. 4., 2025. 4. 22., 2025. 10. 1.>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3. 7. 3.]

제8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9.>

[전문개정 2016. 5. 31.]

부칙 <제22550호,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

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로 한다.

부칙 <제22626호,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⑫부터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70호,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2호,2011. 8. 1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 전파연구소장 ”을 “ 국립전파연구원장 ”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4012호,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 재난방송프로그램 ”을 “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으로 한다.

②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칙 <제24445호,2013. 3. 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809호,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수입 담당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 담당 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등으로 본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93호,2014. 6. 2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6337호,2015.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8호,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2호,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 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391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86호,2019. 6. 25.>(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다음 ”을 “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935호,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0호,2020.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94호,2021. 12. 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1호,2023. 7. 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0호,2025. 4. 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0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방식

1) 기준금액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중대성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과기준율(%)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2 이상 0.5 이하	0.4 이상 1.0 이하	0.6 이상 1.5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4 미만	0.3 이상 0.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미만	0.2 미만	0.3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고려사유와 방송·통신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고려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전국단위인 경우 등

	하는 자	
	법 제3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2 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2 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법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이상이나 전국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
	법 제3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시·도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
	법 제3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1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1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4) 2)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4)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4)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6) 매출액 산정은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산상황,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중·감경

기준금액은 법 제40조의4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개선 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500
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2호	500
다.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500
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
마.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0
바. 법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0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3호	1,500
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1,500
차.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6호	500
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	500
타.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500
파. 법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1,500
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1,500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8호	500
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9호	50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 - 202 - 6593, 65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신뢰성확보 및 이용자보호 관련) 044 - 202 - 6467, 64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제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개발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3. 보안인증서의 발급·관리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4조(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 11.>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 7. 26.>

부칙 <제13234호,2015.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344호,2020. 6. 9.>(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및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38호,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6호,2025. 10.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 및4# 생략

제8조 생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 - 202 - 6593, 65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신뢰성확보 및 이용자보호 관련) 044 - 202 - 6467, 6468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2025. 12.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9.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12.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 7. 26.>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9. 29.>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 7. 26., 2020. 12. 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 10., 2025. 12.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3. 1.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3. 1. 10.>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2.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3. 1. 10.>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1. 10.>]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 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개정 2025. 12. 23.>

1.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박사학위 소지자: 3년
   나. 석사학위 소지자: 5년
3.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3. 1. 10.]

[제8조의3에서 이동 <2023. 1. 10.>]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4에서 이동 <2023. 1. 10.>]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5에서 이동 <2023. 1. 10.>]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안인증 대상 목록
3. 그 밖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2.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3. 그 밖에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제3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보안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안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기준은 국가정보원장과,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2.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4명 이상의 상시 근무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4.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2.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7. 7. 26.>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7. 7. 26., 2023. 1. 10.>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12. 8., 2023. 1. 10.>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4.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3. 1. 10.]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6550호,2015. 9. 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1056호,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0호,2020. 12. 8.>(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221호,2020. 12. 8.>(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3220호,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디지털서비스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313>까지 생략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갖추고 전문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이 있을 것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가.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3. 교육과정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의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6.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300	600	1,000
마.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300	600	1,00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3. 1. 10.>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경우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7. 7. 26.>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심의 → 결 재 → 지정서 발급 및 공고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31.] [고시 제2023 - 4호, 2023. 1.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044 - 202 - 64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4.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보안인증에 관한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인적·물적·기술적 요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평가"란 인증신청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위원회"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7. "보안인증평가원"이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최초평가"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9. "사후평가"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10. "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

제3조(지정공고 및 지정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5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제출서류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인증 인증기관 지정서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보안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 자신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8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5조의1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평가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9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포함)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기관이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지정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인은 인증평가의 범위, 인증평가의 일정 등을 지정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인의 인증평가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기관의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해관계, 평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증기관 또는 다른 지정평가기관에게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보안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인증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동일한 사양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보호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되는 보안인증기준을 정할 때 국가기간 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보안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보안인증 신청 및 평가 시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산정 등)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8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청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최초평가, 사후평가 및 갱신평가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평가 시작일 이전까지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증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4조(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 ① 보안인증의 대상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하며 보안인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IaaS 인증)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SaaS 인증)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PaaS 인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인증

② 보안인증 등급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한다.

③ 인증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을 선택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인증기준) ① 보안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별표 4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기준 내에서 제14조 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에 따른 세부 점검항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평가팀 구성) ①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증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평가팀은 별표 9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안인증평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인증평가팀 구성 시 인증신청 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구성원을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전에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이 인증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평가는 인증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병행한다.

② 서면평가는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③ 현장평가는 서면평가의 결과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3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인증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증신청인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평가팀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격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중단)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인이 고의로 인증평가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팀장이 인증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인증신청인의 파산·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지체 없이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매 1년마다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취득인은 해당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갱신평가 결과 보완조치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인증취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안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갱신평가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1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인증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보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5명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보안인증평가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인증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장 보안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24조(보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인증서 발급 시 규칙 별표의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을 따른다.

제25조(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보안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보안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취득인은 보안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득인이 주소, 업체명 등 보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보안인증의 표시는 규칙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 인증대상,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의 취소)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보안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보안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이 인증평가 결과, 평가중단 또는 보안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인증 일반업무 등

제29조(비밀유지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임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 인증 평가 및 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평가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인증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등에 따른 업무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
3. 제8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및 확인
4. 그밖에 인증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1조(업무 지침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보안인증 또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3호,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안인증서 및 인증취득인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7호에 따라 취득한 보안인증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안인증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7호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평가에 평가팀장으로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2023-4호,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 중등급은 고시 시행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에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안인증서 및 인증취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신청인은 고시 시행 후 상, 중등급 시행 전까지 종전 고시에 따른 유형 및 등급(IaaS, SaaS 표준, SaaS 간편 등)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보안인증기준으로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SaaS 간편 인증은 하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보안인증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평가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별표 1] 관리적 보호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1. 정보보호정책및조직	1.1. 정보보호 정책	1.1.1.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정책을 문서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 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1.2. 정보보호 정책 검토 및 변경	정보보호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관련 법규 변경 및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1.1.3. 정보보호 정책문서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정보보호 조직	1.2.1. 조직 구성	정보보호 활동을 계획, 실행, 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1.2.2. 역할 및 책임 부여	정보자산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도 서비스 수준 협약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2. 인적보안	2.1. 내부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고용 계약서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포함시키고,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이전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2.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 지정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
		2.1.3.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1.4.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밀유지서약서에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2.1.5. 퇴직 및 직무변경	임직원의 퇴직 또는 직무 변경에 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접근권한도 제거하여야 한다.	
	2.2. 외부인력 보안	2.2.1. 외부인력 계약	외부인력(외부유지보수직원, 외부용역자 포함)에 의한 정보자산 접근 등과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2.2.2. 외부인력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2.3.	외부인력과의 계약 만료 시 자산 반납, 접근권한의 회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계약 만료 시 보안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대한 비밀 유지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 정보보호 교육	2.3.1. 교육 프로그램 수립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포함하여 연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2.3.2. 교육 시행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3. 평가 및 개선	정보보호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	3.1. 자산 식별 및 분류	3.1.1. 자산 식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자산(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 등)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식별된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1.2. 자산별 책임할당	식별된 자산마다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3.1.3. 보안등급 및 취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보안 등급별 취급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산 변경관리	3.2.1. 변경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	
		3.2.2. 변경 탐지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2.3. 변경 후 작업검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 후에는 보안성 및 호환성 등에 대한 작업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위험관리	3.3.1. 위험관리 계획 수립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법적 분야 등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 방법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3.3.2.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예 :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3.3.3.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4. 위험처리	법규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과 위험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4.1. 공급망관리 정책	4.1.1.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4.1.2. 공급망 계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 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하며,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4.2. 공급망 변경관리	4.2.1. 공급망 변경관리	정보보호 정책,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2. 공급망 모니터링 및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기록 및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여야 한다.	○
5. 침해사고 관리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5.1.1.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절차, 유출 금지 대상,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5.1.2.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5.1.3.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점검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
	5.2. 침해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5.3. 사후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5.3.2. 재발방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침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변경하여야 한다.	○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6. 서비스 연속성 관리	6.1. 장애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6.1.2. 장애 보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	○
		6.1.4. 재발방지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 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
	6.2. 서비스 가용성	6.2.1. 성능 및 용량 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6.2.2. 이중화 및 백업	정보처리설비(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케이블, 접속 회선 등)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6.2.3. 서비스 가용성 점검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준거성	7.1. 법 및 정책 준수	7.1.1. 법적요구사항 준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7.1.2. 정보보호 정책 준수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7.2. 보안 감사	7.2.1. 독립적 보안감사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2.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	보안감사 증적(로그)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비인가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별표 2] 물리적 보호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구역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중요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구역(예 :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 구역, 사무실, 외부인 접견실 등)을 지정하고, 각 보안 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1.2. 물리적 출입통제	물리적 보안 구역에 인가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예 : 경비원,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8.1.3. 물리적 보호구역 내 작업	유지보수 등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1.4. 사무실 및 설비 공간 보호	사무실 및 설비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8.1.5. 모바일 기기 반출·입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정보 유출, 내부망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임직원 및 외부인력 모바일 기기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8.2.1. 정보처리시설의 배치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인가 된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설 내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8.2.2. 보호설비	각 보안 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누수, 전력 이상 등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하여 화재 감지기, 소화설비, 누수 감지기,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UPS), 이중 전원선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2.3. 케이블 보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케이블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케이블은 손상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2.4.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정보처리시설은 가용성과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8.2.5. 장비 반출·입	장비의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 구역 내 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장비 반출·입 절차를 수립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8.2.6. 장비 폐기 및 재사용	정보처리시설 내의 저장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를 파악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복구 불가능 상태에서 재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기술적 보호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1. 가상자원 관리	가상자원(가상 머신, 가상 스토리지, 가상 소프트웨어 등)의 생성, 변경, 회수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9.1.2. 가상자원 회수	이용자와의 계약 종료 시 가상자원 회수 절차에 따라 백업을 포함한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9.1.3. 가상자원 모니터링	가상자원에 대한 무결성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가상자원의 변경(수정, 이동, 삭제, 복사)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9.1.4. 하이퍼바이저 보안	가상자원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9.1.5. 공개서버 보안	가상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와 가상소프트웨어(앱, 응용프로그램)를 배포하기 위한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9.1.6.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표준화된 가상화 포멧, 이식성이 높은 가상화 플랫폼, 공개 API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을 높여야 한다.	
	9.2. 가상 환경	9.2.1.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환경(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탐지, 차단 등의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이용자 통지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9.2.2. 인터페이스 및 API 보안	가상 환경(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2.3. 데이터 이전	이용자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상 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9.2.4. 가상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접근통제	10.1. 접근통제 정책	10.1.1. 접근통제 정책 수립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영역 및 범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1.2. 접근기록 관리	접근기록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유지하여야 한다.	○
10. 접	10.2. 접근	10.2.1. 사용자 등록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10. 접근통제	권한 관리	및 권한부여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0.2.2. 관리자 및 특수 권한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하여야 한다.	○
		10.2.3. 접근권한 검토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이용(장기간 미사용), 변경(퇴직 및 휴직, 직무변경, 부서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10.3.1. 사용자 식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3.2. 사용자 인증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여야 한다.	○
		10.3.3. 강화된 인증 수단 제공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중 요소 인증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0.3.4. 패스워드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패스워드 복잡도 기준, 초기 패스워드 변경, 변경 주기 등 사용자 및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는 공지하여야 한다.	○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보안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DDoS,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IDS, VPN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11.1.4. 네트워크 암호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정보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호화된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1.5. 네트워크 분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11.1.6. 무선 접근통제	클라우드 시스템은 무선망과 분리하고, 무선접속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무선접속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법제처	12.1.	12.1.1.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데이터보호및암호화	데이터 보호	데이터 분류	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2.1.2. 데이터 소유권	이용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
		12.1.3. 데이터 무결성	입·출력,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 항상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1.4. 데이터 보호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1.5. 데이터 추적성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정보(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12.1.6. 데이터 폐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종료,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2. 매체 보안	12.2.1. 저장매체 관리	중요정보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등의 저장매체 폐기 및 재사용 절차를 수립하고 매체에 기록된 중요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12.2.2. 이동매체 관리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외장하드, USB, CD 등 이동매체 취급,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3. 암호화	12.3.1. 암호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에는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하만 적용
		12.3.2.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관한 안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시스템개발및도입보안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사항 정의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정보보호 기본요소(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출력 및 송수신 과정에서 무결성,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3.1.3. 보안로그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의 인증, 권한 변경, 중요정보 이용 및 유출 등에 대한 감사증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1.4.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업무의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접근권한 기능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1.5. 시각 동기화	로그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니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시각을 공식 표준시각으로 정확하게 동기화 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각 정보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한다.	○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 하고,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도출한 보안요구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13.2.2.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단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데이터 생성,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구현 및 이관까지의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3.4. 시스템 도입 보안	13.4.1. 시스템 도입 계획	클라우드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용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4.2. 시스템 인수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인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인수 전에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별표 4]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14.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	14.1. 관리적 보호조치	14.1.1.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	국가기관등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정보를 국가기관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4.1.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보안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4.1.3. 보안관리 수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장소 및 망은 국가기관등의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수준에 준하여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
		14.1.4. 사고 및 장애 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및 재발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4.2. 물리적 보호조치	14.2.1 물리적 위치 및 영역분리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하만 적용
		14.2.2.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하
	14.3. 기술적 보호조치	14.3.1.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중요자료를 암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
		14.3.2. 보안관제 제반환경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는 민간 영역을 제외한 공공 영역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14.3.3 데이터 유출 방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공공의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및 로그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하만 적용
		14.3.4. 시스템 격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보안관제가 이뤄지는 서비스 네트워크 이외의 비정상 통신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 마련 등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3.5. 영역분리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영역분리를 통해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 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역 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하고, 비인가 접근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

[별표 5]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제출서류(제3조 관련)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제출서류(제3조 관련)

구 분	제출서류
인증평가원 고용	인증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평가원의 보유현황
인증·평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1.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설명자료, 직제규정, 사업수행계획서 등 2. 인증신청인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
재정 능력	1.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내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날인한 서류) 2. 신용평가서 3. 운영자금 보유 내역 및 피해보상 대책
시설	사무공간·인증평가 서류 보관 장소 및 보안설비·시설 증빙서류
인증 및 평가실적 (재지정만 해당)	인증 및 평가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표 6]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조직 및 전문성 관련 증빙서류 2. 신뢰도 관련 증빙서류 3.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 4. 시설 및 보안 관련 증빙서류

[별표 6]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제6조 관련)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제6조 관련)

1.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른 업무능력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을 충족하고,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의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업무능력 평가 방법

업무능력은 다음 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모두 해당)
인력	보안인증평가원 고용	· 별표 9의 보안인증평가원 4명 이상 상시 고용
공정성	객관성·공정성·독립성 확보	· 인증 또는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지표	인증기관 배점	평가기관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조직 및 전문성 (20점)	전담조직	등급	5	5	o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유무 ·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전담조직 없음 : 0점
	전문인력	비계량	5	5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기술 능력 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실무 경력
	전문성	비율	5	5	o 최근 3년간 전담 평가원의 인증평가 참여일 수의 합 · 200일 이상 : 배점의 100% · 200일 미만 : 배점의 χ% ※ χ = (총 참여일수/200일) × 100
		비율	5	5	o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근 3년간 교육 시간 · 전담 평가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 배점의 100% · 전담 평가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배점의 χ% ※ χ =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담 평가원의 수/총 전담 평가원의 수) × 100

2. 신뢰도 (10점)	재정 능력	신용등급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에 따른 점수 신용평가등급 점수 · AAA ~ A- 5점 · BBB+ ~ BBB- 3.5점 · BB+ ~ BB- 2.5점 · B+ ~ B- 1.5점 · CCC+ 이하 0.5점
		자본규모	3	3	ㅇ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 5억 이상 : 배점의 100% · 5억 미만 : 배점의 χ% ※ χ = (보유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5억원) × 100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비계량	2	2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운영자금 관련 법인 통장 보유 여부 및 자금 규모 유지 수준 나) 선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수준
3. 업무수행 (62점)	평가업무수행지침	비계량	4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인증/평가업무 수행지침 보유 여부 및 지침의 타당성을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나) 품질관리, 운영관리, 인증/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비계량	16	18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ㅇ 인증/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ㅇ 피평가기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ㅇ 인증/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ㅇ 관계 법령 및 내부절차 준수, 청렴 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ㅇ 인증/평가기관 책임자의 인증/평가 결과 검토·처리 절차 마련 정도 ㅇ 인증/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마련
	운영관리	비계량	8	12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ㅇ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ㅇ 신청 접수,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정도 ㅇ 평가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 ㅇ 인증/평가 관련 부당행위 방지대책
	인증관리	비계량	12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ㅇ 인증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위원 구성 및 인증위원회 운영 ㅇ 인증위원회 개최 정족수, 상정안건의 검토, 의결 등의 운영절차 마련 및 이행 계획 ㅇ 보안인증서 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계획 ㅇ (재지정만 해당)인증실적 및 인증 내역
	평가관리	비계량	12	18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ㅇ 평가팀 구성 원칙 ㅇ 평가전문인력의 의무·책임 준수 방안, 평가 관련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ㅇ 평가 수행절차 관련 계획 ㅇ 평가결과보고, 인증위원회 상정 등 사후 절차 준수

					계획 o 인증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o (재지정만 해당)평가 실적 및 인증평가원 참여 내역
	문서관리	비계량	10	10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업무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관리절차 마련 o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시 방식의 안전성 o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4. 시설 및 시스템 (8점)	시설 및 시설보안	비계량	4	4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독립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유무 o 인증 및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유무 o 사무공간 출입 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설비 운영 여부 o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여부
	운영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비계량	4	4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인증 및 평가 관리 및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보유 o 인증 및 평가 정보의 침해사고 또는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5. 감점	자격 취소 사실	계량	감점	감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관련 업무 수행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 1회 당 : 감점 10점
합계			100	100	

<비 고>

1.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비계량 각 세부평가 점수 부여기준은 배점에 평가등급(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평가요소별 비계량 평가	평가등급(계수)
우수	1.0
보통	0.6
미흡	0.2
미 제출	점수없음(0)

[별표 7] 인증평가 일부 생략의 범위(제11조 관련)

<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부 생략 신청 시 생략의 범위 >

분야		항목
2. 인적보안	2.1. 내부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2.1.3. 직무 분리
		2.1.4. 비밀유지서약서
	2.2. 외부인력 보안	2.2.1. 외부인력 계약
		2.2.2. 외부인력 보안 이행 관리
		2.2.3. 계약 만료 시 보안
	2.3. 정보보호 교육	2.3.1. 교육 프로그램 수립
		2.3.2. 교육 시행
		2.3.3. 평가 및 개선
3. 자산관리	3.1. 자산 식별 및 분류	3.1.1. 자산 식별
		3.1.2. 자산별 책임할당
		3.1.3. 보안등급 및 취급
5. 침해사고관리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5.1.1.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5.1.2.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5.2. 침해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5.3. 사후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5.3.2. 재발방지
6. 서비스연속성관리	6.1. 장애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6.1.2. 장애 보고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6.1.4. 재발방지
	6.2. 서비스 가용성	6.2.1. 성능 및 용량 관리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구역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8.1.2. 물리적 출입통제
		8.1.3. 물리적 보호구역 내 작업
		8.1.5. 모바일 기기 반출·입
	8.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8.2.1. 정보처리시설의 배치
		8.2.2. 보호설비
		8.2.3. 케이블 보호
		8.2.4.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8.2.5. 장비 반출·입
		8.2.6. 장비 폐기 및 재사용

분야		항목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5. 공개서버 보안
10. 접근통제	10.1. 접근통제 정책	10.1.1. 접근통제 정책 수립
10. 접근통제	10.2. 접근 권한 관리	10.2.2. 관리자 및 특수 권한관리
		10.2.3. 접근권한 검토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10.3.1. 사용자 식별
		10.3.2. 사용자 인증
		10.3.3. 강화된 인증 수단 제공
		10.3.4. 패스워드 관리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1.1.5. 네트워크 분리
		11.1.6. 무선 접근통제
1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12.2. 매체 보안	12.2.1. 저장매체 관리
		12.2.2. 이동매체 관리
	12.3. 암호화	12.3.1. 암호 정책 수립
		12.3.2. 암호키 관리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사항정의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13.1.3. 보안로그 기능
		13.1.4. 접근권한 기능
		13.1.5. 시각 동기화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13.4. 시스템 도입 보안	13.4.1. 시스템 도입 계획
		13.4.2. 시스템 인수

<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부 생략 신청 시 생략의 범위 >

분야		항목
1.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1.1.정보보호 정책	1.1.1. 정보보호 정책 수립
		1.1.2. 정보보호 정책 검토 및 변경
		1.1.3. 정보보호 정책문서 관리
	1.2.정보보호 조직	1.2.1. 조직 구성
		1.2.2. 역할 및 책임 부여
2. 인적보안	2.1. 내부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2.1.3. 직무 분리
		2.1.4. 비밀유지서약서
	2.3. 정보보호 교육	2.3.2. 교육 시행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4.1. 공급망관리 정책	4.1.1.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5. 침해사고관리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5.1.1.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5.2. 침해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5.3. 사후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5.3.2. 재발방지
6. 서비스연속성관리	6.1. 장애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6.1.2. 장애 보고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6.1.4. 재발방지
7. 준거성	7.1. 법 및 정책 준수	7.1.1. 법적요구사항 준수
		7.2.1. 독립적 보안감사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1.가상자원 관리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1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12.1. 데이터 보호	12.1.1. 데이터 분류
		12.1.2. 데이터 소유권
		12.1.5. 데이터 추적성
		12.1.6. 데이터 폐기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사항정의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13.1.4. 접근권한 기능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별표 8]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 기준(제12조 관련)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기준(제12조 관련)

1.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라. 직접경비는 인증평가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평가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단, 신청인은 평가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경비를 인증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인력 보수 및 출장비 지급기준

가. 평가인력에 대한 보수 및 경비는 평가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평가인력이 국내·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정액여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인증평가팀 자격 요건 및 구성기준(제16조 관련)

인증평가팀 자격 요건 및 구성기준(제16조 관련)

구성원	경력 · 자격 기준
보안인증평가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PIMS, ISMS, ISMS-P 및 유사인증제도(ISO27001 등) 합산 평가일수의 합이 40일 이상인 자
취약점 점검원	○ 5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
소스코드 점검원	○ SW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5회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업무를 수행한 자
모의침투 점검원	○ 5회 이상 모의침투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 평가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팀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지 1]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전체 직원 수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소속부서 및 업무	고용형태
		인증평가원 자격번호	최초자격취득일	인증평가 참여 일수 ※ 최근 3년 이내	비고
		. . .	. . .		
			. . .	일	
		. . .	. . .		
			. . .	일	
		. . .	. . .		
			. . .	일	
		. . .	. . .		
			. . .	일	
		. . .	. . .		
			. . .	일	
		. . .	. . .		
			. . .	일	

유의사항

1. 인증평가원 자격 보유 및 인증평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고에 학위,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2]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취득을 위해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의 침투테스트 및 취약점 진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호의무, 비밀유지 및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호의무

1. 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인증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중 평가팀에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고자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은 평가팀에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은 평가팀에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평가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인증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중 신청기관과 협의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한다.
5. 평가팀은 협의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청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수행기간 및 대상, 수행 IP주소 등을 문서화하여 신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침투테스트의 대상은 아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 구성에 따라 추가 혹은 축소될 수 있다.

침투테스트 대상 영역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포털로 침투
이용자 VM으로부터 하이퍼바이저로 또는 다른VM의 침투

8. 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영향 또는 손상에 대해서 신청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9. 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신청기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이상동작 또는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신청기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기간 동안 신청기관 내 정보시스템 침입 및 이상 알림에 대해서 예외처리, 통보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신청기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로 장애발생 시 수행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팀은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장애처리 후 침투테스트 및 취약점 진단 수행이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2. 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한 후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제공하며, 신청기관이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13. 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한 후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청기관에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4. 신청기관은 요청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5. 신청기관은 요청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 방법을 평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보완조치 방법의 결정은 신청기관이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다. 16.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8. 평가팀은 보완조치 내역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여 보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SaaS/PaaS 사업자의 경우,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에 대해 IaaS 사업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1. 평가팀은 신청기관이 제공하거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아래의 기밀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기밀정보가 취급되어야 한다. 1)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위해서 신청기관이 제공한 정보 2) 신청기관이 기밀로 지정한 정보 3)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의 결과 4) 일체의 개인정보 5) 신청기관의 사업정보 6) 이에 준하는 비밀수준의 정보 2. 평가팀은 타법령에 의해서 기밀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외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제공하여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외부에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기밀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책임제한	1. 평가기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영향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의 수행은 신청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 현 시점 및 미래의 침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중

210㎜×297㎜[백상지(80g/㎡)]

[별지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작성 항목	기재 내용(요약서)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인증범위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과 소개 등*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 수량	o 주센터(총 00대) - 서버 0대, NW 0대, DB 0대 - 클라우드 시스템 0대 o DR센터(총 00대) - 서버 0대, NW 0대, DB 0대 - 클라우드 시스템 0대 *※ 인증범위 대상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수량 기재*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관련된 주요 문서	o 총 00종 : 정책(00종), 지침(00종), 절차서(00종)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관련된 주요 문서 목록 및 수량 기재*

※ 위 표에는 주요 내용만을 기재하고, 세부 사항은 이후 페이지에 기재

※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는 평가·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별지 4]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인증의 범위 :	
	인증유효기간 : . . ~ . .	
	최근 인증평가 수행기간 : . . ~ . .	
	보완조치 완료일 :	
클라우드 보안인증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인증의 범위 :	
	인증유효기간 : . . ~ . .	
	최근 인증평가 수행기간 : . . ~ . .	
	보완조치 완료일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일부 평가 생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ooooo(평가기관명)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 일부 생략 명세서 1부 2. 인증평가 일부기준 생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5]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발생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재발급사유	□ 보안인증서 분실 또는 훼손		
	□ 보안인증서보유기관명 변경		
	□ 보안인증 서비스명 변경		
	□ 보안인증서비스 권리 양도 또는 양수		
	□ 기타		

인증 정보	인증번호	
	서비스 구분	
	서비스 명	
	보안인증서 교부일	

위와 같이 보안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6]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인증 정보	인증번호		
	서비스 구분		
	서비스 명		
	보안인증서 교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국문)	
		(영문)	
	변경 후	(국문)	
		(영문)	
변경사유			

위와 같이 보안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보안인증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7] 이의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통지사항	통지를 받은 날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10㎜× 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 · 성능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8. 24.] [고시 제2017 - 7호, 2017. 8.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044 - 202 - 62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
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 · 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품질 · 성능 기준)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

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
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
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
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
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
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

② 품질·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품질·성능 측정 방법 및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품질·성능 기준 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성능 기준 제공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42호,2016. 4.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호,2017. 8.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 · 성능 세부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주요 내용
서비스 품질 · 성능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률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응답성 (Responsiveness)	응답시간	이용자의 조회 또는 요구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확장성 (Scalability)	확장성	이용자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혹은 확장요청 처리시간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 회복 시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시점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
		백업 주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백업의 주기
		백업 준수율	계획된 총 백업 건수(정기 및 수시 백업) 중 정상적으로 실시된 백업의 비율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백업 데이터를 보호 · 유지하는 기간
	서비스 지속성 (Service sustainability)	서비스 제공 능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또는 기술보증 등의 제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서비스 지원 (Service supportability)	서비스 지원체계	기술지원문서 ·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 이용자 지원, 다양한 단말기 · 운영체계 지원, 보상대책 마련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공 능력
	고객대응 (Customer response)	고객대응 체계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공 및 운영 능력
		고객불만 처리체계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 - 202 - 6124, 61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6조 삭제 <2009. 5. 21.>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 8. 28., 2018. 12. 24.>

[전문개정 1995、1、5]

제2장 삭제 <2009. 5. 22.>

제8조 삭제 <2009. 5. 22.>

제9조 삭제 <2009. 5. 22.>

제10조 삭제 <2009. 5. 22.>

제11조 삭제 <2009. 5. 22.>

제12조 삭제 <2009. 5. 22.>

제13조 삭제 <2009. 5. 22.>

제14조 삭제 <1996. 12. 30.>

제15조 삭제 <1996. 12. 30.>

제15조의2 삭제 <1999. 1. 29.>

제3장 삭제 <2010. 3. 22.>

제1절 삭제 <2010. 3. 22.>

제16조 삭제 <2010. 3. 22.>

제17조 삭제 <2010. 3. 22.>

제18조 삭제 <2010. 3. 22.>

제19조 삭제 <1996. 12. 30.>

제2절 삭제 <2010. 3. 22.>

제20조 삭제 <2010. 3. 22.>

제21조 삭제 <2010. 3. 22.>

제22조 삭제 <2010. 3. 22.>

제23조 삭제 <2010. 3. 22.>

제24조 삭제 <2010. 3. 22.>

제3절 삭제 <2010. 3. 22.>

제25조 삭제 <2010. 3. 22.>

제26조 삭제 <2010. 3. 22.>

제27조 삭제 <2010. 3. 22.>

제28조 삭제 <2010. 3. 22.>

제29조 삭제 <2010. 3. 22.>

제30조 삭제 <2010. 3. 22.>

제4절 삭제 <2010. 3. 22.>

제30조의2 삭제 <2010. 3. 22.>

제30조의3 삭제 <2010. 3. 22.>

제30조의4 삭제 <2002. 12. 26.>

제31조 삭제 <2010. 3. 22.>

제32조 삭제 <2010. 3. 22.>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 삭제 <2010. 7. 23.>

제33조의2 삭제 <2010. 7. 23.>

제33조의3 삭제 <2010. 7. 23.>

제34조 삭제 <2000. 1. 28.>

제34조의2 삭제 <2010. 7. 23.>

제35조 삭제 <2010. 7. 23.>

제36조 삭제 <2010. 7. 23.>

제5장 삭제 <2008. 2. 29.>

제37조 삭제 <2008. 2. 29.>

제38조 삭제 <2008. 2. 29.>

제39조 삭제 <2008. 2. 29.>

제40조 삭제 <2008. 2. 29.>

제40조의2 삭제 <2010. 3. 22.>

제40조의3 삭제 <2010. 3. 22.>

제41조 삭제 <2008. 2. 29.>

제42조 삭제 <2008. 2. 29.>

제43조 삭제 <2010. 3. 22.>

제44조 삭제 <2008. 2. 29.>

제44조의2 삭제 <2009. 3. 13.>

제5장의2 삭제 <2010. 3. 22.>

제44조의3 삭제 <2010. 3. 22.>

제44조의4 삭제 <2010. 3. 22.>

제44조의5 삭제 <2009. 3. 13.>

제44조의6 삭제 <2009. 3. 13.>

제44조의7 삭제 <2010. 3. 22.>

제44조의8 삭제 <2010. 3. 22.>

제6장 보칙

제45조 삭제 <2010. 3. 22.>

제45조의2 삭제 <2010. 7. 23.>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삭제<2010. 3. 22.>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 12. 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 12. 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2. 22.>

[2015. 12. 22. 법률 제13586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한 제47조제1항을 삭제함]

제48조 삭제 <2010. 7. 23.>

제48조의2 삭제 <2001. 1. 16.>

제49조 삭제 <2010. 7. 23.>

제50조 삭제 <2000. 1. 28.>

제51조 삭제 <2010. 7. 23.>

제52조 삭제 <2010. 7. 23.>

제53조 삭제 <2010. 7. 23.>

부칙 <제4393호,1991. 8.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28호,1992. 12. 8.>(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4541호,1993. 3. 6.>(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05호,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5219호,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 한국통신기술협회 " 를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로 한다.

부칙 <제5385호,1997. 8. 28.>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 기간통신사업자와 " 를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 으로 한다.

부칙 <제5386호,1997. 8.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 " 를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453호,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3호,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내지2) 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6231호,2000. 1. 2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0호,2001. 1. 1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602호,2002. 1. 14.>

제32조의3 을 삭제한다.

부칙 <제6656호,2002. 2. 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생략

5)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23호,2002. 12. 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8호,2004. 3. 1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210호,2004. 3. 22.>(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303호,2004. 12. 31.>(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생략

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1>내지 <68>생략

부칙 <제7810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425호,2007. 5. 11.>(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 을 " 손해배상 " 으로 한다.

부칙 <제8486호,2007. 5. 25.>(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 을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 " 으로 한다.

⑭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7호,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8974호,2008. 3. 21.>(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401호,2009. 1. 30.>(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 국유재산법 제20조 "를 " 「국유재산법」 제27조 "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81호,2009.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을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로 한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9701호,2009. 5.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8호,2009. 5. 2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9780호,2009. 6. 9.>(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부터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39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5호,2010. 3. 2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66호,2010. 3. 22.>(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393호,2010. 7. 23.>(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3>까지 생략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6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86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19호,2018. 12. 24.>(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 - 202 - 66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 - 2110 - 15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 - 2110 - 15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 - 2110 - 16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송자격인증 관련) 02 - 2110 - 15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3. 7. 18., 2025. 1. 21.>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0. 19.>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13.]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 12. 24.>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2023. 7.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7. 18.]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1. 10. 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개정 2018. 12. 24., 2021. 10.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 6. 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0. 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2. 6. 10.>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 2022. 6. 1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6. 10.>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0. 15.>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1. 휴업·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업·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업·폐업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9.]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6. 3. 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3절 부가통신사업 <개정 2018. 12. 24.>

제21조 삭제 <2018. 12. 24.>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2025. 3. 18.>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25. 3. 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신설 2025. 3. 18., 2025. 10.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0. 15., 2025. 3. 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4. 10. 15., 2025. 3. 1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2. 6. 10., 2025. 3. 18.,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5. 19., 2014. 10. 15., 2022. 6. 10., 2025. 3. 18.>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1. 5. 19.]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 2017. 7. 26., 2025. 10. 1.>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12. 1.>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4. 10. 15.]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5. 3. 1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신설 2020. 6. 9.,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2025. 3.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9. 14.]

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2025. 3. 18.>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5. 1. 21., 2025. 3. 18., 2025. 10.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

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6. 9., 2024. 1. 30., 2025. 10. 1.>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2025. 10. 1., 2026. 3. 3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5.>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신설 2020. 6. 9.>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⑥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2020. 6. 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5., 2020. 6. 9.>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 17.]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22. 6. 10., 2026. 3. 3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2025. 1. 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 21.>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31.>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신설 2018. 12. 11.>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

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1.>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7(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 2026. 3. 31.>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

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20. 6.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삭제<2015. 12. 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12. 29.>

③ 삭제<2023. 12. 29.>

④ 삭제<2023. 12. 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29.>

⑥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29.>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

)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및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법률 제19856호(2023. 12. 29.)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3월 29일까지 유효함]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 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 21.>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⑥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5. 10. 1.>

1. 삭제<2018. 12. 11.>
2. 삭제<2018. 12. 11.>
3. 삭제<2018. 12. 11.>
4. 삭제<2018. 12. 1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4., 2025. 10. 1.>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1. 3., 2025. 10. 1.>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6. 9., 2025. 10. 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23. 1. 3., 2025. 10. 1.>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 3.>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8에서 이동 <2023. 1. 3.>]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5. 10. 1.>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0. 15.]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2020. 6. 9., 2021. 9. 14., 2021. 10. 19., 2024. 1. 30., 2025. 1. 21., 2025. 10. 1.>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2025. 1. 21.>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 21., 2025. 10. 1.>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1.,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5. 1. 21.>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5. 1. 2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1. 21.]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1.,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

성,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2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0. 19.,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4. 10. 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2019. 12. 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 12. 10.>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5.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신설 2025. 1. 21.>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55조(손해배상)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25. 1. 21.>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57조(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삭제<2015. 12. 1.>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2025. 1.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30., 2025. 1. 21., 2026. 3. 3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이동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30., 2025. 1. 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2. 6. 10., 2025. 1. 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30.>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25. 1. 21.]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2025. 1. 21.>

[본조신설 2013. 8. 13.]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0. 15.,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도지사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23. 7. 18.]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0. 6. 9., 2023. 7.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2015. 12.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개정 2015. 12. 1.>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16. 1. 27.]

제70조 삭제 <2015. 12. 1.>

제71조 삭제 <2015. 12. 1.>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와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한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장해물등을 신설·증설·개선·철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

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검사·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장 보칙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

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023. 12. 29.>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29.>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9.>

[2023. 12. 29. 법률 제19856호에 의하여 2022. 7.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2014. 10. 15.>

④ 삭제<2014. 10. 15.>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1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2013. 8. 13.>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5. 12. 1., 2017. 7. 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사용정지·개조·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6. 3. 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 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2019. 12. 10.>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 21., 2025. 10. 1.>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1. 9. 14., 2023. 1. 3., 2023. 12. 29., 2025. 1. 21., 2025. 3. 18., 2025. 10. 1.>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11., 2025. 10. 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14. 10. 15.>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전문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23. 12. 29.]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1. 27.]

제7장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9.>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 27., 2018. 12. 24., 2023. 12. 29., 2025. 1. 21., 2026. 3. 3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2018. 12. 24.>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한 자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022. 6. 10., 2026. 5. 19.>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본조신설 2013. 8. 13.]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0. 15., 2015. 12. 1.,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5. 1. 21.>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

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2026. 3. 31.>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전문개정 2025. 1. 21.]

제100조 삭제 <2014. 10. 15.>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12. 24.>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4. 10. 15., 2025. 1. 21.>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2022. 6. 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22. 6. 10., 2023. 7. 18., 2026. 3. 31.>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2022. 6. 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15.,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15., 2025. 1. 21.>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0. 19., 2023. 1. 3., 2023. 7. 18., 2023. 12. 29., 2025. 1. 21., 2025. 10. 1., 2026. 3. 3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제4호의17·제4호의18·제4호의20·제8호·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제4호의21·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3. 12. 29., 2025. 1. 21., 2025. 10. 1.>

⑦ 삭제<2020. 6. 9.>

부칙 <제10166호,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 8. 13.>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56호,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01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제2항·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5호,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2216호,2014. 1. 7.>(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61호,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1호,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18호,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3519호,2015. 12. 1.>(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제13823호,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부칙 <제14113호,2016. 3. 29.>(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576호,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

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56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58호,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019호,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24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2호,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59호,2020. 6. 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0호,2020. 6. 9.>(국가철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8451호,2021.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7호,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69호,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53호,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45호,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841호,2023. 12. 26.>(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9856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호,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677호,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부칙 <제20792호,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99호,2026.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3호,2026. 3. 3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1652호,2026.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 - 202 - 66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 - 2110 - 15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 - 2110 - 16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 - 2110 - 15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2020. 12. 8.>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삭제<2014. 1. 7.>
라. 삭제<2013. 5. 3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11. 30.>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삭제<2015. 11. 3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8.>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통합되도록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 9.>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개정 2024. 1. 9.>
[본조신설 2019. 6. 25.]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19. 6. 25.]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9., 2024. 1. 9.>

1.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가. 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본조신설 2019. 6. 25.]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 사업의 공익성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2. 8.>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 7., 2021. 12. 28., 2022. 12. 9.>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28.]

제14조 삭제 <2014. 1. 7.>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 17.]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19. 6. 25.,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1. 합병·분할·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분할·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분할·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분할·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분할·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5. 4. 14., 2019. 6. 25., 2021. 12. 28.>

1. 해당 양수·합병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지배관계"라 한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양수·합병인등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양수·합병인등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수·합병인등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따른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신설 2015. 4. 14.,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 4.>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분할·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23조 삭제 <2010. 10. 1.>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5. 4. 14., 2020. 12. 8.>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20. 12. 8.]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20. 12. 8.]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 4. 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2. 28., 2015. 4. 14., 2019. 6. 25., 2020. 12.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제목개정 2019. 6. 25.]

제26조 삭제 <2019. 6. 25.>

제27조 삭제 <2019. 6. 25.>

제28조 삭제 <2019. 6. 25.>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

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1. 11. 14.]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0. 12. 8.>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4. 14.]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3. 19., 2025. 10. 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3. 7. 3., 2025. 2. 11.>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삭제<2023. 7. 3.>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본조신설 2022. 3. 15.]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

1.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조정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3. 15.]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 인증에 관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8., 2026. 4. 28.>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 삭제<2019. 6. 25.>
6. 삭제<2019. 6. 25.>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23.>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19. 6. 25.]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2022. 12. 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2022. 12. 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19. 6. 25.]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19. 6. 25., 2020. 12. 8.]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

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9. 6. 2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0. 1.>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4. 14.]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4로 이동 <2015. 4. 14.>]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

야 한다.<개정 2021. 1. 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

[본조신설 2015. 4. 14.]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4. 14., 2020. 12. 8.>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14., 2020. 12. 8., 2021. 1. 5.>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5. 4. 14.>]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6. 7. 28., 2017. 7. 26., 2022. 12. 9., 2026. 9. 29., 2026. 9. 30.>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1. 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본조신설 2015. 4. 14.]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37조의6은 제37조의7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2023. 5. 23., 2024. 12. 3.>

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4.]

[제3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7은 제37조의8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2026. 4.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4. 14.]

[제3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6. 4. 28.>

[본조신설 2019. 6. 11.]

[제3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9는 제37조의10으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본조신설 2015. 4. 14.]
[제3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10은 제37조의11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사용·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본조신설 2019. 6. 11.]
[제37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11은 제37조의12로 이동 <2022. 12. 9.>]

제37조의12(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37조의12는 제37조의13으로 이동 <2024. 6. 28.>]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 이용자의 나이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4. 28.]

[종전 제37조의13은 제37조의21로 이동 <2026. 4. 28.>]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3.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2. 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
3. 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유통 실태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의 제안
4.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17(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12제1항
2. 법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및 제5항
3. 법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법 제32조의15제2항 및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28.>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삭제<2025. 3. 28.>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3. 28.>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2025. 3. 28.>

1. 전자우편 이용
2.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7조의13에서 이동 <2026. 4. 28.>]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20. 12. 8.>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6.]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

”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39조의3 삭제 <2016. 5. 31.>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7. 26., 2024. 6.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9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8.]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의2제3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6. 28.>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4. 7. 30., 2026. 4. 28.>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6. 4. 28.>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7.]

[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9. 6. 11.>]

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 2025. 10. 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 <2019. 6. 11.>]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4는 제40조의2로 이동 <2019. 6. 11.>]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23. 7. 3.,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7. 3., 2025. 10. 1.>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7. 3., 2025. 10. 1.>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 7. 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7. 3.>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종전 제40조의6은 제40조의8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종전 제40조의7은 제40조의9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8은 제40조의10으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9는 제40조의11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10은 제40조의12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11은 제40조의13으로 이동 <2023. 7. 3.>]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40조의10에서 이동 <2023. 7. 3.>]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3.]
[제40조의11에서 이동 <2023. 7. 3.>]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4. 19.]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유형
2.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전문개정 2012. 2. 28.]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0. 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7. 28.]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7. 28.]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 4. 28.>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6. 4. 28.>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6. 4. 28.>
[전문개정 2012. 2. 28.]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6. 4. 28.>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개정 2026. 4.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6. 4. 28.>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7. 28., 2025. 10. 1., 2026. 4. 28.>

1.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2.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16. 7. 28.]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0. 10. 1.]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21. 6. 8.>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면·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에서 이동 <2014. 1. 7.>]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7. 30., 2026. 4. 28.>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2024. 7. 30., 2026. 4. 28.>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2026. 4.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4. 7. 30., 2026. 4. 28.>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신고·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4. 7. 30.>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24. 7. 30.>

[본조신설 2014. 1. 7.]

[제목개정 2024. 7. 30.]

[종전 제51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14. 1. 7.>]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 10. 1.>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51조의4 삭제 <2015. 4. 14.>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1. 4. 6., 2024. 1. 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 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

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종전 제51조의11은 제51조의12로 이동 <2024. 1. 9.>]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의12는 제51조의13으로 이동 <2024. 1. 9.>]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전문개정 2012. 2. 28.]
[제51조의12에서 이동 <2024. 1. 9.>]

제51조의14 삭제 <2016. 5. 31.>

제51조의15 삭제 <2016. 5. 31.>

제51조의16 삭제 <2016. 5. 31.>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 6. 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6. 30., 2024. 6. 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개정 2023. 12. 19., 2024. 6. 28.>

[전문개정 2012. 2. 28.]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

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방법·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 6. 28.]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상담용(118)
5. 화재·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삭제<2017. 5. 8.>

[전문개정 2012. 2. 28.]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본조신설 2015. 4. 14.]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 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 구호
   나. 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 1. 7.>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7., 2017. 7. 26.>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6. 12. 30., 2017. 7. 26., 2019. 6. 25.>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9조(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2. 2. 28.]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5. 31.]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28.]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 2. 28.]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8.]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2014. 1. 7.>

[전문개정 2012. 2. 28.]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6. 4. 28.]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6. 5. 31., 2016. 7. 28.,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2022. 12. 9., 2024. 1. 9., 2024. 6. 28., 2026. 4. 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처리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폐업신고의 접수·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등록 조건의 부과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접수·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처리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의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의4.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8의5.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처리
8의6.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처리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신설 2024. 6. 28.>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업무 중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지원,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6. 4. 28.>

[전문개정 2012. 2.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8. 6., 2016. 7. 28.,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2025. 10. 1., 2026. 4. 28.>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2019. 6. 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2015. 4. 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2015. 4. 14.>
15. 삭제<2015. 4. 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2015. 4. 14., 2016. 7. 2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1. 7., 2014. 8. 6.>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1. 7., 2014. 8. 6.>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 6. 28.>

[본조신설 2012. 1. 6.]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2020. 3. 3., 2020. 12. 8., 2022. 3. 8., 2024. 6. 28., 2026. 3. 24., 2026. 4. 28.>

1. 삭제<2021. 3. 2.>
2. 삭제<2026. 3. 24.>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2020. 3. 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5의2. 제2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2026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제37조의16제1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10. 제37조의16제6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11. 삭제<2023. 3. 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 4. 28.>

1. 제37조의13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의 기준: 2026년 1월 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제37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 4. 28.>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장 벌칙 <신설 2010. 10. 1.>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7. 20.>

[전문개정 2012. 2. 28.]

부칙 <제20666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896호,2008. 7. 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60호,2008.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3호,2010. 1. 27.>(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24호,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 <제22605호,2010. 12. 31.>(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616호,2011. 1. 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3293호,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2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5호,2013. 3. 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9항·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46호,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

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면·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62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78호,2014. 7. 16.>(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 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67호,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91호,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406호,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26683호,2015. 11. 30.>(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186호,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2호,2016. 7. 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칙 <제27412호,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750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9호,2017.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5호,2017.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

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

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3호,2017. 9. 5.>(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8881호,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7호,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6호,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0호,2020. 5. 1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0호,2020. 12. 8.>(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222호,2020. 12. 8.>(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23호,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53호,2021. 2. 17.>(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92호,2021.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4호,2021. 4. 6.>(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26호,2021. 6. 8.>(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107호,2021.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3호,2022. 3. 15.>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8호,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7호,2022. 6. 30.>(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3038호,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3321호,2023. 3. 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1호,2023. 5. 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613호,2023. 7. 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7호,2023. 12. 19.>(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107호,2024. 1. 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4호,2024. 3.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17호,2024.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1호,2024. 7. 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8호,2024. 12.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087호,2024. 12. 24.>(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4호,2025. 2. 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6호,2025.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1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조의4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 산업통상부

제30조의5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7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4제1항·제2항, 제40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61조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5제3항·제4항 및 제30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3의3 제3호, 별표 4 제5호사목4) 후단,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제9호 후단, 같은 표 제10호 후단, 별표 5 제7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0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1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2호의 이행기간란, 별표 6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표 제3호, 별표 9 제2호가목3)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나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별표 11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로 한다.

2# 부터2(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81호,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제37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9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의2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729호,2026. 9. 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735호,2026. 9. 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라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28.>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이라 한다) 중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이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적 능력	기술 방식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기술 인력	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명 이상
		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해당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마.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통신망 구축계획 등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계획 및 장애등 사고 발생 시 대책(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을 제출할 것
3. 이용자 보호계획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사업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필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할 것(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1.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서울특별시의 5개 구(區) 이상 또는 경기도의 5개 시(市)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으로 본다.
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8.>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나.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6개월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	등록취소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정지 3개월	
마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사.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아.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4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6개월
차.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차의2.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6		등록취소
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비고: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8.>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	등록 요건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

시설	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다. 재무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 사업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할 것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마)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 바)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변조 방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

	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할 것 가)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다)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라) 로그기록 자료 유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관련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둘 것 2)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1억원 이상
라. 사업 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그 밖의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바. 전송자격 인증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제출할 것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0. 12. 8.>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

(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0. 1.>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의 산정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보통 위반행위	5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6. 4. 28.>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	인증취소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	법 제22조의11제4항제2호	인증취소	

지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법 제22조의11제4항제3호	인증취소	
라.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2조의11제4항제4호	경고	인증취소
마.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	경고	인증취소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	인증취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6. 4. 2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

서비스 구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2. 법 제32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3. 법 제32조의6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 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의2제3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의2제1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결합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라. 이용자[명의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

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3) 삭제 <2019. 6. 11.>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 삭제 <2016. 12. 30.>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및 법 제3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등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에 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이 없이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2. 4. 19.>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하루평균매출액별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

하루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6. 4. 28.>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

명령 사항	근거 법조문	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2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이동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위반행위의 중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4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7.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 제51조의3제2항제6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8.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9.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0.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명령 사항	근거 법조문	이행기간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법 제52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2조제1항제3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4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7. 금지행위의 중지	법 제52조제1항제6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제7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법 제52조제1항제8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	법 제52조제1항제9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1.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3.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4.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3호	관련 자료의 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19. 6. 25.>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5항	사업정지 3개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6. 4. 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 · 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 ·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主導)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 감경, 추가적 가중 ·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이하 이 목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같은 종류의 유사 역무를 제

공하거나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4. 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감경한 금액을 합산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4. 28.>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 회사의 규모 및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 정리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 정리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부과기준율(오류발생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필수적 가중

회계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고의적인 은폐·조작·누락 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취득할 이익 규모 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반복 여부, 위반행위의 방지노력,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1. 9.>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정지 기간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6개월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법 제65조제4항 전단	1년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9개월

비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2/100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매출액의 1/100
4)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매출액의 1/100
5)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매출액의 1/100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1/100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0억원	4억원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8억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8억원	2억원	
4)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1억원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1억원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1억원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억원	2억원	
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8억원	2억원	1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1.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2억원 이내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법 제65조제4항 전단	10억원 이내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6억원 이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4.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호	35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	350	700	1,000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	350	700	1,000
타.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700	1,400	2,000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3호	350	700	1,000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	350	700	1,000
거.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350	700	1,000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350	700	1,000
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동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350	700	1,000
러.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2호	700	1,400	2,000
머.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350	700	1,000
버.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350	700	1,000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	350	700	1,000
서의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8			

우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서의3.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1호	450	900	1,500
서의4.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9	300	600	1,000
서의5.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0	300	600	1,000
서의6.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1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7.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2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8.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9.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10.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5	300	600	1,000
서의11.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6	300	600	1,000
서의12.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7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13.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서의14.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9	300	600	1,000
서의15.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서의16.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1	300	600	1,000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	350	700	1,000
처.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350	700	1,000
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2호	500	1,000	1,5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3호	700	1,400	2,000
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	350	700	1,000
허.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1호	1,000	2,000	3,000
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	350	700	1,000
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4호	1,500	3,000	5,000
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5호	5,000	5,000	5,000
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8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50	7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로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2	300	600	1,000

로의3.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3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모.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9호	350	700	1,000
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소.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오.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3호	1,000	2,000	3,000
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4호	1,000	2,000	3,000
초.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350	700	1,000
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350	700	1,000
토.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350	700	1,000
포.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350	700	1,000
호.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6호	1,500	3,000	5,000
구.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350	700	1,000
누.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3호	500	1,000	1,500
두.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350	700	1,000
루.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	법 제104조제2	1,000	2,000	3,000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제6호			
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7호	5,000	5,000	5,000
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삭제 요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역	[ ] 유통 신고 [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신고·삭제 요청 사유*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불법촬영물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삭제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삭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삭제요청인(대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6호, 2021. 6. 8., 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044 - 205 - 5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文言)·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준용한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소유·운용·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상호 간에 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접속의 대가·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제공
2. 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도난 및 정보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발전의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시 더 이상 재난안전통신 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표지물의 설치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3. 제15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 또는 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8조(미수범)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토지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206호,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044 - 205 - 5421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소유·운용·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제공의 조건·절차·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접속의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 간의 접속 조건,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그 변경된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타인의 건물·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국유·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주소
3.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그 밖에 토지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2024. 9. 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인공구조물、매설물、기기、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 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 인공구조물등의 철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별 재난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제68조、제75조、제75조의2、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2182호,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8호,2024. 5.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 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881호,2024. 9. 10.>(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 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 ”을 “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2천만원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건물과 토지 출입증

사진 2.5㎝×3㎝	① 소속/직급: ② 성명: ③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60㎜×90㎜(백상지 120g/㎡)

(뒤쪽)

④ 출입 목적:

⑤ 출입 지역:

⑥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유의사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 청구·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손실을 입은 시기

손실을 입은 장소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 방법

(이의신청 시) 보상액 통지일 및 이의신청 내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손실보상을 청구, [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관계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청구인(신청인)) → 접수 → 검토 → 의견 청취 및 심리 → 결정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결정서 송달 (청구인(신청인))

210㎜× 297㎜[백상지(80g/㎡)]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7.] [고시 제2026 - 46호, 2026. 7.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과)02 - 2100 - 01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6.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7. "변경 관리"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

제4조(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센터 하위에 운영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체계)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제15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운영센터 상황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 감시·접수 및 보고, 초동조치, 민원접수 및 처리와 제2조제7호에 따른 변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근무 체계) ① 운영센터 및 운영지소의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센터장 및 운영지소장은 교대근무자를 매월 편성하여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 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번호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사용기관에게 부여하고, 사용기관은 부여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체 번호사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2.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제8조(통화그룹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통화그룹에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 통화그룹에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이 지령장치 등에서 참여할 단말기를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주파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전파지정 기준 등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직접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타 사용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화내용 관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공통 통화그룹
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
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
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자료는 3개월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수집된 녹취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이하"중대본"이라 한다) 2단계 이상 또는 사회재난으로 중대본 가동 시 : 1년.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장기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그 밖에 보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국무총리훈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품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물품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료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자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 등 보존기간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이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

부, 지역구조본부 등이 가동되어 사용기관의 장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녹취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장이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타 사용기관의 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신 내용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요청 목적, 범위, 보존기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을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점검 및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사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합동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용 신청)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제22조의2(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현장지휘관은 재난 시 상황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상시 소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신속한 재난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황실 및 당직실(이하 "재난상황관리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 및 통신상태 점검
2. 재난상황관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요령 교육

③ 재난상황관리부서 상황근무자는 소속 시·도 및 시·군·구 공통통화그룹에 상시 참여하여 통신상황을 청취하고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 해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장애 신고) 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 부담) ① 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
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연계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 장비 등 도입)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시행 세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3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8호,202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8호,2025. 2. 24.>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6호,2026. 7.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운영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 · 인천권 경기 · 강원권 대전 · 세종 · 충청권
대구운영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43	대구 · 경북권 부산 · 울산 · 경남권 광주 · 전라권
제주운영센터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권

■ 기타 사항

1. 운영센터 및 하위 운영지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2] 주무선국 지정 가능 권역(동일 통신망으로 전국에 설치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한다.
2. 무선종사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1]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기준에 따른다.
3.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은 「전파법 시행령」[별표 17]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및 응용서비스 도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명			
주 소			
신청인(성명/직위)		연락처	이메일

신 청 내 용

순번	기기/장비/서비스 명칭	수량	제조사	규격/모델명	세부사양(SW Ver. 등)
1					
2					
3					
4					
5					

※ **첨부서류** (필요시 항목 추가·제외 등 조정 가능)

1. 개요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도입 장비·서비스 내용 ○ 예산사항 ○ 기대효과 등
2. 현황 및 문제점	○ 도입 장비·서비스 도입 전 업무 및 정보화 현황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
3. 추진 내용	○ 도입 장비·서비스 기능 및 데이터량 ○ 목표 시스템 구성 (S/W, H/W) ○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방안 등
4. 추진 체계	○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명시
5.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을 월별로 제시
6. 중점 협의 사항	○ 다양한 현안 중 행정안전부와 중점적으로 협의할 사항
7. 추가자료(필요시)	○ 도입 장비·서비스 사업계획서(안)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용역보고서 등 상세사업내용 등 ○ 상용망에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 시 소요예산 비교 검토 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4쪽 중 1쪽)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등록□, 연계□, 변경□,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명			
주 소			
신청인(성명/직위)		연락처		이메일	

신 청 내 용

<기기·장비의 **세부내역은 스프레드시트(xls 등) 파일로 작성하여 별도첨부할 것**>

순번	기기/장비/서비스 명칭	수량	제조사	규격/모델명	세부사양(SW Ver. 등)
1					
2					
⋮	⋮	⋮	⋮	⋮	⋮

신청사항

기기·장비 등록/연계/변경/해지

□ 단말기 □ 지령장치 □ 데이터 단말
□ 기타 기기/장비 ( )

서비스 등록/연계/변경/해지

□ 단말기 기반 APP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응용서비스 □ MDM 정책 적용( )
□ 기타 서비스 ( )

요청사항

※ 본 망 반입, 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 필요

위와 같이 장비/서비스의 등록/연계/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위와 같이 본 망 장비/서비스 등록/연계/변경/해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접수자 : ㊞

※ 유의사항

◦ '장비/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 등록/연계 신청서'는 검증서를 득한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이 작성하셔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비/서비스를 재난안전통신망 본 망에 등록/연계 신청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검증서와 장비/서비스 사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비/서비스 사용 목적, 서비스 구성,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하는 자유 양식의 계획서

◦ 등록/연계 신청하는 장비/서비스는 사용기관과 행정안전부 간 협의(운영,관리 등) 후 정식 사용 가능합니다.

*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및 전파사용료 납부 등 추가절차 필요**

※ 첨부 :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검증서 2. 장비/서비스 사용계획서
3.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4. 위임장(필요시)

<참고 1>

[첨부3 양식]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USIM 제작 및 등록요청]

번호	조직명	부서명(실국)	부서명(과)	사용자명(단말명)					단말기 정보								통화그룹[9]
				단말명1	단말명2	단말명3	단말명4	단말명5	유형코드[1]	제조사코드[2]	형태[3]	모델명[4]	SERIALNO[5]	IMEI[6]	ICCID[7]	전화번호[8]	
1	00구청	00국	00과	00시	00구	00과	00팀	현장대응	S	SM	스마트폰형	SM-G889N	R00R0000G6W	357643100000000	8982081000000000000	0135-000-0000	현장대응1
2																	
3																	
4																	
5																	

[작성요령] : 본 *<세부내역>은 스프레드시트(xls 등)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별도첨부할 것*

① **사용자명(단말명)** : 20자 이내로 작성할 것(공란 포함)

1) 단말명1 : 기관명(경찰-소방-해경- 군-의료-전기-가스, 지자체는 시도명)
2) 단말명2 ~ 4 : 지방청 또는 시군구
3) 단말명5 : 직위명 또는 업무명(필요시 이름)

② **단말기 정보**

1) 유형코드 : S(스마트폰형), M(무전기형), C(복합형), F(고정형), I(IoT형단말), ICS(ICS 중계기)로 구분
2) 제조사코드 : SM(삼성), AT(에이엠텔레콤), HW(한스웰), ST(에스트래픽), CT(사이버텔브릿지), GB(가보테크)로 분류
3) 형태 : "1) 유형코드"의 한글표기
4) 모델명 : 단말기에 표기된 모델명
5) 시리얼넘버 : 단말기에 표기된 시리얼 넘버
6) IMEI번호 : 숫자 15개로 표기
7) ICCID : 숫자 19개로 표기
8) 전화번호 : 부여받은 0135-000-0000 체계의 번호
9) 통화그룹명 : 사용할 통화그룹 이름

<참고 2>

[첨부4 양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인)
기 관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대리인에게 기술검증 신청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자(기관) 성 명 (인)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고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분실 시 응급조치 요령]

〈사용기관〉

○ (분실신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헬프데스크***(☎ 1588-8722)에 **즉시 구두로 신고** 후 운영센터 지시에 따름

- (신고사항) 단말기정보, 기관정보, 사용자정보, 분실장소 등

* 재난안전통신망관련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처리,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 단말기 분실 대비, 화면잠금(**드래그, 패턴, PIN 및 비밀번호**) 기능 설정요망

〈운영센터〉

○ (신고접수) 헬프데스크 상담원은 민원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상황팀장***(공무원)**에게 보고**

* 재난안전통신망 주제어·기지국시스템 상황관제 등, 24시간 365일 근무(3교대)

○ (단말기잠금) 단말기관리시스템(MDM, Mobile Device Management)에서 해당 단말기 **잠금처리* 및 습득자에게 분실 안내문자** 발송**

* <McPTT> 송·수신 차단, <VoLTE> 송신 차단

** "분실 단말기입니다. 습득하신 분은 1588-8722로 연락 바랍니다."

〈사용기관 상황실〉

○ (위치확인) 사용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지령장치(GIS지도)**를 통해 분실단말기 위치 확인 가능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23.] [고시 제2023 - 48호, 2023.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과)044 - 205 - 54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운영절차"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 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상호통신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나. 상호통신 참여기관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통화그룹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상호통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3. "상황관리"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초동조치, 상황의 지휘·조정·통제,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4. "현장관리"란 재난현장 지휘에 필요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5. "협업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에 따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2장 표준운영절차의 관리

제4조(관리체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조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조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조정한다.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조정한다.

⑥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관 재난안전 관련기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조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준운영절차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가 일관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 사항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 사항
3.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작성 기준
4.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할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운영절차의 수립) ① 「재난안전통신망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는 제5조제1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연계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적 여건으로 연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운영절차의 확정)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주관·조정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운영절차의 전산·자동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체계를 전산·자동화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전산 장비와 응용 기술이 표준운영절차에 부합하도록 개발·제품화되어 있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제11조(활용 원칙)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운영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표준운영절차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용 방법)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
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
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상시 상황 공유 등)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등 상시 상황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상시 송·수신 체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정보화 서비스 개발·도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개발·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도입하는 정보화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조(활용 자원 확보 등)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운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자체 보유한 자원 중 일부를 다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응원·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용 현황의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표준운영절차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 23호,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8호,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48호,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안전통신망 자원 확보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확보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단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자체 편성 또는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각급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별 1식 이상
소방청 (긴급구조통제단)	단말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체 편성 또는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한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해양경찰청 (구조본부)	단말기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등 자체 구성 및 운영 체계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한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경찰청	단말기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 자체 구성 및 관리체계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시·도 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단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별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의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국방부	단말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 재난안전관리에 지원에 필요한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기타 협업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단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급 재난안전상황실별 1식 이상

※ 지령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지령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시행 2024. 6. 28.] [고시 제2024 - 9호, 2024. 6. 28.,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061 - 338 - 46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
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요소를 말한다.
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
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변위의 한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성 · 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
   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 - 2호,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5호,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25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방송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 - 16호,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 - 115호(2006.11.29.)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6 - 5호,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15호,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22 - 3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관련 별표 2의 제4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관련 별표2의 제4호는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 - 9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안전성ㆍ신뢰성 기준) 별표 1 관련 제1장 제1절 6의2, 6의3, 6의4 및 제3장 제2절 1호, 2호, 3호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 표 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제4조 관련)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일반기준**								
1. 대체접속계통의 설정	o 교환망의 경우 두개의 중요통신국사 간을 연결하는 접속계통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신국사를 경유한 우회 접속계통을 마련한다.	★	★	★	○	-	○	○
2. 복수 전송로의 구성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방송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구성한다.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3. 분산 수용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방송통신회선은 복수의 전송로설비로 분산 수용한다.	★	★	★	○	○	○	○
	o 전체 가입자의 통신 트래픽이 한 개의 통신국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수의 통신국사에 분산하여 장애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o 단일 통신국사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국사의 장애 발생 시 다른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	○	○	○	○	○	○
4. 전송로설비의 동작 감시	o 중요한 전송로설비의 동작상황을 감시하고 설비고장 또는 품질 저하시 이를 신속하게 검출 통보하는 감시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o 상기 설비에 대해 고장 등을 검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비설비로 전환하거나 고장 등을 수리한다.	★	★	★	-	★	-	○
5.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상황을 감시하고 천재지변등에 의해 특정통신국사에 트래픽의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운용자에게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신속히 검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교환설비에는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호의 불접속에 의한 재호출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이상폭주를 통지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6. 통신의 접속 규제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상폭주 또는 특정교환설비 등에 발생된 이상 트래픽이 전체망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의 접속을 규제하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6의2. 코어망(백본망) 오류 확산 방지	o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 오류가 전체 코어망(백본망) 오류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망 구조를 계층화하여야 한다. -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들은 라우팅 프로세스 분리, 라우팅 전파 개수 제한 또는 필터링 기능 등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계층 간 오류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망 구조 등에 따라 오류 차단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	○	○	○	○	○
6의3. 코어망(백본망)과 가입자망 분리 구축	o 지역 가입자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코어망(백본망)을 경유하여 타 지역 가입자망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가입자망 혹은 가입자망 장비를 지역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가입자망 장비들은 고정형 라우팅, 접근제어목록 및 필터링 기능을 이용한 동적 라우팅 또는 지역별로 구분한 라우팅 방법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예: 지역별 독립 자율시스템 적용) 등을 적용하여 오류가 타 지역 가입자망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의4. 무선망 인터넷 접속 이중화	o 무선망 사업자는 평시에 활용하는 인터넷 접속경로 이외에도 재난 및 장애 시 활용 가능한 "별도의 인터넷 접속경로"(예, 타 사업자 접속경로 추가 확보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	-	-	-
7.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	o 회선고장, 이상트래픽 폭주 등의 망상태를 종합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검지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을 구비한다.	○	○	○	-	○	-	○
8.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o 이용자의 식별 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을 취급하는 방송통신망에는 정당한 이용자임을 식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인증 기능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	-	★	-
	o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망 접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⑨, ⑩항을 제외한 이동통신망의 경우는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 불법 복제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	-	★	-	-	-	-
	o 방송통신설비의 접근영역이나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능을 설정하는 등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o 이용자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검색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강구한다.	-	-	-	-	-	○	-
	o 접속 실패 횟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값을 초과한 것에 대해 검지하여 시스템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o 프로그램 데이터등 보호가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요구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o 부정접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 대한 접속 이력의 표시 또는 조회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o 일정기간 이상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o 일정기간 이상 방송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9. 예비기기 등의 설치	o 중요한 통신설비가 자체만으로 신뢰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 고장발생률, 복구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기를 설치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o 예비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용중인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비기기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한다.	★	★	★	★	○	★	○
10. 시험기기의 확보	o 방송통신설비를 시공, 관리 또는 운용하는 사업장에는 그 설비를 점검 또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	★	★	★	★	★	○
11. 통신량 측정 자료의 기록	o 교환설비(회선교환, 패킷교환, ATM교환 등)는 이용자 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 횟수 또는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	★	★	★	-	★	-
12. 통신설비 등	o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등은 별표 2의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지진대책 **제2절 옥외설비**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풍해 대책	o 방송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주1)
주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자가통신설비에 한함								
2. 낙뢰 대책	o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뢰에 따른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3. 진동대책	o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진동에 대해 고장 등의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4. 지진대책	o 옥외설비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5. 화재 대책	o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불연화 또는 난연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6. 내수 등의 대책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내수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압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7. 수해 대책	o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2개년 이상 침수된 지역의 경우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폭우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토사지대와 같이 지반이 약한 지대의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매설하여 시설하도록 한다.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 선로설비를 제외한 옥외설비가 설치위치의 지형구조상 붕괴우려가 있는 산비탈, 절개지 등을 끼거나 10 m 이내 주변지대보다 2 m 이상 낮은 위치에 시설되는 경우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과 옥외설비와의 사이 적정한 위치에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시설하거나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의 자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하도록 한다. o 맨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함체 등은 다른 설비에 피해를 주거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	-	○	★	○	○
	- 지하통신구의 개구부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침수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	★	-	○	★	-	○
8. 동결 대책	o 동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결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9. 염해 등 대책	o 염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장해 또는 분진으로 인한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10. 고온·저온 대책	o 고온도 또는 저온도 장소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o 온도차가 심한 장소 또는 온도변화가 심한 환경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11. 다습도 대책	o 다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습도조치, 방수조치 등을 강구한다.	○	○	○	○	○	○	○
12. 고신뢰도	o 해저, 우주공간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해야 할 중요한 옥외설비는 고신뢰도 부품을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사용한다.							
13. 제3자의 접촉 방지	o 쉽게 제3자가 설비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o 도로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o 맨홀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	★	-	○
제2장 통신국사의 조건								
1. 입지조건	o 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하거나 선정한다. -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방풍, 방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력한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없는 곳. 다만, 전자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적은 장소	★	★	★	★	★	★	○
2. 통신국사 조건 및 선정	o 임차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	○	○	○	○	○	○
	o 통신설비 수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
	o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을 따른다.	○	○	○	○	○	○	○
	o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구조내력이 충분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	○	○	○	○	○	○
3.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	o 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계실은 타실에서 사고나 화재의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기계실로 설치한다.	★	★	★	★	★	★	★
	o 임차 통신국사내의 바닥, 내벽, 천장 등의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제2장제2호에 의한 통신국사내 통신기계실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은 별표 2의 지진대책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
	o 중요한 통신설비설치용 기계실은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신설비가 적정관리되도록 한다.	★	★	★	★	★	★	★
4. 출입제한 기능	o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안내와 감시장치등의 출입통제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5. 화재대책	o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국사는 다음과 같은 화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주요시설에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단, 냉방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경우에는 열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통신기계실 및 전원설비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는 통신설비와 전원설비에 저해를 주지 않는 소화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가통신사업설비 및 자가통신설비는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	★	★	★	★	★
	- 주요시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마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을 사용한다.	★	★	★	○	★	○	○
6. 온·습도 관리	o 통신기계실은 온습도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다.	○	○	○	○	○	○	○
7. 분진·유해가스 관리	o 통신기계실은 부식성 가스(SO_2 등)나 분진이 혼입할 경우 촉매, 필터 등에 의해 이를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 설비			
	배제하는 기능을 갖춘다.							
8. 수해 대책	o 수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신국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국사의 출입구는 지상에 위치해야 하며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침수 높이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	★	○	○	○	○
	- 통신국사 내 주요시설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지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침수의 우려 없도록 방수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지하공간의 출입구에는 침수 방지턱을 설치한다. 다만,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제3장 관리기준 제1절 통신망 보전 운용관리								
1. 기준의 설정	o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운용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집계, 관리한다.	★	★	★	★	★	★	○
2. 상호접속 대응	o 상호접속을 하는 경우는 설계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간 조정을 시행한다.	○	○	○	○	○	○	○
	o 상호접속에 대한 작업의 분담, 연락체계, 책임범위 등의 보전·운용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제2절 방송통신망 오류 예방과 대응								
1. 취약점 분석평가	o 1년에 1번 이상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한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재난 및 장애 등으로부터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설비(코어망(백본망)을 구성하는 장비 등)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 설비			
2. 네트워크 설정 작업 모의 시험 체계 구축 운용	o 사업자는 코어망(백본망)과 관련된 신규 장비의 개통, 망 구조 변경 등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모의 시험체계에서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에 의한 통신장애·재난 및 서비스 제공 시 지연·끊김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오류 수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상용망과 유사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최신 장비를 사전검증하는 경우 장비공급자의 모의 시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전검증한 동일 장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장비 설정 명령어 등을 모의시험체계의 동일 장비에 설정·확인하는 것으로 사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	○	○	○	○	○
3. 중앙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 운용	o 네트워크 설치·운용자는 네트워크 설정 작업에 필요한 접근통제, 작업통제, 명령어 통제 등이 포함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작업관리 내부 규정, 작업의 중요 등급에 따른 작업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승인된 네트워크 설정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	○	○	○	○	○
제3절 데이터의 관리								
1. 데이터의 복원	o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이터등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전산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한다.	★	★	★	○	○	★	○
2. 데이터의 보관	o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보관고에 보관한다.	★	★	★	○	○	★	★
	o 데이터보관실 및 데이터보관고는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하고 안전한 데이터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o 데이터보관실 또는 데이터보관고가 전자파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	★	○	○	★	★
	o 광역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데이터 파일 등은 재해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다른 중요통신국사 또는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국사내 장소에 보관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o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전도 및 이동을 방지하도록 데이터 보관실에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3. 중요한 데이터 기록물의 관리	o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등에 관한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및 복원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관리한다.	★	★	★	○	○	★	○
	o 분류된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정하여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및 보유자 제한 등을 관리한다.	○	○	○	○	○	○	○
	o 통신비밀에 관련 가능성이 큰 데이터는 관계자의 비밀보호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한다.	★	★	★	○	○	★	○
제4절 비상사태의 대응								
1. 응급복구대책의 수립	o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을 수립한다.	★	★	★	★	○	★	○
	o 중요한 전송로 설비에는 응급복구용 케이블 등을 구비하여 재난발생시 임시적인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
	o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동형 기지국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방송통신회선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
2. 비상상태 대응	o 복구대책의 실시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	○	○	○	○	○	○

현 행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자가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기타 역무설비			
체제의 명확화	시행한다.							
	o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시의 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o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관련된 연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o 광역 응급구호 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o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별표 2]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 지진대책 기준(제5조관련)

1. 지진대책 설비 및 성능목표

1-1.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구분			세부 항목
수용건물		통신국사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통신설비	통신장비류	통신장비	o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o 기지국 송수신 장치 o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전원설비	o 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부대설비	o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옥외설비	철탑시설	o 대지에 직접 시설하는 철탑(강관등에 의하여 구성된 것) 및 철주(원통, 삼각 및 사각주, 강관에 의한 각주 등) o 옥상에 시설되는 철탑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철주
		선로구조물	o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1-2. 성능 목표

가. 제1-1호의 통신국사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함)에 따른다.

나. 제1-1호의 통신설비에 대한 성능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

구분		성능수준	내진등급	재현주기
통신장비류	통신장비	기능유지	특등급	2400년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철탑시설	장기복구	특등급	1000년
		붕괴방지		2400년
	선 로 구조물	장기복구	1 등급	500년
		붕괴방지		1000년

주)1.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는 통신국사 등 수용 구조물의 붕괴방지 상태에서 이용자 간 단말서비스 통신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통신장비류의 시설 위치를 아는 경우 내진등급 및 재현주기는 수용 건물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3. "붕괴방지"는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는 수준이다.
4. "장기복구"는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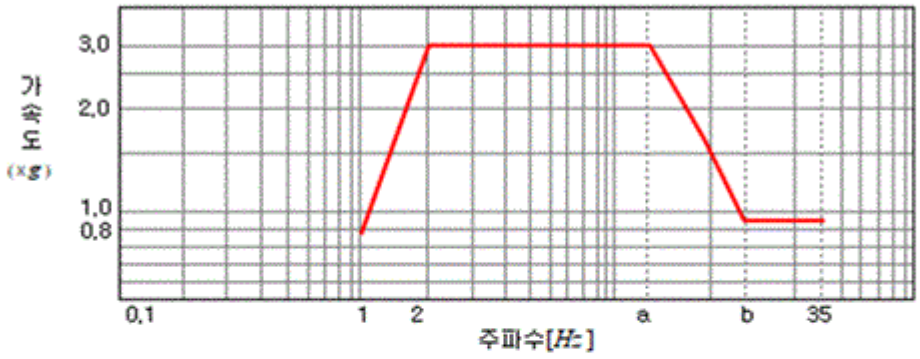
2. 지진대책 기준

가. 제1-1호의 통신국사

1) 통신국사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등급 특등급 또는 I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또는 건물의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급에 따른다.

나. 제1-1호의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1)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그림 1의 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에서 기능유지가 되는 내진성능을 가져야 한다.



※ g = 9.8 m/s^2(중력가속도)

[그림 1] 층응답스펙트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1)에 적용되는 변수

가) a = (35/3)Hz, b = 2a

나) 영주기 가속도는 0.9g로 한다. 다만, 통신장비 등의 시설 위치가 명확한 경우 영주기가속도를 다음의 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사용

할 수도 있다.

$$(\text{영주기가속도}) = 0.4 S_{DS}\left(1+2\frac{z}{h}\right)$$

S_{DS}: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통신국사 적용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h: 건물의 높이

z: 통신장비 설치 위치의 높이

다) 1 Hz에서의 가속도는 0.75g이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에 따른다.

라) 감쇠비(damping ratio)는 2 %를 적용한다.

마) 2 Hz에서 a까지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3g로 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3.3배로 한다.

바) 차단주파수는 b로 한다.

사) 1 Hz에서 2 Hz 및 a에서 b 주파수 구간의 변화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및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 레벨을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암반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4)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경우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의 내진등급은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진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5) 통신장비, 전원설비 중 정류기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검증하여야 하며, 시험 검증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은 제2호나목1)에서 정한 층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6)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되어야 한다.

다. 제1-1호의 옥외설비

1) 지면에 시설되는 옥외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설계 변수를 사용하여

다만, 옥외설비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계수의 지진구역 1을 적용하고 지반의 분류는 깊고 연약한 지반(S_5)을 적용한다.

3)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건물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제2호 나목의 그림1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면에 시설하는 철탑의 내진등급은 건축구조기준의 특등급을 적용하고,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은 당해 건물의 내진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5) 선로구조물의 내진등급은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I 등급을 적용한다.

6) 철탑시설 등의 풍하중이 지진하중보다 크면 풍하중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옥외설비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되어야 한다.

8) 검증시의 응답스펙트럼은 제2호다목1) 부터 3)까지에 의하여 정한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진대책외 다른 방법으로 지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3. 지진대책 검증

가. 시험 검증방법

1) 시험 대상 설비의 실물 모형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 모형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역학적 유사성을 갖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제3호가목1)에 의한 시험 대상 실물 또는 모형을 진동대 위에 설치한다.

3) 제2호나목5)에 의한 시험 검증용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진동대에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시험한다.

4) 통신장비에 대한 검증은 실제 통신신호 전송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험용 통신장비를 선로와 단말장치 또는 신호 검출기 등에 연결한다.

나. 해석검증방법

해석검증은 대상 시설별로 구조 특성에 적정한 지진해석방법을 사용

하고, 실제의 설치 방법에 부합된 모델링을 하여 1-2호의 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재시험 조건

이미 시험 검증한 대상 설비 중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시 시험하여야 한다.

1) 통신장비내 회로보드의 외부 단자 접속 커넥터 모듈의 형태 변경시
2) 통신장비내 회로보드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여 개발한 것이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라. 판정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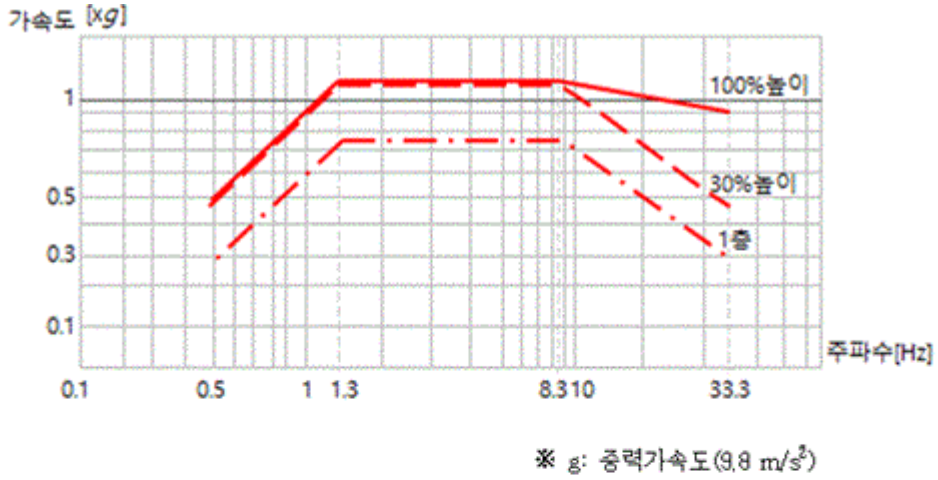
1) 내진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내진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진 시험후 물리적인 파손이 되지 않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4) 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1-2호의 성능목표에 따른 해당 성능수준 및 근거 기술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1-1에 의하여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중 통신장비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면진장치(이하,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면진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목표는 1-2. 성능목표 나목에서 정한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를 준용한다.

나. 층응답스펙트럼 기준

1) 통신장비류의 지진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진장치의 성능수준은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그림 2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 지진시험에서 1-2. 성능목표의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면진장치 지진시험을 위한 층응답스펙트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2)에 적용되는 변수

가) 영주기 가속도(주파수 33.3 Hz)는 0.9g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위치가 명확한 경우 제2호 나목의 2)-나)와 같이 영주기 가속도를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나) 1.3 ~ 8.3 Hz 구간의 증폭가속도는 1.2g이다. 다만, 영주기 가속도를 직접 산정한 경우에는 영주기 가속도의 2.5배를 적용하되 $1.6S_{DS}$보다 큰 경우 $1.6S_{DS}$로 한다. 즉, 증폭가속도는 건물의 30 % 이하 높이에서부터 계산에 맞추어 저감할 수 있다.

다) 0.5 Hz에서의 가속도는 나)에 의한 증폭가속도의 2/5로 한다.

라) 0.5 ~ 1.3 Hz 구간과 8.3 ~ 33.3 Hz 구간의 가속도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마) 감쇠비(damping ratio)는 5 %를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가속도 레벨에서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암반 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다.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 조건

1) 면진장치는 지진에 의한 변위가 나목에서 정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시험에서 확인되는 수용변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면진 거동 변위에 의하여 주변의 다른 설비 또는 구조 요소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통신장비류의 연결 선로 및 배선 등은 지진 시 면진장치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 검증

1) 면진장치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2) 시험하기 위하여 면진장치 위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등은 실제의 구조물 및 설치 방법과 역학적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
3)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진동대로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하여 가진 시험한다.
4)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면진장치의 면진성능을 시험한다.
5)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2호 지진대책기준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내진성능을 검증한다.

마.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판정조건

1) 면진장치는 시험 후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
2) 시험 후 면진장치의 받침 상판은 가진 전 최초 교합 상태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된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통신장비 모형 등은 시험 중 및 종료 후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이 없어야 하고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
   가)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시행 2022. 2. 15.] [공고 제2022 - 7호, 2022. 2. 15.,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061 - 338 - 4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공고는 기술기준 중 지진대책 기준에 대한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② 이 공고는 기술기준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하는 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설치ㆍ제조업체, 내진시험기관 및 적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를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기능이상과 외부손상 여부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2. "해석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의 구조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모델링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외부손상 여부와 변위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3. "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해 시험대상설비에 인가하여야 하는 최소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기술기준 별표 2에서 제2호 ‘ 나 ’ 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하고 제4호 ‘ 나 ’ 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고 한다.
4. "시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한 시험검증시 시험대상설비에 실제로 인가된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5. "간섭함수"라 함은 주파수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6. "상호상관계수함수"라 함은 시간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7. "가진"이라 함은 시험검증을 위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가속도를 시험대상설비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주기가속도"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의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수렴하는 가속도 값으로서, 시간영역에서 지진파의 최대 가속도를 의미한다.
9. "차단주파수"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에서 지진가속도가 영주기가속도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주파수로서, 진동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주파수를 의미한다.
10. "공진검색시험"이라 함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시험 후 시스템의 변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를 탐색하는 가진 시험을 말한다.
11. "응답변위법"이라 함은 지하 구조물과 주변 지반 관계에서의 경계조건과 지진 시에 생기는 지반 변위에 의한 지진 하중을 모델링하여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관련 용어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장 일반 조건

제4조(시험대상설비) ① 시험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장비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장치
2. 전원설비 : 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3. 부대설비 :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이하 바닥시설이라 한다.)
4. 옥외설비
   가. 철탑시설 :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대지 또는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과 철주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철주
   나. 선로구조물 :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② 시험대상설비의 검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통신장비와 제2호의 전원설비 중 정류기는 시험검증을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의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제3호의 바닥시설 및 제4호의 옥외설비는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시험결과 판정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는 시험검증을 수행한다.

제5조(응답스펙트럼의 조건) ①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며,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②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기술기준에서 제시된 건축물등급, 지역계수 및 지반분류를 이용하여,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한다.

③ 층응답스펙트럼은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해당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기술기준 별표2에서 제시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④ 바닥시설에 설치될 장비를 별도로 시험할 경우, 요구응답스펙트럼은 바닥시설 상단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⑤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제11조의 조건에 따라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락하여야 한다.

⑥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은 면진장치가 건물 높이의 30 % 이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0.5 Hz ~ 8.3 Hz 구간 적용 경감율
   가. 1/5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13 %
   나. 1/10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25 %
   다. 1 층에 설치되는 경우 38 %
2. 8.3 Hz ~ 33.3 Hz 구간은 계산된 영주기가속도까지 로가리듬 단위로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제6조(시험대상설비의 구성) ① 시험대상설비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다만,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시험대상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③ 바닥시설과 통신장비를 함께 시험하는 경우, 진동시험대의 바닥면과 시험대상설비 사이의 바닥시설은 실제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④ 바닥시설을 별도로 시험하는 경우, 바닥시설 위에 설치될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설치한다.

제7조(시험검증절차) 시험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행 전 관련 서류와 시험대상설비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구비요소 및 구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
   가. 시험대상설비 외부의 변형 및 파손 상태
   나. 통신, 전원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선 연결상의 문제점
   다. 고정방법의 적절성
   라. 변위측정장치, 가속도측정장치 등의 센서 설치 위치 및 상태
   마. 시험대상설비의 전원, 디스플레이, 스위치 및 데이터 처리 등의 동작상태
3. 제2호의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고 재검사한다.
4.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가진한다.

5. 제17조의 판정조건에 따른 적합 유무를 확인한다.
6.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와 감쇠비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 가진시험 전과 후에 측정한다.

제3장 세부 조건

제1절 구성 요소

제8조(시험 구성 요소) 시험검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동대
2. 시험대상설비
3. 변위측정장치
4. 기능시험을 위한 측정장치
5. 가속도 측정장치
   가. 동작범위 : 1 Hz ~ 50 Hz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진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0.5 Hz ~ 50 Hz이상이어야 한다.
   나. 오차범위 : 5 ㎝/s2 이하
   다. 설치위치 : 진동대면 및 적절한 위치

제9조(진동대의 조건) ① 진동주파수범위의 최저주파수는 1 Hz 이하, 최고주파수는 50 Hz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3축(X/Y/Z)으로 동시에 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1축 또는 2축 진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조건을 따른다.

③ 진동대는 각 축 방향에 대해 간섭함수값 0.5이하 또는 상호상관계수함수값 0.3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시험대상설비의 설치 조건 및 방법) 시험대상설비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시험대상설비를 모형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비와 유사한 질량을 가지고 전체 대상설비의 무게중심이 유사하도록 구성하며, 모형의 내진 강도는 실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시험대상설비의 하단부를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형력이 가장 크도록 설치한다.
4. 설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모듈로 된 대상설비는 실제 설치되는 캐비넷 또는 랙의 최상단에 설치하여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5. 캐비닛 또는 랙의 쉘프 단위 블록이 비어 있는 경우, 유사한 모조 질량의 가공품을 탑재하여 시험한다.

제2절 시험응답스펙트럼

제11조(시험응답스펙트럼의 조건) ① 시험파형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최대 가속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최대 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90%(오차범위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시험주파수 범위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이상의 가속도 값을 가져야 한다.

③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증폭주파수 대역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가속도값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응답스펙트럼이 50 %를 초과한 경우, 시험대상설비가 제17조의 판정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시험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 이하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

1. 3.5 Hz로부터 차단주파수까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어떤 한 주파수에 대하여 인접한 1/6옥타브 지점이 최소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동등하고, 인접한 1/3옥타브 지점이 최소 10 %이상이면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10 %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시험응답스펙트럼의 1/6옥타브 간격 분석에 의하여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가속도 값을 갖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점들이 각각 "가" 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서로 1옥타브 이상의 주파수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1 Hz 에서 3.5 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최저 공진주파수가 5 Hz 이상에 존재하는 경우, 1 Hz에서 3.5 Hz 주파수 범위에서 허용한다.
   나. 5 Hz 미만의 주파수 범위에서 공진이 일어난 경우, 가장 낮은 공진주파수의 70 %까지 허용한다.
3.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영역에서 시험시료(면진장치가 포함된 방송통신장비)의 최저 공진주파수가 0.67 Hz ~ 1.0 Hz인 경우, 최저 공진주파수의 75%(오차범위 ±10%)까지 허용한다.

제3절 실행조건

제12조(가진방법) ①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지진파를 각 축에 동시에 적용하여 가진한다.

② 가진 주파수범위는 사용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진파형은 첨두가속도 값이 최고 가속도의 25 % 이상인 상태를 15 초 이상 유지하는 구간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구간에 최고 가속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1축 또는 2축 진동대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3축 진동대 시험에 의한 동시 가진 효과를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한다.

⑤ 가진 시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면진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별표 2 제2호 성능기준에 대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2 회 실시한다.
2.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를 포함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 후,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한다.

제13조(벽면시설검증) 제4조의 시험대상설비가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벽면의 내력과 유사한 구조물을 구성하여 시험한다.

제14조(해석적용조건) ① 제4조제2항에 의한 해석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바닥시설 및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철탑시설은 기술기준 별표 2의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2. 지면에 설치하는 철탑시설과 통신용 전주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 규정한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3. 통신구, 관로, 맨홀은 응답변위법을 사용하고, 통신구의 구체적 조건은 공동구 설계기준 (KDS 11 44 00)의 해석방법을 준용한다.

② 해석을 적용하는 대상 설비의 모델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 부품, 지지요소 및 결속부 등의 강성과 강도는 실제 사용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에 영향을 주는 질량분포는 대상설비의 설치 상태의 값을 반영하여야 하고 해석모델과 설계(실물)모델의 무게 편차는 10 % 이내로 한다.
3. 해석 대상설비의 고유주기는 측정, 해석 등을 통해 도출된 물리적 특성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외 사용 조건은 실물 설치와 최대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도록 한다.

제4장 결과 처리

제15조(시험결과 보고서) ①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결과 요약서 (별표 1)
2. 시험대상설비의 규격과 기능, 센서의 설치 위치, 기능시험을 위해 설치한 측정장치의 종류 및 연결 방법 등
3. 시험응답스펙트럼과 각 축에 적용된 가진 데이터
4. 공진검색시험에 의한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와 감쇠비

5. 시험검증절차를 확인을 위해 사용된 모형과 설치 과정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
6. 기술기준 [별표2] 제2호 나목의 2) - 나) 및 제4호 나목의 2) - 가)에 따라 영주기 가속도를 직접 계산하여 사용한 경우 시험결과가 유효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및 건물 내 설치 높이
7. 시험결과
   가. 시험 전、후, 시험 중 대상설비의 전기, 통신 등 기능수행 상태
   나.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
   다. 시험대상설비의 손상 상태

②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경우,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를 추가로 포함한다.

1.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시험결과 요약서(별표 3)
2. 면진장치의 종류, 구조적 규격(장치 사양) 및 성능 규격
3. 시험용 탑재물 하중 및 형태
4. 면진장치에 대한 공진 주파수 탐색 수행 내용 및 결과
5.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 ‘ 나 ’ 목에 의하여 시험에 사용한 층응답스펙트럼 내역 및 시험응답스펙트럼
6. 면진장치를 사용한 시험대상 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의 가속도, 상대 변위 등 면진 기능 특성으로 나타난 계측 내역
7. 가진 시험 전、후 면진장치와 시험대상 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의 변화 상태
8. 면진장치의 발생 변위값
9. 기타 사항(필요시)

제16조(해석결과 보고서) 해석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내진 해석결과 요약서(별표 2)
2.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
3. 입、출력 데이터와 해석모델 정보
4. 해석 대상설비의 접합부 내력 및 앵커링 등 지지력
5. 요구성능(허용응력 및 한계상태)

제17조(시험결과 판정조건) ① 통신장비, 전원설비, 바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진시험 후 다음 각 목과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가.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나.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다.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라.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마. 바닥시설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정부분 이탈
   바.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사.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2. 내진시험 중과 완료 후 유지되어야 하는 전기 및 통신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장비는 통신신호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원설비는 전원공급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통신장비류는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면진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1) 내외부 구성품의 파손

2) 면진 부품의 기능 상실

3) 구성품 간 연결 부품의 이탈

다. 면진장치의 하부 구성재와 시험대상설비가 올려지는 상부구성체는 가진 전의 최초 교합 상태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구조물의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의 파손이나 이탈 등이 없어야 한다.

다. 가진 전 시설 위치로부터 가진 종료 후 진동대 외부에서 관측되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3. 면진장치와 시험대상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을 설치한 방법에 따라서 추가된 구성 재료 또는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

가.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③ 옥외설비의 성능 판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붕괴방지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붕괴방지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탄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주변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손、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시험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구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장기복구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부분적으로 비탄성 변형이 발생되어도 복구 방안이 마련되어 일정 기간 내 복구가 가능한 부분적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는 파손、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시험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해석결과 판정조건)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하여 판정하며 그 세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에 의한 판정이 요구된다.
   가. 대상설비 구성품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대상설비의 지지 및 결속 부분에 나타나는 응력이 허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붕괴방지와 장기복구에 대한 것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대상 시설 및 해석방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허용 변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 - 14호,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 - 1호,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 - 92호,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시험방법 시행일 이전에 해석방법이 적용된 옥외설비, 전원시설, 바닥시설 등은 이 시험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시험방법 시행일 이전에 해석중인 옥외시설, 전원시설, 바닥시설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2 - 7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시험방법은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시험은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결과 요약서 (예시)

시험 책임자 : (인)

1.시험대상설비명			
2.의 뢰 자			
3.시험기간	202 . . . ~ 202 . . .		
4. 시험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고
기능 확인	통신장비 신호전송상태		
	전원설비 전원공급상태		
구조 성능 확인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75 ㎜)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이중마루구조물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정부분 이탈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옥외 설비 확인	(장기복구수준) 옥외설비의 부분적 손상 여부 및 일정 기간 내 복구 대책 마련 여부		
	(붕괴방지수준) 옥외설비의 붕괴방지 설계여부, 내부 통신설비 및 선로가 있는 경우 안전성 확인		
5. 판정결과			

[별표 2] 방송통신설비의 내진해석결과 요약서 (예시)

해석 책임자 : (인)

1.해석대상설비명			
2.의 뢰 자			
3.해석 수행 기간	202 . . . ~ 202 . . .		
4. 해석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 고
내진성능목표 달성 여부			내진등급 : 내진성능수준 :
(기능유지수준) 통신설비, 지지(결속)부 및 기타 부재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여부			
(장기복구수준) 옥외설비의 부분적 손상 여부 및 일정 기간 내 복구 대책 마련 여부			
(붕괴방지수준) 옥외설비의 붕괴방지 설계여부, 내부 통신설비 및 선로가 있는 경우 안전성 확인			
5. 판정결과			

[별표 3]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시험결과 요약서(예시)

시험 책임자 : (인)

1. 면진방법, 유형 등			
2. 의 뢰 자			
3. 시험 수행 기간	202 . . . ~ 202 . . .		
4. 시험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 고
면진장치 상태	내외부 구성품의 파손		
	면진 부품의 기능 상실		
	구성품 간 연결 부품의 이탈		
	복원 성능 상실		
	기타 면진 기능 상실		
탑재물	구성품의 파손 또는 이탈		
	물리적 파손		
	설비 원형 보존 상태		
	상단 변위 : 75 ㎜ 이하		
	가진 전 면진장치 상부 시설 위치로부터 가진 종료 후 진동대 외부에서 관측되는 이탈		
	탑재물 자체의 기능성이 있는 경우 그 기능유지 상태		
	탑재물이 통신장비인 경우 시험 중 및 시험 후 통신신호 전송의 정상 상태		
기타	면진장치 또는 탑재물을 설치한 방법에 따라서 추가된 구성 재료 또는 부품의 파손		
5. 판정결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9. 6.] [예규 제193호, 2024. 9. 6., 폐지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02 - 3400 - 23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0조·제31조·제43조·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제21조·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통신국사"란 유·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
3.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4.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Digital Unit) 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
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하거나 각 지소의 조사구역을 확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등 필요한 경우 각 지소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① 각 지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관할구역은「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3조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각 지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소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처분권자)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구역 지소장이 한다.

② 제4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 각지소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경우 관할 지소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일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시험 절차

제6조(조사의 대상)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
   가. 교환설비
   나. 전송설비
   다. 선로설비
   라. 정보통신설비
2. 인명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
3. 유관기관·단체가 적합 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
4. 기술기준 적합 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방송통신설비
5. 지소장이 적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통신설비

② 제1항의 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요통신시설 : A~D등급 통신국사
2. 일반통신시설
   가. 기타㉮급 :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교환, 통합) 국사 및 분기국사
   나. 기타㉯급 : 기지국 집중국사
   다. 기타㉰급 : 회선 미보유 사업자의 교환·전송·선로설비

제7조(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①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시험 및 기록·관리를 면제한다.

제8조(조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재해·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조사주기에 따른다.

1. 중요통신시설(A~C등급) : 1년
2. 중요통신시설(D등급) : 2년
3. 일반통신시설 기타㉮급 : 5년, 기타㉯급 : 5년, 기타㉰급 : 3년

③ 제2항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기타㉯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③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④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제10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지소장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
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4. 내진 성능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
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제11조(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한 공무원은 기술기준 적합조사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평가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

제3장 행정처분 등

제14조(부적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치)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 위반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1조·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 전의 절차) ① 지소장은 행정처분(과태료 등)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소장은 과태료 부과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행정처분의 이행 확인)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정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보고 및 통지) ① 지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과 세부 조치내역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반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연간 기술기준 적합조사 일정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평가표를 매년 조사 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소가 조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관리)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파방송통신시스템(K-RABI)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및 조사계획 등은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호,2024. 9. 6.>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69호, 2021. 4. 12.)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내진조사 기준

1. 서류 검사

조 사 대 상			판 정 조 건	확 인 방 법
수용 건물		<통신국사>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o 특등급 또는 I 등급 설계 여부 ※ 임차국사는 그 건물의 등급에 따름	o 설계도서
통신설비	통신장비류	<통신장비> o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o 기지국 송수신 장치 o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o 내진 시험 중 통신신호 전송의 장애 여부 o 변위폭 기준 준수 여부 o 물리적 손상 여부	o 시험 또는 해석 결과 보고서 - 시험 또는 해석 시 험결과, 요약보고서의 이상 유무 및 판정 결과 확인
		<통신장비 운용을 위한 전원설비> o 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부대설비> o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o 구조의 건전성 여부	
	옥외설비	<철탑시설> o 대지에 직접 시설하는 철탑(강관등에 의하여 구성된 것) 및 철주(원통, 삼각 및 사각주, 강관에 의한 각주 등) o 옥상에 시설되는 철탑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철주	o 물리적 손상 여부	
		<선로구조물> o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o 물리적 손상 여부	

※ 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

2. 육안 검사

육안검사는 실제로 설치된 설비가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설비인지를 확인하고,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o 통신장비류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설비와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같은지 확인
- 시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앵커나 고정 볼트인지 확인
- 고정 앵커 또는 볼트의 설치 방법 (설치 위치, 개수 등)
- 볼트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o 옥외설비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설치 방법, 구성 및 재질 등이 동일한지 확인
- 고정 장치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별지 제2호]

입회자 확인서

확인일시	년 월 일(:)	국소명	
사업자명		법인번호	
설치장소			
담당자		연락처	
확인결과			
○ 기술기준 위반사항 - - - - - - - -		○ 권고사항 -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입회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성명 : (서 명)

○○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3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

[OO전파관리소]

관서명	점검대상(개소)	점검실적(개소)	조사결과(개소)		조치내용(건)		
			적합	부적합	과태료 부과	시 정	권 고

세부 조치내역

순번	관서명	사업자명	국소명	선지장소	등급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치내용	위반항목*	시정내용	권고내용

*(위반항목) 1. 보호기 및 접지, 2. 예비전원설비, 3. 절연저항 및 누화, 4. 대체접속 계통 설정 여부, 5. 복수 전송로 구성, 6. 분산 수용 여부, 7. 전송선로 설비의 동작 감시, 8. 교환설비의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9. 교환설비의 통신 접속규제, 10.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 11.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12. 예비기기 등의 설치, 13. 시험기기의 확보, 14. 교환설비의 통신량 측정 자료 기록, 15. 옥외설비 설치 기준, 16. 통신국사의 입지조건, 17. 통신국사의 조건 및 선정, 18.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 19.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출입제한 기능, 20. 통신국사의 화재 및 수해대책, 21. 통신기계실의 온·습도 관리, 22. 통신기계실의 분진·유해가스 관리, 23. 통신망 보전·운용 기준 설정, 24. 상호접속 대응, 25. 데이터의 관리, 26. 비상사태의 대응, 27.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결과 기록·관리, 28.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29.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 30. 통신장비류의 지진 대책

[별지 제4호]

적합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	과장	소장

1. 일반사항

사업자(설치자) 명		조사일자	
사업자(설치자) 주소			
조사지역		입 회 자	
조사대상(국사)		실사국사	
대상설비			

2. 조사결과

항 목	적 부	비 고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기준		
선로설비의 설치기준		

3. 종합평가(부적합 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4.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5. 붙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 · 시험 평가표 0부. 끝.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 · 시험 평가표

■ 기관명 : 일자 및 장소 : 입회자 : (인) 조사자 : (인)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1. 보호기 및 접지(규정 제7조)		
- 보호기 설치 여부		
- 보호기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 접지저항 적합 여부		
2. 예비전원설비(규정 제10조)		
- 축전지 및 발전기 설치 여부(사업용)		
- 예비전원 설치 여부(사업용 외 국선 10회선 이상)		
3. 절연저항 및 누화(규정 제12조 및 제13조)		
- 절연저항(10MΩ 이상)		
- 꼬임 케이블의 누화 감쇄량(68dB 이상)		
4. 대체접속 계통 설정 여부(신뢰성 고시 별표1)		
- 중요통신국사 간 교환망 이원화 여부		
5. 복수 전송로 구성(신뢰성 고시 별표1)		
- 중요통신국사 간 복수 전송로 구성 여부		
6. 분산 수용 여부(신뢰성 고시 별표1)		
- 중요통신국사 간 통신회선을 복수의 전송로 설비에 분산 수용 여부		
- 다수의 통신국사에 통신 트래픽 분산 여부		
- 타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여부(단일 통신국사에서 서비스 제공 시)		
7. 전송선로 설비의 동작 감시(신뢰성 고시 별표1)		
- 전송선로설비의 동작 감시기능 구비 여부		
- 동작 감시기능을 통한 예비설비로의 전환 가능 여부		
8. 교환설비의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신뢰성 고시 별표1)		
- 교환설비의 트래픽 감시 및 이상폭주 검출·통보 기능 구비 여부		
- 이상폭주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구비 여부 (트래픽 제어 기능을 보유한 경우 대체 가능)		
9. 교환설비의 통신 접속 규제(신뢰성 고시 별표1)		
- 이상 폭주 또는 트래픽 발생 시 접속규제 기능 구비 여부 (트래픽 제어 기능을 보유한 경우 대체 가능)		
10. 코어망(백본망) 오류확산 방지(신뢰성 고시 별표1)		
-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들의 네트워크 계층 간 오류 확산 차단 여부		
11. 코어망(백본망)과 가입자망 분리 구축(신뢰성 고시 별표1)		
- 지역 가입자망 간 오류 전파 방지를 위한 분리 구축 여부		
12. 무선망의 인터넷 접속 이중화(신뢰성 고시 별표1)		
- 무선망 사업자의 평시 외 "별도의 인터넷 접속경로" 확보 여부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13.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트래픽 폭주 등 망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14.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신뢰성 고시 별표1)		
- 이용자 식별이 필요한 망의 경우 인증 및 등록 기능 구비 여부		
- 이동통신망 및 휴대전화망의 사용 주파수 대역과 접속방식에 따른 인증 기능 및 불법 접속 검출 등의 기능 구비 여부		
-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 강구 여부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초기 접속 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보유 여부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 트래픽 암호화 처리 기능 보유 여부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불법 복제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 검출 기능 보유 여부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접속 시 검출 기능 및 서비스 제한 기능 보유 여부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15. 예비기기 등의 설치(신뢰성 고시 별표1)		
- 설비의 중요도 등에 따른 예비기기 설치 여부		
16. 시험기기의 확보(신뢰성 고시 별표1)		
- 설비의 점검(검사)에 필요한 시험기기 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여부		
17. 교환설비의 통신량 측정자료 기록(신뢰성 고시 별표1)		
- 이용자 회선별로 통신량, 횟수 등을 기록하는 기능 보유 여부		
18. 옥외설비 설치 기준(신뢰성 고시 별표1)		
- 풍해 대책 강구 여부		
- 지진 대책 강구 여부('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수해 방지 조치 강구 여부		
- 맨홀 등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함체 등의 거치대 이용 설치 여부		
- 지하 통신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가 적정하거나, 침수방지장치 설치 여부		
- 제3자의 접촉방지를 위한 맨홀 잠금장치 설치 여부		
- 낙뢰 대책 강구 여부(권고)		
- 진동 대책 강구 여부(권고)		
- 화재 대책 강구 여부(권고)		
- 내수(방수) 기능 구비 여부(권고)		
- 동결 대책 강구 여부(권고)		
- 염해 등 대책(권고)		
- 고온·저온 대책(권고)		
- 다습도 대책(권고)		
- 고신뢰도 부품 사용(해저 등 특수장소)(권고)		
- 제3자의 접촉 및 침입 방지 조치 강구 여부(권고)		
19. 통신국사의 입지조건(신뢰성 고시 별표1)		
- 풍수해, 전자파, 진동으로부터 안전 여부(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20. 통신국사의 조건 및 선정(신뢰성 고시 별표1)		
- 지진대책 기준 적합 여부('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내진구조 건축물 선정 여부(권고)		
- 내화구조 건축물 선정 여부(권고)		
-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 구조 내력 충분 여부		
21.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신뢰성 고시 별표1)		
- 통신기계실의 전용 공간 설치 여부		
- 바닥시설의 지진대책 기준 적합 여부 ('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여부		
- 바닥, 내벽, 천장 내장재의 지진 대비 조치 강구 여부(임차국사)(권고)		
22.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출입제한 기능(신뢰성 고시 별표1)		
- 모든 출입구에 시건장치 설치 및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 안내와 감시장치 등의 출입통제관리 실시 여부(권고)		
23. 통신국사의 화재 및 수해대책(신뢰성 고시 별표1)		
- 주요시설에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 ('19.10.8. 이전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설치 여부)		
- 주요시설의 마루, 내벽, 천장 마감재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여부		
- 통신국사 출입구가 침수 예상 높이보다 높게 설치 여부		
- 통신국사 내 주요시설의 지상 설치 여부(지상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수 조치)		
- 지하공간 출입구에 침수 방지턱 설치 여부(별도 배수시설 설치 시 예외)		
24. 통신기계실의 온·습도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항온·항습 기능 구비 여부(권고)		
25. 통신기계실의 분진·유해가스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부식성 가스(SO_2 등)나 분진 혼입 시 배제 기능 구비 여부(권고)		
26. 통신망 보전·운용 기준 설정(신뢰성 고시 별표1)		
- 통신망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계·관리 여부		
27. 상호접속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상호접속 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의 조정 및 시행 여부(권고)		
- 상호접속에 대한 보전·운용체제 구축 여부(권고)		
28. 방송통신망 오류 예방과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전성 점검결과를 기초로 한 취약점 분석·평가 여부		
- 코어망(백본망) 관련 신규장비의 개통, 망 구조변경 등 네트워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의 경우 모의실험체계에서 사전 검증 여부		
- 네트워크 설정 작업에 필요한 접근통제, 작업통제, 명령어 통제 등이 가능한 작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작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정 작업을 수행한 내용의 기록·관리 여부		

29. 데이터의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 파괴시 복원을 위한 보조기억장치 구비 여부		
- 중요 데이터의 데이터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고에 보관 여부		
- 데이터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고의 별도 방화구획 설정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 전자파 영향 우려 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		
- 광역 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중요통신국사 또는 국사 내 방화구획 설정 장소에 보관 여부		
-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의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및 복원 가능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관리 여부		
- 관계자의 통신비밀 데이터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범위 주지 여부		
- 데이터 보관실의 지진대책 강구 여부(권고)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보유자 제한 등 관리 여부(권고)		
30. 비상사태의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통신설비 고장 대비 응급복구대책 수립 여부		
- 중요한 전송로 설비의 응급 복구용 케이블 등 구비 여부		
- 장애 발생 시 이동형 기지국 등을 통한 통신회선 설정 가능 여부		
-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체제의 명확 여부		
- 복구대책의 방법 및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권고)		
-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을 위한 연락체계 마련 여부(권고)		
- 광역 응급구호 체제 명확 여부(권고)		
-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권고)		
31.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결과 기록·관리(방발법 제28조제2항)		
-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적합여부 자체 시험 및 기록관리(설치 또는 확장 시)		
32.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규정 제8조 및 접지설비 고시)		
- 다른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차량 등의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 여부		
- 가공통신선이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 안전표지(항공표지등) 설치 여부(고시 제1조)		
33.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규정 제18조 및 접지설비 고시)		
- 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 방지 적정 여부(제10조)		
- 가공통신선의 높이 적정 여부(제11조)		
- 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제15조)		
- 동일 지지물에 통신선과 전력선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제19조)		
- 지중통신선 또는 해저통신선과 전력선의 이격거리 적정여부(제21조, 제22조)		
34. 통신장비류의 지진 대책(신뢰성 고시 제5조 및 별표2)		
-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의 지진 대책 적정 여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2. 10. 17.] [고시 제2022 - 19호, 2022. 10. 17.,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02 - 2110 - 149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뉴미디어정책과)02 - 2110 - 16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2. "가입자 단말장치"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성·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6.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7.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디지털 컬러 동화상 및 음성 신호의 압축·부호화 방법 및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화 하는 방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룹을 말하며, 이 그룹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을 MPEG 표준이라 부른다.
8. "AC - 3"란 영화나 HDTV 등에서 사용하는 음성 압축 기술 및 음성부호화 방식으로 북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 개발 위원회(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의 A/52인 Digital Audio Compression Standard(AC - 3, E - AC - 3) Revision

B의 규격을 말한다.

9. "멀티캐스트(Multicast)"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불법복제방지"란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
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
13.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ㆍ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
15. "패킷 전달 지연(IP packet transfer delay)"이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간의 시간차이를 말한다.
16. "패킷 손실률(IP packet loss ratio)"이란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패킷 지연 편차(IP packet delay variation)"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변위(變位)로서 전송되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핵심설비의 관리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교체 및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를 위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ㆍ운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한다.

제5조(전원설비)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설비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과전압·과전류 및 벼락 등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이용자·운용자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기 및 접지설비의 설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7조(망 접속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802.3i 또는802.3u 또는 802.3ab Ethernet(10 Mbps 또는 100 Mbps 또는 1000 Mbps)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 추가로 탑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제8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 한다.

1. 방송서비스 이름
2. 방송채널 번호
3. 서비스 ID
4.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
5. 프로그램 제목
6. 프로그램 시작시간
7. 프로그램 상영시간
8. 프로그램 시청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TTAK.KO - 08.0027/R3)"과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 - 08.0028/R2)" 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방식은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의 RFC 2236 IGMP 규격 또는 RFC 3810 MLD 규격을 따른다.

제10조(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 (復號化)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SO/IEC 13818 - 7 Advanced Audio Coding(AAC) 및 AC - 3의 형식을 따른다.

제11조(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TU - T H.264(ISO/IEC 14496 - 10 Advanced Video Coding(AVC)) 또는 ITU - T H.265 (ISO/IEC 23008 - 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형식을 따른다.

제12조(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는 ISO/IEC 13818 - 1의 MPEG - 2 전송스트

림 형식을 따른다.

제13조(제한수신)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는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수신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 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 - 08.0023)" 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4조(콘텐츠 보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 및 가입자 단말장치는 보안이 요구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기능을 지원 한다.

제15조(네트워크 품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킷 전달 지연 : 100 ms이하
2. 패킷 손실률 : 10 - 3이하
3. 패킷 지연 편차 : 50 ms이하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 - 28호,2016. 12. 19.>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23호,2019. 12. 27.>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21호,2021. 11.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19호,2022. 10.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 - 201 - 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2021. 3. 16.>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7. 12. 26., 2019. 4. 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
[본조신설 2019. 4. 23.]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3. 21.>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8. 14., 2025. 12. 2.>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

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2., 2013. 3. 23., 2017. 3. 21., 2020. 6. 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2025. 12. 2.>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 5. 23., 2017. 3. 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7. 3. 21.>

⑥ 삭제<2015. 12. 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개인·단체·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 3. 21.>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2. 8., 2017. 3. 21., 2019. 4.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19. 4. 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2020. 6. 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2015. 12. 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26.,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1. 8. 4., 2014. 1. 14., 2016. 12. 27., 2017. 1. 17., 2017. 8. 9., 2017. 11. 28., 2021. 1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 12. 29.]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 5. 23., 2017. 3. 21.>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 3. 21.>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 3. 21.>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5. 12. 2.>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삭제<2021. 3. 16.>
10. 삭제<2021. 3. 16.>
11.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5. 23., 2019. 11. 26., 2020. 6. 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3. 21., 2017. 7. 26., 2019. 11. 26., 2020. 6. 9.>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12. 29., 2017. 3.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제목개정 2017. 3. 21.]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과 효율적인 개발·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 3. 21.>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3. 2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 3. 21.>]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 3. 21.>]

제27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삭제<2017. 3. 21.>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 3. 2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 3. 21.>]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5. 12. 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신설 2025. 12. 2.>

[제목개정 2017. 3. 21.]

[제28조에서 이동 <2017. 3. 21.>]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 3. 21.]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 ·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3. 16.>

[본조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21. 3. 16.]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 등 <신설 2018. 8. 14.>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종전 제35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 8. 14.>]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8. 8. 14.]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16.]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2020. 12. 2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2조의2(「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3. 17.>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본조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26. 3. 17.]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제3항·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2024. 2. 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2024. 2. 6.>

[본조신설 2018. 8. 14.]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18. 8. 14.]

제46조 삭제 <2020. 6. 9.>

제8장 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 3. 16.>

제47조 삭제 <2021. 3. 16.>

제48조 삭제 <2021. 3. 16.>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2021. 3. 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3. 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9. 11. 26.]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9. 11. 26.]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2021. 3.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 3. 16.>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위험·위해를 예방·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3. 16.>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3. 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3. 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1. 3. 16.]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9장 벌칙 <개정 2019. 11. 26.>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본조신설 2019. 11. 26.]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2021. 3. 16.>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3. 21.]

[제47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2021. 3. 16.>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9. 4. 23.]

[제48조에서 이동 <2019. 11. 26.>]

부칙 <제9052호,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174호,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705호,2009. 5. 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8호,2009. 6. 9.>(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63호,2009. 6. 9.>(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0호,2009. 6. 9.>(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 5. 31.>(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 전용허가 또는 신고 "를 "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로 한다.

<5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2011. 4.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 도시기본계획 "을 각각 " 도시·군기본계획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 도시관리계획 "을 "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 도시계획시설사업 "을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으로 한다.

<5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37호,2011. 8.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1448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85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80호,2016. 12. 27.>(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 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2017. 1. 17.>(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를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로 한다.

<5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69호,2017. 2. 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로 한다.

⑭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18호,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로, “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을 “ 스마트도시계획 ”으로 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63호,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6호,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9호,2017. 12. 2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부터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732호,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8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1호,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4호,2020. 6. 9.>(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8호,2020. 6. 9.>(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453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4호,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2020. 12. 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 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945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22호,2021. 11. 3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 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234호,2024. 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제3항·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0394호,2024. 3. 19.>(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9호,2025.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1호,2026. 2. 19.>(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462호,2026. 3. 17.>(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부터1*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21467호,2026. 3. 1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 - 201 - 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에너지、수자원
5. 방범、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 9. 19.]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제5조(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제6조 삭제 <2019. 8. 20.>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09. 7. 30., 2014. 4. 29., 2015. 12. 28., 2016. 6. 28., 2017. 9. 19., 2018. 7. 16., 2020. 7. 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9. 19.>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21., 2017. 9. 19., 2019. 2. 8., 2020. 12. 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9. 2. 8.>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11. 20., 2013. 3. 23., 2017. 9.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그 도시·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7. 9. 19.>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7. 9. 19.]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본조신설 2019. 8. 20.]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0., 2013. 3. 23., 2017. 9. 19., 2019. 8. 20.>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9.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0., 2013. 3. 23., 2017. 9. 19.>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2. 11. 20., 2013. 3. 23., 2017. 9. 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1. 20.,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 9. 19.]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 9. 19.>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17. 9.

19., 2019. 8. 20., 2020. 7. 7.>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4. 21., 2009. 7. 30., 2009. 12. 14., 2013. 9. 9., 2014. 4. 29., 2014. 9. 24., 2015. 12. 28., 2016. 8. 11., 2017. 9. 19., 2018. 2. 27., 2018. 7. 16., 2019. 2. 8., 2020. 7. 7., 2020. 7. 28., 2026. 8. 1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20. 7. 7., 2021. 6. 15.>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신설 2017. 9. 19., 2020. 7. 7.>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7. 7.>

제18조 삭제 <2016. 6. 28.>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7. 9. 19.>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9. 2. 8.>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9. 19.>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8.>

[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20. 7. 7., 2020. 12. 8.>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7. 9. 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그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0. 7. 7.>

[제목개정 2017. 9. 19.]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 11. 20., 2017. 9. 19.>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9.>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9. 3.>

[본조신설 2012. 11. 20.]
[제목개정 2017. 9. 19.]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개정 2017. 9. 19.>

[본조신설 2012. 11. 20.]
[제목개정 2017. 9. 19.]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20.]

[제목개정 2017. 9. 19.]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 9. 19.>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1. 행정안전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 9. 19.>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9. 19., 2020. 2. 25., 2021. 6. 15., 2025. 10. 1., 2025. 12. 30.>

1. 삭제<2025. 12. 30.>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산업통상부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7.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8.>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7. 9. 19.]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8.]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2020. 2. 25.>

1. 규제특례 분야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삭제<2020. 2. 25.>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신설 2017. 9. 1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개발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8.]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9. 19.]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 9. 19.>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1. 6. 15., 2025. 3. 25.>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5. 3. 25.>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 지정 목적,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에 대한 지원계획
3.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전략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계획
5. 관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6. 6. 2.]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7.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7. 7.>

[본조신설 2017. 9. 19.]

제32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 등 <개정 2019. 2. 8.>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시범도시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34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 2. 8.>]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경제·사회·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20.>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9. 8. 20.>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9. 2. 8.]

[제목개정 2019. 8. 20.]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8. 20.>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고도화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9. 2. 8.]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4.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19. 2. 8.]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 조성토지등의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8.]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2. 8.]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2. 8.]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본조신설 2019. 2. 8.]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4. 7. 30.>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8.]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2. 8.]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본조신설 2019. 2. 8.]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목개정 2024. 7. 30.]

제45조 삭제 <2021. 6. 15.>

제8장 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 6. 15.>

제46조 삭제 <2021. 6. 15.>

제47조 삭제 <2021. 6. 15.>

제48조 삭제 <2021. 6. 15.>

제49조 삭제 <2021. 6. 15.>

제50조 삭제 <2021. 6. 15.>

제51조 삭제 <2021. 6. 15.>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15.>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삭제<2021. 6. 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조치·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20. 2. 25.]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오자·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6. 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6. 1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2.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취소 사유
4. 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25.]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6. 15.>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공·이용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20. 2. 25.]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본조신설 2020. 2. 25.]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 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삭제<2021. 6. 15.>
2. 삭제<2021. 6.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혁신기술·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혁신기술·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 3. 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2.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9장 보칙 <개정 2019. 8. 20., 2020. 2. 25.>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삭제<2021. 6. 15.>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본조신설 2020. 2. 25.]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 2. 25., 2021. 6. 15.>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5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제10장 벌칙 <신설 2019. 8. 20., 2020. 2. 25.>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2. 8., 2019. 8. 20., 2020. 2. 25.>

[본조신설 2017. 9. 19.]

[제46조에서 이동 <2020. 2. 25.>]

부칙 <제21039호,2008. 9. 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5호,2009. 4. 2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65호,2009. 6. 2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부터4*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56호,2009. 7. 3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698호,2009. 8. 21.>(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부터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882호,2009. 12. 14.>(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 한다.

<11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24호,2010. 10.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 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 로 한다.

⑪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 도시기본계획 " 을 각각 " 도시·군기본계획 " 으로 한다.

<5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89호,2012. 11. 20.>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720호,2013. 9.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 <제25339호,2014. 4. 29.>(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58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건설기술관리법」 "을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2(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621호,2014. 9. 2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 안전행정부 "를 " 행정자치부 "로 한다.

<3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62호,2015. 12. 2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281호,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 「주택법」 제9조제1항 "을 " 「주택법」 제4조제1항 "으로 한다.

4& 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2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26호,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 유비쿼터스 도시 "를 각각 " 스마트도시 "로 한다.

부칙 <제28686호,2018. 2.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45호,2018. 7. 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9516호,2019. 2. 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7호,2019. 8. 20.>

이 영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9호,2019. 10. 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4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8호,2020.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7호,2020. 7. 28.>(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95호,2020. 8.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31220호,2020. 12.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221호,2020. 12.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779호,2021. 6. 15.>

이 영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1호,2023. 7. 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을 “ 지역균형발전 ”으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4774호,2024. 7.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나목 중 “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 ”을 “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를 “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입지규제최소구역 ”을 “ 도시혁신구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을 각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 ”으로 한다.

부칙 <제34872호,2024. 9. 3.>(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35246호,2025. 2. 7.>(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를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로 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396호,2025. 3. 25.>(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5호,202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161호,2026. 3. 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6373호,2026. 6. 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87호,2026. 8. 18.>(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7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 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689호,2026. 9. 15.>(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19.>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상근직으로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바닥 면적 45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것

비고

1. "스마트도시 전공"이란 제2조의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학과나 과정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의4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9조의4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4제4항제3호			
1)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30.>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위탁업무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지원	지원기관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지원기관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	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국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6.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	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법 제55조제2항제1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2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3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49조제8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마. 법 제52조제4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바. 법 제52조제6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사. 법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1)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700만원	

4)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아. 법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1)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700만원
4)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6.] [국토교통부령 제894호, 2021. 10.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 - 201 - 3737, 3738, 4878, 48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부칙 <제702호,202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1.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21.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 7. 1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 7. 1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12.>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목적 및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명	
	사업기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혁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의견 회신	→	신청서 제출 (조치요구 내용 및 계획 반영)	→	접수·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검토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결재·공고	→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2.>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목적 및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명		
	사업기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의견 회신	→	신청서 제출 (조치요구 내용 및 계획 반영)	→	접수·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검토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결재·공고	→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12.>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

승인번호	제 호	승인일	. . .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시행지역		
	특례 조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안전·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7. 12.>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1. 7. 12.>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		
사업 개요	명칭		
규제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 필요함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에 필요한 조건·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12.>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개요	명칭		
	주요 내용		
승인내용	승인번호	승인일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시행지역		
	특례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안전·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 사유		
	연장 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본문, 제5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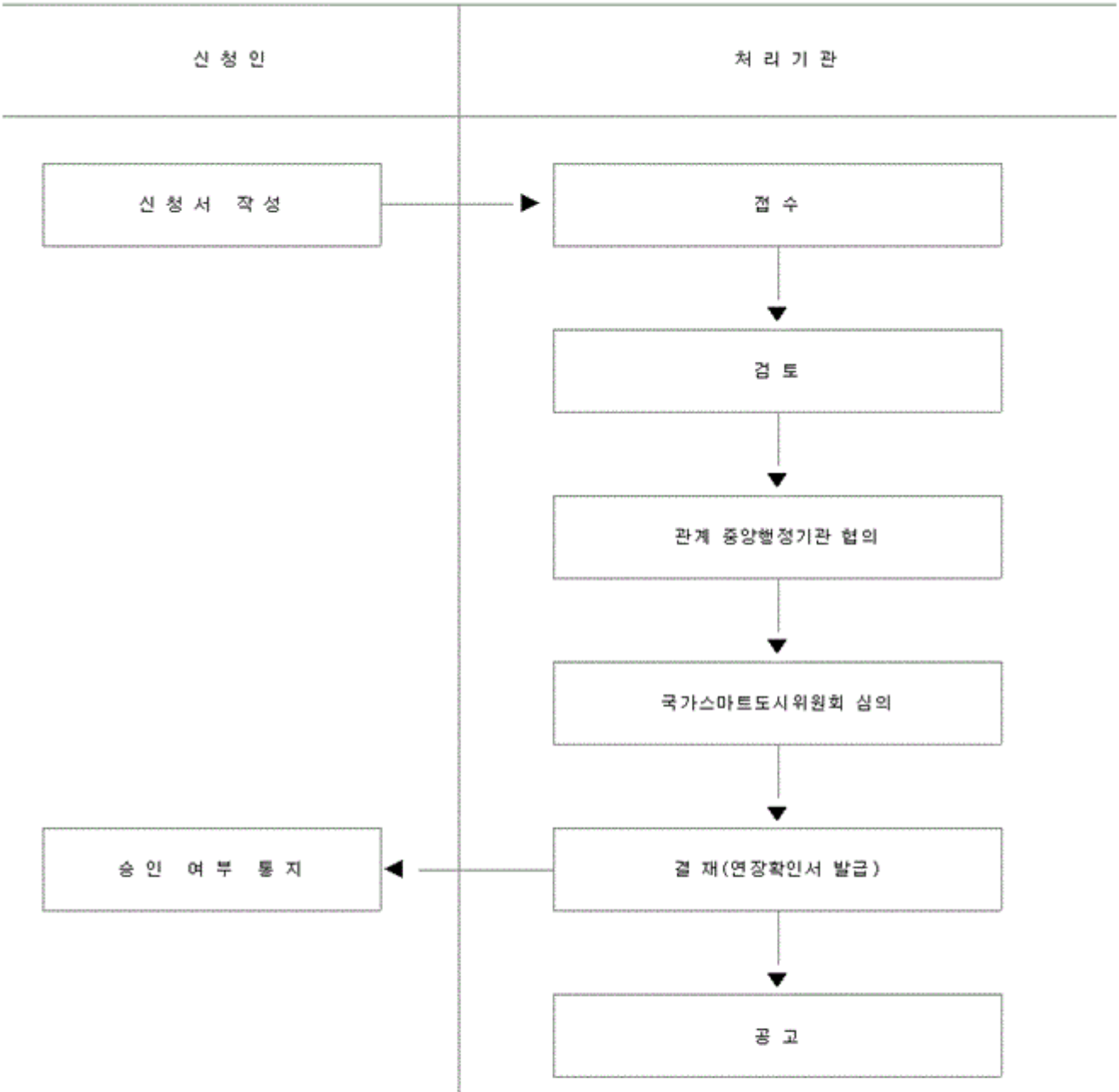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연장 사유서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12.>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

승인번호	제 호	시행기간 연장 승인일	. . .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사업개요	명칭		
	주요 내용		
	시행기간/실증기간 (당초) . . . ~ . . . (변경) . . . ~ . . .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시행지역		
	특례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안전·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본문, 제5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사업 개요	승인번호 / 실증기간	
	명칭	
	주요내용	
법령 정비 요청 사항	규제특례 대상 법령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정비 완료 법령 - 정비 필요 법령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	
	법령 정비가 필요한 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

요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사업 개요	승인번호	실증기간
	사업 명칭	
	주요 내용	
법령 정비 요청 내용	요청일	
	정비 요청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를 받은 날까지 2. 같은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

검토 대상안건	승인번호	실증기간
	사업 명칭	
	주요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법령정비 검토 의견	규제소관부처	담당부서
	검토의견 상세	
	법령 제·개정 계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고시 제2021 - 930호, 2021.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044 - 201 - 4753, 3772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044 - 201 - 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① 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⑩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⑪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대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9.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10.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11.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적용을 권장한다.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98호,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94호,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930호,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 - 202 - 6445, 644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10. 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제3항에 따른 게시·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비·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제20조(손해배상책임)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354호,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전자서명 ” 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 ” 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 ”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 를 “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 로 한다.

제20조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로, “ 사람의 공인인증서 ” 를 “ 사람의 인증서 ” 로 한다.

제29조 중 “ 공인인증서 ” 를 각각 “ 인증서 ” 로 한다.

1&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으로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 공인인증 방법 ” 을 “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으로 한다.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으로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로 한다.

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59호,2020. 6. 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9호,2021. 10.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 - 202 - 6445, 6447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관리 능력과 기술적·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문서·시설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다만,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222호,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 공인인증서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를 “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를 “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을 “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 ”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 공인인증서 ”를 “ 인증서 ”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을 “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으로 한다.

1&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으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 를 “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 ” 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으로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로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 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으로 한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전자서명 ” 을 “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 ”을 “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 ”으로 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 공인인증기관 ”을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공인전자서명 ”을 각각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 한다.

2^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 공인전자서명 ”을 각각 “ 전자서명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을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전자서명 ”을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으로 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를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를 “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를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를 “ 서류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23호,2023. 9. 1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 제33조제5항 ”을 “ 제33조제6항 ”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8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6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2. "정보기술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동일한 기간에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평가기관 선정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한다.
5.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규정된 기간의 경력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경력기간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보유한 학위 또는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기간이 가장 긴 경력 하나만 적용한다.

업무	경력 기간 추가 요건	추가기간
가. 정보보호업무	1) 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	2년
	2) 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보안기사 4)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1년

	Auditor)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나. 정보기술업무	1) 정보기술 분야 박사 학위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정보시스템관리 분야의 민간자격 중 정보시스템의 감리와 관련된 자격	2년
	4) 정보기술 분야 석사 학위 5)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년
다. 개인정보보호업무	1) 개인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	2년
	2) 개인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육성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민간자격 중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자격	1년

■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2]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선정취소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선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선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마.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선정취소	

■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단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1호	250	35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3호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6호	250	350	500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2020. 12. 10.,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 - 202 - 6445, 64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대리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증표·서류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절차
2. 인증서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회복·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회복·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56호,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제2조 관련)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2호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의견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방법

평가기관의 업무능력은 다음 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
(100점)</th><th>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방법</th></tr>
<tr><td rowspan="4">가. 조직 및 전문성(15점)</td><td>1) 전담조직</td><td>5점</td><td>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보유한 경우: 5점
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0점</td></tr>
<tr><td>2) 전문인력</td><td>5점</td><td>5×[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10명]점
※ 산정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점으로 한다.</td></tr>
<tr><td rowspan="2">3) 전문성</td><td>3점</td><td>3×(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평가 참여일 수의 합/200일)점
※ 산정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3점으로 하며, 평가기관 선정을 처음 신청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td></tr>
<tr><td>2점</td><td>2×(최근 3년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수/총 전문인력의 수)점</td></tr>
<tr><td rowspan="2">나. 신뢰도(15점)</td><td>1) 신용등급</td><td>5점</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에 따른 점수
<table>
<tr><th>신용평가등급</th><th>점수</th></tr>
<tr><td>AAA ~ A⁻</td><td>5점</td></tr>
<tr><td>BBB⁺ ~ BBB⁻</td><td>3.5점</td></tr>
<tr><td>BB⁺ ~ BB⁻</td><td>2.5점</td></tr>
<tr><td>B⁺ ~ B⁻</td><td>1.5점</td></tr>
<tr><td>CCC⁺ 이하</td><td>0.5점</td></tr>
</table></td></tr>
<tr><td>2) 자본규모</td><td>5점</td><td>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점
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0점</td></tr>
</table>

	3)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운영자금 관련 법인 통장 보유 여부 및 자금 규모 유지 수준 나) 선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수준
다. 업무수행(60점)	1) 평가업무 수행지침	5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업무 수행지침 보유 여부 및 지침의 타당성을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나) 품질관리, 운영관리, 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2) 품질관리	1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활동(정보공유, 교육 및 세미나 등) 계획 나) 피평가기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다) 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라) 평가기관 책임자의 평가 결과 검토·처리 절차 마련 정도 마) 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정도
	3) 운영관리	1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나) 평가 신청 접수 방법,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정도 다) 평가 관련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 계획 라) 평가 관련 부당행위 방지대책
	3) 평가관리	1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팀 구성 원칙 나) 평가 전문인력의 의무·책임 준수 방안, 평가 관련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다) 평가 수행 절차 관련 계획 라) 평가결과보고 등 사후 절차 준수 계획

			마) 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4) 문서관리	10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업무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 절차 마련 나)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방식의 안전성 다)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라. 시설 및 보안 (10점)	1) 시설 및 시설 보안	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독립된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 유무 나)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유무 다) 사무 공간 출입 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설비 운영 여부 라)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여부
	2) 운영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5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관리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나) 평가정보의 침해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제2조 관련)

1. 인정마크



2. 인정마크 표시 방법

가. 인정마크 아래에는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정을 받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인정을 받은 순서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나.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색상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마크를 표시하는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인정마크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정마크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마크를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3. 인정마크 표시 시 유의사항

가. 인정마크는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중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것이 다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정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총 직원 수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수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법인의 정관 1부 2. 5명 이상의 평가업무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별표 2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평가 · 심사	→	선정여부 결정	→	선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평가기관 선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4. 유효기간:

5. 선정조건: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 - 202 - 6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

”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신뢰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고도화 및 실용화·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수집·분석·가공
2.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 기관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제공·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제공·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관리와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25. 1. 21.>

제46조의2 삭제 <2025. 1. 21.>

제47조 삭제 <2025. 1. 21.>

제48조 삭제 <2025. 1. 21.>

제49조 삭제 <2025. 1. 21.>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양극화 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구축·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활용기록의 저장·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

、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신체、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7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삭제<2025. 1. 21.>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
5.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
6.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2025. 1. 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2025. 1. 21.>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4. 3.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4. 3. 26.>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자
2. 삭제<2025. 1.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3. 26., 2025. 1. 21.>

부칙 <제17344호,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은 이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능정보사회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는 지능정보사회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지능정보사회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4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초고속국가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6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응센터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으로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 ”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 ”로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 ”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로 한다.

1(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 ”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 ”로 한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98호,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 교육부장관과 ”를 “ 국가교육위원회와 ”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410호,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2호,2025. 1. 21.>(디지털포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31호,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 - 202 - 6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 - 202 - 6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 - 202 - 62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3. 조정을 요청한 취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3.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진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이유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6조(기술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관리·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誤作動)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합성 확인·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3.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관한 홍보
4. 지능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협력
5.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6.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①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협약 조정 요청서에 협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29조(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 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 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제30조(데이터의 유통·활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유통·거래체계 구축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다. 유통·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 유통·활용에 대한 컨설팅
3. 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 해당 데이터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 해당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운영 또는 지원
6. 해당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7.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수집·유통·활용을 위한 지원
8.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5. 12. 31.>

제34조의2 삭제 <2025. 12. 31.>

제34조의3 삭제 <2025. 12. 31.>

제34조의4 삭제 <2025. 12. 31.>

제35조 삭제 <2025. 12. 31.>

제36조 삭제 <2025. 12. 31.>

제37조 삭제 <2025. 12. 31.>

제38조 삭제 <2025. 12. 31.>

제39조 삭제 <2025. 12. 31.>

제40조 삭제 <2025. 12. 31.>

제41조 삭제 <2025. 12. 31.>

제42조 삭제 <2025. 12. 31.>

제43조 삭제 <2025. 12. 31.>

제44조 삭제 <2025. 12. 31.>

제45조 삭제 <2025. 12. 31.>

제46조 삭제 <2025. 12. 31.>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 추진전략
   다. 연구와 개발
   라. 교육·상담 및 홍보
   마. 전문인력의 양성
   바. 국제협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운영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53조(지표의 개발·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제54조(실태조사)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3. 26.>

부칙 <제31220호,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1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63호,2021. 6. 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 교육부장관에게 ”를 “ 국가교육위원회에 ”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4657호,2024. 7.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까지 생략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4! 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04호,2025. 3. 26.>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⑭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05호,2025. 12. 31.>(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기업은 제외한다)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3명 이상(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6.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비고:

1. "인력"이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3. 2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인증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대웅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1. 입지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춰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대웅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상담실: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 전화상담실 및 심리검사실: 책상, 전화기, PC, 통화녹음, 방음시설 등을 갖추되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라. 상담대기실: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 집단상담실: 10명 내외의 인원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방음시설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대웅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가. 대웅센터는 관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해야 한다.

나. 대웅센터의 장과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구 분	자격기준
대웅센터의 장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상담 실무 업무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운영

가. 주간 운영: 상담 연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2개 이상 설치하고, 상시 전화 연결 및 내방 상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야간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고

1.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상담 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관련 부서에서 상담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3.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4.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삭제 <2025. 12. 31.>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70조제2항	350	350	35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1호	200	300	400
다. 삭제 <2025. 12. 31.>				
라. 삭제 <2025. 12.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024. 12.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 - 202 - 6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 6. 10.>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

다.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지능정보제품·콘텐츠·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콘텐츠·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2. 신청하는 재정·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부칙 <제64호,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73호,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22. 12. 1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4.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한다.

3)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4)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콘텐츠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8)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9)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문자 단축기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5)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초당 3~50회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8)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9)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0)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유지해야 한다.

12)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3)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14)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15) 동작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고,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 도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5)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6) 인증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7)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견고성

1) 마크업(markup)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돼야 한다.

2)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같은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돼야 한다.

3)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前景色)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돼야 한다.

2)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돼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돼야 한다.

3)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라. 견고성

1)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9.>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조직 관련 기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할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3명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1) 전맹 시각장애인 1명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 1명

2) 지체장애인(상지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1명

다. 전문가심사원 및 사용자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요건
가. 전문가심사원	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용자심사원	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성 교육기관의 사용자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또는 5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목 표의 가목 전문가심사원 요건의 1), 2), 5), 6) 및 나목 사용자심사원 요건의

1), 2), 5), 6), 7)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은 해당 학위·자격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이수하기 전과 취득·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전문가심사원을 말한다.
2. “사용자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용자심사원을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제4호의 현장심사는 가목의 서류심사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 실시한다.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가. 서류 심사	1)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합/부적합
	2) 조직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의 보유 여부	적합/부적합
	3) 인력	전문가심사원 3명 이상 및 사용자심사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상주인력 보유 여부	적합/부적합
	4) 설비	인증 관련 상담, 서류 보관, 인증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관련 장비 보유 여부	적합/부적합
나. 제안서 평가(60점)	1) 사업계획서(30점)	가)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5
		나) 사업 수행 목표, 전략, 범위 및 절차의 적절성	5
		다)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성	5
		라) 사업 지원 및 관리 계획의 충실성	5
		마) 심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바) 심사인력의 교육이수 및 경험 수준	5
	2) 인증 업무 수행 규정(30점)	가) 인증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규정	3
		나) 인증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3
		다)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	3
		라)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3
		마)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규정	3

		바)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보안 관리 규정	3
		사) 인증심사원의 교육계획	3
		아) 인증 품질관리 규정	3
		자) 사후관리 규정	3
		차) 분쟁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 책임 등에 관한 규정	3
다. 발표평가 (40점)	1)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내용에 관한 질의		10
	2) 인증심사 공정성 및 심사 결과 대응에 관한 질의		10
	3) 인증심사 사업계획 및 인증심사기관에 관한 질의		10
	4) 홍보 및 심사수수료 등 심사 외 사항에 관한 질의		10
라. 현장조사	1) 심사 업무 수행 구역 확보 등 사무공간 확보 여부		일치/ 불일치
	2) 상시 인증심사원 및 인력 확보 여부		일치/ 불일치
	3)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확보 여부		일치/ 불일치
	4)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 업무와 관련있는 인력·조직·설비 관리·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		일치/ 불일치

2. 제1호 각 목의 평가 결과 가목 및 라목의 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평가 결과 배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기술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전문가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2. 사용자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여 각 과업마다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문제없이 모두 수행되는지를 판단. 이 경우 사용자심사원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교육대상기관	교육 대상	이수기준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소속 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text{해당연도의교육이수율}) = \frac{(\text{교육참여인원})}{(\text{교육대상인원})}$$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10.>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

[ ] 신규신청
[ ] 연장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업종형태: 제조자 [ ] 수입자 [ ] 판매자 [ ]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제품 (필요 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증 분야		제품명칭	
	용도		검증 신청제품 처리 방법	반환 [ ] 폐기 [ ]
	기본 모델명		파생 모델명	
	검증 신청제품 제출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		
	접근성 기능 설명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증 수행	→	검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 297㎜(백상지 80g/㎡)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10.>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1. 등록번호	
2. 제품명칭	
3. 기본 모델명	
4. 파생 모델명	
5. 보유자(기관)	
가. 성명(기관명)	
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다. 주소(소재지)	
6. 유효기간	
7. 기타	

위 제품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검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10.>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품질인증 업무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6. 품질인증 업무의 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m²)]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갱신 30일 이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개발(운영) 업체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 품목	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신청의 구분	[ ] 최초		
		[ ] 갱신	기존 인증 유효기간(. . . ~ . . .)	
	품질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인증품목(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60일

지원사업 분야				
과제명				
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개발책임자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총 연구기간	. . ~ . .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 . ~ . . (개월)			
참여인력(M/Y)	총 : 명(M/Y) 해당 연도: 명(M/Y)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관명	개발책임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이메일:	
위탁사업자			전화: 이메일:	

「자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콘텐츠·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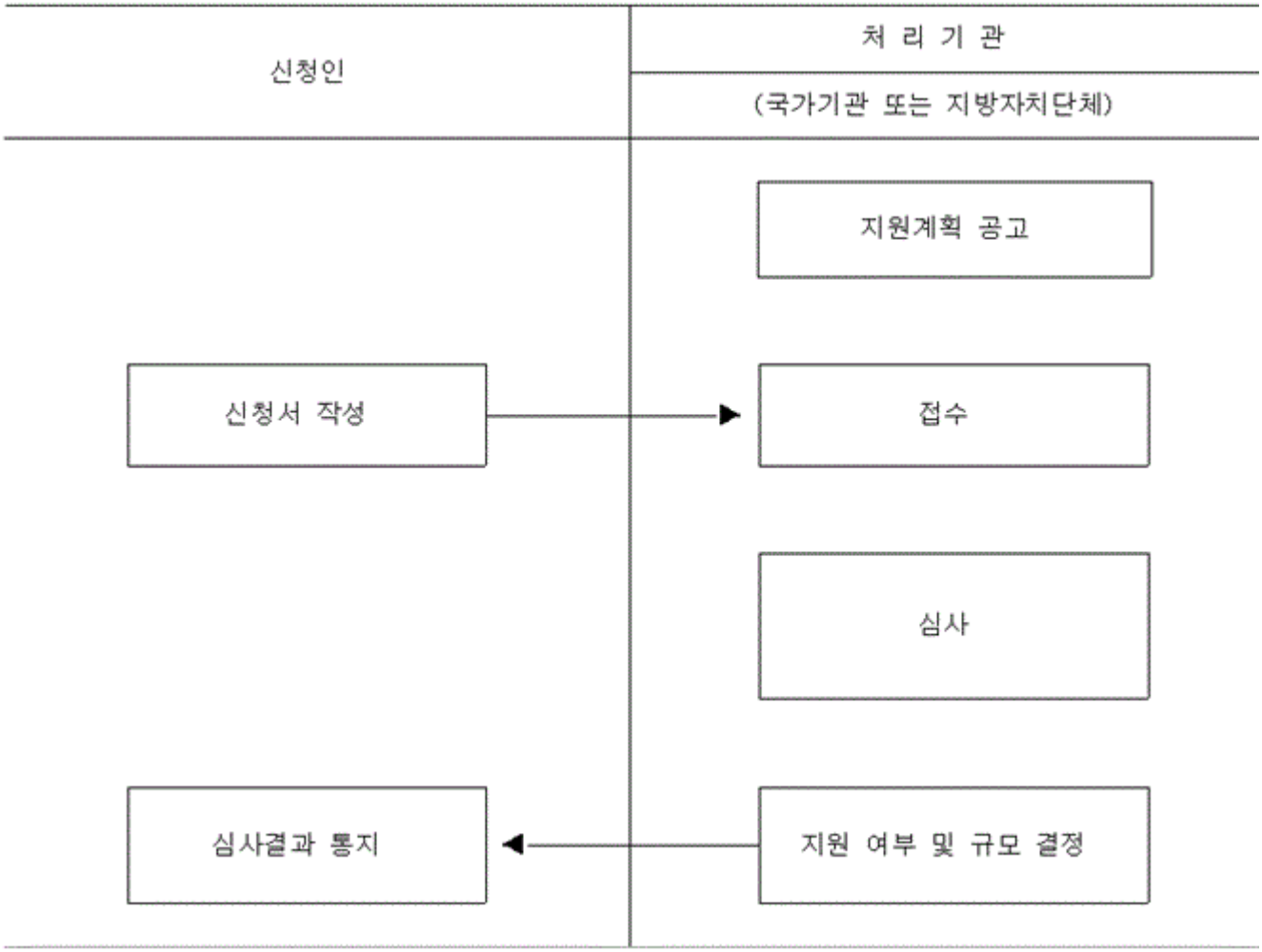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7, 154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2026. 1. 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 2. 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2015. 6. 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2020. 2. 4.>

6의2. 삭제<2020. 2. 4.>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

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6조 삭제 <2004. 1. 29.>

제17조 삭제 <2004. 1. 29.>

제3장 삭제 <2015. 6. 22.>

제18조 삭제 <2015. 6. 22.>

제19조 삭제 <2015. 6. 22.>

제20조 삭제 <2015. 6. 22.>

제21조 삭제 <2015. 6. 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2. 4.>

제1절 삭제 <2020. 2. 4.>

제22조 삭제 <2020. 2. 4.>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6. 12.,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6. 3. 22.]

제23조 삭제 <2020. 2. 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2020. 2. 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24조 삭제 <2020. 2. 4.>

제24조의2 삭제 <2020. 2. 4.>

제25조 삭제 <2020. 2. 4.>

제26조 삭제 <2020. 2. 4.>

제26조의2 삭제 <2020. 2. 4.>

제2절 삭제 <2020. 2. 4.>

제27조 삭제 <2020. 2. 4.>

제27조의2 삭제 <2020. 2. 4.>

제27조의3 삭제 <2020. 2. 4.>

제28조 삭제 <2020. 2. 4.>

제28조의2 삭제 <2020. 2. 4.>

제29조 삭제 <2020. 2. 4.>

제29조의2 삭제 <2020. 2. 4.>

제3절 삭제 <2020. 2. 4.>

제30조 삭제 <2020. 2. 4.>

제30조의2 삭제 <2020. 2. 4.>

제31조 삭제 <2020. 2. 4.>

제32조 삭제 <2020. 2. 4.>

제32조의2 삭제 <2020. 2. 4.>

제32조의3 삭제 <2020. 2. 4.>

제32조의4 삭제 <2020. 2. 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 2. 4.>
2. 삭제<2020. 2. 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절 삭제 <2011. 3. 29.>

제33조 삭제 <2011. 3. 29.>

제33조의2 삭제 <2011. 3. 29.>

제34조 삭제 <2011. 3. 29.>

제35조 삭제 <2011. 3. 29.>

제36조 삭제 <2011. 3. 29.>

제37조 삭제 <2011. 3. 29.>

제38조 삭제 <2011. 3. 29.>

제39조 삭제 <2011. 3. 29.>

제40조 삭제 <2011. 3. 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 1. 2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

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2026. 1. 6.>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2024. 12. 3.>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2014. 5. 28.>
② 삭제<2014. 5. 28.>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8. 6. 13.]

[2014. 5. 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6.>

②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6.>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1. 6.>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6. 1. 6.>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신설 2026. 1. 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5. 10. 1., 2026. 1. 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2. 3., 2025. 10. 1., 2026. 1. 6., 2026. 9. 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2026. 1. 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2026. 1. 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 <2026. 1. 6.>]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

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 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 6. 9., 2026. 1. 6.>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6.>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2026. 1. 6.>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제44조의10에서 이동 <2026. 1. 6.>]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22., 2020. 6. 9.>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전문개정 2008. 6. 13.]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2018. 6. 12., 2021. 6. 8., 2026. 3.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8. 6. 12.>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8., 2026. 3. 10., 2026. 3. 31.>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8. 6. 12.>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8. 6. 12.>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2. 2. 17.]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1. 3.>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3. 1. 3.>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⑦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08. 6. 13.]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6조의3 삭제 <2012. 2. 1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 2. 17., 2015. 12. 1., 2018. 12. 24., 2020. 6. 9., 2024. 1. 23., 2026. 3. 31.>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12. 1.,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17., 2015. 12.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3. 인증서 발급·관리
4. 인증의 사후관리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2. 1., 2017. 7. 26.>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신설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6. 3. 31.>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2015. 12. 1.>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6.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5. 12. 1.>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5. 12. 1.>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5. 12. 1.]

제47조의3 삭제 <2020. 2. 4.>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개정 2009. 4. 22.,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3에서 이동 <2012. 2. 17.>]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본조신설 2024. 1. 23.]

[제목개정 2026. 3. 31.]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신설 2026. 3. 31.>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6. 3. 3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6. 3. 31.>

1. 삭제<2022. 6. 10.>
2. 삭제<2022. 6. 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3. 3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13., 2026. 3. 31.>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6. 3. 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 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6. 10., 2024. 2. 13.>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본조신설 2020. 6. 9.]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6. 3. 22., 2017. 7. 26., 2020. 2. 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6. 3. 22., 2017. 7. 26., 2020. 2. 4., 2022. 6. 10.>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2017. 7. 26., 2020. 2. 4.>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0. 2. 4.]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 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0조의2 삭제 <2014. 5. 28.>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1.>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26. 3. 31.>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0. 6. 9., 2026. 3. 31.>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4. 5. 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6. 3. 31.>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2008. 6. 13.]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 4. 22., 2020. 6. 9.>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9. 4. 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9. 4. 22., 2012. 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2020. 2. 4., 2020. 6. 9., 2021. 6. 8., 2022. 6. 10., 2024. 1. 23., 2025. 10. 1.>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대응·협력 활동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3. 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22.>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9. 4. 22.>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09. 4. 22.]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 12. 21.>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3. 22.>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폐업·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개정 2010. 3. 22.,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 12. 21.>]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업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07. 12. 21.>]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5. 6. 22.]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 12. 21.>]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 12. 21.>]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2007. 12. 21.>]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4. 5. 28.>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 5. 28.>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5. 28., 2017. 7. 26.>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7. 7. 26.>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2007. 12. 21.>]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 6. 12.>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8. 6. 12.>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8. 6. 12.]

[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2007. 12. 21.>]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0. 1.>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2007. 12. 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2017. 7. 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 12. 21.>]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 12. 21.>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20. 2. 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

제63조 삭제 <2020. 2. 4.>

제63조의2 삭제 <2020. 2. 4.>

제9장 보칙 <신설 2007. 12. 21.>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5. 10. 1.>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2025. 10. 1.>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6. 3. 22.,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2026. 3. 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개정 2020. 2. 4.>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2026. 3. 31.>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제64조의3 삭제 <2020. 2. 4.>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0. 6. 9., 2025. 10. 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

제64조의5 삭제 <2026. 1. 6.>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2026. 3. 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65조의2 삭제 <2005. 12. 30.>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20. 6. 9., 2026. 1. 6.>

1. 삭제<2011. 3. 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 2. 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 2. 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

제67조 삭제 <2020. 2. 4.>

제68조 삭제 <2010. 3. 22.>

제68조의2 삭제 <2015. 6. 22.>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08. 6. 13.]

제69조의2 삭제 <2020. 2. 4.>

제10장 벌칙 <신설 2007. 12. 2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2026. 3. 31.>

1. 삭제<2020. 2. 4.>
2. 삭제<2020. 2. 4.>
3. 삭제<2020. 2. 4.>
4. 삭제<2020. 2. 4.>
5. 삭제<2020. 2. 4.>
6. 삭제<2020. 2. 4.>
7. 삭제<2020. 2. 4.>
8. 삭제<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6. 3. 22.,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2024. 1. 23.>

1. 삭제<2016. 3. 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2016. 3.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2020. 2. 4., 2022. 6. 10., 2024. 2. 13., 2025. 10. 1., 2026. 1. 6.>

1. 삭제<2020. 2. 4.>

1의2. 삭제<2020. 2. 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 1. 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26. 3. 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 5. 28.>

6. 삭제<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6. 3. 31.>
[본조신설 2016. 3. 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 3. 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2023. 1. 3., 2024. 1. 23., 2024. 2. 13., 2025. 10. 1., 2026. 3. 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 2. 4.>

2의3. 삭제<2020. 2. 4.>

2의4. 삭제<2020. 2. 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 2. 4.>

4. 삭제<2020. 2. 4.>

5. 삭제<2020. 2. 4.>

5의2. 삭제<2020. 2. 4.>

6. 삭제<2014. 5. 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2026. 3. 31.>
6의7. 삭제<2026. 3. 31.>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 2. 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2., 2018. 6. 12., 2018. 9. 18., 2020. 2. 4., 2020. 6. 9., 2026. 3. 31.>

1. 삭제<2020. 2. 4.>
1의2. 삭제<2020. 2. 4.>
2. 삭제<2020. 2. 4.>
3. 삭제<2020. 2. 4.>
4. 삭제<2020. 2. 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 2.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6. 9., 2022. 6. 10., 2023. 1. 3., 2024. 1. 23., 2024. 2. 13., 2025.

10. 1., 2026. 1. 6., 2026. 3. 31.>

1. 삭제<2015. 6. 22.>

2. 삭제<2015. 6. 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 2. 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2018. 6. 12.>

6. 삭제<2015. 12. 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 2. 17.>

9. 삭제<2012. 2. 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6. 3. 31.>

11의2. 삭제<2024. 2. 13.>

11의3. 삭제<2026. 3. 31.>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26. 3. 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 1. 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폐업·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2026. 3. 31.>

⑥ 삭제<2017. 3. 14.>

⑦ 삭제<2017. 3. 14.>

[전문개정 2008. 6. 13.]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3. 31.]

부칙 <제6360호,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85호,2001. 12. 31.>(전자서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6797호,2002. 12.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4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39호,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42호,2004. 1. 29.>(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262호,2004. 12. 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내지 <68>생략

부칙 <제7812호,200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7호,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8030호,2006. 10.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1호,2006. 10. 4.>(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89호,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 을 "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 으로 한다.

부칙 <제8486호,2007. 5. 25.>(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78호,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1> 까지 생략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7호,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

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119호,2008. 6.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37호,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38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5호,2010. 3. 2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66호,2010. 3. 22.>(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465호,2011. 3. 29.>(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60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칙 <제11048호,2011. 9. 15.>(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322호,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1호,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4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0호,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3호,2015. 6. 2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344호,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20호,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80호,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 제71조제1호 ”를 “ 제71조제1항제1호 ”로, “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를 “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로 한다.

부칙 <제14580호,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8항、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28호,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1호,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9호,2018. 12. 24.>(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6021호,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5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55호,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4호,2020. 6. 9.>(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8호,2020. 6. 9.>(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54호,2020. 6. 9.>(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58호,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1호,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1호,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4호,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9호,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20260호,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4호,2024.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8호,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05호,202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45호,2026. 3. 10.>(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500호,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988호,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7, 15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0. 8. 4.>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조 삭제 <2020. 8. 4.>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삭제 <2015. 12. 22.>

제8조 삭제 <2015. 12. 22.>

제9조 삭제 <2015. 12. 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8. 4.>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본조신설 2017. 3. 22.]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8. 4., 2025. 10. 1.>

1.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8. 7. 17.>]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8. 7. 17.>]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 7. 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제10조(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제11조(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보관·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제14조(운영·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25. 5. 20.]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4. 실태점검의 내용

[본조신설 2025. 5. 20.]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16조의2 삭제 <2020. 8. 4.>

제17조 삭제 <2020. 8. 4.>

제17조의2 삭제 <2020. 8. 4.>

제18조 삭제 <2020. 8. 4.>

제18조의2 삭제 <2020. 8. 4.>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5. 10. 1.>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삭제<2020. 8.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20조 삭제 <2011. 9. 29.>

제21조 삭제 <2011. 9. 29.>

제22조 삭제 <2011. 9. 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1. 8. 29.>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12.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4. 11. 28.>

제30조 삭제 <2014. 11. 28.>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26. 7. 7.>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 28., 2026. 7. 7.>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 28.>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 7. 7.>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9. 22., 2019. 6. 11., 2025. 10. 1., 2026. 7. 7., 2026. 9. 29.>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16. 9. 22.]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26. 7. 7.>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7. 7.>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개정 2026. 7. 7.>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2026. 7. 7.>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 5. 20.>]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6. 7. 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제35조의2에서 이동 <2025. 5. 20.>]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

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7. 7.>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7. 7.>

④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2025. 10. 1., 2026. 7. 7.>

⑤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⑥ 삭제<2011. 9. 29.>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 10. 1., 2026. 7. 7.>

[제목개정 2026. 7. 7.]
[제36조에서 이동 <2026. 7. 7.>]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2026. 7. 7.]

[종전 제36조는 제35조의10으로 이동 <2026. 7. 7.>]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 7. 7., 2026. 9. 30.>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설비·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설비·장비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6. 9. 30.>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26. 9. 30.>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6. 9. 30.]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5.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2. 7., 2024. 12. 31., 2026. 9.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라.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마.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7., 2025. 11. 4.>

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2. 7.>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1. 12. 7., 2022. 8. 9.>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7., 2023. 12. 26.>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1. 12. 7., 2022. 8. 9.>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⑦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1.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도입·개시 또는 변경 시 보안성 검토
2.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또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전문개정 2019. 6. 11.]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6. 11., 2021. 12. 7., 2025. 11. 4.>

[본조신설 2014. 11. 28.]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6. 1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8에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36조의11(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전산 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준법ㆍ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 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 그 밖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정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람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 7. 3.>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28., 2019. 6. 11., 2021. 12. 7., 2023. 7. 3.>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

제38조(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8. 29., 2019. 6. 11., 2020. 12. 8.>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대책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43조 삭제 <2012. 8. 17.>

제44조 삭제 <2012. 8. 17.>

제45조 삭제 <2012. 8. 17.>

제46조 삭제 <2012. 8. 1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5. 31., 2026. 9. 30.>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2.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이 적용되는 자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31.>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⑦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3조로 이동 <2012. 8. 17.>]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종전 제48조는 제53조의2로 이동 <2012. 8. 17.>]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삭제 <2026. 9. 30.>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5. 31., 2024. 7. 23.>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종전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2. 8. 17.>]

제50조

[제47조로 이동 <2012. 8. 17.>]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26. 9. 30.>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31.>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8. 1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삭제<2012. 8. 17.>]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표시·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2012. 8. 17.>]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침해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2012. 8. 17.>]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7. 7. 26.>

⑤ 삭제<2012. 6. 25.>

[제목개정 2016. 5. 31.]

[제48조에서 이동 <2012. 8. 17.>]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8. 17.,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49조에서 이동 <2012. 8. 17.>]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의2 삭제 <2022. 12. 9.>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12. 8.>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제55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이하 이 조에서 "완화 적용 대상"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9. 30.>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9. 30.>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③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6. 9. 30.>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자
   나.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본조신설 2024. 7. 23.]

[제목개정 2026. 9. 30.]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2020. 12. 8., 2026. 9. 30.>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의 전파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48조의2제9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요청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0. 10. 1., 2011. 8. 29.,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방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8로 이동 <2026. 9. 30.>]

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7까지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상급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8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10으로 이동 <2026. 9. 30.>]

제5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8조의5(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48조의2제7항2호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8조의7(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의 실시) ① 법 제48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보·경보·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침해사고의 규모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해당 여부

② 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본조신설 2026. 9. 30.]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6. 9. 30.>

③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본조신설 2024. 8. 13.]

[제목개정 2026. 9. 30.]

[제58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제58조의9(침해사고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 침해사고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유용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침해사고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정보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침해사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의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
4.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5. 피해구제 관련 민원 처리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8조의10(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일시、방법、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58조의3에서 이동 <2026. 9. 30.>]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9.]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4. 8. 13.>

[전문개정 2022. 12. 9.]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3.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본조신설 2020. 12. 8.]

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총 사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부과 금액
2. 산정기간, 1일당 부과 금액 및 산출근거
3. 부과 사유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수납기관
6.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0조의10은 제60조의17로 이동 <2026. 9. 30.>]

제60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최근 침해사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는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0조의11은 제60조의18로 이동 <2026. 9. 30.>]

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 ① 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매뉴얼 작성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매뉴얼 작성의무자가 작성하는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에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 체계, 담당자 및 정보공유 방법
2.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사항
3.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대응 체계
4.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 및 현행화 방안
5. 그 밖에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점검(이하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뉴얼 작성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사를 포함한다),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2.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제출 및 수정·변경 여부
3.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서비스 이용자 수 및 과거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점검 이력
4. 그 밖에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매뉴얼 작성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점검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9. 30.]

제60조의17(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절차

[본조신설 2022. 12. 9.]
[제60조의10에서 이동 <2026. 9. 30.>]

제60조의18(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제60조의11에서 이동 <2026. 9. 30.>]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신설 2014. 11. 28.>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1. 28.>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1. 28.>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 11. 28.]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 11. 28.]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1. 28., 2020. 8. 4., 2025. 10.

1.>

제64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ㆍ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라. 법 제5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는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0. 1.>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 8. 4., 2024. 7. 23., 2026. 9. 30.>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정책 지원 및 대책 연구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0. 8. 4., 2025. 10. 1.>

[제목개정 2010. 10. 1.]

제66조 삭제 <2020. 8. 4.>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 3. 28.>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2. 2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7. 9. 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 <2015. 12. 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11.>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8. 31.>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4. 11. 28., 2021. 1. 5.>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14. 11. 28.>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6조의8에서 이동 <2018. 12. 11.>]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8. 12. 11.>]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1. 5.>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 3. 28.>

제67조 삭제 <2020. 8. 4.>

제7장 보칙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11. 8. 29.>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2012. 8. 17.>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 28.]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1. 27.>

제69조의2 삭제 <2026. 7. 7.>

제69조의3 삭제 <2020. 8. 4.>

제69조의4 삭제 <2020. 8. 4.>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3. 28., 2008. 7. 3.,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9. 28., 2019. 6. 11., 2019. 6. 25., 2021. 12. 7., 2023. 7. 3.>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2021. 12. 7., 2023. 7. 3., 2026. 9. 30.>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4.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2025. 10. 1., 2026. 9. 30.>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제2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가.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나.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08. 3. 28., 2010. 10. 1., 2011. 9. 29., 2012. 8. 17., 2014. 11. 28., 2020. 8. 4., 2025. 10. 1., 2026. 9. 30.>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

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삭제<2020. 8. 4.>

[제목개정 2021. 12. 7.]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2. 27.]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 3.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삭제<2026. 3. 24.>
7. 삭제<2026. 3. 24.>
8. 삭제<2026. 3. 24.>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2016. 12. 30.>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2025. 5. 20., 2025. 10. 1., 2026. 7. 7.>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72조 삭제 <2010. 12. 27.>

제73조 삭제 <2009. 8. 18.>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6. 9. 30.>

[전문개정 2010. 10. 1.]

부칙 <제20668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56호,2008.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6호,2008. 7. 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를 “ 방송통신위원회 ”로, “ 체신청장에게 위탁 ”을 “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체신청장에게 위탁 ”을 “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278호,2009.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21692호,2009. 8. 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19호,2009. 9. 9.>(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 「항공법」 제2조제26호 " 를 " 「항공법」 제2조제31호 " 로 한다.

⑮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2003호,2010. 1. 27.>(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을 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23호,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424호,2010. 10.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0호,2010. 12. 2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2773호,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4호,2011.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9호,2011. 9. 29.>(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3876호,2012. 6. 2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47호,2012.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

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표 9 중 제2호어목·저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4076호,2012. 8. 3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02호,2012. 9. 1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45호,2013. 3. 23.>(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9호,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6757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188호,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0호,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51호,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3호,2017. 9. 5.>(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 "를 각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부칙 <제28919호,2018. 5. 28.>(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53호,2018. 7.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2호,2018. 9. 28.>(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으로, " 위임·위탁 "을 " 위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9339호,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3호,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2호,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9886호,2019. 6. 25.>(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1호,2020. 5. 1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4호,2020. 8. 4.>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1호,2020. 12. 8.>(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247호,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29호,2021. 2. 2.>(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79호,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9호,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2호,2023. 7. 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4호,2023.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4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58호,2024. 2. 2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3호,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1호,2024. 8. 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2호,2024. 12. 31.>(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3호,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5810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를 각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방송통신사무소 ”를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 “ 산업통상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 방송통신위원회 ”를 각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35837호,2025.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02호,2026.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35호,2026.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및 신고한 경우에는 제36조의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6조의7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및 신고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라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로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시청·열람·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7. 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6. 7.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 1) 표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 여부,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기간·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 및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 여부는 유통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의 기간·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은 유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7. 7.>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1. 가전 분야: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2. 교통 분야: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3. 금융 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5. 의료 분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설비·장비
6. 제조·생산 분야: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점검·측정·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7. 주택 분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
8. 통신 분야: 「전파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7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또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또는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유관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유관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

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8.>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5천만원

비 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5. 31.>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실적 또는 인증심사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2)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1)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로 정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12. 9.>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8. 13.>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

제 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증

소 속:
직 위 또는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출입·조사 기간: ~

사 진
(2.5cm×3cm)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

비 고

1. 규 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 색
3. 복 선: 적 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6. 9. 30.>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제60조의10제1항에 따른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의 이행 및 출입·조사의 협조를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 출입·조사의 방해·거부·기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6.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6. 9. 30.>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침해사고의 중대성	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침해사고	1.5% 이상 2.1% 미만
보통 침해사고	0.9% 이상 1.5% 미만
약한 침해사고	0.03% 이상 0.9% 미만

나. 1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기간, 침해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법 제4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침해사고 조사 협조 여부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정보보호수준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 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 노력

4) 침해사고의 주도 여부

5) 침해사고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침해사고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1차·2차 조정의 세부 기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팩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걸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걸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걸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26. 9. 30.>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

1. 일반적인 제한조치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으로 인해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해당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체결한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의 미비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점검해야 한다.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제한조치

유 형	제한조치
가.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해당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조치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정보

가 법 제50조의8을 위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에 이용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거부 및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2)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해당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조치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3]

<신설 2026. 9. 30.>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50조의9제2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0% 이상 3.0% 미만
보통 위반행위	1.0% 이상 2.0% 미만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4.0% 이상 5.0% 미만
보통 위반행위	3.0% 이상 4.0% 미만

2) 법 제50조의9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

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 1)가) · 나) 및 2)가) ·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 감경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추가적 가중 · 감경

다음의 사항(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 감경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 · 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2)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

모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노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5)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에 따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3. 세부 기준 등

영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의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는 위반행위의 기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7. 2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1. 관리적 조치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시행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화재·지진·수해 또는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킹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계의 구분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회계와 그 밖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전산자료의 유출·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요한 전산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 기술적 조치

가. 정보처리시스템은 서버,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삭제 <2020. 8.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9. 30.>

[시행일: 2027. 4. 1.] 제2호러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1,000	2,000	3,000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2	1,000	2,000	3,000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2	1,000	1,000	1,000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3	300	600	1,000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4	1,000	1,000	1,000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사.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5	750	1,500	3,000
아.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6	750	1,500	3,000
자.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	2,000	2,000	2,000
차.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카.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	300	600	1,000
타.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2	300	600	1,000
파. 법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3	300	600	1,000
하.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	600	1,200	2,000
거.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	300	600	1,000
너.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36조의7제1항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2	750	1,500	3,000

에 따른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3	1,000	2,000	3,000
러.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4	750	1,500	3,000
머.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2,000	2,000	2,000
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5	750	1,500	3,000
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5	300	600	1,000
어.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6	300	600	1,000
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8	3,000	3,000	3,000
처.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법 제76조제4항제7호	300	600	1,000

홍보한 경우				
커.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0호	300	600	1,000
터.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250	2,500	5,000
퍼.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250	2,500	5,000
허. 법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1호의4	300	600	1,000
고. 법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	600	1,200	2,000
노. 법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	600	1,200	2,000
도.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2	300	600	1,000
로.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750	1,500	3,000

모.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750	1,500	3,000
보.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750	1,500	3,000
소.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3	300	600	1,000
오.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2	750	1,500	3,000
조. 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	750	1,500	3,000
초.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이 영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	750	1,500	3,000
코.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0호	750	1,500	3,000
토.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1호	750	1,500	3,000
포.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제13호	300	600	1,000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호.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폐업·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4호	300	600	1,000
구.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5호	300	600	1,000
누.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6호	300	600	1,000
두.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7호	300	600	1,000
루.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8호	300	600	1,000
무.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9호	300	600	1,000
부.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	법 제76조제4항제20호	300	600	1,000

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수.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2	300	600	1,000
우.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3	300	600	1,000
주.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4	300	600	1,000
추.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1호	300	600	1,000
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2호	300	600	1,000
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3호	300	600	1,000
푸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24호	300	600	1,000
후.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	법 제76조제2항제12호			

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	3,000	3,000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	2,000	2,000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0	1,500	1,500
5)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6) 법 제76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750	750	750

않은 경우				
7)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0	600	600
8) 법 제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9)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비고: 로목부터 토목까지의 규정(소목과 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 - 202 -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 - 202 - 6461, 64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 - 2110 - 1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 - 2110 - 1567, 15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6. 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3. 31.>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4.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영 제4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해당 보안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과보고서(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3. 31.>

[본조신설 2016. 6. 2.]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8조 삭제 <2014. 11. 28.>

제9조 삭제 <2014. 11. 28.>

제9조의2

[제2조로 이동 <2016. 6. 2.>]

제10조 삭제 <2015. 12. 23.>

부칙 <제34호,2008.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 8. 2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6.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4) 및4! 생략

부칙 <제28호,2019. 6. 13.>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2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1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책/직급		겸직 여부 □ 전담 □ 겸직 (겸직업무:)
	관련 업무경력	정보보호: 년 개월, 정보기술: 년 개월 총 년 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완료
신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제품정보	신청등급		구분		분야	
	제품유형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사					
	운영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 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수수료 납부	→	인증시험	→	인 증	→	인증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인		인증시험대행기관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

1. 업 체 명 :
2. 제품명(모델명) :
3. 인증번호 :
4. 인증등급 :
5. 유효기간 :
6. 제 조 사 :
7. 제품버전 :
8. 시험기관 :

위 제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제품정보	신청등급		구분		분야	
	제품유형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사					
	운영체제					
	인증번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 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수료 납부	→	인증시험	→	인증	→	인증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인		인증시험대행기관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제 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297㎜[백 상지(120g/㎡)]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증시험 대행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번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일(유효기간)

구분	세부	실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 실적	최초인증	건
	유효기간 연장	건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 내역 변동사항	[ ] 없음	[ ]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정보통신관련 법령집

제 작 자 : 박배영

기관/부서 : 비앤피랩 정보통신전문교육기관 / 진원엔지니어링

전화번호 : 010-8364-1315

메일주소 : backswim@naver.com

주 소 : https://bnplab.step.or.kr

제작일자 : 2026.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